32-3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 준 교 안

(전수 조사원용)

통계청

표준 교육 제도

Ⅰ. 의 의

■ 표준 교육 제도란 모든 교관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 방식을 택함으로써 교육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통일적인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제도

Ⅱ. 목 적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약10만명의 조사원이 동원되고 약 500여명의 교관단이 구성되는 대규모 조사인 바, 표준교안 및 사이버 교재 등 표준 교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관간 개인차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 최소화

Ⅲ. 표준 교육 교재 및 단계별 교육내용

1. 교육 교재

사이버 교육 교재, 표준 교안

2. 각 단계별 교육내용

1) 1단계 : 학습준비 및 학습목표 전달
- 각 교시에 배울 내용을 간략히 소개

2) 2단계 : 교재상영
- 플래시, 3D, 동영상으로 구성된 사이버 교육 교재 상영

2) 3단계 : 추가설명

- 상영된 교육 내용 중 중요 사항 강조 및 사례를 통한 보충 학습

3. 각 단계별 세부 수행내용

1) 1단계 : 학습준비 및 학습목표 전달

(1) **학습준비** – 사이버 교재 접속 및 대기

가. 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우측에서 조사요원사이버교육 클릭

나. 로그인화면에서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다. 사이버 교재 화면의 **사전교육 · 본교육 · 사례교육** 중 본교육 클릭 후 대기

(2) **학습목표 전달** – **표준교안의 학습목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간략히 전달

2) 2단계 : 교재상영

(1) 사이버 교육 교재 하단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이 진행되며 표준교안의 교육 구성에 따라 신호음과 함께 자동 정지 됨

3) 3단계 : 추가설명

(1) 사이버 교육 교재 상영이 끝난 후 교관은 표준교안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설명, 강조 및 부연 설명

가. **정지화면** – 추가설명 중간에 주의를 집중시켜 해당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요약식 교육자료**

나. **복습화면** – 추가설명 이후에 해당 내용의 복습 및 정리를 위해 **사이버 교재 재상영** 할때 사용

Ⅳ. 표준 교육 운영 안내

교육 (시간)	목 차	교재상영 (분)	교관설명 (분)	지침서 (페이지)
1교시 (50분)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항목 5. 조사일정	5	15	p 5~8
	정지화면 1 (조사 일정)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 가구 – 가구원	10	20	p 9~13
	정지화면 2 (가구의 구분), 정지화면 3 (가구원) 복습화면 1 (가구의 구분), 복습화면 2 (가구수 파악), 복습화면 3 (가구원)			
2교시 (50분)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 거처 2. 용어	10	20	p 14~18
	정지화면 4 (거처의 종류) 복습화면 4 (거처의 종류), 복습화면 5 (용어)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용품 2. 조사원이 지켜야할 사항 3. 조사원 안전 수칙 4. 자주 듣는 질문	10	10	p 19~24
	정지화면 5 (조사용품)			

교육 (시간)	목 차	교재상영 (분)	교관설명 (분)	지침서 (페이지)
3교시 (50분)	Ⅳ. 준비조사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15	10	p 25~35
	정지화면 6 (조사구별 특성번호), 정지화면 7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4단계), 정지화면 8 (일반주택지역 : 새주소지도), 정지화면 9 (일반주택지역 : 수치지형도), 정지화면 10 (면적이 넓은 지역), 정지화면 11 (아파트지역), 정지화면 12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지역) 복습화면 6 (조사구 경계확인), 복습화면 7 (지형지물의 확인 및 보완), 복습화면 8 (거처 확인 및 가구수 파악), 복습화면 9 (거처 번호 부여 및 가구수 기입), 복습화면 10 (조사구 요도 보완 : 새주소지도), 복습화면 11 (조사구 요도 보완 : 수치지형도)			
	2. 가구 스티커 부착 3. 가구명부 작성(1)	5	10	p 35~37
	정지화면 13 (가구스티커), 정지화면 14 (가구명부 – 준비조사), 정지화면 15 (조사표류의 일치)			
	* 준비조사 가상체험	10		
4교시 (60분)	* 조사표 작성 실습		15	
	Ⅴ. 본조사 – 전수조사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조사표 표지	5	5	p 39~43
	정지화면 17 (조사표 표지 – 전수), 정지화면 18 (농림어가 구분) 복습화면 12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가구원에 관한 사항	10	5	p 43~47
	– 가구에 관한 사항	5	5	p 47~51
	정지화면 21 (사용 방 수)			
	– 주택에 관한 사항	5	5	p 51~55

교육 (시간)	목 차	교재상영 (분)	교관설명 (분)	지침서 (페이지)
5교시 (50분)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 1. 조사방법 2. 외국인 조사표	10	20	p 63~74
	정지화면22(외국인 가구 구분)			
	Ⅶ. 본조사 – 빈집 조사 1. 조사방법 2. 빈집 조사표	5	15	p 75~80
	정지화면23(빈집 조사대상)			
6교시 (50분)	Ⅷ. 본조사 – 가구명부 작성(2)	5	10	p 60~62
	정지화면24(가구 명부 – 앞면), 정지화면25(가구 명부 – 뒷면)			
	Ⅸ.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5	10	p 87~88
	* 본조사 가상체험	5		
	Ⅹ. 부록 1. 인터넷 조사 2. 주택정보 이용방법	5	10	p 81~86 p 94~102
	* 질의 응답 및 교육 마무리			

Ⅴ. 사이버 교재 운용요령


추가설명후 내용 강조시 사이버 교재 재상영
추가설명을 위해 보충내용을 담은 화면
진행중인 교육내용의 목차
일종의 네비게이션으로 해당 내용으로 바로감
2.조사 대상 및 주요 용어 / 가구의 정의와 구분
목차
정지화면
복습화면
교육 시작 및 멈춤 장면 후 진행
오디오 작동 중 표시
진행중인 화면 잠깐 멈춤
플래시 진행 중, 바는 좌우로 움직여 가고자 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음
이전 · 다음 화면으로 건너뛰기
진행중인 화면의 진행시간
진행 중인 화면 (chapter)번호
클릭하면 현재화면에서 빠져 나감
교재 내용의 플래시 동영상 및 텍스트 화면임

목차

Contents

표준교안(전수)

12 | 1교시 –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항목
5. 조사일정

–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 가구
– 가구원

26 | 2교시 –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 거처
2. 용어

–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용품
2.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3. 조사원 안전수칙
4. 자주 듣는 질문

38 | 3교시 – Ⅳ. 준비조사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2. 가구 스티커 부착
3. 가구명부 작성(1)

* 준비조사 가상체험

52 | 4교시 * 조사표 작성 실습
- Ⅴ. 본조사 - 전수조사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조사표 표지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
     - 주택에 관한 사항

74 | 5교시 -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
  1. 조사방법
  2. 외국인 조사표
- Ⅶ. 본조사 - 빈집조사
  1. 조사방법
  2. 빈집 조사표

84 | 6교시 - Ⅷ. 본조사 - 가구명부 작성(2)
- Ⅸ.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본조사 가상체험
- Ⅹ. 부록
  1. 인터넷 조사
  2. 주택정보 이용방법

표준교안(전수)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1 교시 (50분)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항목 5. 조사일정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1.1 가구 1.2 가구원

휴 식 (10분)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배포한 CD를 실행시킵니다.
2. [Ⅰ. **조사개요**]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3.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5~8)

자,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살펴볼까요?

■ **인구주택총조사의 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항목
5) 조사일정

그럼, 사이버교재를 한 번 볼까요?

교재상영 (5분)

1. 사이버교재의 [Ⅰ. **조사개요**]를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5분)

| 조사대상 | p.6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할 몇 가지만 강조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인구총조사 – 1925년부터 실시되어 올해가 17차
주택총조사 – 1960년부터 실시되어 올해가 9차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과거에 외국의 일부국가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행금지 후 실시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조사인지 아시겠지요.

다음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이 2005년 11월 1일 0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대상 여부와 매우 밀접합니다.

■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볼까요?

1) 출생 (2005년 10월 31일 / 2005년 11월 1일)

쌍둥이가 있고, 첫째는 2005년 10월 31일 23시 59분 59초에 태어났고, 둘째가 바로 이어서 2005년 11월 1일 0시 1분 1초에 태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10월 31일에 태어난 첫째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11월 1일에 태어난 둘째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조사기준시점이 11월 1일 0시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 (2005년 10월 31일 / 2005년 11월 1일)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분을 예로 들면요,

2005년 10월 31일에 돌아가신 분은 조사대상이 아니고, 2005년 11월 1일에 돌아가신 분은 조사대상이랍니다.

11월 10일에 어떤 가구를 방문하였는데, 11월 3일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이 10일 현재 계시지는 않지만 조사기준시점인 11월 1일 0시에는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 분은 조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3) 전입 (2005년 11월 5일)

11월 5일에 조사구내에 새로 이사 온 가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전에 살던 지역에서 조사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조사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조사기준시점이 11월 1일 0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사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사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 조사방법 | p.6

■ 사이버교재에서도 보셨지만 조사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사원 면접방식**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면접하기 어렵거나 주간에 사람을 아예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응답자 기입방식과 인터넷 조사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조사원 면접방식

가장 기본적인 조사방식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실제로 방문해서 조사표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2) 응답자 기입방식

조사원이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만 하구요, 조사표의 실제 작성은 가구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아파트 조사구 중 전수조사 지역에만 적용 됩니다. 단, 이때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조사표의 내용을 현장에서 간략히 검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 인터넷 조사방식

가구원이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 작성합니다. 인터넷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원칙적인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면접방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일정 | p.7~8

(**[정지화면]** 메뉴의 1번, **[조사 일정]**을 누르십시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조사일정은 크게 **1) 교육, 2) 준비조사, 3) 본조사, 4)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교육

2) 준비조사

교육이 끝나고 나면, **준비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전수조사원은 10월 29일 토요일부터 10월 31일 월요일까지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조사하는데 수월하면 좋겠습니다!

3) 본조사

준비조사가 끝나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표와 가구명부를 완성하시구요.

4)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마지막으로 **11월 15일**에는 보름동안 조사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조사업무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일정에 대해서 지역별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 하십시오.)

MEMO



학습준비

1. [1.1 가구]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9~13)

이번에는 가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 : 가구, 가구원, 거처**

이 중,

1) 가구

① 가구의 정의
② 가구, 가족, 세대의 차이점
③ 가구 구분, 즉 가구의 종류
④ 가구수 파악

2) 가구원

①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
②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에 대해 사이버교재를 먼저 볼까요!

교재상영 (10분)

1. [1.1 가구]와 [1.2 가구원]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20분)

| 가구의 정의 | p.10

가구가 무엇이고, **가구와 가족, 가구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 가구와 주민등록상 세대의 차이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1)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등록 될 수 있죠? 가령, 시골에 사는 조카가 재수를 하기위해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의 이모집에 살고 있으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군대에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누가 이 가구에 속할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시 기다려준다.) 조카는 어떨까요? 군대에 간 아들은 어떨까요? (잠시 기다려준다.)

네, 그렇습니다. 조카는 이 가구에 속하고, 군대 간 아들은 이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즉, 가구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간 아들은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휴가 나왔을 때는 같이 먹고 살지만... 그 대신 조카는 같이 먹고 사니까 한 가구원이 되지요! 반면에 세대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아들은 포함되고 조카는 빠지게 됩니다.

2) 가구 / 가족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더 들면, 한 가족이라도 1층과 2층에 나누어 살면서 생계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 다른 가구로 보아야 합니다. 1층과 2층, 각각 생계를 따로 하고 있으니깐요. 물론 1층과 2층이 생계를 같이 하면? 2개의 가구로 나누지 않지요.

■ 즉, **숙식을 같이 하는 단위가 가구**입니다.

| 가구의 구분 | p.10~11

([정지화면] 메뉴의 2번, [가구의 구분]을 누르십시오.)

■ 가구의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1) 일반가구, 2) 집단가구, 3) 외국인가구**로 분류합니다.

1) 일반가구는 다시 4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④ 1인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2) 집단가구는
① 가족이 아니면서 6인 이상 19인 이하가 함께 사는 가구
② 가족이 아니면서 20인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
③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 같은 시설
이 중에서 ②와 ③인 경우는 시설 조사구로 분리하여 따로 조사합니다.

3) 마지막으로 **외국인가구**가 있는데요
① 외국인끼리 사는 가구
② 단, 한국인하고 외국인이 같이 살면, 외국인 가구가 아니고 일반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외국인 중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면 한국인으로 조사할까요? 외국인으로 조사할까요? 이럴 경우는 한국인으로 보아 일반가구가 됩니다.

■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족(혈연)관계로 구성된 가구 중에서 가구원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대답을 기다린 후) 2000년 조사결과 가구원수가 17명인 가구가 1가구, 16명인 가구가 2가구, 15명인 가구가 3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이들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할까요? 집단가구로 분류할까요?(대답을 기다린 후) 네. 이들은 6인 이상이지만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므로 일반가구에 해당합니다.

■ 가구 구분은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용어 자체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 중심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사이버교재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1번을 누르십시오.

| 가구수 파악 | p.10~11

■ 실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거처에 몇 가구가 사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주택총조사 자체가 가구를 기준으로 그 가구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집에 몇 가구가 사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앞에서 사이버교재를 보셨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사이버교재를 한 번 더 볼 테니까 집중하여 들으시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 혼동되는 몇 가지만 다시 설명을 드려 볼까요!! 설명을 들으실 때 조사원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집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고 빠를 것입니다.

1) 부모, 자녀, 친척 등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 자녀, 친척 등 생계를 같이 하면 몇 가구인가요? (잠시 시간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보아도 좋다.) **1가구**죠! 쉽죠...

②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층집이고, 2층에 출가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데, 살림을 서로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집 주변에 있죠! (시간을 좀 준다. 누군가가 대답할 것이다.) 그렇죠, **2가구**죠. 쉽죠.

2) 하숙집(주인가구와 숙식을 함께 함)

① 하숙생이 5인 이하

저기, OO 대학교 앞에 부부가 하숙집을 운영하는데, 하숙생이 3명이면 몇 가구일까요? (시간을 좀 준다.) 하숙생이 6명이 안 되죠? 그래서 **1가구**죠.

② 하숙생이 6인~19인 이하

하숙생이 늘어나서 6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좀 준다.) 하숙생이 **6명 ~ 19명** 사이면 주인가구와 별도로 독립시켜서 별개의 가구로 조사하죠. 즉, **2가구**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③ 하숙생이 20인 이상

그럼, 2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도 **2가구**인데요, 20명 이상이면 '기숙시설조사구'로 분리해서 조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3) 자취집(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함)

자취집을 한 번 볼까요? 주인가구가 있고, 자취방이 3개고, 각 자취방에서 살림을 하면 총 몇 가구가 됩니까? (시간을 좀 준다.) **4가구**죠. 간단하죠.

4) 고시원

주변에 고시원 같은 곳이 많이 생겼는데요, 고시원에는 방이 많잖아요. 이 경우에 기준은 **취사와 취침을 별개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① 개별 취사취침

취사와 취침을 방방마다 따로 하면 (여기에는 매식도 포함됩니다.) 방마다 별개의 가구 즉, 개별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② 공동 취사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취사를 하면 1개의 가구(집단가구)로 봅니다.

③ 개별 취사취침 + 공동취사

그럼, 한 고시원에서 일부는 같이 숙식을 하고, 일부는 각각 숙식을 한다면 가구수를 어떻게 파악할 까요? 이렇게 혼합된 경우는 1개의 가구(집단가구)로 파악합니다.

5) 기숙사 · 고아원

① 관리인 가구

기숙사나 고아원 같은 곳에 가면 기숙사나 고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하면서 생활하잖습니까. 이 경우 관리인 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합니다.

② 기숙사나 고아원

기숙사나 고아원은 집단시설가구로 조사합니다. 즉, **2가구**인 셈이죠.

■ 즉, **숙식을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가 구분**됩니다.

■ 어떻습니까! 종류가 많다 보니 다소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번 더 들으니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래도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시다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교재를 한 번 더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2번을 누르십시오.

| 가구원의 정의 | p.12~13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가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가구원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같은 가구에 사는 가구원이기는 한데 이번 조사에 포함시켜야 할지, 제외시켜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 /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정지화면]** 메뉴의 3번, **[가구원]**을 누르십시오.)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①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 ②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가구원 ③ 예비군 훈련으로 며칠 집을 비운 가구원 ④ 공익근무요원, 산업체근무요원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는 가구원 ⑤ 직업군인이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군부대 안이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 ⑥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⑦ 미결수나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 중인 가구원 ⑧ 구직이나 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1개월**이 안 된 가구원	① 취업이나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하는 가구원 ② 선박, 항공기, 철도, 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③ 군대나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가족 ④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족(군부대 밖이지만 혼자나와 살고 있는 경우도 포함) ⑤ 요양원, 기도원, 고아원, 양로원, 특수병원 등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 ⑥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된 가족 ⑦ 구직이나 가출 등으로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족

■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같은 가구에 사는데, 잠시 나가 있고, 곧 돌아올 사람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아니까 어렵지 않죠!

■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조사표를 설명할 때 한 번 더 나오므로 그 때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3번을 누르십시오.

MEMO



휴 식 (10분)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셨다가 10분 후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시 (50분)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2. 용어	1.3 거처 2.1 조사구 번호 2.2 거처 번호 2.3 가구 번호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용품 2.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3. 조사원 안전수칙 4. 자주 듣는 질문	

점심시간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배포한 CD를 실행시키십니다.
2. [1.3 거처]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3.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14~18)

잘 쉬셨습니까.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것이 힘드시죠!
전 시간에는 조사개요와 조사대상 및 용어의 조사대상 중 가구와 가구원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사대상 가구, 가구원, 거처 중 거처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사대상(거처)와 용어**

1) 거처

① 주택
② 주택 이외의 거처

2) 용어

① 조사구 번호
② 거처 번호
③ 가구 번호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지 않나요! 사이버교재를 먼저 보고 중요한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상영 (10분)

1. [1.3 거처]와 [2. 용어]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20분)

| 거처의 정의 | p.14~15

■ 거처의 종류가 참 많죠!
거처의 종류는 실제 조사표의 「**3.주택에 관한 사항**」의 1번 항목인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조사 업무를 진행하실 때 그대로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혼자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교육 시간에 잘 정리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처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럼, 집이나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처'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이외의 거처"가 있으며, 이러한 "주택 이외의 거처"를 "주택"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1) 주택의 요건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조사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3.주택에 관한 사항**」의 [1]번 항목인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의 보기에 가시면 ①번에서 ⑩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⑤번까지가 "주택"에 해당하고요, ⑥번에서 ⑩번까지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걱정마시구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 주택의 종류 | p.15~16

(**[정지화면]** 메뉴의 4번, **[거처의 종류]**를 누르십시오.)

■ 그럼, 주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단독주택

① 일반 단독 주택
② 다가구 단독 주택
③ 영업겸용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현재 여러분이나 친지 및 다른 가족이 어떤 종류의 주택에 사시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여기서 주택의 종류를 잘 구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단독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

첫째,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 단독주택**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살림하는 주택이고, 다가구 단독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림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구분이 가시죠. 그런데 2층짜리 집인데, 2층에 세를 주었으면 여러 가구가 살림을 하니 다가구 단독주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층의 세든 가구에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다가구 단독주택이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이 되는 것이지요.

2) 영업겸용 단독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둘째, 단독주택 중에서 1층은 영업용 가게로 세를 주고, 2층과 3층은 살림집으로 쓰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영업겸용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중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 **"영업겸용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주거용 면적이 영업용 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영업겸용 단독주택"이 되고요, 영업용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크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됩니다.

3) 다가구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셋째,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흔히 3층이나 4층짜리 건물들이 주택가에 많지 않습니까! 집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팔수 있으면 다세대주택이구요, 팔 수 없으면 다가구 단독주택이 됩니다.

4)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넷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당 건물 연면적이 200평을 넘으면 연립주택이구요, 200평 이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 여러 종류의 주택이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플래시를 한 번 더 보시면서 복습하시겠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4번을 누르십시오.

| 주택 이외의 거처의 종류 | p.17

(**[정지화면]** 메뉴의 4번, **[거처의 종류]**를 누르십시오.)

■ 앞에서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았고요, 이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는데, 사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해당하는

1) 오피스텔
2)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3)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4)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중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무조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거나 사무용으로만 사용되면 조사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 이상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원, 거처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로 조사할 때 필요한 내용이므로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몇 가지 관련 용어들,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집중해서 보실 내용은 조사구가 있고, 조사구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이것은 집집마다 주소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조사구 안에 있는 모든 거처마다 다시 번호가 붙고, 거처를 구성하는 가구마다 또 다시 번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볼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용어 | p.18

■ 사이버 교재를 통해 조사에 관련된 용어들, **1) 조사구번호, 2) 거처번호, 3) 가구번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 조사구 번호

① 조사구

일정한 수의 가구가 포함되도록 전국을 모두 나누어서 **조사구**를 만들어 놓았고, 조사원 여러분 각자가 이 중에서 몇 개의 조사구를 담당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② 조사구번호

조사구에는 일정한 규칙대로 번호가 붙어 있는데, 먼저 세자리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기호와 같은 줄표가 있고, 마지막에 한자리 숫자가 붙습니다. 이것이 **조사구번호**인데요, 앞의 세자리 숫자는 일련번호고, 뒤의 한자리 숫자는 조사구특성번호입니다. 조사구 특성번호는 해당 조사구가 아파트 지역인지, 섬 지역인지 등과 같이 조사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2) 거처번호

거처번호는 세자리로 되어 있으며 '001' 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사는 모든 거처와 사람이 살지 않는 모든 주택에 거처번호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거처번호는

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주택
② 이사 간 빈 집
③ 사용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한 신축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④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

에 부여 합니다.(지침서 p.33)

- 사람이 사는
  - 주택 – 거처번호 부여
  - 주택 이외의 거처 – 거처번호 부여
- 사람이 살지 않는
  - 주택 – 거처번호 부여
  - 주택 이외의 거처 –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3) 가구번호

가구번호도 역시 세자리로 되어 있으며 '001' 부터 시작하는데요, 주택에 살든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든 모든 가구에 가구번호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면 가구수 만큼 가구번호를 부여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단독주택에 3가구가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번호는 001, 002, 003 세개를 부여해야 겠지요!

■ 또한 **1) 가구번호, 2) 거처번호, 3) 조사구 번호**는

1) 가구 번호 : 거처번호가 바뀌면 '001' 부터 다시 시작
2) 거처 번호 : 조사구번호가 바뀌면 '001' 부터 다시 시작
3) 조사구 번호 : 읍·면·동이 바뀌면 '001' 부터 다시 시작 합니다.

■ 그럼, 역주변이나 터미널, 공원 등에 노숙자가 거주하는 경우 거처번호를 부여할까요?(잠시 시간을 주고) 공원에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경우 공원전체에 거처번호 하나를 부여하고 각 노숙자별로 가구번호를 부여 합니다.

■ 나중에 조사표류를 정리할 때 이들 번호를 맞추어서 적어야 하니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고 계셨다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주요 용어에 대한 플래시를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5번을 누르십시오.

MEMO



학습준비

1.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19~24)

이번에는 조사업무를 진행할 때 지참하고 사용해야 하는 조사용품과 조사원 유의사항, 그리고 가구에 방문하였을 때 자주 듣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 **조사업무 수행 요령**

1. **조사용품**
2.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3. **조사원 안전 수칙**
4. **자주 듣는 질문**

특히, 조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이버교재를 보시죠!

교재상영 (10분)

1.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조사용품 | p.24

([**정지화면**] 메뉴의 5번, [**조사용품**]을 누르십시오.)

■ 여러 가지 조사용품이 있죠!
이 중에서 몇 가지 강조할 사항이 있는데요,

1) 조사요원증

첫째, '**조사요원증**'을 꼭 패용하고 다니십시오. 조사원 여러분은 조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살피는 것이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집을 기웃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때 '조사요원증'을 달고 있으면 설명 드리기가 한결 쉬워지겠지요!

2) 조사원 연락전 · 가구홍보용 전단

둘째, 가구에 방문하였지만 가구원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부재가구라고 하는데요, 이 때는 '**조사원 연락전**'에 조사원 여러분의 이름과 재방문 일시를 기록한 후에 '**가구홍보용 전단**'과 함께 해당 가구에 전달하거나 투입하시고, 재방문 일시에 다시 방문해서 면접 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약속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비밀보호용봉투

셋째, 어떤 가구는 조사원에게 집안 사정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비밀보호용봉투**'에 조사표를 넣어서 배부하고 완성된 조사표를 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

■ 이외에 다른 조사용품에 대한 것은 실제 사용하시다 보면 쉽게 그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p.20

■ 사이버교재를 통해 조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였는데요.

■ 앞서 얘기한 것 외에

1) 조사 시 면접자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조사는 되도록 현관에서 완료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잠시 외출 중인 집에 들어가 도난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3) 또한 공장이나 작업장 등 위험한 장소는 피함
4) 홈리스(HOMELESS), 정신이상자 등 위험한 사람이 있어 **불안을 느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되돌아가 관리자 및 읍면동 관리자와 상담 후 다시 방문

| 조사원 안전수칙 | p.23

■ 조사를 하다보면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총사고가 307건이었는데, 이중 교통사고가 41건, 개에 물림이 83건, 계단에서 넘어짐이 163건, 기타 문에 부딪히거나 길에서 넘어짐 등이 20건이었습니다.

■ 여러분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고나 부상시에는 신속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또, 조사기간 중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3일 이상** 치료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 조사원 여러분은 조사요원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조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EMO



점심시간 (50분)

이상으로 오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육장별로 점심식사 안내를 하십시오.)

3 교시 (50분)

Ⅳ. 준비조사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1.1 조사구의 개념과 종류 1.2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1.3 조사구요도 보완(사례) 1.4 조사구요도 제출 및 관리
	2. 가구스티커	
	3. 가구명부 작성(1)	
	* 준비조사 가상 체험	

휴식 (10분)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배포한 CD를 실행시킵니다.
2.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3.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25~37)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오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조사구에 나가셔서 진행할 준비조사와 본조사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짧게 살펴볼까요.

- **조사구의 정의와 조사구 종류별 특성번호**
- **준비조사**
  1)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과정
  2) 가구스티커 작성 및 부착 요령
  3) 가구명부 작성 방법(1)

조사원 여러분이 각자 맡게 될 조사구의 조사구요도가 **새주소지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수치지형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 주소지와 수치지형도 사용지역 구분은 기본도 좌측 상단의 확인표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도가 많이 다르지 않고, 작성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지역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단, 새주소 지도를 사용하는 조사원과 수치지형도를 사용하는 조사원이 함께 교육 받는 경우, 더 많은 쪽을 선택하여 교육한다.)

먼저 조사구의 개념과 조사구요도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교재를 볼까요!

교재상영 (15분)

1.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을 상영합니다. 이 때 **〈새주소지도 사용지역〉** 단추와 **〈수치지형도 사용지역〉** 단추 중에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선택하십시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조사구의 정의 | p.26

■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조사구'** 라는 것으로 분할해 놓았고, **각 조사구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 놓았다는 것을 앞에서 잠깐 이야기 했었고, 사이버교재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 조사표 표지나 가구명부 상단(조사표와 가구명부는 지침서 부록 참조)을 보시면 '조사구번호' 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여기 보면 앞에 3개의 네모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빼기 표시 줄이 있고, 마지막에 1개의 네모 칸이 있죠(□□□-□). 여기서 뒤에 있는 1개의 네모 칸에 조사구의 특성번호가 붙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3개의 네모 칸에는 조사구일련번호가 붙겠지요.

| 조사구별 특성번호 | p.26

(**[정지화면]** 메뉴의 6번, **[조사구별 특성번호]**를 누르십시오.)

■ 조사원 여러분은 각자가 몇 개의 조사구를 할당받아서 실제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조사구의 조사구번호에는 종류별로 특

성번호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1) 조사구별 특성번호는 총 6개입니다.

① 아파트조사구: A
② 보통조사구: 1
③ 섬조사구: 2
④ 기숙시설조사구: 3
⑤ 특수사회시설조사구: 4
⑥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 5

■ 이들 특성번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사구번호를 적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조사 | p.26

■ 준비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준비조사는 조사원이 담당하게 될 조사구 경계를 확정하고 가구수(업무량)를 잠정적으로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 이 교육이 끝나고 전수조사를 맡으신 여러분들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준비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비조사시 수행업무는

1)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2) 가구스티커 부착
3) 가구명부 작성(1)

입니다. 각 업무별로 살펴볼까요!

|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과정(4단계) | p.26~33

(**[정지화면]** 메뉴의 7번,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4단계]**를 누르십시오.)

■ 사이버교재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조사구 경계 확인
2) 지형지물(건물) 확인 및 보완
3) 거처 확인 및 가구수 파악
4)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수 기입

| 조사구경계 확인 | p.26

■ 먼저, 조사구 경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볼까요.
각자 담당 구역의 조사구요도를 지급받으시면, 지급받으신 조사구요도를 들고 현장에 나가셔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담당구역(적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을 돌면서 조사구요도의 경계가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겠지요.

■ 만약 경계가 틀리면 표시해 두었다가 읍면동 단위로 조사구가 그려진 지도와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고 **잘못 표시된 부분을 적색으로 X 표시**하고 올바른 경계선을 적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조사원은 변경지역을 담당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등에게 알려 일부지역이 중복,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6번을 누르십시오.

| 지형지물(건물)의 확인 및 보완 | p.27

■ 둘째, 조사구요도를 보시면 약국, 병원, 편의점 등과 같은 건물의 명칭이나 주소도 적혀져 있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시면서 조사구요도에 적혀져 있는 집이나 건물이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때,

1) 건물이 새로 들어섰거나, 현장에는 있고 조사구요도에 없으면 빨간

색 네모 칸(□)으로 표시
2) 지금 막 짓고 있는 건물은 빨간색 네모 칸을 점선(⬚)으로 표시
3) 그리고 철거 등으로 없어졌거나 잘못 표시되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 표시

[복습화면] 메뉴의 7번을 누르십시오.

| 거처확인 및 가구수 파악 | p.27

■ 셋째, 지형지물이나 건물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건물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건물에 몇 가구가 사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겉에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을 꼭 만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조사가 한결 더 쉬워집니다.)

■ 이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건물의 지하, 옥탑, 교회나 절, 음식점, 작은 공장 등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가구를 빠트리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별도로 제공되는 '주택정보 비고란'을 보시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표시가 붙은 건물은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별히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거주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8번을 누르십시오.

|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수 기입 | p.27

■ 넷째, 사람이 사는 거처로 확인되었으면 **거처번호**를 부여하셔서 조사구요도에 적고, 해당 거처에 사는 **가구수**를 세어서 역시 **조사구요도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 거처번호와 가구수를 적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1) 거처번호 기입

한 거처를 구분해 놓은 실선 안에 1부터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요, 번호를 붙이는 순서는 조사원 여러분이 조사를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 그냥 1부터 계속 붙여나가면 됩니다.(1 2 3) 참, 거처번호를 붙일 때요, 옆집과 인접되게 연결해서 부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확인되는 집들만 먼저 번호를 붙이다보니 거처번호가 이곳저곳을 오가며 순서가 이어 지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부터 순서대로, 옆집과 인접되게 번호를 붙여 주세요!

2) 가구수 기입

그리고 가구수는 거처번호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를 작게 그리고 그 안에 적으면 됩니다. 거처번호와 가구수를 적을 때 연필을 사용하십시오. 틀리면 수정하기 쉬우니깐요.(1① 2②)

■ 또한 빈집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빈집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구수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이 경우에는 거처번호만 적고 거처번호 옆의 괄호 안에 '빈집' 이라고 적습니다.(3(빈집))

■ 또한 **현재 막 짓고 있는 건물이나 관공서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9번을 누르십시오.

| 조사구요도 보완(사례) | p.28~34

앞서 본 사이버 교재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 요도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 한 개의 조사구역에 동일한 형태의 거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거처가 포함될 수 있다는거 아시죠!

앞서 살펴본

1) 일반 주택 지역
2) 면적이 넓은 지역
3) 아파트 지역
① 계단식인 경우
② 복도식인 경우

을 각 사례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반주택지역**에서 조사구요도를 작성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지도 사용 지역 – (**[정지화면]** 메뉴의 8번, **[일반주택지역 – 새주소 지도]**를 누르십시오.)
수치지형도 사용 지역 – (**[정지화면]** 메뉴의 9번, **[일반주택지역 – 수치지형도]**를 누르십시오.)

1) 검은점 – 출입구 표시
검은 점이 출입구 표시인데, 신축건물의 경우 출입구 표시인 검은 점이 그려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로로 짧게 두 줄을 그어서(예: ||)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2) 지형지물 수정 보완, 거처번호, 가구수
그 외에 나머지, 거처번호나 가구수 기입 방법, 빈집이나 신축건물 처리 방법은 앞에서 한 번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 잘 이해하고 계신지 한 번 물어봐도 될까요! (주위를 한 번 둘러보면서 주위를 환기시킨다.) (상황을 보아서 가까이 계신분에게 아래의 질문을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설명한다.)

1) 거처번호를 어디에 부여한다고 했죠?
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주택
② 이사 간 빈집
③ 사용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한 신축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④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거처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리고 조사구 안에서 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거처번호를 부여하면 되는데, 001부터 시작하는 것 아시죠. 참, 단독주택은 주택별로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호별로 거처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2) 신축건물은 적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죠? 그러면, 신축중인 건물과 철거된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신축중인 건물은 점선으로 된 사각형(⬚)으로 해당 영역을 표시하고, 철거된 건물은 해당 건물 위에 ×(☒)를 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빨간색으로 하는 것 아시죠!

■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면적이 넓은 지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0번, [면적이 넓은 지역]를 누르십시오.)

1) 조사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부분확대도라는 것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조사 지역이 넓다 보니 건물이 작게 표시될 수밖에 없고, 각각의 건물에 거처번호나 가구수를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부분확대도에 기입하라고 제공되는 것입니다.

2) 부분 확대 지역인 경우에 전체가 나타나는 도면에는 시작 거처번호, 마지막 거처번호, 가구수 합계만 적고, 나머지는 부분확대도에 표시하면 됩니다.

조사구요도 보완에 대해서 한번 더 볼까요!

새주소지도 사용 지역 – [복습화면] 메뉴의 10번을 누르십시오.

수치지형도 사용 지역 – [복습화면] 메뉴의 11번을 누르십시오.

(**[정지화면]** 메뉴의 11번, [아파트 지역]를 누르십시오.)

■ 화면을 보시면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가 나오죠. 잘 보이시나요? 아파트 지역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아래층부터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복도식 아파트는 층을 기준으로 아래층부터 거처번호를 적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위에서부터 내려오시거나 무작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계단식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아래층부터
2) 복도식은 층을 기준으로 아래층부터 복도를 따라 거처번호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2번,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지역]을 누르십시오.)

■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거처가 혼합된 지역**의 경우 조사구 경계 바깥이나 별지에 '공동주택전개도' 라는 것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전개도와 실제 건물의 형태가 맞는지 현지 조사 중에 확인하고, 층과 호, 출입구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조사구요도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준비조사에서는 조사구요도, 가구스티커, 가구명부를 작성하는데요, 조사구요도를

판독하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지도라는 것이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고 나가면 방향 감각도 잘 없고요.

■ 그러나 교육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메모를 잘 하시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기억이 나고, 요긴하게 쓰입니다.

■ 교육이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준비조사하러 나가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재를 인터넷에서 수시로 보실 수 있으므로 교육이 끝난 다음에, 특히 실제 준비조사하러 나가시기 전에 조사구요도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럼 계속해서 가구스티커 부착 요령과 가구명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상영 (5분)

1. [2. 가구스티커 부착]와 [3. 가구명부 작성(1)]를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가구스티커 / 가구명부 작성(1) | p.35~37

([정지화면] 메뉴의 13번, **[가구스티커]**를 누르십시오.)

■ **가구스티커**는

1)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적은 다음에 **거처별로 가구수 만큼 출입구 오른쪽** 위에 붙이면 됩니다.
2)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도 스티커는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에도 거처번호가 붙으니깐요. 다만, 사람이 살지 않아서 가구는 없는 것이므로 가구번호 란에는 X 표시를 합니다.
3) 가구스티커의 색은 모두 세 종류(주황, 파랑, 연두)가 있는데, **조사구별로는 같은 색을 사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4번, **[가구명부 – 준비조사]**를 누르십시오.)

■ **가구명부**는 준비조사 때에 일부 작성하고, 나머지는 본조사 때에 작성합니다. 준비조사 때는 몇 가지만 적으면 되는데요,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만 적어 주세요.

■ 그리고 담당조사구에 인터넷 조사를 신청한 가구가 있으면 가구명부의 [비고]란에 '인터넷' 이라고 적습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5번, **[조사표류의 일치]**를 누르십시오.)

■ 화면을 한 번 보실까요? 조사구요도, 가구스티커, 가구명부 3개의 조사표류가 있는데요,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보십시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모두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이 점 유의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 지금까지 준비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본조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준비조사 전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3D 가상현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재상영 (10분)

1. **[4. 준비조사 가상체험]**을 상영합니다.
2. 가상체험 3D 상영이 끝난 후 **[5. 본조사 – 표본조사]**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휴식 (10분)

점심식사 후 피곤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교시를 마치고, 10분간 쉬었다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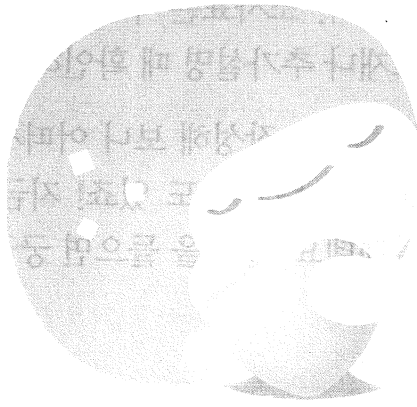

4 교시 (60분)

♣ 조사표 작성 실습

V. 본조사 – 전수조사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2.1 조사표 표지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2.3 가구에 관한 사항 2.4 주택에 관한 사항

휴식 (10분)

* 전달 사항 *

조사표 작성 실습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실제 조사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준비한 조사표를 배부하고 15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조사표는 수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사이버 교재나 추가설명 때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한 번 작성해 보니 어떠세요. 어떤 항목은 쉽고, 어떤 항목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죠! 지금부터 조사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설명을 들으면 궁금했던 점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학습준비

1.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39~55)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루어지는 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항목을 질문하여 작성하고, 가구명부도 완성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표 구성과 각 항목의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조사표 구성**

1) 조사표 표지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3) 가구에 관한 사항
4) 주택에 관한 사항

교재상영 (5분)

1. 본조사 – 표본조사의 인트로 부분을 상영합니다. 이때, **〈전수조사표〉** 단추와 **〈표본조사표〉** 단추 중에서 교육 대상이 전수조사원인지 표본조사원인지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2.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2.1 **조사표 표지**]를 상영합니다.
3.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5분)

| 조사표 구성 | p.40

■ 잘 보셨는지요.
몇 가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 자, **조사표**를 한번 볼까요, 앞장에 표지가 있구요, 그 밑에 **[1.가구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뒷장에 보면 **[2.가구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하단에 보면 **[3.주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 [1.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원별로 작성
2) [2.가구에 관한 사항] – 모든 가구가 가구별로 작성
3) [3.주택에 관한 사항] – 주인가구나 대표가구만 작성

특히 주인가구나 대표가구가 아니면 **[3.주택에 관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지요!

가구원에 관한 사항 중 8번 항목인 **[혼인상태]**만 세는 나이 16세 이상인 가구원에 한하여 답변하고, 나머지 항목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원이 답변하므로 유의 하십시오.

| 조사표 기입요령 | p.40~41

■ 그 다음에 조사표를 기입하는 요령인데요, 싸인펜이나 수성펜은 물이 묻으면 번지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그리고 잘못 작성했을 때는 해당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도 적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청색이나 흑색 볼펜으로 하시면 됩니다.

■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괄호나 네모 안에는 숫자나 문자를 기입하는 것은 아시겠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복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조사표 표지의 주소 작성법 | p.41

■ 조사표 앞장의 상단 부분을 보시면 [시 · 도]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 · 호]까지가 **주소**를 적는 부분입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7번, [조사표 표지 – 전수]를 누르십시오.)

1) 법정 주소 기입

여기에는 **법정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는데, 법정 주소는 쉽게 말해서 우편물을 받을 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2) 정확한 주소 기입

일반적으로 동까지는 잘 적으시는데, 통 · 리, 번지, 동 · 호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통 · 리, 번지, 동 · 호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구역부호 기입

그리고 조사표를 다시 보시면, 주소 기입란 하단에 붉은 네모칸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행정구역부호를 기입**하셔야 하는데요, 시·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부호는 **부호집**의 '행정구역부호'에 보면 있고, 통 · 리 부호는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물어보시면 알 수 있으니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표지의 [농림어가 구분] 작성법 | p.42

■ **농림어가** 구분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몇 가지 원칙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1)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면 농가와 어가 두군데 모두 O표 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 해당 가구는 농가나 임가나 어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군데 모두 O표 하시면 됩니다.

2) 주인이 아니고 고용 종사원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촌에서 아들이 오징어잡이 배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면 어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3) 어떤 가구원도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④비농림어가에 반드시 표기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농업이고, 임업이고, 어업인지 구별해 볼까요?

(**[정지화면]** 메뉴의 18번, **[농림어가 구분]**을 누르십시오. 한 번 읽어 주면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 2부중 2부째 조사표 작성법 | p.42

■ 조사표를 보시면 1부의 조사표에 5명까지 조사할 수 있으니 한 가구의 가구원이 6명 이상이면 2부 이상의 조사표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죠. 2부 째 이후의 조사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2부중 2부의 표지

먼저 표지에서요, 2부중 2부의 조사표 표지에 있는 주소,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에는 2부중 1부 조사표와 같은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농림어가 구분란은 2부중 2부에는 적지 않습니다. 즉, 가구원수가 8명인 경우 2부중 1부의 가구원수란에 8이라고 쓰고 2부중 2부엔 쓰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 조사 가구의 경우 표지만 작성하는데 비고란에는 2부중 1부이건 2부중 2부이건 '인터넷' 이라고 기입합니다.

2) 2부중 2부의 내용

2부중 2부의 조사표에서는 「**2. 가구에 관한 사항**」 및 「**3. 주택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부중 1부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지의 내용도 같지만 표지는 조사표가 섞일 것에 대비하여 2부중 1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가구원이 11명이라서 3부를 조사해야 할 경우 세 번째 조사표에도 위의 두 가지 주의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겠지요!

| 조사표 표지의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작성법 | p.43

■ 그럼, 주말부부로 남편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남편은 이 가구에 포함되나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네, 직장 때문에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으로 이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친가나 외가에 맡겨진 경우는 이 가구에 포함될까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만약, 아이들이 친가나 외가에서 숙식을 한다면 이 가구에서는 조사하지 않고 외가 또는 친가에서 조사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낮동안만 친가나 외가에 맡겨진 경우에는 이 가구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점을 다시 유념하시구요, 해당 인원이 없을 경우 반드시 숫자 0을 넣는 것 잊지마시고요.

■ 그럼, 이상으로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이버교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12번을 누르십시오.

교재상영 (10분)

1.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5분)

| 성명 | p.43

■ 1번 [성명] 항목부터 7번 [남북이산가족] 항목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원을 조사합니다.

■ 먼저, **[성명]**인데요,

1) 이름이 없는 갓난아이는 어떻게 기입을 할까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홍○○' 로 기입합니다.
2) 자주 틀리시는 것은 **①번 가구원에 가구주**를 적어야 하는데, 가구주가 아닌 분을 적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순으로 적어오기도 하시구요.

①번에는 가구주를 적으시고요. 가구주라 함은 호주나 세대주가 아니라 해당 가구의 경제적인 면을 주로 맡고 있는 사람이므로 꼭 가장이 아닐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닌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혈연이나 친족관계로 이루어진 가구라면 가구주를 정하기가 쉬울텐데, 친구나 아는 사람끼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가구주

를 정하기가 애매하죠! 이 경우에는 가구원 중에서 연장자나 대표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가구주로 합니다.

■ 그럼, 주말 부부로 남편이 외지에 살고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경우 누가 가구주가 될까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남편' 이라고 대답할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남편은 직장 때문에 외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가구주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죠!

| 성별 | p.43

■ 2번 항목 **[성별]** 항목은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압됩니다. 여성이면서 남자 이름을, 남성이면서 여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이 많이 있죠!

| 나이 | p.44

■ 3번 항목 **[나이]**에서요, 집에서 실제로 **세는 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는 것 한 번 더 명심하시구요.

■ 띠, 나이, 출생년도가 일치해야 하잖아요. 가령, 58년이면 개띠인데, 57년생으로 조사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침서 「**부록**」에 있는 **'연령조견표'** 를 보시고 일일이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간혹,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력 11,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출생년도를 양력으로 응답한 경우 띠와 다르지요. 이런 경우는 응답자에게 음력 11, 12월생인 것을 재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가구주와의 관계 | p.44

■ 4번 항목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①번 가구원에 가구주가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 가구주와 다른 번호에 기입되어 있는 가구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 친구나 아는 사람끼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 중에서 연장자나 대표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가구주로 하고, 가구주 외에 다른 사람은 ⑭번의 '기타 동거인' 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 볼까요!

| 교육정도 | p.45

■ 5번 항목이 **[교육정도]**입니다. 이 항목이 좀 민감한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학력 수준을 처음 보는 조사원에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①번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에 O표 해 주시면 됩니다.

2) 대학 2년제, 3년제, 4년제인 경우

① 2년제와 3년제 – ⑤번 '대학(4년제 미만)'
② 4년제 – ⑥번 '대학교(4년제 이상)'

에 O표 해 주셔야 합니다.

3) 대학교 졸업 후 다시 대학에 입학해 다니는 경우

최근에는 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에 다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학력을 기준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대학교를 이미 졸업하였으므로 ⑥번 '대학교(4년제 이상)' 에 O표 하시고 ①번 '졸업' 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4) '수료' 의 개념

가끔 '수료' 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원에 다녔지만 논문이나 시험을 아직 보지 않아서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수료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구요.

| 종교 | p.45

■ 그 다음에 **종교**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도 민감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즉, 본인이 어떤 종교의 신도라고 이야기하면 해당 항목을 찾아서 O표 하거나, 항목에 없으면 '기타( )' 에 종교명을 적고, 지침서 「**부록**」의 종교 코드를 찾아서 네모 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 남북이산가족 | p.46

■ 7번 **[남북이산가족]**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통일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 분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2) 가장 가까운 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셔야 합니다. 즉, 북한에 부모와 자녀가 있다고 해서 두 곳에 O표 하시면 안 되고, 가장 가까운 1사람만 O표 해야 합니다. 그 순서는 보기에 있는 순서와 같습니다. 즉, 부모 -> 자녀 -> 배우자 -> 형제 자매 -> 기타 친인척 순입니다.

3) 또 한 가지 혼동하는 것은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에 계신 분의 출생지가 아니고 북한에 이산가족을 두었고, 지금 인구조사에 응하는 본인의 출생지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본인이 아니라 이산가족의 출생지를 적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혼인상태 | p.46

■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미혼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의 혼인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교재상영 (5분)

1. [2.3 가구에 관한 사항]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5분)

| 가구 구분 | p.47

■ 보기의 ⑤번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가 있는데, **6인 이상에서 19인**까지는 ⑤번에 해당하구요, 앞에서 배웠듯이 **20명이 넘으면** ⑥번,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⑥번에서 ⑩번까지 해당되면, **[2. 가구에 관한 사항]**을 건너뛰어서, **[3. 주택에 관한 사항]**의 1번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사용 방 수 | p.48

■ 실제로 조사하러 나가면 "이게 방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방에 대한 개념**을 조사표에도 설명해 두었는데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사면이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
2) 침실, 서재, 놀이방 등과 같이 실제로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3) 크기는 높이가 1.8m(6척)이상, 넓이가 3.3m²(1평)이상 이여야 한다. 따라서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또, **부엌과 식당**이 어떻게 다른지 다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1) 부엌 – 싱크대와 조리시설이 있어서 조리를 하는 곳
2) 식당 – 식사를 하는 방

대개 부엌과 식당을 같이 쓰지만,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집도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엌과 식당이 같이 있으면서 거실과 차단되어 있다면 식당 1개인 것으로 조사하시면 되겠죠!

■ 요즘은 거실, 식당, 부엌 중 두가지 이상의 공간이 트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우선 순위가 거실 〉 식당 〉 부엌 이므로, 우선순위 개념을 기입합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21번, **[사용 방 수]**를 누르십시오.)

| 주거 시설 형태 | p.49

■ **화장실**과 **목욕시설**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부엌**이 개수시설과 조리시설이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수도**에 가면, ③번에 '자가(전용)수도' 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숙사, 사택, 학교 같은 곳에 가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 가면 수도 시설이 두 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수도도 들어오고, 자가(전용)수도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거주층 | p.50

■ 반지하를 구분하는 기준은 반지하가 있는 층의 반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반지하로 보시면 됩니다.

■ ②번 항목에 해당하면 해당 가구가 지상 몇 층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간혹 건물의 전체 층수를 적어 오시는데, **응답자가 거주하는 층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 난방시설 | p.50

■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LPG 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아궁이는 다 아시겠죠.

■ 다소 생소한 것이 ①번의 '중앙난방'과 ②번의 '지역난방'인데요,

1) 중앙난방

아파트 중에서 단지별로 한 곳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난방하는 경우

2) 지역난방

열병합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대규모 열생산 시설이 주위에 있어서 지역단위로 난방을 보급받는 방식.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가구는 특별한 경우라서 응답자가 알고 있으므로 조사원 여러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걱정마십시오.

| 점유 형태 | p.50

■ 먼저, 1평이라도 영업과 관련된 공간이 있으면 영업겸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전세 등 **점유 형태**를 선택합니다.

1) 농촌의 빈집에 그냥 들어가 사는 경우

이것은 점유형태 중 무상으로 보면 됩니다.

2) '사글세'의 개념

사글세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월세는 1개월 단위로 내잖습니까? 그런데 1년이나 10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고 한 달치씩 공제하는 형태가 사글세입니다.

| 주인가구 및 주택 소유 여부 | p.51

■ 앞에서도 나왔지만, ②번에 보면 '대표가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가구**나 **세든 가구**는 아시겠죠? **대표가구**는 어떤 주택이 있고, 그 주택에 주인가구가 살지 않고, 세든 가구들만 사는데, 세든 가구들 중에서 그 집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입니다.

■ 대표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3.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인가구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주인가구가 없으니 그 주택의 사정을 잘 아는(ex. 세든지 가장 오래된 가구 등) 가구를 대표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 그리고 다른 곳의 주택소유여부는 주인가구나 대표가구, 세든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대해 조사합니다.

■ 이제 **[2. 가구에 관한 사항]**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주인가구나 대표가구는 **[3.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고, ③번 '기타 세들어 살고 있는 가구' 에 O표 하신 분은 조사표에서 보듯이 조사를 마칩니다.

■ 그럼, **[3. 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상영 (5분)

1. [2.4 주택에 관한 사항]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5분)

|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 p.52

■ 사이버교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주인가구나 대표가구는 본인이 살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다른 가구(ex. 세 들어 있는 다른 가구)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 조사해야 합니다.

■ 거처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에서 층수는 **건물 전체의 층수**를 조사합니다.

다만, 앞의 **[2. 가구에 관한 사항]**의 5번 거주층 항목은 해당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층을 조사하고, **[3. 주택에 관한 사항]**의 이 항목에서는 건물 전체의 층수를 조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 주세요.

[2. 가구에 관한 사항] 5 거주층	[3. 주택에 관한 사항] I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해당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층을 조사	건물 전체의 층수를 조사

또한, 조사표에도 나와 있듯이 ⑦번에서 ⑩번 사이를 선택하신 분은 **[3. 주택에 관한 사항]**의 작성을 마치기 바랍니다.

| 연건평 | p.52

■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조사하시는 분들은 분양 평형이 아닌 **전용 면적**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전용 면적은 주차장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 면적을 뺀 부분입니다.
(응답자에게 질문을 해 보고,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판단되면 「**주택 정보**」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평이나 평방미터 중에 한 가지만 조사하시면 되고, 평방미터로 조사된 경우 평으로 환산해서 적어주십시오(평=평방미터÷3.3). 소수점 이하로 나오면 반올림하시구요!

| 대지 면적 | p.53

■ **[대지면적]**은 **단독주택만 조사**하는 것 기억하시구요, **주거용 부분만 포함**시키고 영업용 부분은 빼셔야 합니다. 이것도 연건평과 마찬가지로 평이나 평방미터 중 한 가지만 조사하시고, 평방미터로 조사한 경우 평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는 것 잊지 마시구요!

| 총방수 | p.53

■ 사이버교재에서 **다른 세든 가구가 사용하는 방도 모두 포함**해서 센다고 했죠. 주인가구나 대표가구가 사는 방뿐만 아니라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다른 가구의 방도 모두 세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방 수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 **[2. 가구에 관한 사항]**의 3번 [사용방수] 항목에서도 방 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때는 사용하지 않는 방을 세지 않았죠! 예를 들어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은 방은 앞의 사용방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방수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 거실, 식당도 포함해서 센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항목 이름이 '총방수' 잖아요!

[2. 가구에 관한 사항] 3 사용 방 수	[3. 주택에 관한 사항] 4 총 방 수
사용하지 않는 방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는 방도 포함

사실, 조사표의 문항이나 문제나 문제의 설명이나 보기를 자세히 보면 조사하는 것이 한결 쉬워진답니다. 모든 답은 문제에 있다고도 하잖아요!

| 건축년도 | p.54

■ **건축년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응답자가 모를 경우 「**주택정보**」를 활용하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항목인 [편익시설 수]로 가 볼까요!

| 편익시설 수 | p.54

■ **화장실**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 **부엌**에 대해서는 **[2. 가구에 관한 사항]**의 3번 [사용방수]에서 나오고, **[3. 주택에 관한 사항]**의 4번 [총방수]에서도 나왔는데요. 앞에서는 부엌이 거실이나 식당과 벽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면 거실이나 식당에 포함시켰잖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거실이나 식당과 벽으로 분리되지 않더라도 그냥 부엌으로 보고 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의 두 항목은 건물의 내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방의 개념으로 부엌의 수를 세는 것이고, 여기서는 단지 부착된 편익시설로서의 부엌의 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독립된 출입구** 수는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조사합니다.

■ 이상으로 21개의 조사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

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표와 지침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으니 조사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조사를 진행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침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조사표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 | p.55

■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살면 일반 조사표로 조사하는데요,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을 [국가명]에 적으시고, [분류번호]에는 해당 국가의 분류번호를 지침서 「**부록**」에서 찾아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조사표 뒷면 | p.55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받으시고요,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은 항목이 누락되거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 조사표류를 정리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다시 가는 것보다는 조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겠죠!

MEMO



휴식 (10분)

이상으로 4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분 동안 쉬셨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5 교시 (50분)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	1. 조사방법 2. 외국인 조사표
Ⅶ. 본조사 – 빈집 조사	1. 조사방법 2. 빈집 조사표

휴식 (10분)

* 전달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 복습

외국인 조사표의 **[가구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사표에서 설명되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필요하면 정지된 화면 우측의 각 해당 문항을 클릭하여 복습합니다.

설명이 필요없거나, 설명이 끝나면 **다음 버튼(▶ ▶)을 눌러 계속 상영**합니다.

학습준비

1.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배포한 CD를 실행시키십니다.
2.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3.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63~80)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및 빈집조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 **외국인 조사**
  - **1) 외국인 조사 방법**
  - **2) 외국인 조사표 작성 방법**

- **빈집 조사**
  - **1) 빈집 조사 방법**
  - **2) 빈집 조사표 작성 방법**

조사표에는 전수조사표나 표본조사표와 같은 일반 조사표 외에 외국인 가구를 조사하는 **외국인 조사표**와 빈집을 조사하는 **빈집 조사표**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외국인 가구나 빈집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상영 (10분)

1.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를 상영합니다.
2. **상영중 [가구에 관한 사항]이 끝나면(신호음 없음) p.72 전달사항을 확인 합니다.**
3.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20분)

| 외국인조사 개요 | p.64

■ 인구주택총조사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거처를 조사한다는 것을 아시죠.

1) 따라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불법체류자도 조사해야 하고, 며칠 와 있는 사람도 조사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관, 외국 군인,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파견되어 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조사방법 | p.64~66

■ 잘 보셨나요! 가구를 방문했을때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당황해 하지 마시고, 여기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차분히 조사하시고, 복잡한 경우가 있다면 지침서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면, 외국인만 살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외국인에게 직접 조사표를 주고, 본인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쉽죠! 그냥 주고 받으면 되니까!

(**[정지화면]** 메뉴의 22번, **[외국인 가구 구분]**을 누르십시오.)

■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한국인과 외국인이 각기 별도의 가구를 이루

어서 사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가구가 아니라 한 가구를 이루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한 거처에 한국인 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① **한국인 가구는 일반조사표**로 조사
② **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조사표**로 조사

이 때 주택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외국인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한국인 가구가 세들어 사는 경우라도) 대표가구는 한국인 가구로 합니다.

	한국인 가구	외국인 가구
조 사 표	일반 조사표	외국인 조사표
주인(대표)가구 여부	○	×
가구 번호	001	002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 개의 가구를 이루어서 살고 있을 경우

① **일반조사표**로 함께 조사

이 때 가구주는 한국인으로 합니다.

	한국인	외국인
조 사 표	일반 조사표	일반 조사표
가 구 주	○	×

| 외국인조사표-관리사항 | p.67

자, 다시 조사표입니다. 앞에서 조사표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할 외국인 조사표는 쉬울 것입니다.

■ 외국인조사표에도 주소와 조사구번호 같은 것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조사표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다른 항목은 **'가구구분'** 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가구가 주인가구나 대표가구이면 ①번 '주인(대표) 가구' 에 O표 하시고, 주인가구나 대표가구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가구, 즉 동거가구이면 ②번 '동거가구' 에 O표 하십시오. 단, 종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외국인 가구와 한국인 가구가 같이 사는 경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 가구가 대표가구**가 됩니다.

■ 이제 외국인조사표 항목을 한 개씩 살펴볼까요!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p.68~71

■ 외국인조사표는 크게 두 가지, [1.가구원에 관한 사항]과 [2.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구원에 관한 사항 중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번 [**성명**]은 영어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단 지역 같은 곳에 가면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체류의 적법 및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안심해도 괜찮다는 것을 설명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유도하십시오.

■ 4번 [**교육정도**] 항목에서 우리나라와 교육제도가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12학년까지 다녔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해서 해당 보기에 O표 하시면 됩니다. 즉, 12학년이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 5번 [**국적**]항목을 볼까요? 그럼, 한국인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국적일까요? 외국국적일까요? 국적은 현 취득국적을 표시하므로, 이럴 경우는 외국국적에 해당되어 외국인 조사표로 조사합니다.

[국적] 항목의 보기를 자세히 보시면 중국, 중국(조선족), 중국(대만)으로 분리되어 있으니,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본토에서 왔는지, 조선족인지, 대만(타이페이)에서 왔는지 물어보시고, 해당 보기에 O표 하세요.

■ 6번 **[주된 체류 목적]**에서 목적이 여러가지이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시고, 여권이나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입국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입국 목적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조선족이 관광으로 입국한 후 취업을 했다면 ②번 '취업'에 O표 하셔야 합니다.

■ 7번 **[직업]**과 8번 **[거주기간]**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다음에는 [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에 관한 사항 | p.71~74

■ 가구에 관한 사항에 있는 항목은 일반조사표의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에 있는 항목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링크로 걸어 놓았으므로 교관의 재량에 따라 다시 복습하십시오.)
(1.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2. 점유 형태)
(3. 사용방수)
(4. 주거 시설 형태)

■ 지금까지 외국인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빈집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상영 (5분)

1. [Ⅶ. 본조사 – 빈집 조사]를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5분)

| 빈집 조사 개요 | p.76

■ 사이버교재를 보셨는데요, 빈집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빈집이 많기 때문에 빈집 조사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23번, [빈집 조사대상]을 누르십시오.)

■ 빈집의 요건 중에서 다소 혼동되는 것은 다가구단독주택, 신축중인 주택, 별장인데요,

1) **다가구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아니라 모든 가구가 비어 있어야 빈집**이고,
2) 신축중인 주택은 사람이 아예 살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고,
3) 별장의 경우 관리인이 살고 있으면 빈집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서 조사해 주세요!

| 빈집 조사방법 | p.76

■ 빈집에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조사는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빈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수소문해서 주인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주인을 만나고, 주인이 멀리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 현재 입주를 하지 않은 빈집은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빈집조사표-관리사항 | p.77

■ 빈집조사표에는 **빈집일련번호**와 **거처번호**가 있는데요,

1) 빈집일련번호

빈집일련번호에는 해당 조사구 안에서 파악된 빈집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가령, 10개가 있으면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2) 거처번호

거처번호에는 가구명부에 기입되어 있는 거처번호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준비조사 때에 이미 빈집을 조사했었죠! 그 때 가구명부에 적어 놓은 거처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3) 빈집 일련번호 ≠ 거처번호

빈집 인련번호는 빈집에만 붙는 번호이고 거처번호는 빈집 뿐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에 붙는 번호이므로 이 둘은 당연히 다르다는 것 이해하시죠!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리고 **빈집조사항목(빈집(주택)의 종류, 비어 있는 기간, 빈집사유, 빈집 파손 정도)이 동일한 빈집**이 연이어서 있다면, 물결 표시(~) 기호를 사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구조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이거나 연속된 여러 주택이 철거되어 빈집인 경우가 해당되겠죠. 가령, 빈집조사항목이 모두 동일한 5채의 일반단독주택이 연속해서 비어 있으면 [빈집일련번호]에 1~5와 같이 기입하고, [거처번호]에는 가구명부에 기입되어 있는 거처번호를 적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가 연속되어 있겠죠? 가령 16번

에서 20번까지로 되어 있으면 16~20과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빈집일련번호와 거처번호의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이에 주의하십시오.

| 빈집조사표-조사항목 | p.78~80

■ 1번 **[빈집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었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목차에서 '조사대상'을 클릭해 거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빈집의 종류가 다가구 단독주택인 경우 총 몇 가구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하셔야 합니다.

■ 4번 **[파손]**과 관련해서는, 주택의 수명이 다 되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낡았거나 파손된 경우에만 ③번 '반 이상 파손'에 O표 하십시오. 폐가도 이에 해당됩니다.

■ 이상으로 모든 조사표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휴식 (10분)

이상으로 5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분 동안 쉬셨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MEMO



6 교시 (50분)

Ⅷ. 본조사 – 가구명부	1. 가구명부 작성(2)
Ⅸ.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1.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본조사 가상체험
Ⅹ. 부록	1. 인터넷 조사 2. 주택정보 이용 안내

질의 응답 및 교육 마무리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Ⅷ. 본조사 – 가구명부]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60~62, p.81~88, p.94~102)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니, 모르는 것은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명부 작성방법(2)**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방법**
- **부록**
  1) 인터넷 조사
  2) 주택정보 이용방법

그럼, 사이버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상영 (5분)

1. [Ⅷ. 본조사 – 가구명부]를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가구명부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가구명부 양식 – 앞면 | p.60~61

([정지화면] 메뉴의 24번, [가구명부 – 앞면]을 누르십시오.)

■ 준비조사 때 가구명부를 일부 작성하셨죠! 기억나세요. 그 때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 비고란을 채웠었죠. 본조사 때는 가구명부를 완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작성이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 **가구명부에 기입할 내용**을 사실 조사표에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표와 비교**하면서 하나씩 적어주시고, 이 때 조사표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더 좋겠죠! 그러는 가운데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해당 가구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구요.

■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1) 조사구요도 매수

'조사구요도 매수' 는 동일한 조사구 요도는 한장으로 셈하며 부분 확대도 등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가구종류

'가구종류' 는 가구번호가 부여된 가구는 모두 기입합니다.

3) 거처종류

'거처종류' 는 가구번호가 '001' 인 가구만 기입 합니다.

4) 농림어가 여부

'농림어가 여부' 의 경우 조사표의 표지에서도 조사했잖습니까. 농

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면 **농가와 어가에 모두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항목에 모두 O표 해 주시면 됩니다.

■ 빈집의 경우, 빈집이니까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거처번호'와 '주소'는 준비조사 때 적었을 것이고, 본조사 때는 **'거처종류'**와 **'빈집여부'**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잘 잊어버리는 내용이니까 메모해 두셨다고 꼭 지켜 주십시오.

■ 준비조사 때 거처와 가구를 조사하지만 실제 본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처나 가구가 누락**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되어 있는 것을 가구명부의 마지막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간혹, 순서를 맞추어야 될 것 같아서 새로 작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구명부 마지막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 가구명부 양식 – 뒷면 | p.62

([정지화면] 메뉴의 25번, [가구명부 – 뒷면]를 누르십시오.)

■ 가구명부의 뒷면에는 **집계표**가 있습니다. 이 집계표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것을 항목별로 세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집계가 모여서 결국 총 집계가 이루어지고, 사용되는 것이니, 집중해서 잘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가구명부가 여러 장일 경우 집계표는 가장 마지막 장에만 기입하니 유의하십시오. 즉 가구명부 장별로 집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구별로 집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상영 (5분)

1. [Ⅸ.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각 조사표류를 비교하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p.88

보름동안 힘들게 조사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죠. 사이버교재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제출할 조사표는 지금까지 조사한 **조사표, 가구명부 2매, 조사구요도 2매, 조사요원증**입니다.

■ 조사표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조사구요도, 조사표, 가구명부에서 일치해야 하는 것은
1) 조사구번호
2) 조사구별 총거처수 및 총가구수

이니 유의하십시오.

조사표와 **가구명부**에서 일치해야 하는 것은
1) 거처번호
2) 가구번호

3) 가구주 및 가구원수(남, 여)
4) 조사표의 가구에 관한 사항 중 '가구구분'과 가구명부의 '가구종류'
5) 조사표의 주택에 관한 사항 중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의 거처의 종류와 가구명부의 '거처종류'
6) 가구당 조사표 부수의 합과 가구명부상에 기입된 조사표 부수

가 같아야 하므로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류 정리와 확인이 끝나면 조사구별로 정리해서 조사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총관리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이 끝나면 모든 조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상현실 3D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3D를 보시면서 조사 업무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D 상영이 끝난 다음에 부록으로 인터넷조사와 주택정보에 대해서 잠깐 교육하고, 사례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전체 교육을 끝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상영 (10분)

1. [2. 본조사 가상체험]을 상영합니다.
2. 가상체험이 끝나면 [X. 부록]을 상영합니다.
3.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인터넷 조사 개요 | p.82

■ 인구주택총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응답자 기입방식과 인터넷 조사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조사**는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가구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사로 하겠다고 신청한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이버교재를 한 번 볼까요!

| 주요단계별 실시방법 | p.83~86

■ 인터넷 조사 희망가구의 신청 기간이 10월 29일에서 11월 7일까지입니다. 즉, 준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되어 조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1일 이후에도 인터넷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사원 여러분은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 안에 인터넷 조사를 신청한 가구가 있는지 총관리자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준비조사 기간 동안에 인터넷 조사로 응답하겠다고 한 가구가 있을 텐데, 이들 가구의 조사표 작성은 11월 10일까지 유보했다가 11월 10일 이후에 인터넷 조사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한 후 인터넷 조사를 하지 않은 해당 가구는 방문하여 종이 조사표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구명부 '비고' 란에 기입되어 있는 '인터넷' 에 두 줄을 긋습니다.

■ 인터넷 조사를 신청한 가구가 입력한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르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총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조사 대상 가구라고 해서 가구명부에 거처번호나 가구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인터넷 조사 대상 가구도 가구명부상에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기입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인터넷 조사 입력 기간의 만료일인 11월 10일 이후에 인터넷 조사 입력가구 현황표를 출력하여 가구명부와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 조사 입력가구의 조사표는 표지만을 작성하고, '비고' 란에 '인터넷' 이라고 기재한 후 조사표류를 정리할 때 해당 거처 및 가구번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때 인터넷 조사 입력가구의 가구수가 6인 이상인 경우 조사표 2부를 사용하며, '비고' 란에도 '인터넷' 이라고 기입합니다.

■ 이상으로 인터넷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실제 조사표를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므로 조사원 여러분은 전체적인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주택정보이용방법 | p.94~102

■ **주택정보**는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한 정보이며, 조사표의 [3. 주택에 관한 사항]에 있는 항목을 조사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정보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주소, 건물명칭, 건물번호, 아파트명, 아파트 평형, 주택의 종류, 건축년도, 대지면적, 층별 면적, 층수, 연건평, 건축년도, 난방방식, 방수, 화장실수, 부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택정보에만 의존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정보가 수집될 당시와 조사 기준 시점인 2005년 11월 1일의 데이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준비조사나 본조사에서 이 주택정보를 잘 활용해서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택정보에서 제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므로 자료취급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주택정보 이용방법을 끝으로 집합교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을 질문 받고 답변해 주는 시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이버교재를 다시 상영하면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32-4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 준 교 안

(표본 조사원용)

통계청

표준 교육 제도

Ⅰ. 의 의

■ 표준 교육 제도란 모든 교관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 방식을 택함으로써 교육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통일적인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제도

Ⅱ. 목 적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약10만명의 조사원이 동원되고 약 500여명의 교관단이 구성되는 대규모 조사인 바, 표준교안 및 사이버 교재 등 표준 교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관간 개인차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 최소화

Ⅲ. 표준 교육 교재 및 단계별 교육내용

1. 교육 교재

사이버 교육 교재, 표준 교안

2. 각 단계별 교육내용

1) 1단계 : 학습준비 및 학습목표 전달
- 각 교시에 배울 내용을 간략히 소개

2) 2단계 : 교재상영
- 플래시, 3D, 동영상으로 구성된 사이버 교육 교재 상영

2) 3단계 : 추가설명

- 상영된 교육 내용 중 중요 사항 강조 및 사례를 통한 보충 학습

3. 각 단계별 세부 수행내용

1) 1단계 : 학습준비 및 학습목표 전달

(1) **학습준비** - 사이버 교재 접속 및 대기

가. 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우측에서 조사요원사이버교육 클릭

나. 로그인화면에서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다. 사이버 교재 화면의 **사전교육 · 본교육 · 사례교육** 중 본교육 클릭 후 대기

(2) **학습목표 전달** - **표준교안의 학습목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간략히 전달

2) 2단계 : 교재상영

(1) 사이버 교육 교재 하단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이 진행되며 표준교안의 교육 구성에 따라 신호음과 함께 자동 정지 됨

3) 3단계 : 추가설명

(1) 사이버 교육 교재 상영이 끝난 후 교관은 표준교안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설명, 강조 및 부연 설명

가. **정지화면** - 추가설명 중간에 주의를 집중시켜 해당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요약식 교육자료**

나. **복습화면** - 추가설명 이후에 해당 내용의 복습 및 정리를 위해 **사이버 교재 재상영** 할때 사용

Ⅳ. 표준 교육 운영 안내

교육 (시간)	목 차	교재상영 (분)	교관설명 (분)	지침서 (페이지)
1교시 (50분)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항목 5. 조사일정	5	15	p 5~8
	정지화면 1 (조사 일정)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 가구 – 가구원	10	20	p 9~13
	정지화면 2 (가구의 구분), 정지화면 3 (가구원) 복습화면 1 (가구의 구분), 복습화면 2 (가구수 파악), 복습화면 3 (가구원)			
2교시 (50분)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 거처 2. 용어	10	20	p 14~18
	정지화면 4 (거처의 종류) 복습화면 4 (거처의 종류), 복습화면 5 (용어)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용품 2. 조사원이 지켜야할 사항 3. 조사원 안전 수칙 4. 자주 듣는 질문	10	10	p 19~24
	정지화면 5 (조사용품)			

교육 (시간)	목 차	교재상영 (분)	교관설명 (분)	지침서 (페이지)
3교시 (50분)	Ⅳ. 준비조사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15	10	p 25~35
	정지화면 6 (조사구별 특성번호), 정지화면 7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4단계), 정지화면 8 (일반주택지역 : 새주소지도), 정지화면 9 (일반주택지역 : 수치지형도), 정지화면 10 (면적이 넓은 지역), 정지화면 11 (아파트지역), 정지화면 12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지역) 복습화면 6 (조사구 경계확인), 복습화면 7 (지형지물의 확인 및 보완), 복습화면 8 (거처 확인 및 가구수 파악), 복습화면 9 (거처 번호 부여 및 가구수 기입), 복습화면 10 (조사구 요도 보완 : 새주소지도), 복습화면 11 (조사구 요도 보완 : 수치지형도)			
	2. 가구 스티커 부착 3. 가구명부 작성(1)	5	10	p 35~37
	정지화면 13 (가구스티커), 정지화면 14 (가구명부 – 준비조사), 정지화면 15 (조사표류의 일치)			
	* 준비조사 가상체험	10		
4교시 (50분)	* 조사표 작성 실습		30	
	Ⅴ. 본조사 – 표본조사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조사표 표지	5	15	p 39~43
	정지화면 16 (조사표 표지 – 표본), 정지화면 18 (농림어가 구분) 복습화면 12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5교시 (50분)	Ⅴ. 본조사 – 표본조사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가구원에 관한 사항(1)	5	5	p 43~46
	– 가구원에 관한 사항(2)	5	10	p 46~51
	– 가구원에 관한 사항(3)	5	10	p 52~55
	정지화면 19 (산업항목 기입예시), 정지화면 20 (직업항목 기입예시)			
	– 가구원에 관한 사항(4)	5	5	p 55~57

교육 (시간)	목 차	교재상영 (분)	교관설명 (분)	지침서 (페이지)
6교시 (50분)	Ⅴ. 본조사 – 표본조사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가구에 관한 사항	10	15	p 58~63
	정지화면21(사용 방 수)			
	– 주택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	5	10	p 63~67
	– 시도별 특성 항목 – 조사표 뒷면	5	5	p 67~69
7교시 (50분)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 1. 조사방법 2. 외국인 조사표	10	20	p 79~90
	정지화면22(외국인 가구 구분)			
	Ⅶ. 본조사 – 빈집 조사 1. 조사방법 2. 빈집 조사표	5	15	p 91~96
	정지화면23(빈집 조사대상)			
8교시 (50분)	Ⅷ. 본조사 – 가구명부 작성(2)	5	10	p 76~78
	정지화면24(가구 명부 – 앞면), 정지화면25(가구 명부 – 뒷면)			
	Ⅸ.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5	10	p103~104
	* 본조사 가상체험	5		
	Ⅹ. 부록 1. 인터넷 조사 2. 주택정보 이용방법	5	10	p 97~102 p 114~122
	* 질의 응답 및 교육 마무리			

Ⅴ. 사이버 교재 운용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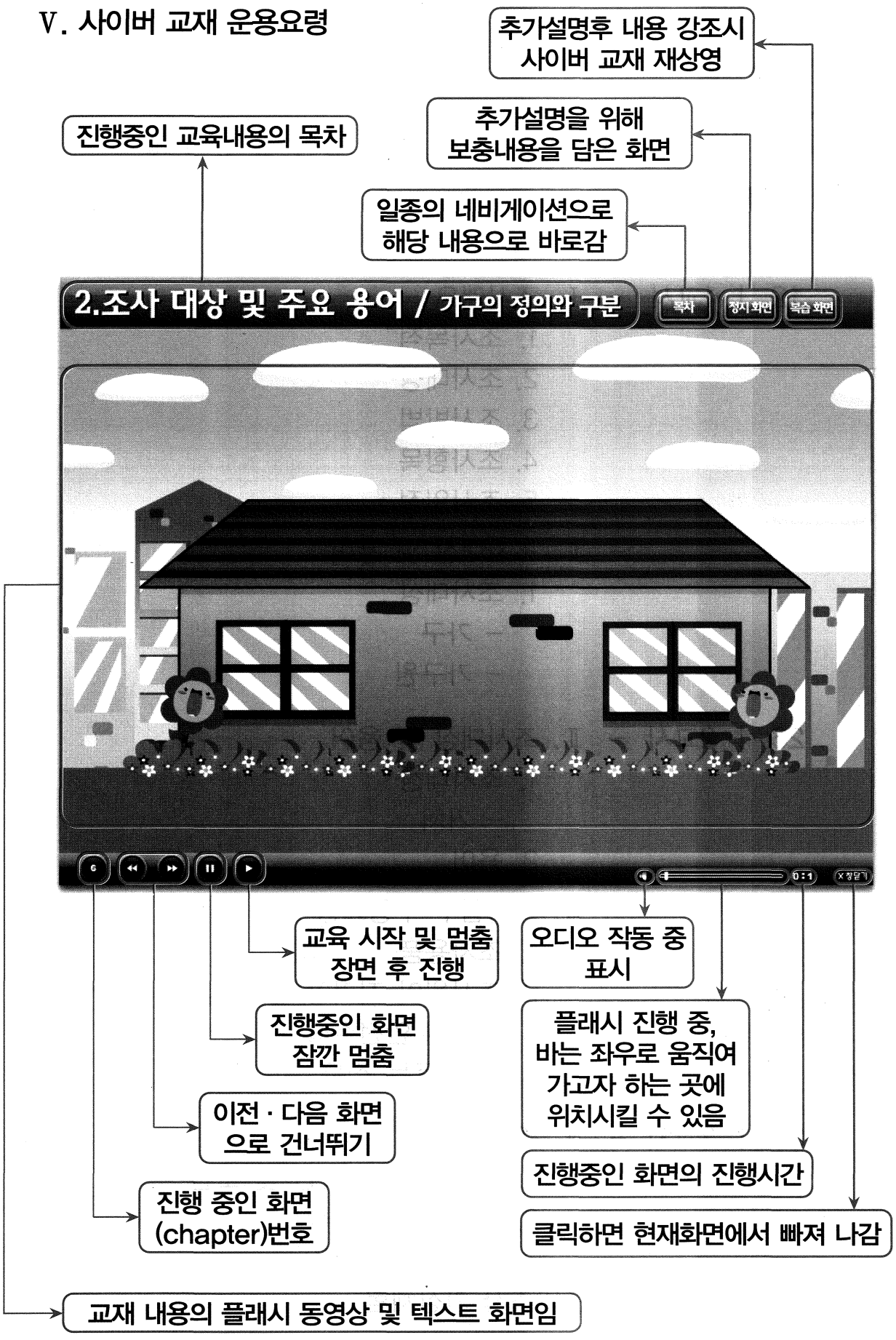
추가설명후 내용 강조시 사이버 교재 재상영
진행중인 교육내용의 목차
추가설명을 위해 보충내용을 담은 화면
일종의 네비게이션으로 해당 내용으로 바로감
2.조사 대상 및 주요 용어 / 가구의 정의와 구분
목차
정지 화면
복습 화면
교육 시작 및 멈춤 장면 후 진행
오디오 작동 중 표시
진행중인 화면 잠깐 멈춤
플래시 진행 중, 바는 좌우로 움직여 가고자 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음
이전 · 다음 화면으로 건너뛰기
진행중인 화면의 진행시간
진행 중인 화면 (chapter)번호
클릭하면 현재화면에서 빠져 나감
교재 내용의 플래시 동영상 및 텍스트 화면임

목차

Contents

1일차교육 | 11

12 | 1교시 –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항목
5. 조사일정

–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 가구
– 가구원

26 | 2교시 –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 거처
2. 용어

–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용품
2.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3. 조사원 안전수칙
4. 자주 듣는 질문

38 | 3교시 – Ⅳ. 준비조사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2. 가구 스티커 부착
3. 가구명부 작성(1)

* 준비조사 가상체험

52 | 4교시 * 조사표 작성 실습
- Ⅴ. 본조사 - 표본조사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조사표 표지

60 | 5교시 - Ⅴ. 본조사 - 표본조사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가구원에 관한 사항

80 | 6교시 - Ⅴ. 본조사 - 표본조사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 가구에 관한 사항
- 주택에 관한 사항
- 시도별 특성 항목

2일차교육 | 105

106 | 7교시 -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
1. 조사방법
2. 외국인 조사표
- Ⅶ. 본조사 - 빈집조사
1. 조사방법
2. 빈집 조사표

116 | 8교시 - Ⅷ. 본조사 - 가구명부 작성(2)
- Ⅸ.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본조사 가상체험
- Ⅹ. 부록
1. 인터넷 조사
2. 주택정보 이용방법

1일차교육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1 교시 (50분)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항목 5. 조사일정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1.1 가구 1.2 가구원

휴 식 (10분)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배포한 CD를 실행시킵니다.
2. [Ⅰ. **조사개요**]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3.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5~8)

자,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살펴볼까요?

■ **인구주택총조사의 개요**
- **1) 조사목적**
- **2) 조사대상**
- **3) 조사방법**
- **4) 조사항목**
- **5) 조사일정**

그럼, 사이버교재를 한 번 볼까요?

교재상영 (5분)

1. 사이버교재의 [Ⅰ. **조사개요**]를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5분)

| 조사대상 | p.6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할 몇 가지만 강조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인구총조사 – 1925년부터 실시되어 올해가 17차
주택총조사 – 1960년부터 실시되어 올해가 9차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과거에 외국의 일부국가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행금지 후 실시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조사인지 아시겠지요.

다음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이 2005년 11월 1일 0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대상 여부와 매우 밀접합니다.

■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볼까요?

1) 출생 (2005년 10월 31일 / 2005년 11월 1일)

쌍둥이가 있고, 첫째는 2005년 10월 31일 23시 59분 59초에 태어났고, 둘째가 바로 이어서 2005년 11월 1일 0시 1분 1초에 태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10월 31일에 태어난 첫째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11월 1일에 태어난 둘째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조사기준시점이 11월 1일 0시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 (2005년 10월 31일 / 2005년 11월 1일)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분을 예로 들면요,

2005년 10월 31일에 돌아가신 분은 조사대상이 아니고, 2005년 11월 1일에 돌아가신 분은 조사대상이랍니다.

11월 10일에 어떤 가구를 방문하였는데, 11월 3일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이 10일 현재 계시지는 않지만 조사기준시점인 11월 1일 0시에는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 분은 조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3) 전입 (2005년 11월 5일)

11월 5일에 조사구내에 새로 이사 온 가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전에 살던 지역에서 조사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조사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조사기준시점이 11월 1일 0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사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사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 조사방법 | p.6

■ 사이버교재에서도 보셨지만 조사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사원 면접방식**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면접하기 어렵거나 주간에 사람을 아예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응답자 기입방식과 인터넷 조사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조사원 면접방식

가장 기본적인 조사방식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실제로 방문해서 조사표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2) 응답자 기입방식

조사원이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만 하구요, 조사표의 실제 작성은 가구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아파트 조사구 중 전수조사 지역에만 적용 됩니다. 단, 이때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조사표의 내용을 현장에서 간략히 검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 인터넷 조사방식

가구원이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 작성합니다. 인터넷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원칙적인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면접방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일정 | p.7~8



([정지화면] 메뉴의 1번, **[조사 일정]**을 누르십시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조사일정은 크게 **1) 교육, 2) 준비조사, 3) 본조사, 4)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교육

2) 준비조사

교육이 끝나고 나면, **준비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표본조사원은 10월 30일 일요일부터 10월 31일 월요일까지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조사하는데 수월하면 좋겠습니다!

3) 본조사

준비조사가 끝나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표와 가구명부를 완성하시구요.

4)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마지막으로 **11월 15일**에는 보름동안 조사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조사업무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일정에 대해서 지역별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 하십시오.)

MEMO



학습준비

1. [1.1 가구]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9~13)

이번에는 가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 : 가구, 가구원, 거처**

이 중,

1) 가구

① 가구의 정의
② 가구, 가족, 세대의 차이점
③ 가구 구분, 즉 가구의 종류
④ 가구수 파악

2) 가구원

①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
②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에 대해 사이버교재를 먼저 볼까요!

교재상영 (10분)

1. [1.1 가구]와 [1.2 가구원]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20분)

| 가구의 정의 | p.10

가구가 무엇이고, **가구와 가족, 가구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 가구와 주민등록상 세대의 차이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1)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등록 될 수 있죠? 가령, 시골에 사는 조카가 재수를 하기위해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의 이모집에 살고 있으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군대에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누가 이 가구에 속할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시 기다려준다.) 조카는 어떨까요? 군대에 간 아들은 어떨까요? (잠시 기다려준다.)

네, 그렇습니다. 조카는 이 가구에 속하고, 군대 간 아들은 이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즉, 가구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간 아들은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휴가 나왔을 때는 같이 먹고 살지만... 그 대신 조카는 같이 먹고 사니까 한 가구원이 되지요! 반면에 세대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아들은 포함되고 조카는 빠지게 됩니다.

2) 가구 / 가족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더 들면, 한 가족이라도 1층과 2층에 나누어 살면서 생계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 다른 가구로 보아야 합니다. 1층과 2층, 각각 생계를 따로 하고 있으니깐요. 물론 1층과 2층이 생계를 같이 하면? 2개의 가구로 나누지 않지요.

■ 즉, **숙식을 같이 하는 단위가 가구**입니다.

| 가구의 구분 | p.10~11



([정지화면] 메뉴의 2번, [가구의 구분]을 누르십시오.)

■ 가구의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1) 일반가구, 2) 집단가구, 3) 외국인가구**로 분류합니다.

1) 일반가구는 다시 4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④ 1인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2) 집단가구는
① 가족이 아니면서 6인 이상 19인 이하가 함께 사는 가구
② 가족이 아니면서 20인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
③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 같은 시설
이 중에서 ②와 ③인 경우는 시설 조사구로 분리하여 따로 조사합니다.

3) 마지막으로 **외국인가구**가 있는데요
① 외국인끼리 사는 가구
② 단, 한국인하고 외국인이 같이 살면, 외국인 가구가 아니고 일반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외국인 중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면 한국인으로 조사할까요? 외국인으로 조사할까요? 이럴 경우는 한국인으로 보아 일반가구가 됩니다.

■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족(혈연)관계로 구성된 가구 중에서 가구원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대답을 기다린 후) 2000년 조사결과 가구원수가 17명인 가구가 1가구, 16명인 가구가 2가구, 15명인 가구가 3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이들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할까요? 집단가구로 분류할까요?(대답을 기다린 후) 네. 이들은 6인 이상이지만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므로 일반가구에 해당합니다.

■ 가구 구분은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용어 자체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 중심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사이버교재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1번을 누르십시오.

| 가구수 파악 | p.10~11

■ 실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거처에 몇 가구가 사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주택총조사 자체가 가구를 기준으로 그 가구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집에 몇 가구가 사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앞에서 사이버교재를 보셨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사이버교재를 한 번 더 볼 테니까 집중하여 들으시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 혼동되는 몇 가지만 다시 설명을 드려 볼까요!! 설명을 들으실 때 조사원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집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고 빠를 것입니다.

1) 부모, 자녀, 친척 등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 자녀, 친척 등 생계를 같이 하면 몇 가구인가요? (잠시 시간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보아도 좋다.) **1가구**죠! 쉽죠...

②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층집이고, 2층에 출가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데, 살림을 서로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집 주변에 있죠! (시간을 좀 준다. 누군가가 대답할 것이다.) 그렇죠, **2가구**죠. 쉽죠.

2) 하숙집(주인가구와 숙식을 함께 함)

① 하숙생이 5인 이하

저기, OO 대학교 앞에 부부가 하숙집을 운영하는데, 하숙생이 3명이면 몇 가구일까요? (시간을 좀 준다.) 하숙생이 6명이 안 되죠? 그래서 **1가구**죠.

② 하숙생이 6인~19인 이하

하숙생이 늘어나서 6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좀 준다.) 하숙생이 **6명 ~ 19명** 사이면 주인가구와 별도로 독립시켜서 별개의 가구로 조사하죠. 즉, **2가구**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③ 하숙생이 20인 이상

그럼, 2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도 **2가구**인데요, 20명 이상이면 '기숙시설조사구'로 분리해서 조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3) 자취집(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함)

자취집을 한 번 볼까요? 주인가구가 있고, 자취방이 3개고, 각 자취방에서 살림을 하면 총 몇 가구가 됩니까? (시간을 좀 준다.) **4가구**죠. 간단하죠.

4) 고시원

주변에 고시원 같은 곳이 많이 생겼는데요, 고시원에는 방이 많잖아요. 이 경우에 기준은 **취사와 취침을 별개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① 개별 취사취침

취사와 취침을 방방마다 따로 하면 (여기에는 매식도 포함됩니다.) 방마다 별개의 가구 즉, 개별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② 공동 취사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취사를 하면 1개의 가구(집단가구)로 봅니다.

③ 개별 취사취침 + 공동취사

그럼, 한 고시원에서 일부는 같이 숙식을 하고, 일부는 각각 숙식을 한다면 가구수를 어떻게 파악할 까요? 이렇게 혼합된 경우는 1개의 가구(집단가구)로 파악합니다.

5) 기숙사 · 고아원

① 관리인 가구

기숙사나 고아원 같은 곳에 가면 기숙사나 고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하면서 생활하잖습니까. 이 경우 관리인 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합니다.

② 기숙사나 고아원

기숙사나 고아원은 집단시설가구로 조사합니다. 즉, **2가구**인 셈이죠.

■ 즉, **숙식을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가 구분**됩니다.

■ 어떻습니까! 종류가 많다 보니 다소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 번 더 들으니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래도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시다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교재를 한 번 더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2번을 누르십시오.

| 가구원의 정의 | p.12~13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가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가구원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같은 가구에 사는 가구원이기는 한데 이번 조사에 포함시켜야 할지, 제외시켜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 /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정지화면**] 메뉴의 3번, [가구원]을 누르십시오.)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①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 ②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가구원 ③ 예비군 훈련으로 며칠 집을 비운 가구원 ④ 공익근무요원, 산업체근무요원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는 가구원 ⑤ 직업군인이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군부대 안이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 ⑥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⑦ 미결수나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 중인 가구원 ⑧ 구직이나 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1개월**이 안 된 가구원	① 취업이나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하는 가구원 ② 선박, 항공기, 철도, 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③ 군대나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가족 ④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족(군부대 밖이지만 혼자나와 살고 있는 경우도 포함) ⑤ 요양원, 기도원, 고아원, 양로원, 특수병원 등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 ⑥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된 가족 ⑦ 구직이나 가출 등으로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족

■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같은 가구에 사는데, 잠시 나가 있고, 곧 돌아올 사람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아니까 어렵지 않죠!

■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조사표를 설명할 때 한 번 더 나오므로 그 때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3번을 누르십시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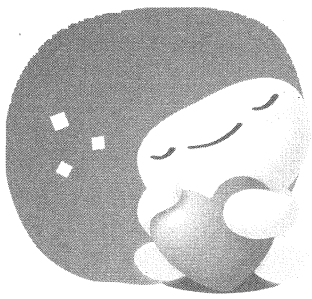

휴 식 (10분)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셨다가 10분 후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시 (50분)

Ⅱ. 조사대상 및 용어	1. 조사대상 2. 용어	1.3 거처 2.1 조사구 번호 2.2 거처 번호 2.3 가구 번호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용품 2.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3. 조사원 안전수칙 4. 자주 듣는 질문	

점심시간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배포한 CD를 실행시키십니다.
2. [1.3 거처]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3.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14~18)

잘 쉬셨습니까.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것이 힘드시죠!
전 시간에는 조사개요와 조사대상 및 용어의 조사대상 중 가구와 가구원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사대상 가구, 가구원, 거처 중 거처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사대상(거처)와 용어**

1) 거처

① 주택
② 주택 이외의 거처

2) 용어

① 조사구 번호
② 거처 번호
③ 가구 번호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지 않나요! 사이버교재를 먼저 보고 중요한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상영 (10분)

1. [1.3 거처]와 [2. 용어]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20분)

| 거처의 정의 | p.14~15

■ 거처의 종류가 참 많죠!
거처의 종류는 실제 조사표의 「**3.주택에 관한 사항**」의 1번 항목인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조사 업무를 진행하실 때 그대로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혼자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교육 시간에 잘 정리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처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럼, 집이나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처'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이외의 거처"가 있으며, 이러한 "주택 이외의 거처"를 "주택"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1) 주택의 요건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조사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3.주택에 관한 사항**」의 [1]번 항목인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의 보기에 가시면 ①번에서 ⑩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⑤번까지가 "주택"에 해당하고요, ⑥번에서 ⑩번까지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걱정마시구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 주택의 종류 | p.15~16

([정지화면] 메뉴의 4번, [거처의 종류]를 누르십시오.)

■ 그럼, 주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단독주택
① 일반 단독 주택
② 다가구 단독 주택
③ 영업겸용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현재 여러분이나 친지 및 다른 가족이 어떤 종류의 주택에 사시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여기서 주택의 종류를 잘 구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단독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
첫째,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 단독주택**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살림하는 주택이고, 다가구 단독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림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구분이 가시죠. 그런데 2층짜리 집인데, 2층에 세를 주었으면 여러 가구가 살림을 하니 다가구 단독주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층의 세든 가구에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다가구 단독주택이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이 되는 것이지요.

2) 영업겸용 단독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둘째, 단독주택 중에서 1층은 영업용 가게로 세를 주고, 2층과 3층은 살림집으로 쓰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영업겸용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중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 **"영업겸용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주거용 면적이 영업용 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영업겸용 단독주택"이 되고요, 영업용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크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됩니다.

3) 다가구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셋째,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흔히 3층이나 4층짜리 건물들이 주택가에 많지 않습니까! 집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팔수 있으면 다세대주택이구요, 팔 수 없으면 다가구 단독주택이 됩니다.

4)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넷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당 건물 연면적이 200평을 넘으면 연립주택이구요, 200평 이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 여러 종류의 주택이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플래시를 한 번 더 보시면서 복습하시겠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4번을 누르십시오.

| 주택 이외의 거처의 종류 | p.17

([정지화면] 메뉴의 4번, [거처의 종류]를 누르십시오.)

■ 앞에서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았고요, 이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는데, 사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해당하는

1) 오피스텔
2)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3)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4)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중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무조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거나 사무용으로만 사용되면 조사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 이상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원, 거처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로 조사할 때 필요한 내용이므로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몇 가지 관련 용어들,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집중해서 보실 내용은 조사구가 있고, 조사구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이것은 집집마다 주소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조사구 안에 있는 모든 거처마다 다시 번호가 붙고, 거처를 구성하는 가구마다 또 다시 번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볼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용어 | p.18

■ 사이버 교재를 통해 조사에 관련된 용어들, **1) 조사구번호, 2) 거처번호, 3) 가구번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 조사구 번호

① 조사구

일정한 수의 가구가 포함되도록 전국을 모두 나누어서 **조사구**를 만들어 놓았고, 조사원 여러분 각자가 이 중에서 몇 개의 조사구를 담당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② 조사구번호

조사구에는 일정한 규칙대로 번호가 붙어 있는데, 먼저 세자리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기호와 같은 줄표가 있고, 마지막에 한자리 숫자가 붙습니다. 이것이 **조사구번호**인데요, 앞의 세자리 숫자는 일련번호고, 뒤의 한자리 숫자는 조사구특성번호입니다. 조사구 특성번호는 해당 조사구가 아파트 지역인지, 섬 지역인지 등과 같이 조사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2) 거처번호

거처번호는 세자리로 되어 있으며 '001' 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사는 모든 거처와 사람이 살지 않는 모든 주택에 거처번호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거처번호는

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주택
② 이사 간 빈 집
③ 사용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한 신축 주택
④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

에 부여 합니다.

- 사람이 사는
  - 주택 – 거처번호 부여
  - 주택 이외의 거처 – 거처번호 부여
- 사람이 살지 않는
  - 주택 – 거처번호 부여
  - 주택 이외의 거처 –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3) 가구번호

가구번호도 역시 세자리로 되어 있으며 '001' 부터 시작하는데요, 주택에 살든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든 모든 가구에 가구번호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면 가구수 만큼 가구번호를 부여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단독주택에 3가구가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번호는 001, 002, 003 세개를 부여해야 겠지요!

■ 또한 **1) 가구번호, 2) 거처번호, 3) 조사구 번호**는

1) 가구 번호 : 거처번호가 바뀌면 '001' 부터 다시 시작
2) 거처 번호 : 조사구번호가 바뀌면 '001' 부터 다시 시작
3) 조사구 번호 : 읍·면·동이 바뀌면 '001' 부터 다시 시작
합니다.

■ 그럼, 역주변이나 터미널, 공원 등에 노숙자가 거주하는 경우 거처번호를 부여할까요?(잠시 시간을 주고) 공원에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경우 공원전체에 거처번호 하나를 부여하고 각 노숙자별로 가구번호를 부여합니다.

■ 나중에 조사표류를 정리할 때 이들 번호를 맞추어서 적어야 하니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고 계셨다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주요 용어에 대한 플래시를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5번을 누르십시오.

MEMO



학습준비

1.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19~24)

이번에는 조사업무를 진행할 때 지참하고 사용해야 하는 조사용품과 조사원 유의사항, 그리고 가구에 방문하였을 때 자주 듣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 **조사업무 수행 요령**

1. **조사용품**
2.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3. **조사원 안전 수칙**
4. **자주 듣는 질문**

특히, 조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이버교재를 보시죠!

교재상영 (10분)

1. [Ⅲ. 조사업무 수행요령]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조사용품 | p.24

([정지화면] 메뉴의 5번, [조사용품]을 누르십시오.)

■ 여러 가지 조사용품이 있죠!
이 중에서 몇 가지 강조할 사항이 있는데요,

1) 조사요원증

첫째, **'조사요원증'**을 꼭 패용하고 다니십시오. 조사원 여러분은 조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살피는 것이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집을 기웃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때 '조사요원증'을 달고 있으면 설명 드리기가 한결 쉬워지겠지요!

2) 조사원 연락전 · 가구홍보용 전단

둘째, 가구에 방문하였지만 가구원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부재가구라고 하는데요, 이 때는 **'조사원 연락전'**에 조사원 여러분의 이름과 재방문 일시를 기록한 후에 **'가구홍보용 전단'**과 함께 해당 가구에 전달하거나 투입하시고, 재방문 일시에 다시 방문해서 면접 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약속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비밀보호용봉투

셋째, 어떤 가구는 조사원에게 집안 사정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비밀보호용봉투'**에 조사표를 넣어서 배부하고 완성된 조사표를 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

■ 이외에 다른 조사용품에 대한 것은 실제 사용하시다 보면 쉽게 그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p.20

■ 사이버교재를 통해 조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였는데요.

■ 앞서 얘기한 것 외에
1) 조사 시 면접자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조사는 되도록 현관에서 완료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잠시 외출 중인 집에 들어가 도난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3) 또한 공장이나 작업장 등 위험한 장소는 피함
4) 홈리스(HOMELESS), 정신이상자 등 위험한 사람이 있어 **불안을 느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되돌아가 관리자 및 읍면동 관리자와 상담 후 다시 방문

| 조사원 안전수칙 | p.23

■ 조사를 하다보면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총사고가 307건이었는데, 이중 교통사고가 41건, 개에 물림이 83건, 계단에서 넘어짐이 163건, 기타 문에 부딪히거나 길에서 넘어짐 등이 20건이었습니다.

■ 여러분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고나 부상시에는 신속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또, 조사기간 중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3일 이상** 치료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 조사원 여러분은 조사요원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조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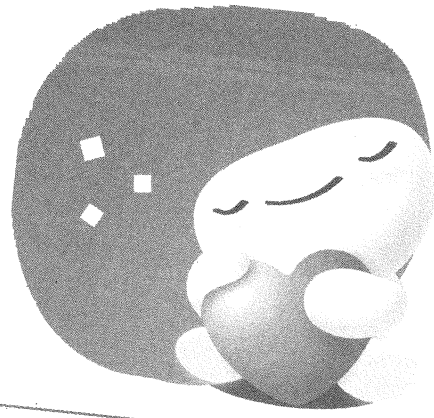

점심시간 (50분)

이상으로 오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육장별로 점심식사 안내를 하십시오.)

3 교시 (50분)

Ⅳ. 준비조사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1.1 조사구의 개념과 종류 1.2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1.3 조사구요도 보완(사례) 1.4 조사구요도 제출 및 관리
	2. 가구스티커	
	3. 가구명부 작성(1)	
	* 준비조사 가상 체험	

휴식 (10분)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배포한 CD를 실행시킵니다.
2.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3.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25~37)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오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조사구에 나가셔서 진행할 준비조사와 본조사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짧게 살펴볼까요.

- **조사구의 정의와 조사구 종류별 특성번호**
- **준비조사**
  1)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과정
  2) 가구스티커 작성 및 부착 요령
  3) 가구명부 작성 방법(1)

조사원 여러분이 각자 맡게 될 조사구의 조사구요도가 **새주소지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수치지형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 주소지와 수치지형도 사용지역 구분은 기본도 좌측 상단의 확인표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도가 많이 다르지 않고, 작성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지역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단, 새주소 지도를 사용하는 조사원과 수치지형도를 사용하는 조사원이 함께 교육 받는 경우, 더 많은 쪽을 선택하여 교육한다.)

먼저 조사구의 개념과 조사구요도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교재를 볼까요!

교재상영 (15분)

1. **[1. 조사구 요도 확인 및 보완]**을 상영합니다. 이 때 **〈새주소지도 사용지역〉** 단추와 **〈수치지형도 사용지역〉** 단추 중에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선택하십시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조사구의 정의 | p.26

■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조사구'** 라는 것으로 분할해 놓았고, **각 조사구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 놓았다는 것을 앞에서 잠깐 이야기 했었고, 사이버교재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 조사표 표지나 가구명부 상단(조사표와 가구명부는 지침서 부록 참조)을 보시면 '조사구번호' 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여기 보면 앞에 3개의 네모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빼기 표시 줄이 있고, 마지막에 1개의 네모 칸이 있죠(□□□-□). 여기서 뒤에 있는 1개의 네모 칸에 조사구의 특성번호가 붙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3개의 네모 칸에는 조사구일련번호가 붙겠지요.

| 조사구별 특성번호 | p.26

(**[정지화면]** 메뉴의 6번, **[조사구별 특성번호]**를 누르십시오.)

■ 조사원 여러분은 각자가 몇 개의 조사구를 할당받아서 실제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조사구의 조사구번호에는 종류별로 특

성번호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1) 조사구별 특성번호는 총 6개입니다.

① 아파트조사구: A
② 보통조사구: 1
③ 섬조사구: 2
④ 기숙시설조사구: 3
⑤ 특수사회시설조사구: 4
⑥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 5

■ 이들 특성번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사구번호를 적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조사 | p.26

■ 준비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준비조사는 조사원이 담당하게 될 조사구 경계를 확정하고 가구수(업무량)를 잠정적으로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 이 교육이 끝나고 표본조사를 맡으신 여러분들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준비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비조사시 수행업무는

1)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2) 가구스티커 부착
3) 가구명부 작성(1)

입니다. 각 업무별로 살펴볼까요!

|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과정(4단계) | p.26~33

(**[정지화면]** 메뉴의 7번,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4단계]**를 누르십시오.)

■ 사이버교재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조사구요도 확인 및 보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조사구 경계 확인
2) 지형지물(건물) 확인 및 보완
3) 거처 확인 및 가구수 파악
4)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수 기입

| 조사구경계 확인 | p.26

■ 먼저, 조사구 경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볼까요.
각자 담당 구역의 조사구요도를 지급받으시면, 지급받으신 조사구요도를 들고 현장에 나가셔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담당구역(적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을 돌면서 조사구요도의 경계가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겠지요.

■ 만약 경계가 틀리면 표시해 두었다가 읍면동 단위로 조사구가 그려진 지도와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고 **잘못 표시된 부분을 적색으로 X 표시**하고 올바른 경계선을 적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조사원은 변경지역을 담당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등에게 알려 일부지역이 중복,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6번을 누르십시오.

| 지형지물(건물)의 확인 및 보완 | p.27

■ 둘째, 조사구요도를 보시면 약국, 병원, 편의점 등과 같은 건물의 명칭이나 주소도 적혀져 있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시면서 조사구요도에 적혀져 있는 집이나 건물이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때,

1) 건물이 새로 들어섰거나, 현장에는 있고 조사구요도에 없으면 빨간

색 네모 칸(□)으로 표시
2) 지금 막 짓고 있는 건물은 빨간색 네모 칸을 점선(⬚)으로 표시
3) 그리고 철거 등으로 없어졌거나 잘못 표시되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 표시

[복습화면] 메뉴의 7번을 누르십시오.

| 거처확인 및 가구수 파악 | p.27

■ 셋째, 지형지물이나 건물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건물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건물에 몇 가구가 사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겉에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을 꼭 만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조사가 한결 더 쉬워집니다.)

■ 이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건물의 지하, 옥탑, 교회나 절, 음식점, 작은 공장 등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가구를 빠트리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별도로 제공되는 '주택정보 비고란'을 보시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표시가 붙은 건물은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별히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거주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8번을 누르십시오.

|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수 기입 | p.27

■ 넷째, 사람이 사는 거처로 확인되었으면 **거처번호**를 부여하셔서 조사구요도에 적고, 해당 거처에 사는 **가구수**를 세어서 역시 **조사구요도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 거처번호와 가구수를 적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1) 거처번호 기입

한 거처를 구분해 놓은 실선 안에 1부터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요, 번호를 붙이는 순서는 조사원 여러분이 조사를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 그냥 1부터 계속 붙여나가면 됩니다.(1 2 3) 참, 거처번호를 붙일 때요, 옆집과 인접되게 연결해서 부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확인되는 집들만 먼저 번호를 붙이다보니 거처번호가 이곳저곳을 오가며 순서가 이어 지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부터 순서대로, 옆집과 인접되게 번호를 붙여 주세요!

2) 가구수 기입

그리고 가구수는 거처번호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를 작게 그리고 그 안에 적으면 됩니다. 거처번호와 가구수를 적을 때 연필을 사용하십시오. 틀리면 수정하기 쉬우니깐요.(1① 2②)

■ 또한 빈집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빈집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구수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이 경우에는 거처번호만 적고 거처번호 옆의 괄호 안에 '빈집' 이라고 적습니다.(3(빈집))

■ 또한 **현재 막 짓고 있는 건물이나 관공서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9번을 누르십시오.

| 조사구요도 보완(사례) | p.28

앞서 본 사이버 교재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 요도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 한 개의 조사구역에 동일한 형태의 거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거처가 포함될 수 있다는거 아시죠!

앞서 살펴본

1) 일반 주택 지역
2) 면적이 넓은 지역
3) 아파트 지역
① 계단식인 경우
② 복도식인 경우

을 각 사례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반주택지역**에서 조사구요도를 작성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지도 사용 지역 – (**[정지화면]** 메뉴의 8번, **[일반주택지역 – 새주소 지도]**를 누르십시오.)
수치지형도 사용 지역 – (**[정지화면]** 메뉴의 9번, **[일반주택지역 – 수치지형도]**를 누르십시오.)

1) 검은점 – 출입구 표시
검은 점이 출입구 표시인데, 신축건물의 경우 출입구 표시인 검은 점이 그려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로로 짧게 두 줄을 그어서(예: ||)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2) 지형지물 수정 보완, 거처번호, 가구수
그 외에 나머지, 거처번호나 가구수 기입 방법, 빈집이나 신축건물 처리 방법은 앞에서 한 번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 잘 이해하고 계신지 한 번 물어봐도 될까요! (주위를 한 번 둘러보면서 주위를 환기시킨다.) (상황을 보아서 가까이 계신분에게 아래의 질문을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설명한다.)

1) 거처번호를 어디에 부여한다고 했죠?
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주택
② 이사 간 빈집
③ 사용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한 신축주택
④ 주택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거처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리고 조사구 안에서 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거처번호를 부여하면 되는데, 001부터 시작하는 것 아시죠. 참, 단독주택은 주택별로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호별로 거처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2) 신축건물은 적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죠? 그러면, 신축중인 건물과 철거된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신축중인 건물은 점선으로 된 사각형(⬚)으로 해당 영역을 표시하고, 철거된 건물은 해당 건물 위에 ×(☒)를 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빨간색으로 하는 것 아시죠!

■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면적이 넓은 지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0번, [면적이 넓은 지역]를 누르십시오.)

1) 조사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부분확대도라는 것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조사 지역이 넓다 보니 건물이 작게 표시될 수밖에 없고, 각각의 건물에 거처번호나 가구수를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부분확대도에 기입하라고 제공되는 것입니다.

2) 부분 확대 지역인 경우에 전체가 나타나는 도면에는 시작 거처번호, 마지막 거처번호, 가구수 합계만 적고, 나머지는 부분확대도에 표시하면 됩니다.

조사구요도 보완에 대해서 한번 더 볼까요!

새주소지도 사용 지역 – [복습화면] 메뉴의 10번을 누르십시오.

수치지형도 사용 지역 – [복습화면] 메뉴의 11번을 누르십시오.

(**[정지화면]** 메뉴의 11번, [아파트 지역]를 누르십시오.)

■ 화면을 보시면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가 나오죠. 잘 보이시나요? 아파트 지역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아래층부터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복도식 아파트는 층을 기준으로 아래층부터 거처번호를 적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위에서부터 내려오시거나 무작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계단식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아래층부터
2) 복도식은 층을 기준으로 아래층부터 복도를 따라 거처번호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2번,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지역]을 누르십시오.)

■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거처가 혼합된 지역**의 경우 조사구 경계 바깥이나 별지에 '공동주택전개도' 라는 것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전개도와 실제 건물의 형태가 맞는지 현지 조사 중에 확인하고, 층과 호, 출입구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조사구요도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준비조사에서는 조사구요도, 가구스티커, 가구명부를 작성하는데요, 조사구요도를 판독하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지도라는 것이 평소

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고 나가면 방향 감각도 잘 없고요.

■ 그러나 교육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메모를 잘 하시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기억이 나고, 요긴하게 쓰입니다.

■ 교육이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준비조사하러 나가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재를 인터넷에서 수시로 보실 수 있으므로 교육이 끝난 다음에, 특히 실제 준비조사하러 나가시기 전에 조사구요도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럼 계속해서 가구스티커 부착 요령과 가구명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상영 (5분)

1. [2. 가구스티커 부착]와 [3. 가구명부 작성(1)]를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가구스티커 / 가구명부 작성(1) | p.35~37

([정지화면] 메뉴의 13번, [가구스티커]를 누르십시오.)

■ **가구스티커**는

1)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적은 다음에 **거처별로 가구수 만큼 출입구 오른쪽** 위에 붙이면 됩니다.
2)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도 스티커는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에도 거처번호가 붙으니깐요. 다만, 사람이 살지 않아서 가구는 없는 것이므로 가구번호 란에는 X 표시를 합니다.
3) 가구스티커의 색은 모두 세 종류(주황, 파랑, 연두)가 있는데, **조사구별로는 같은 색을 사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4번, [가구명부 – 준비조사]를 누르십시오.)

■ **가구명부**는 준비조사 때에 일부 작성하고, 나머지는 본조사 때에 작성합니다. 준비조사 때는 몇 가지만 적으면 되는데요,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만 적어 주세요.

■ 그리고 담당조사구에 인터넷 조사를 신청한 가구가 있으면 가구명부의 [비고]란에 '인터넷' 이라고 적습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5번, [조사표류의 일치]를 누르십시오.)

■ 화면을 한 번 보실까요? 조사구요도, 가구스티커, 가구명부 3개의 조사표류가 있는데요,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보십시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모두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이 점 유의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 지금까지 준비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본조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준비조사 전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3D 가상현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재상영 (10분)

1. [4. 준비조사 가상체험]을 상영합니다.
2. 가상체험 3D 상영이 끝난 후 [5. 본조사 – 표본조사]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휴식 (10분)

점심식사 후 피곤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교시를 마치고, 10분간 쉬었다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시 (50분)

♣ 조사표 작성 실습

Ⅴ. 본조사 – 표본조사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2.1 조사표 표지

휴식 (10분)

* 전달 사항 *

조사표 작성 실습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실제 조사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준비한 조사표를 배부하고 3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조사표는 수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사이버 교재나 추가설명 때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한 번 작성해 보니 어떠세요. 어떤 항목은 쉽고, 어떤 항목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죠! 지금부터 조사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설명을 들으면 궁금했던 점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학습준비

1.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39~43)

■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루어지는 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항목을 질문하여 작성하고, 가구명부도 완성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사표 표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조사표 구성

1) 조사표 표지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3) 가구에 관한 사항
4) 주택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특성 항목

교재상영 (5분)

1. 본조사 – 표본조사의 인트로 부분을 상영합니다. 이때, **〈전수조사표〉** 단추와 **〈표본조사표〉** 단추 중에서 교육 대상이 전수조사원인지 표본조사원인지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2. [1. 조사표 일반적 기입요령], [2.1 조사표 표지]를 상영합니다.
3.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시작합니다.

추가설명 (15분)

| 조사표 구성 | p.40

■ 잘 보셨는지요.
몇 가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 자, **조사표**를 한번 볼까요, 첫 장이 표지구요, 그 다음 장 상단에 보면 **[1.가구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몇 장 더 넘기면 **[2.가구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주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 [1.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원별로 작성
2) [2.가구에 관한 사항] – 모든 가구가 가구별로 작성
3) [3.주택에 관한 사항] – 주인가구나 대표가구만 작성

특히 조사표를 보시면,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다시 나이에 따라 항목들이 분류되어 있지요? 나이에 따라 조사하기도 하고 조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사대상 가구원의 나이를 잘 보시고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 주인가구나 대표가구가 아니면 **[3.주택에 관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지요!

| 조사표 기입요령 | p.40

■ 그 다음에 조사표를 기입하는 요령인데요, 싸인펜이나 수성펜은 물이 묻으면 번지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그리고 잘못 작성했을 때는 해당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도 적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청색이나 흑색 볼펜으로 하시면 됩니다.

■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괄호나 네모 안에는 숫자나 문자를 기입하는 것은 아시겠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복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조사표 표지의 주소 작성법 | p.41

■ 조사표 표지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시 · 도]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 · 호]까지가 **주소**를 적는 부분입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16번, **[조사표 표지 – 표본]**를 누르십시오.)

1) 법정 주소 기입

여기에는 **법정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는데, 법정 주소는 쉽게 말해서 우편물을 받을 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2) 정확한 주소 기입

일반적으로 동까지는 잘 적으시는데, 통 · 리, 번지, 동 · 호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통 · 리, 번지, 동 · 호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구역부호 기입

그리고 조사표를 다시 보시면, 주소 기입란 하단에 붉은 네모칸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행정구역부호를 기입**하셔야 하는데요, 시·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부호는 **부호집**의 '행정구역부호'에 보면 있고, 통 · 리 부호는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물어보시면 알 수 있으니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표지의 [농림어가 구분] 작성법 | p.42

■ **농림어가** 구분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몇 가지 원칙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1)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면 농가와 어가 두군데 모두 O표 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 해당 가구는 농가나 임가나 어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군데 모두 O표 하시면 됩니다.

2) 주인이 아니고 고용 종사원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촌에서 아들이 오징어잡이 배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면 어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3) 어떤 가구원도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④비농림어가에 반드시 표기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농업이고, 임업이고, 어업인지 구별해 볼까요?

([정지화면] 메뉴의 18번, [농림어가 구분]을 누르십시오. 한 번 읽어 주면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 2부중 2부째 조사표 작성법 | p.42

■ 조사표를 보시면 1부의 조사표에 5명까지 조사할 수 있으니 한 가구의 가구원이 6명 이상이면 2부 이상의 조사표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죠. 2부 째 이후의 조사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2부중 2부의 표지

먼저 표지에서요, 2부중 2부의 조사표 표지에 있는 주소,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에는 2부중 1부 조사표와 같은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농림어가 구분란은 2부중 2부에는 적지 않습니다. 즉, 가구원수가 8명인 경우 2부중 1부의 가구원수란에 8이라고 쓰고 2부중 2부엔 쓰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 조사 가구의 경우 표지만 작성하는데 비고란에는 2부중 1부이건 2부중 2부이건 '인터넷' 이라고 기입합니다.

2) 2부중 2부의 내용

2부중 2부의 조사표에서는 「**2. 가구에 관한 사항**」 및 「**3. 주택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부중 1부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지의 내용도 같지만 표지는 조사표가 섞일 것에 대비하여 2부중 1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가구원이 11명이라서 3부를 조사해야 할 경우 세 번째 조사표에도 위의 두 가지 주의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겠지요!

| 조사표 표지의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작성법 | p.43

■ 그럼, 주말부부로 남편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남편은 이 가구에 포함되나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네, 직장 때문에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으로 이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친가나 외가에 맡겨진 경우는 이 가구에 포함될까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만약, 아이들이 친가나 외가에서 숙식을 한다면 이 가구에서는 조사하지 않고 외가 또는 친가에서 조사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낮동안만 친가나 외가에 맡겨진 경우에는 이 가구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점을 다시 유념하시구요, 해당 인원이 없을 경우 반드시 숫자 0을 넣는 것 잊지마시고요.

■ 그럼, 이상으로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이버교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복습화면] 메뉴의 12번을 누르십시오.

MEMO



휴식 (10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5 교시 (50분)

Ⅴ. 본조사 – 표본조사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휴식 (10분)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43~57)

이번 시간부터 각 항목의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표본조사**에서는 시도별 특성항목 3개를 포함해 **총 44개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사항목 중 가구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인 질문이 많아 실제 조사에 나가시면 어떤 응답자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엉터리로 답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잘 설득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항목을 조사하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겠죠!

사이버교재에서는 민감한 항목에 대해서 왜 조사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사표의 [1]번 항목부터 볼까요.

교재상영 (5분)

1.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번 성명]부터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7]번 남북이산가족]까지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성명 | p.43

■ 1번 [성명] 항목부터 7번 [남북이산가족] 항목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원을 조사합니다.

■ 먼저, **[성명]**인데요,

1) 이름이 없는 갓난아이는 어떻게 기입을 할까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홍○○'로 기입합니다.
2) 자주 틀리시는 것은 **①번 가구원에 가구주**를 적어야 하는데, 가구주가 아닌 분을 적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순으로 적어오기도 하시구요.

①번에는 가구주를 적으시고요. 가구주라 함은 호주나 세대주가 아니라 해당 가구의 경제적인 면을 주로 맡고 있는 사람이므로 꼭 가장이 아닐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닌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혈연이나 친족관계로 이루어진 가구라면 가구주를 정하기가 쉬울텐데, 친구나 아는 사람끼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가구주를 정하기가 애매하죠! 이 경우에는 가구원 중에서 연장자나 대표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가구주로 합니다.

■ 그럼, 주말 부부로 남편이 외지에 살고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경우 누가 가구주가 될까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남편'이라고 대답할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남편은 직장 때문에 외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가구주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죠!

| 성별 | p.43

■ 2번 항목 **[성별]** 항목은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성이면서 남자 이름을, 남성이면서 여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이 많이 있죠!

| 나이 | p.44

■ 3번 항목 **[나이]**에서요, 집에서 실제로 **세는 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는 것 한 번 더 명심하시구요.

■ 띠, 나이, 출생년도가 일치해야 하잖아요. 가령, 58년이면 개띠인데, 57년생으로 조사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호집에 있는 **'연령조견표'**를 보시고 일일이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간혹,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력 11,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출생년도를 양력으로 응답한 경우 띠와 다르지요. 이런 경우는 응답자에게 음력 11, 12월생인 것을 재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가구주와의 관계 | p.44

■ 4번 항목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①번 가구원에 가구주가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 가구주와 다른 번호에 기입되어 있는 가구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 친구나 아는 사람끼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 중에서 연장자나 대표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가구주로 하고, 가구주 외에 다른 사람은 ⑭번의 '기타 동거인' 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 볼까요!

| 교육정도 | p.45

■ 5번 항목이 **[교육정도]**입니다. 이 항목이 좀 민감한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학력 수준을 처음 보는 조사원에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①번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에 O표 해 주시면 됩니다.

2) 대학 2년제, 3년제, 4년제인 경우

① 2년제와 3년제 – ⑤번 '대학(4년제 미만)'
② 4년제 – ⑥번 '대학교(4년제 이상)'

에 O표 해 주셔야 합니다.

3) 대학교 졸업 후 다시 대학에 입학해 다니는 경우

최근에는 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에 다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학력을 기준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대학교를 이미 졸업하였으므로 ⑥번 '대학교(4년제 이상)' 에 O표 하시고 ①번 '졸업' 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4) '수료' 의 개념

가끔 '수료' 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원에 다녔지만 논문이나 시험을 아직 보지 않아서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수료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구요.

| 종교 | p.45

■ 그 다음에 **종교**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도 민감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즉, 본인이 어떤 종교의 신도라고 이야기하면 해당 항목을 찾아서 O표 하거나, 항목에 없으면 '기타(　　)'에 종교명을 적고, **부호집**의 종교 코드를 찾아서 네모 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 남북이산가족 | p.46

■ 7번 **[남북이산가족]**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통일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 분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2) 가장 가까운 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셔야 합니다. 즉, 북한에 부모와 자녀가 있다고 해서 두 곳에 O표 하시면 안 되고, 가장 가까운 1사람만 O표 해야 합니다. 그 순서는 보기에 있는 순서와 같습니다. 즉, 부모 -> 자녀 -> 배우자 -> 형제 자매 -> 기타 친인척 순입니다.

3) 또 한 가지 혼동하는 것은 '귀하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에 계신 분의 출생지가 아니고 북한에 이산가족을 두었고, 지금 인구조사에 응하는 본인의 출생지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본인이 아니라 이산가족의 출생지를 적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교재상영 (5분)

1.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8번 아동보육]부터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4번 통근통학 소요시간]까지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아동보육 | p.46~47

■ 앞의 7번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되어야 하구요, 이번에 설명할 8번 **[아동보육]**항목은 조사표에서 보듯이 **1세에서 13세까지만 조사**하면 됩니다. 이 나이 대에 속하지 않는 분은 조사하지 않고 그 다음 항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 여기서 잘 틀리는 것은, 아이가 오후 1시까지는 유치원에 다니고, 그 이후에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①번 '자녀의 부모' 와 ⑤번 '유치원' 에 O표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아이는 유치원 -> 학원 -> 엄마와 같이 세 곳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아이가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긴 두 가지에만 O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같은 가구에 함께 살고 있으면 어머니의 성명과 어머니가 몇 번 가구원인지 조사해야 하는데요, 8번의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보시겠어요.

답변하는 곳에 엄마의 성명을 적는 란에 '이세리' 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 네모 칸에 '2' 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이 아이의 엄마가 같은 가구에 살고 있고, 이 조사표에서 2번 가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두 번째 항목은 아동의 어머니를 기입하는 것이지 낮 동안 돌보는 사람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년전 거주지 | p.47~48

■ 조사표에서 보듯이 [5년전 거주지]와 뒤의 [활동제약] 항목은 **세는 나이로 6살 이상**인 가구원만 적는 것 아시죠! 나이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조사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5년전 거주지]** 항목에서요,

1) 5년전에 어디에 살았는지 **가구원별로 한 사람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구에 살고 있지만 개인별로 5년전에는 다른 곳에 살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밑에 있는 적색 네모 칸이 5개 있죠. 다른 시·군·구, 북한, 외국에 해당되면 **부호집**에서 5년전 거주지용 부호를 찾아서 적습니다.
단, 북한 또는 외국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 란도 비워 둡니다.

| 활동제약 | p.49

■ ⑩번 항목 **[활동제약]**을 볼까요!

1) 활동제약의 **6개월 기준**은 이미 6개월이 지났거나 앞으로 6개월 이상 제약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어떤 이유로 활동에 제

약을 받은 기간이 2~3개월 밖에 안 되었으며 6개월 내에 완쾌가능하다면 ⑥번의 '없음' 에 O표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교통사고나 중풍뿐만 아니라 디스크, 관절염, 고령에 의한 노환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보기 ④번에 보시면 **'(16세 이상)취업활동'** 이라고 있는데, 16살이 안 된 사람은 취업활동에 제약이 있더라도 ④번 '(16세 이상)취업활동' 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 11번, **[통근 · 통학 여부]**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통근통학 여부 | p.49~50

■ 11번부터 14번까지가 통근 · 통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네개 항목은 세는 나이로 **13세 이상**인 가구원만 작성해 주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13세가 안된 소년 소녀 가장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있는데 이들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통근 · 통학 여부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계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①번 '통근함' 은 '살고 있는 거처 이외의 직장' 에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집 안에 사업장(대부분 가게겠죠)이 있으면 ③번 '안함' 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나 용달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차고지가 자기 집이면 ③번 '안함' 에 O표 하십시오. 일은 하지만 집에서 바로 타고 나가니까 통근은 안 하는 거잖아요.

2) 또 한 가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에 나가서 일하실텐데, 이것도 통근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3) 통학이라고 하면 학교만 생각하는데, 각종 학원도 통학하는 것에 해당하니 주의하십시오.

| 통근 · 통학 장소 | p.50

■ 그 다음에 **[통근 · 통학 장소]**에 대해 살펴볼까요!

1) 통근 · 통학 장소가 다른 읍 · 면 · 동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읍 · 면 · 동의 이름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읍 · 면 · 동을 적은 다음에 통근하시는 분은 직장명, 통학하시는 분은 학교나 학원명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응답자는 읍 · 면 · 동 이름을 정확히 모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직장명, 학원명, 잘 알려진 건물이나 장소 이름을 조사해 오신 후, 나중에 그 곳의 읍 · 면 · 동 이름을 확인해 기입합니다.

2) 또, 지하철이나 버스안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트럭에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근무처가 없잖습니까. 이 분들은 **지난 1주일간 주로 활동한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로 활동한 장소가 없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은 가장 최근에 활동한 장소로 조사해 주세요.

3) 그리고 마지막에 7개의 적색 네모 칸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입된 소재지의 **행정구역 부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 이용교통수단 | p.51

■ **[이용교통수단]**항목과 **[통근 · 통학 소요시간 항목]**은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을 기준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도시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가령 버스타고 나가서 지하철을 타기도 하잖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 항목에서는 교통수단을 **두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만 다니는 경우
①번 '걸어서' 에 O표 하셔야 합니다.

2) 집에서 오랫동안 걸어 나가서 시내버스 타는 경우
①번과 ③번, 둘 다에 O표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③번 '시내 · 좌석 · 마을버스' 에 O표 하셔야 합니다.

| 통근 · 통학 소요시간 | p.51

■ 14번, **[통근 · 통학 소요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을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이용교통수단 항목에서도 출근과 등교 기준으로 조사했었죠?



교재상영 (5분)

1.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5 번 경제활동상태]를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9 번 근로장소]까지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경제활동상태 | p.52

■ 요즘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경제활동상태]** 항목은 경제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긴요하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항목도 이 항목만큼이나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 조사표에서 보듯이 15번의 **[경제활동상태]**항목부터 21번의 **[혼인년월]** 항목까지는 **세는 나이 16세 이상인 가구원만 작성**합니다. 대상이 안 되는 가구원은 공란으로 두는 것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답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연이어 있는 다음 항목을 조사하지 않고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항목을 건너뛰기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경제활동상태를 한 번 볼까요.
질문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경제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대상 기간은 **지난 1주일**입니다. 즉 **200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하였다면 수입이 있는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첫 번째 질문의 ①번, '있음' 에 표시하고 ①번 '있음'

이나 ②번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에 해당하면 16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1) 그럼, **조사원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떻게 기입될까요? (잠시 생각 할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10월 23일부터 29일 기간 중에 한 시간이라도 수입 있는 일 즉, 조사활동을 했다면 '있음' 에 표시합니다.

전수조사원은, 준비조사 기간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29일이 포함되므로 '있음' 에 해당하고요, 표본조사원은 준비조사 기간이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없음' 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2) 자, 그럼 다시 문제입니다. 해당 읍 · 면 · 동에서 표본조사원의 준비조사 일정을 28, 29일로 바꾼 경우 표본조사원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생각 할 시간을 줍니다.)

이 경우 표본조사원의 경제활동상태는 '있음' 에 해당합니다. 단, 표본조사원 개인이 임의로 조사일정을 바꾼 경우는 해당 기간에 조사업무를 하였더라도 '없음' 에 해당합니다.

■ 일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지난 한 달(10월이 되겠죠!) 동안 일을 찾아보았는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찾아보지 않았으면 20번 항목으로 건너뛰시고, 찾아보았다면 마지막 질문인 "만약,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로 넘어가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 복잡한 것 같은데, 그다지 어렵지 않으시죠, 질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화살표로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표시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따라서 조사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있어서 일을 하신 분들은 16번 항목으로 가고, 아니신 분들은 20번 항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16번 항목인 종사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교재를 볼까요!

| 종사상 지위 | p.53

■ 다른 보기는 보면 아실 것이고, ④번 **'무급 가족 종사자'** 를 예로 들어서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1)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돕는 경우

① 월급을 안 받으면 **④번 '무급 가족 종사자'** 에 해당

② 월급을 받으면 **①번 '임금 근로자'** 에 해당

합니다. 아시겠죠! 가정주부를 돈을 받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④번 '무급 가족 종사자' 에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2) 농사 짓는 사람과 농사를 돕는 가족의 경우

① 농사짓는 사람은 **②번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에 해당

② 농사를 돕는 가족은 **④번 '무급 가족 종사자'** 에 해당

합니다.

| 산업 | p.53

([정지화면] 메뉴의 19번, [산업항목 기입예시]를 누르십시오.)

■ 조사표에 있는 예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우리화학 화장품공장' 이라고 자세히 적어 놓았잖습니까! 이와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화학' 과 같이 회사명만 적는데, 대기업이라서 **사업장의 세부 명칭** 이 있으면 세부 명칭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 그리고 '주된 사업 내용' 은 본인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것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자가 해당 사업체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업체가 하는 일을 조사해야 합니다.

■ 지침서의 부록에 보면 〈산업〉에 대한 잘못된 표기와 바른 표기가 있으므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직업 | p.54

([**정지화면**] 메뉴의 20번, [직업항목 기입예시]를 누르십시오.)

■ **조사대상자가 해당 사업체에서 하는 일**을 적는 것으로 어떤 응답자는 소속되어 있는 부서나 맡고 있는 직책과 업무가 여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주된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지침서의 부록에 〈직업〉에 대한 기입요령이 있으니 실제 조사할 때 잘 모르시면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 근로장소 | p.54~55

■ **[근로장소]**에서 주의할 점은 출근하는 곳이 아니고 출근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사이버교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업사원과 같이 아침에 잠깐 출근했다가 외부에서 일을 계속 한다면 ④번 '거리' 에 O표 해야 하는 것이지요!

■ 근무하는 장소가 여러 곳일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가장 주된 활동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지침서의 54 페이지에 보면 항목별 예시가 잘 나와 있으므로 실제 조사에 나가셔서 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지침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기억하실 수는 없으므로 예외 사항 같은 것은 지침서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상영 (5분)

1.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20번 혼인상태]**와 **[2.2 가구원에 관한 사항 – 24번 고령자 생활비 원천]**까지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5분)

| 혼인상태 | p.55

■ **[혼인상태]**가 ①번 '미혼' 이면 24번 [고령자 생활비 원천] 항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다고 미혼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의 혼인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 혼인년월 | p.56

■ 요즘은 재혼도 많은데요, **처음으로 혼인한 년도와 월**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 총 출생아 수 | p.56

■ 이 항목은 **기혼 여성 또는 미혼모만 기입**하는데, 총 4개의 질문이 있으며, 각 질문에 모두 답하셔야 하구요, 해당 인원이 없으면 0을 기입해야 합니다.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에만 0을 표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질문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부인이 낳은 자녀'** 라는 말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1) 입양하였거나, 재혼하여 같이 사는 자녀라도 본인이 낳지 않은 자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자신이 낳았지만 **사망한 자녀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 자식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추억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계획 자녀수 | p.57

■ 이 항목은 **기혼 여성만 기입**하는데요.

■ 임신 중인 자녀도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자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령자 생활비 원천 | p.57

■ **세는 나이로 61세 이상인 가구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기입한다고 되어 있죠! 노부부가 같은 가구에 살고 있으면 두 사람의 답이 똑같겠죠!

■ 수입원이 여러 가지면 **주된 것 두 가지만 기입**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가구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는데요, 연령에 따라 조사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보기에 답했느냐에 따라 몇 개의 항목을 건너뛰기도 하므로 설명을 잘 보고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다음 시간에는 가구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EMO



휴식 (10분)

이상으로 5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셨다가 10분 후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MEMO



6 교시 (50분)

Ⅴ. 본조사 – 표본조사	2. 조사표 항목별 기입요령	2.3 가구에 관한 사항 2.4 주택에 관한 사항 2.5 시도별 특성 항목

* 전달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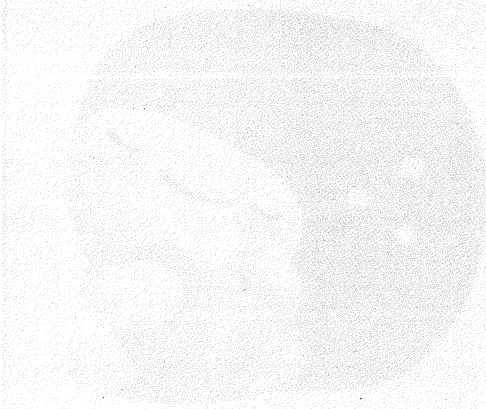

학습준비

1. [2.3 가구에 관한 사항]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58~69)

저번 시간에는 조사표 항목 중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 조사표 항목 중

1) 가구에 관한 사항
2) 주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특정 항목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상영 (10분)

1. [2.3 가구에 관한 사항]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5분)

| 가구 구분 | p.58

■ 보기의 ⑤번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가 있는데, **6인 이상에서 19인**까지는 ⑤번에 해당하구요, 앞에서 배웠듯이 **20명이 넘으면** ⑥번,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⑥번에서 ⑩번까지 해당되면, **[2. 가구에 관한 사항]**을 건너뛰어서, **[3. 주택에 관한 사항]**의 1번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거주 기간 | p.58

■ 재개발로 일정기간 동안 이사하여 다른 곳에 산 경우를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5층짜리 아파트에 5년 살다가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공사기간인 3년 동안 다른 곳에 전세로 살았고, 다시 입주하여 4년 살았다면 4년 동안 산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사용 방 수 | p.59

■ 실제로 조사하러 나가면 "이게 방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방에 대한 개념**을 조사표에도 설명해 두었는데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사면이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
2) 침실, 서재, 놀이방 등과 같이 실제로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3) 크기는 높이가 1.8m(6척)이상, 넓이가 3.3m²(1평)이상 이여야 한다. 따라서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또, **부엌과 식당**이 어떻게 다른지 다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1) 부엌 – 싱크대와 조리시설이 있어서 조리를 하는 곳
2) 식당 – 식사를 하는 방

대개 부엌과 식당을 같이 쓰지만,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집도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엌과 식당이 같이 있으면서 거실과 차단되어 있다면 식당 1개인 것으로 조사하시면 되겠죠!

■ 요즘은 거실, 식당, 부엌 중 두가지 이상의 공간이 트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우선 순위가 거실 〉 식당 〉 부엌 이므로, 우선순위 개념을 기입합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21번, [사용 방 수]를 누르십시오.)

| 주거 시설 형태 | p.60

■ **화장실**과 **목욕시설**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부엌**이 개수시설과 조리시설이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수도**에 가면, ③번에 '자가(전용)수도' 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숙사, 사택, 학교 같은 곳에 가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 가면 수도 시설이 두 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수도도 들어오고, 자가(전용)수도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거주층 | p.61

■ 반지하를 구분하는 기준은 반지하가 있는 층의 반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반지하로 보시면 됩니다.

■ ②번 항목에 해당하면 해당 가구가 지상 몇 층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간혹 건물의 전체 층수를 적어 오시는데, **응답자가 거주하는 층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보유 대수 | p.61

■ **소유 여부나 목적에 관계없이 실제로 보유**하여 사용 중인 자동차의 종류와 대수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여러 종류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2대의 승용차와 1대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①번에 O표 하고 2대라고 적고, ②번에도 O표 하고 1대라고 적으면 됩니다. 차가 없으면 ④번 '없음'에 O표 하고, 8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 주차 시설 | p.61~62

■ 요즘, 대도시는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 항목은 앞에서 설명한 통근 · 통학 항목과 연계하여 교통정책에 사용됩니다. 통근 · 통학 항목은 출근이나 등교시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조사하지만, 이 항목은 **퇴근이나 하교후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시설에서 ②번 항목인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주차빌딩이나 일정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월정액과 같이 주차비를 받는 영업용 주차장이나 어떤 건물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 ②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경우는 사유재산이구요, 사유지나 국유지로서 도로로 구획되어 있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 바깥쪽에 있는 노외 주차장(ex.음식점의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도 ②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비용을 받는 도로유료주차장은 ③번 '노상주차장'에 해당됩니다.

| 난방시설 | p.62

■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LPG 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아궁이는 다 아시겠죠.

■ 다소 생소한 것이 ①번의 '중앙난방'과 ②번의 '지역난방' 인데요,

1) 중앙난방

아파트 중에서 단지별로 한 곳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난방하는 경우

2) 지역난방

열병합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대규모 열생산 시설이 주위에 있어서 지역단위로 난방을 보급받는 방식.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가구는 특별한 경우라서 응답자가 알고 있으므로 조사원 여러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걱정마십시오.

| 점유 형태와 임차료 | p.62~63

■ 보기를 보시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 먼저, 1평이라도 영업과 관련된 공간이 있으면 영업겸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전세 등 **점유 형태**를 선택하시고, 점유 형태별로 화살표를 따라가서 **임차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 농촌의 빈집에 그냥 들어가 사는 경우

이것은 점유형태 중 무상으로 보면 됩니다.

2) '사글세'의 개념

사글세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월세는 1개월 단위로 내잖습니까? 그런데 1년이나 10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고 한 달치씩 공제하는 형태가 사글세입니다. 이 경우 [월세(사글세)]를 적는 네모 칸에 1개월치만 적으셔야 합니다. 가령, 10개월 치 사글세로 300만원을 냈으면 30만원을 적는 것이지요. 사글세 총액을 적는 것이 아니고 1개월 치로 환산하여 적어주세요!

| 주인가구 및 주택 소유 여부 | p.63

- 앞에서도 나왔지만, ②번에 보면 '대표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가구**나 **세든 가구**는 아시겠죠? **대표가구**는 어떤 주택이 있고, 그 주택에 주인가구가 살지 않고, 세든 가구들만 사는데, 세든 가구들 중에서 그 집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입니다.

- 대표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3.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인가구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주인가구가 없으니 그 주택의 사정을 잘 아는(ex. 세든지 가장 오래된 가구 등) 가구를 대표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 그리고 다른 곳의 주택소유여부는 주인가구나 대표가구, 세든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대해 조사합니다.

- 이제 **[2. 가구에 관한 사항]**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주인가구나 대표가구는 **[3.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고, ③번 '기타 세들어 살고 있는 가구'에 O표 하신 분은 조사표에서 보듯이 조사를 마칩니다.

- 그럼, **[3. 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상영 (5분)

1. [2.4 주택에 관한 사항]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 p.64

■ 사이버교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주인가구나 대표가구는 본인이 살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다른 가구(ex. 세 들어 있는 다른 가구)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 조사해야 합니다.

■ 거처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에서 층수는 **건물 전체의 층수**를 조사합니다.

다만, 앞의 **[2. 가구에 관한 사항]**의 5번 거주층 항목은 해당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층을 조사하고, **[3. 주택에 관한 사항]**의 이 항목에서는 건물 전체의 층수를 조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 주세요.

[2. 가구에 관한 사항] 5 거주층	[3. 주택에 관한 사항] 1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해당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층을 조사	건물 전체의 층수를 조사

또한, 조사표에도 나와 있듯이 ⑦번에서 ⑩번 사이를 선택하신 분은 **[3. 주택에 관한 사항]**의 작성을 마치기 바랍니다.

| 연건평 | p.64~65

■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조사하시는 분들은 분양 평형이 아닌 **전용 면적**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전용 면적은 주차장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 면적을 뺀 부분입니다.
(응답자에게 질문을 해 보고,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판단되면 「**주택 정보**」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평이나 평방미터 중에 한 가지만 조사하시면 되고, 평방미터로 조사된 경우 평으로 환산해서 적어주십시오(평=평방미터÷3.3). 소수점 이하로 나오면 반올림하시구요!

| 대지 면적 | p.65

■ **[대지면적]**은 **단독주택만 조사**하는 것 기억하시구요, **주거용 부분만 포함**시키고 영업용 부분은 빼셔야 합니다. 이것도 연건평과 마찬가지로 평이나 평방미터 중 한 가지만 조사하시고, 평방미터로 조사한 경우 평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는 것 잊지 마시구요!

| 총방수 | p.65

■ 사이버교재에서 **다른 세든 가구가 사용하는 방도 모두 포함**해서 센다고 했죠. 주인가구나 대표가구가 사는 방뿐만 아니라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다른 가구의 방도 모두 세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방 수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 **[2. 가구에 관한 사항]**의 3번 [사용방수] 항목에서도 방 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때는 사용하지 않는 방을 세지 않았죠! 예를 들어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은 방은 앞의 사용방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방수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 거실, 식당도 포함해서 센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항목 이름이 '총방수' 잖아요!

[2. 가구에 관한 사항] 3 사용 방 수	[3. 주택에 관한 사항] 4 총 방 수
사용하지 않는 방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는 방도 포함

사실, 조사표의 문항이나 문제나 문제의 설명이나 보기를 자세히 보면 조사하는 것이 한결 쉬워진답니다. 모든 답은 문제에 있다고도 하잖아요!

| 건축년도 | p.66

■ **건축년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응답자가 모를 경우 「**주택정보**」를 활용하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항목인 [편익시설 수]로 가 볼까요!

| 편익시설 수 | p.66~67

■ **화장실**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 **부엌**에 대해서는 **[2. 가구에 관한 사항]**의 3번 [사용방수]에서 나오고, **[3. 주택에 관한 사항]**의 4번 [총방수]에서도 나왔는데요. 앞에서는 부엌이 거실이나 식당과 벽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면 거실이나 식당에 포함시켰잖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거실이나 식당과 벽으로 분리되지 않더라도 그냥 부엌으로 보고 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의 두 항목은 건물의 내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방의 개념으로 부엌의 수를 세는 것이고, 여기서는 단지 부착된 편익시설로서의 부엌의 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독립된 출입구** 수는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조사합니다.

■ 이상으로 41개의 조사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

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표와 지침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으니 조사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조사를 진행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침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조사표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과 사례를 설명하고 오늘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 | p.67

■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살면 일반 조사표로 조사하는데요,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을 [국가명]에 적으시고, [분류번호]에는 해당 국가의 분류번호를 **부호집**에서 찾아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교재상영 (5분)

1. [2.5 시 · 도별 특성 항목]을 상영합니다. 이때, 〈각 시 · 도〉 단추 중에서 해당 시 · 도를 선택하십시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조사표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5분)

| 시 · 도별 특성항목 | p.67~68

■ 시 · 도별 특성 항목에서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청에서 사용하지 않고, 각 시 · 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각 시 · 도별로 해당 항목을 찾아 설명합니다.)

〈 강원도 〉

1.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방법]은 **세는 나이로 40살 이상부터 조사**하는 것 주의하시고요, 조사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면 됩니다. 40살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노후 준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문항에서는 주된 것 한 두 개만을 선택하였지만 이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O표 합니다.

2. 현 시 · 도 거주사유

특이한 보기는 '환경 및 건강' 인데요, 이것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요양차 이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은 생활에 유용한 시설, 예를 들면 은행, 마트, 병원 같은 것이 특별히 편리해서 거주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컴퓨터 보유 대수 및 인터넷 사용여부

요즘 노트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도 컴퓨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연결과 관련하여 집에 3대의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회선이 1개가 들어와 있는데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2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①번 '있다'에 O표 한 후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에 2를 기입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에 1을 기입하면 되겠죠!

〈 경기도 〉

1. 자녀 출산 시기

기혼 여성 본인이 직접 출산한 자녀가 있을 때 **첫째 자녀의 출산 시기와 막내의 출산 시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라면 첫째에만 적으면 되겠죠! 큰 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이더라도 둘째를 막내로 보고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망한 자녀도 포함**시켜서 조사합니다.

2.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방법]은 **세는 나이로 40살 이상부터 조사**하는 것 주의하시고요, 조사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면 됩니다. 40살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노후 준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문항에서는 주된 것 한 두 개만을 선택하였지만 이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O표 합니다.

3. 현 시 · 도 거주사유

특이한 보기는 '환경 및 건강'인데요, 이것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요양차 이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은 생활에 유용한 시설, 예를 들면 은행, 마트, 병원 같은 것이 특별히 편리해서 거주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상남도 〉

1. 자녀 출산 시기

기혼 여성 본인이 직접 출산한 자녀가 있을 때 **첫째 자녀의 출산 시기와 막내의 출산 시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라면 첫째에만 적으면 되겠죠! 큰 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이더라도 둘째를 막내로 보고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망한 자녀도 포함**시켜서 조사합니다.

2. 간호 · 수발자

[1.가구원에 관한 사항]의 ⑩번 **[활동제약] 항목에서 제약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간호와 수발을 누가하는지 조사합니다. ③번 가구원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정도라서 간호나 수발이 필요하다면 ③번 가구원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O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간호나 수발을 받는 분도 있을텐데, 이 경우에는 주된 것 2개만 선택하세요.

3.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③번 '불만족'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인 개선 필요 분야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①번 '만족'이나 ②번 '보통'을 선택하셨더라도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거나 '기타'에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고 너무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주된 것 2개만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 경상북도 〉

1.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방법]은 **세는 나이로 40살 이상부터 조사**하는 것 주의하시고요, 조사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면 됩니다. 40살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노후 준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문항에서는 주된 것 한 두 개만을 선택하였지만 이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O표 합니다.

2. 다른 시 · 도 이동사유

지난 1년간 이동한 경우만 조사하며, 몇 년 전에 이동한 것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경우도 포함시켜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3. 가구생활비 원천

'1순위'와 '2순위' 옆의 네모 칸에 아래 9개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기타' 일 경우 그 내용을 직접 기입하셔야 합니다. 1순위와 2순위까지만 있으니까 당연히 2개만 적는 것이겠죠!

〈 광주광역시 〉

1. 현 시 · 도 거주사유

특이한 보기는 '환경 및 건강' 인데요, 이것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요양차 이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은 생활에 유용한 시설, 예를 들면 은행, 마트, 병원 같은 것이 특별히 편리해서 거주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다른 시 · 도 이동사유

지난 1년간 이동한 경우만 조사하며, 몇 년 전에 이동한 것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경우도 포함시켜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3.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③번 '불만족'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인 개선 필요 분야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①번 '만족'이나 ②번 '보통'을 선택하셨더라도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거나 '기타'에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고 너무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주된 것 2개만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 대구광역시 〉

1. 다른 시 · 도 이동사유

지난 1년간 이동한 경우만 조사하며, 몇 년 전에 이동한 것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경우도 포함시켜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2. 식수 사용형태

식수는 먹는 물입니다. 밥물이나 빨래하는 물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초 주택 마련 시기 및 희망 주택 형태

현재 주택이 없으신 분도 예전에 주택이 있었다면 이 문항에 답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연도가 언제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일 경우 최초 주택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또, 이 가구에서 희망하는 주택형태를 기입하는데, 이 때 가구주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

1. 자원봉사 활동

지난 일년, 즉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2005년 10월 31일까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하신 다음에, 참여한 적이 있

다면 어느 분야에서 봉사하였는지 적절한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세는 나이로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2. 간호 · 수발자

[1.가구원에 관한 사항]의 ⑩번 **[활동제약] 항목에서 제약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간호와 수발을 누가 하는지 조사합니다. ③번 가구원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정도라서 간호나 수발이 필요하다면 ③번 가구원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O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간호나 수발을 받는 분도 있을텐데, 이 경우에는 주된 것 2개만 선택하세요.

3.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③번 '불만족'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인 개선 필요 분야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①번 '만족'이나 ②번 '보통'을 선택하셨더라도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거나 '기타'에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고 너무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주된 것 2개만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 부산광역시 〉

■ 1.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방법]은 **세는 나이로 40살 이상부터 조사**하는 것 주의하시고요, 조사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면 됩니다. 40살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노후 준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문항에서는 주된 것 한 두 개만을 선택하였지만 이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O표 합니다.

■ 2. 간호 · 수발자

[1.가구원에 관한 사항]의 ⑩번 **[활동제약] 항목에서 제약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간호와 수발을 누가 하는지 조사합니다. ③번

가구원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정도라서 간호나 수발이 필요하다면 ③번 가구원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O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간호나 수발을 받는 분도 있을텐데, 이 경우에는 주된 것 2개만 선택하세요.

■ 3. 최초 주택 마련 시기 및 방법

현재 주택이 없으신 분도 예전에 주택이 있었다면 이 문항에 답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연도가 언제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일 경우 최초 주택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

1. 자녀 출산 시기

기혼 여성 본인 직접 출산한 자녀가 있을 때 **첫째 자녀의 출산 시기와 막내의 출산 시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라면 첫째에만 적으면 되겠죠! 큰 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이더라도 둘째를 막내로 보고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망한 자녀도 포함**시켜서 조사합니다.

2. 현 시 · 군 · 구 거주사유

특이한 보기는 '환경 및 건강' 인데요, 이것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요양차 이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은 생활에 유용한 시설, 예를 들면 은행, 마트, 병원 같은 것이 특별히 편리해서 거주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다른 시 · 군 · 구 이동사유

지난 1년간 이동한 경우만 조사하며, 몇 년 전에 이동한 것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경우도 포함시켜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 〉

1. 간호 · 수발자

[1.가구원에 관한 사항]의 ⑩번 **[활동제약] 항목에서 제약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간호와 수발을 누가 하는지 조사합니다. ③번 가구원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정도라서 간호나 수발이 필요하다면 ③번 가구원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O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간호나 수발을 받는 분도 있을텐데, 이 경우에는 주된 것 2개만 선택하세요.

2. 치매 · 중풍시설 입소여부

나이가 들면 치매나 중풍에 걸리기 쉬운데요, 조사에 응하는 분 중에서 **40세 이상**인 분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 장소로 가정을 선택하신 분은 그 이유도 꼭 적어주세요.

3.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③번 '불만족'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인 개선 필요 분야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①번 '만족'이나 ②번 '보통'을 선택하셨더라도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거나 '기타'에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고 너무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주된 것 2개만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 인천광역시 〉

1.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③번 '불만족'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인 개선 필요 분야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①번 '만족'이나 ②번 '보통'을 선택하셨더라도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거나 '기타'에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고 너무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주된 것 2개만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2. 컴퓨터 보유 대수 및 인터넷 사용여부

요즘 노트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도 컴퓨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연결과 관련하여 집에 3대의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회선이 1개가 들어와 있는데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2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①번 '있다' 에 O표 한 후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에 2를 기입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에 1을 기입하면 되겠죠!

3. 최초 주택 마련 시기 및 방법

현재 주택이 없으신 분도 예전에 주택이 있었다면 이 문항에 답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연도가 언제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일 경우 최초 주택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 전라남도 〉

1.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방법]은 **세는 나이로 40살 이상부터 조사**하는 것 주의하시고요, 조사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면 됩니다. 40살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노후 준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문항에서는 주된 것 한 두 개만을 선택하였지만 이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O표 합니다.

2. 다른 시 · 도 이동사유

지난 1년간 이동한 경우만 조사하며, 몇 년 전에 이동한 것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경우도 포함시켜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3.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③번 '불만족' 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인 개선 필요 분야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①번 '만족' 이나 ②번 '보통' 을 선택하셨더라도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거나 '기타' 에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고 너무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주된 것 2개만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 전라북도 〉

1.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방법]은 **세는 나이로 40살 이상부터 조사**하는 것 주의하시고요, 조사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면 됩니다. 40살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노후 준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문항에서는 주된 것 한 두 개만을 선택하였지만 이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O표 합니다.

2. 다른 시 · 도 이동사유

지난 1년간 이동한 경우만 조사하며, 몇 년 전에 이동한 것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경우도 포함시켜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3. 컴퓨터 보유 대수 및 인터넷 사용여부

요즘 노트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도 컴퓨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연결과 관련하여 집에 3대의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회선이 1개가 들어와 있는데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2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①번 '있다' 에 O표 한 후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에 2를 기입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에 1을 기입하면 되겠죠!

〈 제주도 〉

1. 컴퓨터 보유 대수 및 인터넷 사용여부

요즘 노트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도 컴퓨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연결과 관련하여 집에 3대의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회선이 1개가 들어와 있는데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2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①번 '있다' 에 O표 한 후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에 2를 기입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에 1을 기입하면 되겠죠!

2.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③번 '불만족' 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인 개선 필요 분야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①번 '만족' 이나 ②번 '보통' 을 선택하셨더라도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거나 '기타' 에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고 너무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주된 것 2개만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3. 가구생활비 원천

'1순위' 와 '2순위' 옆의 네모 칸에 아래 9개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기타' 일 경우 그 내용을 직접 기입하셔야 합니다. 1순위와 2순위까지만 있으니까 당연히 2개만 적는 것이겠죠!

〈 충청남도 〉

1. 간호 · 수발자

[1.가구원에 관한 사항]의 10번 **[활동제약] 항목에서 제약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간호와 수발을 누가 하는지 조사합니다. ③번 가구원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정도라서 간호나 수발이 필요하다면 ③번 가구원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O표 하시면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간호나 수발을 받는 분도 있을텐데, 이 경우에는 주된 것 2개만 선택하세요.

2. 지역생활 여건 만족도

③번 '불만족' 을 선택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인 개선 필요 분야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①번 '만족' 이나 ②번 '보통' 을 선택하셨더라

도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거나 '기타'에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운 것이 많다고 너무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 주된 것 2개만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3. 최초 주택 마련 시기 및 방법

현재 주택이 없으신 분도 예전에 주택이 있었다면 이 문항에 답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연도가 언제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일 경우 최초 주택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 충청북도 〉

1.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방법]은 **세는 나이로 40살 이상부터 조사**하는 것 주의하시고요, 조사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에 O표 하시면 됩니다. 40살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노후 준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문항에서는 주된 것 한 두 개만을 선택하였지만 이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모두 O표 합니다.

2. 식수 사용형태

식수는 먹는 물입니다. 밥물이나 빨래하는 물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초 주택 마련 시기 및 방법

현재 주택이 없으신 분도 예전에 주택이 있었다면 이 문항에 답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연도가 언제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일 경우 최초 주택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 조사표 뒷면 | p.69

■ 조사표 뒷면에 있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받으시고요,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은 항목이 누락되거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 조사표류를 정리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다시 가는 것보다는 조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겠죠!

MEMO



1일차 교육 마감

이상으로 첫째 날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 두었다가 내일 마치는 시간에 별도의 질문 응답 시간이 있으니 그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교육이 시작되니, 9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일차교육

7교시

8교시

7 교시 (50분)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	1. 조사방법 2. 외국인 조사표
Ⅶ. 본조사 – 빈집 조사	1. 조사방법 2. 빈집 조사표

휴식 (10분)

* 전달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 복습

외국인 조사표의 **[가구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사표에서 설명되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필요하면 정지된 화면 우측의 각 해당 문항을 클릭하여 복습합니다.

설명이 필요없거나, 설명이 끝나면 **다음 버튼(▶ ▶)을 눌러 계속 상영**합니다.

학습준비

1.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배포한 CD를 실행시키십니다.
2.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3.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79~96)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은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조사**
  - **1) 외국인 조사 방법**
  - **2) 외국인 조사표 작성 방법**

- **빈집 조사**
  - **1) 빈집 조사 방법**
  - **2) 빈집 조사표 작성 방법**

조사표에는 전수조사표나 표본조사표와 같은 일반 조사표 외에 외국인 가구를 조사하는 **외국인 조사표**와 빈집을 조사하는 **빈집 조사표**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외국인 가구나 빈집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이버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상영 (10분)

1. **[Ⅵ. 본조사 – 외국인 조사]**를 상영합니다.
2. **상영중 [가구에 관한 사항]이 끝나면(신호음 없음) p.106 전달사항을 확인 합니다.**
3.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20분)

| 외국인조사 개요 | p.80

■ 인구주택총조사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거처를 조사한다는 것을 아시죠.

1) 따라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불법체류자도 조사해야 하고, 며칠 와 있는 사람도 조사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관, 외국 군인,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파견되어 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조사방법 | p.80~82

■ 잘 보셨나요! 가구를 방문했을때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당황해 하지 마시고, 여기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차분히 조사하시고, 복잡한 경우가 있다면 지침서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면, 외국인만 살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외국인에게 직접 조사표를 주고, 본인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쉽죠! 그냥 주고 받으면 되니까!

(**[정지화면]** 메뉴의 22번, **[외국인 가구 구분]**을 누르십시오.)

■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한국인과 외국인이 각기 별도의 가구를 이루어서 사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가구가 아니라 한 가구를 이루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한 거처에 한국인 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① **한국인 가구는 일반조사표**로 조사
② **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조사표**로 조사

이 때 주택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외국인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한국인 가구가 세들어 사는 경우라도) 대표가구는 한국인 가구로 합니다.

	한국인 가구	외국인 가구
조 사 표	일반 조사표	외국인 조사표
주인(대표)가구 여부	○	×
가구 번호	001	002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 개의 가구를 이루어서 살고 있을 경우

① **일반조사표**로 함께 조사

이 때 가구주는 한국인으로 합니다.

	한국인	외국인
조 사 표	일반 조사표	일반 조사표
가 구 주	○	×

| 외국인조사표-관리사항 | p.83

자, 다시 조사표입니다. 앞에서 조사표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할 외국인 조사표는 쉬울 것입니다.

■ 외국인조사표에도 주소와 조사구번호 같은 것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조사표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다른 항목은 **'가구구분'** 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가구가 주인가구나 대표가구이면 ①번 '주인(대표) 가구' 에 O표 하시고, 주인가구나 대표가구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가구, 즉 동거가구이면 ②번 '동거가구' 에 O표 하십시오. 단, 종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외국인 가구와 한국인 가구가 같이 사는 경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 가구가 대표가구**가 됩니다.

■ 이제 외국인조사표 항목을 한 개씩 살펴볼까요!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p.84~87

■ 외국인조사표는 크게 두 가지, [1.가구원에 관한 사항]과 [2.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구원에 관한 사항 중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번 [**성명**]은 영어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단 지역 같은 곳에 가면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체류의 적법 및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안심해도 괜찮다는 것을 설명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유도하십시오.

■ 4번 [**교육정도**] 항목에서 우리나라와 교육제도가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12학년까지 다녔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해서 해당 보기에 O표 하시면 됩니다. 즉, 12학년이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 5번 [**국적**]항목을 볼까요? 그럼, 한국인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국적일까요? 외국국적일까요? 국적은 현 취득국적을 표시하므로, 이럴 경우는 외국국적에 해당되어 외국인 조사표로 조사합니다.

[국적] 항목의 보기를 자세히 보시면 중국, 중국(조선족), 중국(대만)으로 분리되어 있으니,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본토에서 왔는지, 조선족인지, 대만(타이페이)에서 왔는지 물어보시고, 해당 보기에 O표 하세요.

■ 6번 **[주된 체류 목적]**에서 목적이 여러가지이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시고, 여권이나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입국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입국 목적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조선족이 관광으로 입국한 후 취업을 했다면 ②번 '취업' 에 O표 하셔야 합니다.

■ 7번 **[직업]**과 8번 **[거주기간]**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다음에는 [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에 관한 사항 | p.87~90

■ 가구에 관한 사항에 있는 항목은 일반조사표의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에 있는 항목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링크로 걸어 놓았으므로 교관의 재량에 따라 다시 복습하십시오.)
(1.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2. 점유 형태)
(3. 사용방수)
(4. 주거 시설 형태)

■ 지금까지 외국인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빈집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상영 (5분)

1. [Ⅶ. 본조사 – 빈집 조사]를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5분)

| 빈집 조사 개요 | p.92

■ 사이버교재를 보셨는데요, 빈집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빈집이 많기 때문에 빈집 조사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화면] 메뉴의 23번, [빈집 조사대상]을 누르십시오.)

■ 빈집의 요건 중에서 다소 혼동되는 것은 다가구단독주택, 신축중인 주택, 별장인데요,

1) 다가구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아니라 모든 가구가 비어 있어야 빈집이고,
2) 신축중인 주택은 사람이 아예 살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고,
3) 별장의 경우 관리인이 살고 있으면 빈집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서 조사해 주세요!

| 빈집 조사방법 | p.92

■ 빈집에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조사는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빈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수소문해서 주인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주인을 만나고, 주인이 멀리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 현재 입주를 하지 않은 빈집은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빈집조사표-관리사항 | p.93

■ 빈집조사표에는 **빈집일련번호**와 **거처번호**가 있는데요,

1) 빈집일련번호

빈집일련번호에는 해당 조사구 안에서 파악된 빈집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가령, 10개가 있으면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2) 거처번호

거처번호에는 가구명부에 기입되어 있는 거처번호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준비조사 때에 이미 빈집을 조사했었죠! 그 때 가구명부에 적어 놓은 거처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3) 빈집 일련번호 ≠ 거처번호

빈집 인련번호는 빈집에만 붙는 번호이고 거처번호는 빈집 뿐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에 붙는 번호이므로 이 둘은 당연히 다르다는 것 이해하시죠!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리고 **빈집조사항목(빈집(주택)의 종류, 비어 있는 기간, 빈집사유, 빈집 파손 정도)이 동일한 빈집**이 연이어서 있다면, 물결 표시(~) 기호를 사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구조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이거나 연속된 여러 주택이 철거되어 빈집인 경우가 해당되겠죠. 가령, 빈집조사항목이 모두 동일한 5채의 일반단독주택이 연속해서 비어 있으면 [빈집일련번호]에 1~5와 같이 기입하고, [거처번호]에는 가구명부에 기입되어 있는 거처번호를 적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가 연속되어 있겠죠? 가령 16번

에서 20번까지로 되어 있으면 16~20과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빈집일련번호와 거처번호의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이에 주의하십시오.

| 빈집조사표-조사항목 | p.94~96

■ 1번 **[빈집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었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목차에서 '조사대상'을 클릭해 거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빈집의 종류가 다가구 단독주택인 경우 총 몇 가구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하셔야 합니다.

■ 4번 **[파손]**과 관련해서는, 주택의 수명이 다 되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낡았거나 파손된 경우에만 ③번 '반 이상 파손'에 O표 하십시오. 폐가도 이에 해당됩니다.

■ 이상으로 모든 조사표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휴식 (10분)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분 동안 쉬셨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시간만 더 하면 됩니다.

8 교시 (50분)

Ⅷ. 본조사 – 가구명부	1. 가구명부 작성(2)
Ⅸ.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1.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본조사 가상체험	
Ⅹ. 부록	1. 인터넷 조사 2. 주택정보 이용 안내

질의 응답 및 교육 마무리

* 전달 사항 *

학습준비

1. [Ⅷ. 본조사 – 가구명부] 시작화면에서 대기합니다.
2. 학습목표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목표 (지침서 p.76~78, p.97~104, p.114~122)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니, 모르는 것은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명부 작성방법(2)
2.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방법
3. 부록
- 인터넷 조사
- 주택정보 이용방법

그럼, 사이버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상영 (5분)

1. [Ⅷ. 본조사 – 가구명부]를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가구명부를 보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가구명부 양식 – 앞면 | p.76~77

([정지화면] 메뉴의 24번, [가구명부 – 앞면]을 누르십시오.)

■ 준비조사 때 가구명부를 일부 작성하셨죠! 기억나세요. 그 때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 비고란을 채웠었죠. 본조사 때는 가구명부를 완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작성이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 **가구명부에 기입할 내용**을 사실 조사표에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표와 비교**하면서 하나씩 적어주시고, 이 때 조사표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더 좋겠죠! 그러는 가운데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해당 가구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구요.

■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1) 조사구요도 매수

'조사구요도 매수' 는 동일한 조사구 요도는 한장으로 셈하며 부분확대도 등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가구종류

'가구종류' 는 가구번호가 부여된 가구는 모두 기입합니다.

3) 거처종류

'거처종류' 는 가구번호가 '001' 인 가구만 기입 합니다.

4) 농림어가 여부

'농림어가 여부' 의 경우 조사표의 표지에서도 조사했잖습니까. 농

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면 **농가와 어가에 모두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항목에 모두 O표 해 주시면 됩니다.

■ 빈집의 경우, 빈집이니까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거처번호'와 '주소'는 준비조사 때 적었을 것이고, 본조사 때는 **'거처종류'**와 **'빈집여부'**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잘 잊어버리는 내용이니까 메모해 두셨다고 꼭 지켜 주십시오.

■ 준비조사 때 거처와 가구를 조사하지만 실제 본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처나 가구가 누락**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되어 있는 것을 가구명부의 마지막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간혹, 순서를 맞추어야 될 것 같아서 새로 작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구명부 마지막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 가구명부 양식 – 뒷면 | p.78

([정지화면] 메뉴의 25번, [가구명부 – 뒷면]를 누르십시오.)

■ 가구명부의 뒷면에는 **집계표**가 있습니다. 이 집계표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것을 항목별로 세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집계가 모여서 결국 총 집계가 이루어지고, 사용되는 것이니, 집중해서 잘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가구명부가 여러 장일 경우 집계표는 가장 마지막 장에만 기입하니 유의하십시오. 즉 가구명부 장별로 집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구별로 집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상영 (5분)

1. [Ⅸ.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을 상영합니다.
2.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각 조사표류를 비교하며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p.104

보름동안 힘들게 조사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죠. 사이버교재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제출할 조사표는 지금까지 조사한 **조사표, 가구명부 2매, 조사구요도 2매, 조사요원증**입니다.

■ 조사표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조사구요도, 조사표, 가구명부에서 일치해야 하는 것은
1) 조사구번호
2) 조사구별 총거처수 및 총가구수

이니 유의하십시오.

조사표와 **가구명부**에서 일치해야 하는 것은
1) 거처번호
2) 가구번호

3) 가구주 및 가구원수(남, 여)
4) 조사표의 가구에 관한 사항 중 '가구구분'과 가구명부의 '가구종류'
5) 조사표의 주택에 관한 사항 중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의 거처의 종류와 가구명부의 '거처종류'
6) 가구당 조사표 부수의 합과 가구명부상에 기입된 조사표 부수

가 같아야 하므로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류 정리와 확인이 끝나면 조사구별로 정리해서 조사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총관리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이 끝나면 모든 조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상현실 3D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3D를 보시면서 조사 업무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D 상영이 끝난 다음에 부록으로 인터넷조사와 주택정보에 대해서 잠깐 교육하고, 사례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전체 교육을 끝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상영 (10분)

1. [2. 본조사 가상체험]을 상영합니다.
2. 가상체험이 끝나면 [X. 부록]을 상영합니다.
3. 신호음과 함께 자동정지가 되면, 추가설명을 합니다.

추가설명 (10분)

| 인터넷 조사 개요 | p.98

- 인구주택총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응답자 기입방식과 인터넷 조사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조사**는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가구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사로 하겠다고 신청한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이버교재를 한 번 볼까요!

| 주요단계별 실시방법 | p.99~102

- 인터넷 조사 희망가구의 신청 기간이 보시다시피 10월 29일에서 11월 7일까지입니다. 즉, 준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되어 조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1일 이후에도 인터넷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사원 여러분은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 안에 인터넷 조사를 신청한 가구가 있는지 총관리자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준비조사 기간 동안에 인터넷 조사로 응답하겠다고 한 가구가 있을 텐데, 이들 가구의 조사표 작성은 11월 10일까지 유보했다가 11월 10일 이후에 인터넷 조사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한 후 인터넷 조사를 하지 않은 해당 가구는 방문하여 종이 조사표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구명부 '비고' 란에 기입되어 있는 '인터넷' 에 두 줄을 긋습니다.

■ 인터넷 조사를 신청한 가구가 입력한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르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총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조사 대상 가구라고 해서 가구명부에 거처번호나 가구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인터넷 조사 대상 가구도 가구명부상에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기입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인터넷 조사 입력 기간의 만료일인 11월 10일 이후에 인터넷 조사 입력가구 현황표를 출력하여 가구명부와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 조사 입력가구의 조사표는 표지만을 작성하고, '비고' 란에 '인터넷' 이라고 기재한 후 조사표류를 정리할 때 해당 거처 및 가구번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때 인터넷 조사 입력가구의 가구수가 6인 이상인 경우 조사표 2부를 사용하며, '비고' 란에도 '인터넷' 이라고 기입합니다.

■ 이상으로 인터넷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실제 조사표를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므로 조사원 여러분은 전체적인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주택정보이용방법 | p.114~122

■ **주택정보**는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한 정보이며, 조사표의 [3. 주택에 관한 사항]에 있는 항목을 조사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정보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주소, 건물명칭, 건물번호, 아파트명, 아파트 평형, 주택의 종류, 건축년도, 대지면적, 층별 면적, 층수, 연건평, 건축년도, 난방방식, 방수, 화장실수, 부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택정보에만 의존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정보가 수집될 당시와 조사 기준 시점인 2005년 11월 1일의 데이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준비조사나 본조사에서 이 주택정보를 잘 활용해서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택정보에서 제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므로 자료취급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주택정보 이용방법을 끝으로 집합교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2일 동안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을 질문받고 답변해 주는 시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이버교재를 다시 상영하면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32-9

200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5 인구주택총조사
부 호 집

2005. 11

통계청

목 차

Ⅰ. 연령조견표 1

Ⅱ. 종교분류부호 3

Ⅲ. 국가분류부호 5

Ⅳ. 산업분류 7

Ⅳ-1. 산업분류 작성요령 9

Ⅳ-2. 산업분류 항목명칭 16

Ⅴ. 직업분류 43

Ⅴ-1. 직업분류 작성요령 45

Ⅴ-2. 직업분류 항목명칭 53

Ⅵ. 행정구역분류 83

Ⅵ-1. 시군구부호(5년전 거주지용) 85

Ⅵ-2. 행정구역분류부호 88

1. 서울특별시 89
2. 부산광역시 93
3. 대구광역시 95
4. 인천광역시 97
5. 광주광역시 99
6. 대전광역시 100
7. 울산광역시 101
8. 경 기 도 102
9. 강 원 도 107
10. 충청북도 109
11. 충청남도 111
12. 전라북도 113
13. 전라남도 115
14. 경상북도 118
15. 경상남도 121
16. 제 주 도 124

Ⅰ. 연 령 조 견 표

※ 음력 12월 또는 양력 1월생은 세는 나이(연도)와 띠(간지)가 조견표와 서로 다를수 있습니다.

세는 나이	연도(양력)	띠	간지	세는 나이	연도(양력)	띠	간지	세는 나이	연도(양력)	띠	간지
1	2005	닭	을유	41	1965	뱀	을사	81	1925	소	을축
2	2004	원숭이(잔나비)	갑신	42	1964	용	갑진	82	1924	쥐	갑자
3	2003	양	계미	43	1963	토끼	계묘	83	1923	돼지	계해
4	2002	말	임오	44	1962	범	임인	84	1922	개	임술
5	2001	뱀	신사	45	1961	소	신축	85	1921	닭	신유
6	2000	용	경진	46	1960	쥐	경자	86	1920	원숭이(잔나비)	경신
7	1999	토끼	기묘	47	1959	돼지	기해	87	1919	양	기미
8	1998	범	무인	48	1958	개	무술	88	1918	말	무오
9	1997	소	정축	49	1957	닭	정유	89	1917	뱀	정사
10	1996	쥐	병자	50	1956	원숭이(잔나비)	병신	90	1916	용	병진
11	1995	돼지	을해	51	1955	양	을미	91	1915	토끼	을묘
12	1994	개	갑술	52	1954	말	갑오	92	1914	범	갑인
13	1993	닭	계유	53	1953	뱀	계사	93	1913	소	계축
14	1992	원숭이(잔나비)	임신	54	1952	용	임진	94	1912	쥐	임자
15	1991	양	신미	55	1951	토끼	신묘	95	1911	돼지	신해
16	1990	말	경오	56	1950	범	경인	96	1910	개	경술
17	1989	뱀	기사	57	1949	소	기축	97	1909	닭	기유
18	1988	용	무진	58	1948	쥐	무자	98	1908	원숭이(잔나비)	무신
19	1987	토끼	정묘	59	1947	돼지	정해	99	1907	양	정미
20	1986	범	병인	60	1946	개	병술	100	1906	말	병오
21	1985	소	을축	61	1945	닭	을유	101	1905	뱀	을사
22	1984	쥐	갑자	62	1944	원숭이(잔나비)	갑신	102	1904	용	갑진
23	1983	돼지	계해	63	1943	양	계미	103	1903	토끼	계묘
24	1982	개	임술	64	1942	말	임오	104	1902	범	임인
25	1981	닭	신유	65	1941	뱀	신사	105	1901	소	신축
26	1980	원숭이(잔나비)	경신	66	1940	용	경진	106	1900	쥐	경자
27	1979	양	기미	67	1939	토끼	기묘	107	1899	돼지	기해
28	1978	말	무오	68	1938	범	무인	108	1898	개	무술
29	1977	뱀	정사	69	1937	소	정축	109	1897	닭	정유
30	1976	용	병진	70	1936	쥐	병자	110	1896	원숭이(잔나비)	병신
31	1975	토끼	을묘	71	1935	돼지	을해	111	1895	양	을미
32	1974	범	갑인	72	1934	개	갑술	112	1894	말	갑오
33	1973	소	계축	73	1933	닭	계유	113	1893	뱀	계사
34	1972	쥐	임자	74	1932	원숭이(잔나비)	임신	114	1892	용	임진
35	1971	돼지	신해	75	1931	양	신미	115	1891	토끼	신묘
36	1970	개	경술	76	1930	말	경오	116	1890	범	경인
37	1969	닭	기유	77	1929	뱀	기사	117	1889	소	기축
38	1968	원숭이(잔나비)	무신	78	1928	용	무진	118	1888	쥐	무자
39	1967	양	정미	79	1927	토끼	정묘	119	1887	돼지	정해
40	1966	말	병오	80	1926	범	병인	120	1886	개	병술

Ⅱ. 종 교 분 류 부 호

종 교 명	부 호
불 교	1
기독교(개신교)	2
기독교(천주교)	3
유 교	4
원 불 교	5
증 산 교	6
천 도 교	7
대 종 교	8
금강대도	9
미륵대도	10
이슬람교	11
천 리 교	12
한국SGI(창가학회)	13
기 타	98
미 상	99

※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성공회, 통일교, 영생교, 천부교, 영주교 등은 개신교로 분류
※ 대순진리회, 증산도, 태극도, 순천도, 청우일신회 등은 증산교로 분류
※ 수운교는 천도교와 같이 분류
※ 한국바하이는 이슬람교로 분류

Ⅲ. 국 가 분 류 부 호

국 가 명	부 호	국 가 명	부 호	국 가 명	부 호
중 국	1	미 얀 마	36	이 탈 리 아	71
중 국 (조 선 족)	2	베 네 수 엘 라	37	인 도	72
중 국 (대 만)	3	벨 기 에	38	체 코	73
미 국	4	벨 로 루 시	39	칠 레	74
일 본	5	볼 리 비 아	40	카 메 룬	75
필 리 핀	6	불 가 리 아	41	카 자 흐 스 탄	76
인 도 네 시 아	7	브 라 질	42	캄 보 디 아	77
태 국	8	사 우 디 아 라 비 아	43	캐 나 다	78
베 트 남	9	수 단	44	케 냐	79
방 글 라 데 시	10	스 리 랑 카	45	코 트 디 부 아 르	80
몽 골	11	스 웨 덴	46	콜 롬 비 아	81
우 즈 베 키 스 탄	12	스 위 스	47	콩 고	82
러 시 아 (한 국 계 포 함)	13	스 페 인	48	크 로 아 티 아	83
파 키 스 탄	14	슬 로 바 크	49	키 르 기 스 스 탄	84
가 나	15	시 리 아	50	타 지 키 스 탄	85
과 테 말 라	16	싱 가 포 르	51	터 키	86
그 리 스	17	아 르 메 니 아	52	파 라 과 이	87
나 이 지 리 아	18	아 르 헨 티 나	53	페 루	88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19	아 일 랜 드	54	포 르 투 갈	89
네 덜 란 드	20	아 프 가 니 스 탄	55	폴 란 드	90
네 팔	21	알 제 리	56	프 랑 스	91
노 르 웨 이	22	앙 골 라	57	핀 란 드	92
뉴 질 랜 드	23	에 콰 도 르	58	헝 가 리	93
덴 마 크	24	에 티 오 피 아	59	북 한	97
도 미 니 카 공 화 국	25	영 국	60	기 타	98
독 일	26	오 스 트 레 일 리 아	61	미 상	99
라 오 스	27	오 스 트 리 아	62		
라 이 베 리 아	28	요 르 단	63		
라 트 비 아	29	우 간 다	64		
루 마 니 아	30	우 크 라 이 나	65		
리 비 아	31	유 고 슬 라 비 아	66		
말 레 이 시 아	32	이 라 크	67		
멕 시 코	33	이 란	68		
모 로 코	34	이 스 라 엘	69		
몰 도 바	35	이 집 트	70		

Ⅳ. 산업분류

Ⅳ-1. 산업분류 작성요령

Ⅳ-2. 산업분류 항목명칭

Ⅳ-1. 산업분류 작성요령

1. 사업체명 기입요령

가. 법인기호는 사용하지 말 것

법인형태	기업명칭	틀 린 예 시(×)	바른 예시(○)
주식회사	보람물산	(주)보람물산, 주식회사보람물산, 주)보람물산, 보람물산(주)	보람물산
합자회사	희망물산	(합)보람물산, 합자회사보람물산, 합자)보람물산, 보람물산(합)	희망물산
합명회사	미래물산	(합)보람물산, 합명회사보람물산, 합명)보람물산, 보람물산(합)	미래물산
유한회사	성공물산	(유)성공물산, 유한회사성공물산, 유)성공물산, 성공물산(유)	성공물산
재단법인	효 은	(재)효은, 재단법인효은, 재)효은, 효은(재),효은재단법인	효은
사단법인	희망연구원	(사)희망연구원, 사단법인희망연구원, 사)희망연구원	희망연구원

나. 정확한 사업체명칭 쓰기

○ 사업체명칭은 생략하지 말것

기업(법인)명칭	틀 린 예 시(×)	바 른 예 시(○)
한국전력	한전	한국전력
성균관대학교	성대	성균관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체명을 정확히 기입할 것

기 업 명 칭	틀 린 예 시(×)	바 른 예 시(○)
○○전자	○○전자, ○○전자구미공장	○○전자구미1공장
○○물산	○○물산	○○물산인천지사
○○공사	○○공사	○○공사충청지역본부
○○산업	○○산업	○○산업광주영업소
○○화학	○○화학, ○○화학필름공장	○○화학필름2공장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부산점

다. 사업체명칭이 아닌 기호는 사용하지 말 것[() - ; :) / , .]

기 업 명 칭	틀 린 예 시(×)	바 른 예 시(○)
B.T.M	B.T.M	BTM
SK	S.K	SK
대림E.M.B	대림E.M.B	대림EMB
대우양산공장	대우/양산	대우양산공장

2. 산업분류개요

가. 분류 개념

○ 산업분류는 "국내의 모든 생산주체(사업체)들이 수행하는 각종 산업(생산)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유형화)한 것"
즉, 동일 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의 경제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성을 갖는 산업활동별 집합(Group)"이라 할수 있음

나. 분류목적

○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작성 목적
○ 통계자료의 정확성, 일관성, 비교성 확보
○ 산업관련 통계작성 및 이용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을 체계있게 분석

다. 산업분류에 적용된 분류기준

○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사항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 산출물의 수요처 및 판매시장
- 산출물의 용도

○ 산출물 생산에 사용된 투입물(생산요소)의 특성에 관한 사항
- 원재료
- 생산시설, 생산과정, 생산방법 및 생산기술 등

○ 개별 생산주체(사업체)내에서 수행되는 생산활동(내용)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 특정 산업영역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이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물을 산출하는 일련의 생산활동 과정 및 내용의 결합 형태

라. 산업결정 방법 및 원칙

(1)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일반적으로 개별사업체(생산주체)의 생산활동은 "주된 활동", "부차적 활동", "보조적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짐

○ 주된 활동
- 각 사업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 개념에 근사한 수입액 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 활동.
- 주된 활동결과로 얻어지는 생산물은 주된 생산품과 부산물임(예 : 도정업체의 정미와 겨 생산)

○ 부차적 활동
-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면서 주된 활동이 아닌 경우 (예 : 빵과 과자 제조)
- 대부분의 경제단위는 약간의 부차적 생산물을 생산한다.

○ 보조적 활동

- 모든 사업체에서 수행되는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은 여러 가지 보조활동(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본사, 지점; 자사내의 운송, 저장, 구매 및 판매촉진, 수리 등)의 지원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
- 이러한 보조활동의 특성은 그 산출물이 동일 주체 내에서 중간에 소비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는다.

(2) 산업분류 결정원칙

○ 이상적으로는 각 생산주체의 주된 생산품 또는 서비스는 판매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 부가가치는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분할하여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업체의 "총생산액"에 대한 "생산 또는 공급되는 각종 재화 또는 서비스별 생산액"의 비율(부가가치를 대치할 수 있는 것)이 큰 활동부문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결정
-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

3. 산업분류 기입방법

구 분	조사 해야 할 사항
농업·축산업	① 농업은 재배작물종류, 노지 또는 시설재배 여부 ② 축산은 사육 동물의 이름
어 업	① 바다, 민물어업 구분 ② 원양, 근해, 연안 구분 ③ 양식, 자연어업 구분
광 업	생산광물종류 : 연탄, 석회석, 건설용 석재, 장석, 흑연 등 구분
제 조 업	가능한 경우 제품원재료, 제품명칭 및 종류, 제품용도, 제조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입 ① **음식료품** : 재료(해산물, 육지동물, 과실 및 채소 등 구분), 제품종류(구체적으로) ② **섬유제품** : 제품의 종류(실, 원단, 의복, 천막, 이불, 융단, 장갑, 모자 등) - 원단 : 가공방법(편조, 직조) - 모자, 장갑 등 : 재료(섬유, 비닐, 가죽 등) - 의복 : 재료(섬유, 가죽, 모피), 용도(정장, 내의, 한복, 평상복, 체육복 등) -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염색 및 표백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③ **종이제품** : 제품의 종류, 가공단계(펄프, 종이원지, 종이제품) ④ **화학제품** : 제품의 종류, 제품의 용도 - 일반적 제품 : 제품의 종류만 기입(비료, 농약, 의약품, 화장품, 주방세제 등) - 공업용 제품 : 제품의 정확한 명칭, 재료, 제품의 사용처, 제품의 종류 ⑤ **고무, 플라스틱, 유리, 요업제품** : 제품의 종류 및 구체적 용도 ⑥ **금속제품** : 재료(철, 구리, 아연 등), 가공방법(제련, 압연, 주조, 단조), 종류 및 용도 ⑦ **기계류** : 제품의 종류, 용도 및 사용처(건설용, 농업용, 섬유용, 가정용 등) ⑧ **가구류** : 제품의 재료(나무, 플라스틱, 금속), 용도(주방용, 침대, 장롱 등) ※기계, 운송장비, 가전 등 **각종 부속품**은 명칭, 재료, 용도 및 사용처, 가공방법 등을 기입
건 설 업	①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부분 건설업) ② 전문건설업인 경우 공사분야 기입 - 전문건설업 : 냉난방공사, 미장공사, 전기공사, 내장공사, 창호공사 등
도·소매업	① 도매, 소매 구분 ② 판매상품(대표적인 것) ③ 중고품 판매시 "중고"표기 ④ 매장이 없이 배달 또는 방문판매시 표기
음 식	①일반음식점, 간이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주요 취급 음식 기입 ② 포장마차 등 매장없는 이동식 음식점은 이동식으로 표기
숙 박 업	호텔, 여관, 여인숙, 유스호스텔, 산장, 기숙사 등으로 기입
운 송 업	① 항공, 육상, 해상, 내륙수상으로 구분 ② 시내, 시외, 직장버스, 전세, 택시 구분 ③ 화물용, 여객용 구분 ④ 정기 및 부정기 구분 ⑤ 외국항 운송 및 내항운송 구분
보 험 업	보험회사와 **보험 모집대리** 사업체를 구분
부 동 산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구분(예: 주택임대, 상업용 건물 임대 등)
교육서비스	① 고등학교(일반고, 상업고, 공업고, 예술고 등 구분) ② 특수학교(신체 또는 정신 관련 여부 구분) ③ 외국인 학교 ④학원(학원의 유형과 교육내용을 기입)
병 원	① 병원과 의원 구분(30인 이상 입원시설기준) ② 의원은 진료과목 기입
기타 서비스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사업내용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기입

4. 산업분류 기입예시

잘못된 표기	바른 표기	
<예시 1> 농업		
직장 · 사업체 이름 농사 주된 사업 내용 밭농사	→ 직장 · 사업체 이름 농사 주된 사업 내용 수박 재배 하우스 재배	•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 업종명이나 주요 취급상품 또는 제공 서비스 등을 기입 • 주로 재배하는 농산물 명칭을 기입하고 시설재배 여부를 기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예시 2> 어업		
직장 · 사업체 이름 ○○산업 주된 사업 내용 어업	→ 직장 · 사업체 이름 ○○산업 주된 사업 내용 원양어업 바다에서 참치 잡음	• 어업장소(바다, 민물, 및 원양, 근해, 연안)를 기입하고 양식여부를 기입 ※0511 해면어업
<예시 3> 광업		
직장 · 사업체 이름 ○○광업 주된 사업 내용 광물 채굴	→ 직장 · 사업체 이름 ○○광업 제천광업소 주된 사업 내용 석회석 채굴 시멘트 원료로 사용	• 사업체명으로 산업대분류 판단 가능 • 광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입 • 용도를 참고적으로 기입하면 산업분류에 유용 ※12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예시 4> 제조업 1		
직장 · 사업체 이름 ○○전자 주된 사업 내용 가전제품 제조	→ 직장 · 사업체 이름 ○○전자 수원공장 주된 사업 내용 가정용 냉장고, 세탁기 제조	• 포괄적인 제품명칭이 아닌 구체적인 제품의 명칭을 기입 • 제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대표적인 제품을 기입 ※29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예시 5> 제조업 2		
직장 · 사업체 이름 ○○기업 주된 사업 내용 배관용(관류)	→ 직장 · 사업체 이름 ○○기업 창원공장 주된 사업 내용 알루미늄제 강관 제조 압출방법으로 가공	• 제품의 명칭 및 원재료를 함께 기입 (재료 : 플라스틱, 철 및 비철,콘크리트 등) • 가공방법을 참고적으로 기입하면 산업분류에 유용 ※27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잘못된 표기	바른 표기	

<예시 6>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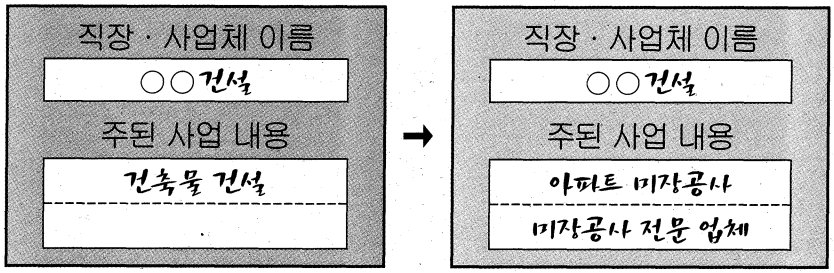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산업대분류 판단 가능
- 주로 건축하는 대상물과 전문공사분야를 기입. 전문 건설사업체는 건축물의 특정부분만 건설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체 규모가 다소 작음.

※46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예시 7> 도매 및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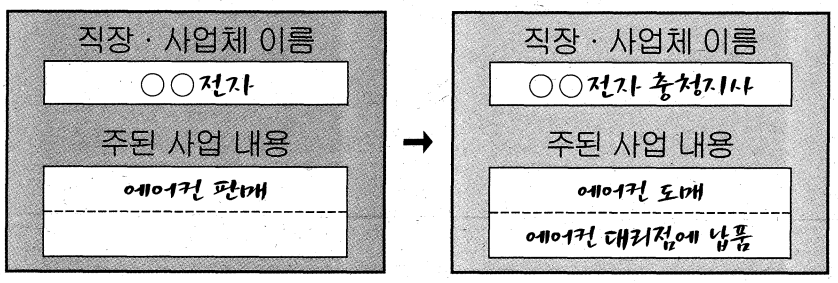

- 판매상품과 도매 및 소매여부를 구분하여 기입(판매상품이 다양한 경우 주요상품을 몇 가지 기입)

※5143 가전제품 도매업

<예시 8> 도매 및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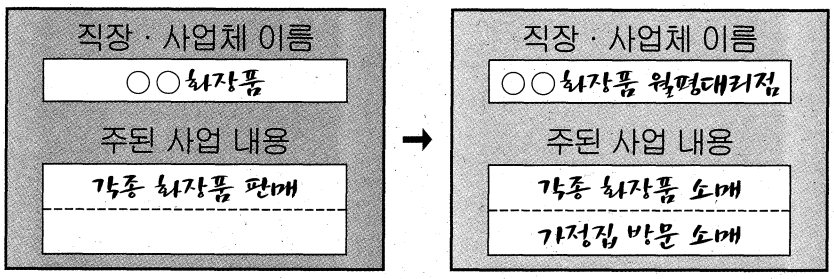

- 판매상품과 함께 매장 판매 및 방문 판매를 구분(우유, 신문, 화장품, 서적 등은 방문판매가 많음)

※5289 기타 무점포 소매업

<예시 9> 운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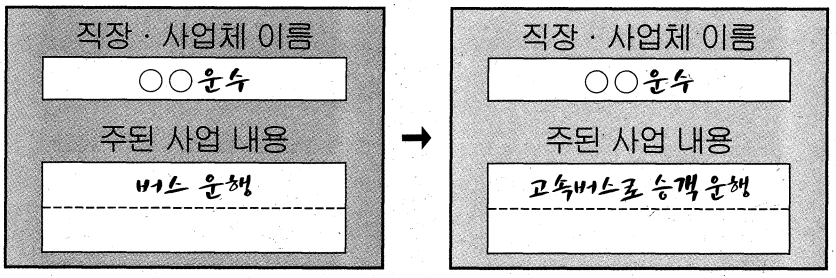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산업대분류 판단 가능
- 운송수단을 기입하고 정기 및 부정기운행을 구분(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자세히 구분하여 기입)

※6022 시외버스 운송업

<예시 10> 금융 및 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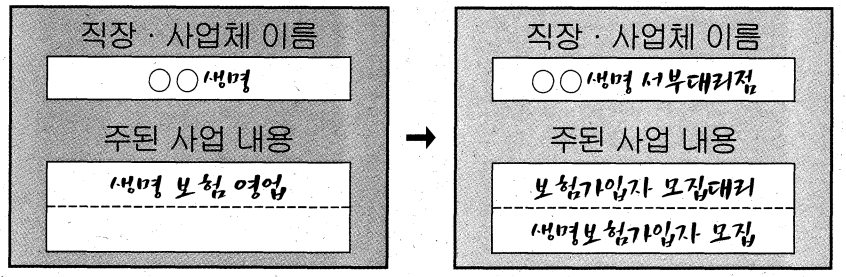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산업대분류 판단 가능
- 보험업은 모집대리와 보험운영업체를 반드시 구분(생명보험업은 모집대리사업체가 많음에 유의)

※67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잘못된 표기	바른 표기	

<예시 11> 부동산 및 임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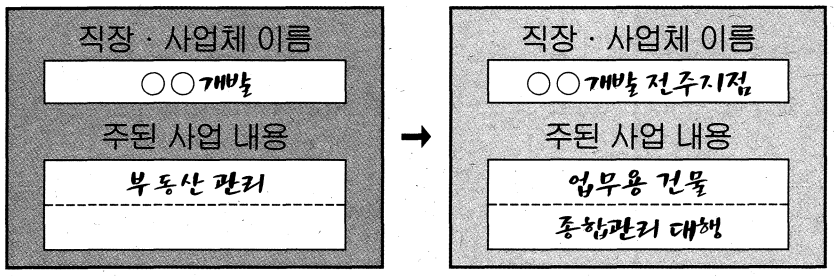

-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특정용역만 수행하는 경우도 많음
  예)청소용역, 전기관리, 경비용역 등

※7021 부동산 관리업

<예시 12> 교육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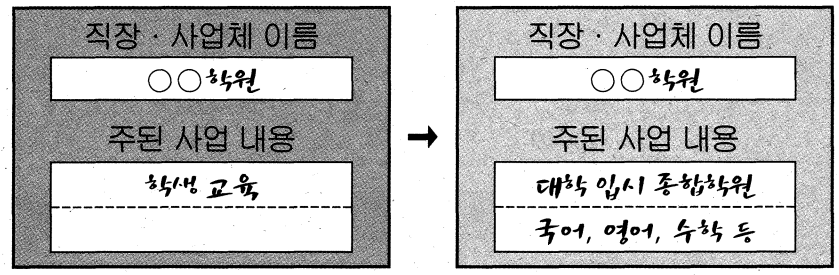

- 사업체명으로 산업대분류 판단 가능
- 학원의 유형과 교육내용을 기입

※8093 일반 교습 학원

<예시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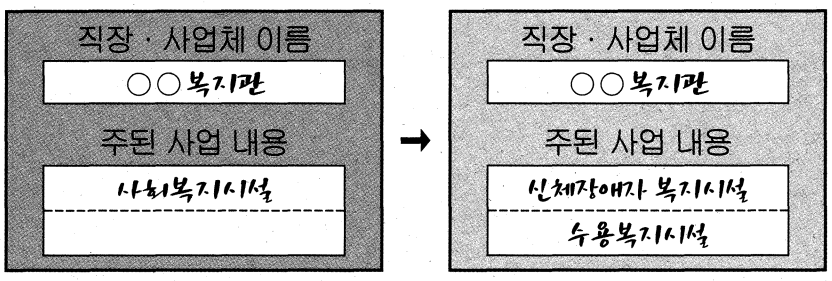

- 복지제공대상과 수용시설 여부를 기입(아동, 노인, 신체 및 정신 장애자 등 대상 기입)

※8612 심신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Ⅳ-2. 산업분류 항목명칭

분류부호	분 류 명
	〔A 농업 및 임업(01~02)〕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 사육업
01231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0141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01410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0142	작물재배 관련서비스업
01421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
01422	농산물 선별, 건조 및 기타 처리장 운영업
01429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0143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30	축산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020	임업
0201	영림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13	야생 임산물 채취업
0202	벌목업
02020	벌목업
0203	임업관련 서비스업
02030	임업관련 서비스업
	〔B 어업(05)〕
05	어업
051	어로 어업
0511	해면 어업
05111	원양 어업
05112	근해 어업
05113	연안 어업
0512	내수면 어업
05120	내수면 어업
052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1	양식어업
05211	해면 양식 어업

분류부호	분 류 명
05212	내수면 양식 어업
05213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0522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20	어업관련 서비스업
	〔C 광업(10~12)〕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01	석탄 광업
1011	유·무연탄 광업
10111	유무연탄 채굴업
10119	연탄 및 기타 응집 유무연탄 생산업
1012	갈탄 및 토탄 광업
10120	갈탄 및 토탄 광업
102	원유, 천연가스 채굴 및 관련서비스업
102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02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02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10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103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03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030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1	금속 광업
111	철 광업
1110	철 광업
11100	철 광업
112	비철금속 광업
1120	비철금속 광업
11201	금·은 및 백금광업
11202	연 및 아연광업
11209	기타 비철금속 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121	토사석 광업
12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12111	석회석 광업
12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12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12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12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12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2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221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12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1222	소금 채취업
12220	소금 채취업
12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2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D 제조업(15~37)〕
15	음·식료품 제조업
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511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11	도축업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2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15139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52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1520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152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53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153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15312	곡물 제분업
153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53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532	전분 및 당류 제조업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5322	당류 제조업
1533	사료 제조업
15330	사료 제조업
154	기타 식품 제조업
1541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11	빵류 제조업
15412	떡류 제조업
15413	곡분과자 제조업
1542	설탕 제조업
15420	설탕 제조업
1543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30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4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40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5452	장류 제조업
15453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15454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491	커피 가공업
15492	차류 가공업
154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54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95	인삼식품 제조업
15496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5497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4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5	음료 제조업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1	주정 제조업
15512	소주 제조업
155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2	발효주 제조업
155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2	청주 제조업
1552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1	맥아 제조업
15532	맥주 제조업
1554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5541	얼음 제조업
15542	생수 생산업
15549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60	담배 제조업
1600	담배 제조업
16001	담배 재건조업
16002	담배제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171	제사 및 방적업
1710	제사 및 방적업
17101	제사 및 견 방적업
17102	면 방적업
17103	모 방적업
17104	화학섬유 방적업
17105	연사제조 및 실 가공업
17109	기타 방적업
172	직물 직조업
1720	직물 직조업
17201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7202	면직물 직조업
17203	모직물 직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17204	견직물 직조업
1720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73	편조업
1731	원단 편조업
17310	원단 편조업
1732	편조의복 및 기타 편조제품 제조업
17321	편조의복 제조업
17322	스타킹 및 기타 양말 편조업
17329	기타 편조제품 제조업
174	섬유 염색 및 가공업
1740	섬유 염색 및 가공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4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7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91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91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791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791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914	천막 및 기타 캔버스제품 제조업
17915	직물포대 제조업
1791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792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920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93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931	끈 및 로프 제조업
1793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7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991	세폭직물 제조업
17992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993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7994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995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7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봉제의복 제조업
1811	정장 제조업
18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8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812	내의 제조업
18120	내의 제조업
1813	한복 제조업
18130	한복 제조업
1814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814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814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8143	가죽의복 제조업
1814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814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815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51	모자 제조업
18152	장갑 제조업
1815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8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1	가죽 제조업
1910	가죽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192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921	가방 및 핸드백 제조업
1921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9212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92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92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93	신발 제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1930	신발 제조업
19301	구두류 제조업
19302	기타 신발 제조업
19303	신발 부분품 및 재단제품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2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1	일반 제재업
20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수 제재목 제조업
20103	목재 보존 및 방부처리업
202	나무,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1	단판, 합판 및 강화목재 제조업
20211	단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022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229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3	목재 포장용기 및 깔판류 제조업
20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20239	목재 포장용 상자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024	코르크 가공품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41	코르크 제품 제조업
2024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2029	기타 목제품 제조업
20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20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20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0299	그외 기타 목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1	펄프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4	가공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2	골판지, 종이용기 및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
2121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21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21212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21213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1219	포장용 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용기 제조업
2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29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212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129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2129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	출판업
2211	서적 출판업
22110	서적 출판업
22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1	신문 발행업
22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22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2213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22131	음반 및 기타 음악 기록매체 출판업
22139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2219	기타 출판업
22190	기타 출판업
222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221	인쇄업
22211	경 인쇄업
22212	스크린 인쇄업
22219	기타 인쇄업
2222	인쇄관련 산업
22221	제판 및 조판업
22222	제책업
222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	기록매체 복제업
22300	기록매체 복제업

분류부호	분 류 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	석유정제품 제조업
2321	원유 정제처리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3	핵연료 가공업
2330	핵연료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2	복합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242	의약품 제조업
24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1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2	의약 제제품 제조업
24221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24222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
24223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
242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3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23	인쇄잉크 제조업
243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433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333	화장품 제조업
243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434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학제품 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	화학섬유 제조업
2440	화학섬유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4402	재생섬유 제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	제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2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5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5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5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1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1	1차 유리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612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122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621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6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6312	석회 제조업
26313	플라스터 제조업
26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6323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326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6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1	석제품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6912	착색골재 생산업
2692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269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991	연마재 제조업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6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94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2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 1차 금속산업
271	제 1차 철강산업
27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	철강관 제조업
27131	주철관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	기타 철강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7199	그외 기타 철강산업
272	제 1차 비철금속산업
27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	기타 제 1차 비철금속산업
27290	기타 제 1차 비철금속산업
273	금속 주조업
2731	철강 주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2	비철금속 주조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7322	동주물 주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11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8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8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8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31	핵반응기 제조업
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8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8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8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8931	날붙이 제조업
28932	일반철물 제조업
28933	수공구 제조업
28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8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철선조립제품

분류부호	분 류 명
	제조업
28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8942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28943	금속스프링 제조업
289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992	금고 제조업
28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8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8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8999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21	압축식 엔진 및 모터 제조업
29122	액체 펌프 제조업
29123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1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11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12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2921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91	용접기 제조업
29292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1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310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32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320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33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3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3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34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5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29351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
29352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2935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제조업
2936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29391	펄프 및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업
293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3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3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395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3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4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4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4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5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29512	전기 이·미용 기구 제조업
29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9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0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00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0021	복사기 제조업
3002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102	변압기 제조업
3110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31104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3110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3120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312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1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2	절연 광섬유케이블 제조업
31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2	조명장치제조업
31521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31522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31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91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제조업
31911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업
31912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99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1992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1993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31994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1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91	전자관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32194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321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33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33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33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33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33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33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 제외
332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산업처리 제어장비 제외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21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4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3322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3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31	안경 제조업
33310	안경 제조업
3332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401	시계 제조업
33402	시계부품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2	자동차 제조업
34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412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4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4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1	선박 건조업
35111	강선 건조업
35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5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5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5119	기타 선박 건조업
3512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35120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20	철도장비 제조업
35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35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5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5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5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5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5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91	모터사이클 제조업
35910	모터사이클 제조업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5990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3611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611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
36119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612	목재가구 제조업
361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61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61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619	기타 가구 제조업
36191	금속가구 제조업
361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69	기타 제품 제조업
369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2	악기. 제조업
36921	피아노 제조업
36922	현악기 제조업
36923	전자악기 제조업
36924	국악기 제조업
36929	기타 악기 제조업
369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693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69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1	인형 제조업
36942	장난감 제조업
36943	영상게임기 제조업
3694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69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6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696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697	모조 장신·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71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6972	가발 및 유사 장신용품 제조업
36973	조화 및 모조 장식품 제조업
36974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6975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6991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36992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6993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6994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6995	비 및 솔 제조업
36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71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1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분류부호	분 류 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11	발전업
40110	발전업
4012	송전 및 배전업
40121	송전업
40122	배전 및 판매업
402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4020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40200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403	증기 및 온수 공급업
4030	증기 및 온수 공급업
40300	증기 및 온수 공급업
41	수도사업
410	수도사업
4101	생활용수 공급업
41010	생활용수 공급업
4102	산업용수 공급업
41020	산업용수 공급업
	〔F 건설업(45~46)〕
45	종합 건설업
451	토목 건설업
4511	지반조성 공사업
45110	지반조성 공사업
4512	토목시설물 건설업
45121	도로 건설업
451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51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45124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5125	산업플랜트 공사업
45126	조경 공사업
451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52	건물 건설업
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52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45212	아파트 건설업
4522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452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52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52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461	토목시설물 및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4611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461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6112	토공사업
46113	포장 공사업
46114	철도궤도 전문 공사업
4611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4612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46121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6122	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 공사업
46123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6124	철골 공사업
46125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46126	조적 및 석축 공사업
46127	지붕 공사업
46128	수중 공사업
46129	기타 건물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46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6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6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6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6203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6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6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631	전기 공사업
46311	일반전기 공사업
46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632	통신 공사업
46321	일반 통신 공사업
46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분류부호	분 류 명
464	건축마무리 공사업
46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46411	도장 공사업
46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6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6421	유리 공사업
46422	창호 공사업
46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6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6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46499	그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65	건설장비 운영업
4650	건설장비 운영업
46500	건설장비 운영업

〔G 도매 및 소매업(50~52)〕

분류부호	분 류 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01	자동차 판매업
5011	자동차 신품 판매업
50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5012	중고 자동차 판매업
50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502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5020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5020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203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503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030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0301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50302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040	차량용 연료 소매업
50401	주유소 운영업
50402	차량용 가스 충전업

분류부호	분 류 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1	상품 중개업
5110	상품 중개업
51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51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03	상품종합 중개업
51109	기타 상품 중개업
51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20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201	곡물 도매업
51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03	사료 도매업
51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51205	산동물 도매업
51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5131	비가공 식품 도매업
51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51312	육류 도매업
51313	수산물 도매업
51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5132	가공식품 도매업
51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1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1323	빵 및 과자 도매업
51324	낙농품 도매업
51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51331	주류 도매업
51332	비알콜 음료 도매업
51333	담배 도매업
514	가정용품 도매업
5141	가정용 섬유제품 및 의복 도매업
51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51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1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51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51415	내의 도매업
51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51417	의복 액세서리 도매업
51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분류부호	분 류 명
5142	신발 도매업
51420	신발 도매업
5143	가전제품 도매업
51430	가전제품 도매업
5144	비전기식 가정용기기 및 가정용가구 도매업
51441	가정용 가구 도매업
51442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443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51449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5145	의약품, 화장품 및 비누 도매업
51451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2	화장품 도매업
51453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5146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51461	종이제품 도매업
51462	문구용품 도매업
5146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5147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5147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51472	악기 도매업
5147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5147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5147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51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51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51492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51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51499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515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
5151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515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515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5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5152	철물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515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515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5159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591	도료 도매업
515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515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6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60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601	철근 도매업
51602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603	금속광물 도매업
517	기타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51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2	화학제품 도매업
51721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
51722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23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72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5173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5173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1732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51733	직물 도매업
51739	그외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518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18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81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812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51813	공작기계 도매업
5181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89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51892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51893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51894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
51895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51896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518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519	기타 도매업

분류부호	분 류 명
5191	상품 종합 도매업
51910	상품 종합 도매업
5199	그외 기타 도매업
51990	그외 기타 도매업
52	**소매업 ; 자동차 제외**
521	종합 소매업
5211	대형 종합 소매업
52111	백화점
52119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52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121	슈퍼마켓
52122	체인화 편의점
52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19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52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52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5221	식료품 소매업
52211	곡물 소매업
52212	육류 소매업
52213	수산물 소매업
52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2215	빵 및 과자류 소매업
52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52219	기타 식품 소매업
5222	음료 및 담배 소매업
52221	음료 소매업
52222	담배 소매업
523	의약품, 의료용 기구 및 화장품 소매업
5231	의약품 및 의료용 기구 소매업
523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523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5232	화장품 및 화장비누 소매업
52320	화장품 및 화장비누 소매업
52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41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52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52412	한복 소매업
52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52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52415	내의 소매업
52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52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 액세서리 소매업
5242	신발 소매업
52420	신발 소매업
5243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52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525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5251	가전제품, 악기, 음반 및 통신기기 소매업
52511	가전제품 소매업
52512	악기 소매업
52513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52514	통신기기 소매업
5252	가구 소매업
52520	가구 소매업
5253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2531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
52532	식탁 및 주방 용품 소매업
5253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2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61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526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2612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52619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5262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5262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52622	문구용품 소매업
5263	사무용 기기, 컴퓨터 및 정밀기기 소매업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52632	사무용 기기 소매업
52633	안경 소매업
52634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분류부호	분 류 명
52635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5264	운동 및 오락용구 소매업
5264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264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52643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5265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65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66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66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266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267	가정용 연료 소매업
52671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52672	액체연료 소매업
52673	가스연료 소매업
5269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69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5269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52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7	중고품 소매업
5270	중고품 소매업
52701	중고가구 소매업
5270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52709	기타 중고품 소매업
528	무점포 소매업
5281	통신 판매업
52811	전자 상거래업
52812	기타 통신 판매업
5282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528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5289	기타 무점포 소매업
52891	자동판매기 운영업
52892	계약배달 판매업
52893	방문 판매업
528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분류부호	분 류 명
	〔H 숙박 및 음식점업(55)〕
55	숙박 및 음식점업
551	숙박업
5511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5519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55191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552	음식점업
5521	일반 음식점업
55211	한식점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5522	기타 음식점업
55221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5522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5223	이동 음식점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523	주점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55233	간이 주점업
5524	다과점
55241	제과점업
55242	찻집
	〔I 운수업(60~63)〕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01	철도 운송업
6010	철도 운송업
60100	철도 운송업

분류부호	분 류 명
602	육상 여객 운송업
602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11	도시철도 운송업
60212	시내버스 운송업
60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2	시외버스 운송업
60220	시외버스 운송업
6023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0231	택시 운송업
60232	전세버스 운송업
60233	장의차량 운영업
60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6031	화물자동차 운송업
60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60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6032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320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4	파이프라인 운송업
6040	파이프라인 운송업
60400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 운송업**
611	해상 운송업
6111	외항 운송업
61111	외항 여객 운송업
61112	외항 화물 운송업
6112	내항 운송업
61121	내항 여객 운송업
61122	내항 화물 운송업
6113	기타 해상 운송업
61130	기타 해상 운송업
612	내륙 수상 운송업
6120	내륙 수상 운송업
61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6120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61203	항만내 운송업
61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621	정기 항공 운송업
6210	정기 항공 운송업
62100	정기 항공 운송업
622	부정기 항공 운송업
6220	부정기 항공 운송업
62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1	화물 취급업
6310	화물 취급업
6310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63102	수상 화물 취급업
632	창고업
6320	창고업
63201	일반 창고업
632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63203	농산물 창고업
63204	위험물품 보관업
63209	기타 창고업
633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6331	여행사업
63311	일반 및 국제 여행사업
63312	국내 여행사업
6339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63390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63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91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911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63915	주차장 운영업
63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2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분류부호	분 류 명
63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63922	도선업
63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31	공항 운영업
63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991	화물운송 주선업
63992	화물 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J 통신업(64)〕
64	통신업
641	우편 및 소포 송달업
6411	우편업
64110	우편업
6412	소포 송달업
64120	소포 송달업
642	전기 통신업
6421	유선 통신업
64211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64219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
6422	무선 통신업
64221	무선 전화업
64229	무선 호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
6429	기타 전기 통신업
64291	별정 통신업
64292	부가 통신업
64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65~67)〕
65	금융업
651	통화 금융기관
6511	중앙 은행
65110	중앙 은행
6512	일반 은행
65121	국내 은행
65122	외국 은행
659	비통화 금융기관
6591	저축 기관
65911	신용 조합
65919	기타 저축 기관
6592	여신 금융업
65921	개발 금융기관
65922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5923	금융 리스업
65929	그외 기타 여신 금융업
6593	투자 기관
65931	투자 신탁회사
65939	기타 투자 기관
6599	그외 기타 금융업
65991	공공 기금 관리 회사
65999	그외 기타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60	보험 및 연금업
6601	생명 보험업
66010	생명 보험업
6602	연금 및 공제업
66021	개인 공제업
66022	사업 공제업
66023	연금업
6603	비생명 보험업
66031	손해 보험업
66032	보증 보험업
6604	사회보장 보험업
66041	의료 보험업
66042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605	재 보험업
66051	생명보험 재 보험업
66052	비생명보험 재 보험업

분류부호	분 류 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71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1	금융시장 관리업
67111	증권 및 선물 거래소
67119	기타 금융시장 관리업
67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67121	증권 중개업
67122	선물 중개업
67123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6719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67191	어음 교환업
67192	투자 자문업
67199	그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67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7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7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7202	손해사정업
67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1	부동산 임대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7012	부동산 공급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702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7021	부동산 관리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2	부동산 중개 및 감정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분류부호	분 류 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11	운송장비 임대업
7111	승용 자동차 임대업
71110	승용 자동차 임대업
7112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1121	컨테이너 임대업
7112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12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1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9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1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71302	서적 임대업
71303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
71304	의류 임대업
7130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72~75)〕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1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1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201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72209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7231	자료 처리업
72310	자료 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 관리업

분류부호	분 류 명
72320	컴퓨터시설 관리업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90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31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10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73102	농학 연구 개발업
7310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73104	공학 및 기술 연구 개발업
7310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3201	경제학 연구 개발업
73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74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11	변호사업
74112	변리사업
74113	법무사업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4121	공인회계사업
74122	세무사업
74129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1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221	공공관계 서비스업
74222	경영 상담업
7422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7423	지주회사
74230	지주회사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43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2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4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11	물질 성분 검사업
74412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7449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491	측량업
74492	제도업
7449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4499	그외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5	광고업
7451	광고 대행업
74510	광고 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591	옥외 광고업
74592	광고매체 판매업
74593	광고물 작성업
74599	그외 기타 광고업
746	전문 디자인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6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4602	제품 디자인업
74603	시각 디자인업
746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분류부호	분 류 명
74911	인물 사진 촬영업
7491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4913	사진 처리업
7499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99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4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75121	인력 공급업
75122	고용 알선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11	탐정업
75912	경비업
75913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7592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75921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75922	건축물 일반 청소업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30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41	문서 작성업
7594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43	복사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물품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599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5993	신용조사 및 수금 대리업
7599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5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7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류부호	분 류 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7611	일반 공공 행정
76111	입법기관
76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76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76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76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7612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76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76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7621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76211	교육 행정
76212	문화 및 관광 행정
76213	환경 행정
76214	보건 및 복지 행정
76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7622	노동 및 산업진흥 행정
76221	노동 행정
76222	농림수산업 행정
76223	건설 및 운송 행정
76224	통신 행정
76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763	외무 및 국방 행정
7631	외무 행정
76310	외무 행정
7632	국방 행정
76320	국방 행정
764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7640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76401	법원
76402	검찰
76403	교도기관
76404	경찰
76405	소방서
76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분류부호	분 류 명
765	사회보장 행정
7650	사회보장 행정
76500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80)〕
80	교육 서비스업
801	초등 교육기관
8011	유아 교육기관
80110	유아 교육기관
8012	초등학교
80120	초등학교
802	중등 교육기관
80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80211	중학교
80212	일반 고등학교
80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80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80222	공업 고등학교
80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803	고등 교육기관
8030	고등 교육기관
80301	전문대학
80302	대학교
80303	대학원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 학교
8041	특수학교
80410	특수학교
8042	외국인 학교
80420	외국인 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8091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11	컴퓨터 학원
80912	직원 훈련기관
80919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2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80921	운전 학원
8092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8093	일반 교습 학원
80931	일반 입시 학원
80932	언어 학원
80933	방문 및 통신 교육 학원
8099	그외 기타 교육기관
80991	사회교육시설
80992	예술 학원
80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85	보건업
851	의료업
8511	병원
85111	종합 병원
85112	일반 병원
85113	치과 병원
85114	한방 병원
8512	의원
85121	일반 의원
85122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85123	치과 의원
85124	한의원
8513	공중 보건 의료업
85130	공중 보건 의료업
8519	기타 의료업
85191	조산원
85192	유사 의료업
85193	구급차 서비스업
85199	그외 기타 의료업
852	수의업
8520	수의업
85200	수의업
86	사회복지사업
861	수용 복지시설
8611	노인 수용 복지시설

분류부호	분 류 명
86110	노인 수용 복지시설
8612	심신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86121	신체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86122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 수용복지시설
8613	기타 수용 복지시설
86131	아동 및 부녀자 수용 복지시설
86139	그외 기타 수용 복지시설
862	비수용 복지시설
8621	보육 시설
86210	보육 시설
8629	기타 비수용 복지사업
86291	직업 재활원
86299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71	영화 산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12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14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87120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30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141	영화관 운영업
87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872	방송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11	라디오 방송업
87212	텔레비전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221	프로그램공급업
87222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87223	위성 방송업
873	공연산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11	공연시설 운영업
87312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21	연극단체
87322	무용 및 음악단체
87329	기타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31	공연 예술가
87332	비공연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87341	공연 기획업
87342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87349	기타 공연관련 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1	뉴스 제공업
8810	뉴스 제공업
88100	뉴스 제공업
882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88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88212	독서실 운영업
88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21	박물관 운영업
88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1	식물원 및 동물원
88232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
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8831	경기장 운영업

분류부호	분 류 명
883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883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88321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88329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883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39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8839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88392	수영장 운영업
88393	볼링장 운영업
88394	당구장 운영업
88395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88399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889	기타 오락관련 사업
8891	오락장 운영업
88911	전자 게임장 운영업
8891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88919	기타 오락장 운영업
8892	수상오락 서비스업
88921	해수욕장 운영업
8892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88991	무도장 운영업
8899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3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88994	기원 운영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88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산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1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11	하수 처리업
90110	하수 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121	분뇨 처리업
90122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902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902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90223	건축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230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030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1	회원 단체
91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111	산업 단체
91110	산업 단체
9112	전문가 단체
91120	전문가 단체
912	노동조합
9120	노동조합
91200	노동조합
919	기타 회원 단체
9191	종교 단체
91911	불교 단체
91912	기독교 단체
91913	천주교 단체
91914	민족종교 단체
91919	기타 종교 단체
9192	정치 단체
91920	정치 단체

분류부호	분 류 명
9193	시민운동 단체
91931	환경운동 단체
91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9199	그외 기타 회원 단체
91990	그외 기타 회원 단체
92	**수리업**
921	기계장비 수리업
9211	일반 기계 수리업
92111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92119	기타 일반 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92122	통신장비 수리업
92123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2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2213	자동차 세차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220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10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391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92392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23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93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311	이용 및 미용업
93111	이용업
93112	미용업
93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3121	욕탕업
93122	마사지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39	그외 기타 서비스업
9391	세탁업
93911	산업용 세탁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9392	장의 및 묘지 관리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9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서비스업
93991	예식장업
93992	점술업
93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95)]
95	**가사 서비스업**
950	가사 서비스업
9500	가사 서비스업
95000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990	국제 및 외국기관
9900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Ⅴ. 직업분류

Ⅴ-1. 직업분류 작성요령

Ⅴ-2. 직업분류 항목명칭

V-1. 직업분류 작성요령

1. 직업분류 개요

가. 직무와 직업의 정의

(1) 직업분류에서 직무(Job)와 직업(Occupation)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 할 수 있음.

○ 직무 :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설정된 업무

○ 직업 : 유사한 직무의 집합

(2) 직업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여 수입이 있는 일을 말하며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3) 다음과 같은 활동은 직업에서 제외함.

○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금) 등과 같은 재산 수입이 있는 경우

○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 경마, 경륜 등에 의한 배당금 수입이 있는 경우

○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

○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 법률위반 행위나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즉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수형자의 활동

예1)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
→ 직업으로 보지 않음

예2)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직업으로 보지 않음

예3) 주식투자에 의한 매매차익 수입이 있는 경우
→ 직업으로 보지 않음

예4) 사회봉사활동에 의한 무급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 직업으로 보지 않음

예5) 주부가 집에서 목걸이를 꿰는 일을 하는 경우
→ 직업으로 봄

나. 분류기준

(1) 직업분류체계는 직무(수행된 일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직능(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편제

○ 직능은 특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것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간의 숙련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직능(Skill)과 자격(Qualification)은 아래와 같이 구분

- 직능 : 교육, 훈련, 경험 또는 선천적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통하여 습득
- 자격 : 시험합격 등과 같은 공식적인 기준을 충족함으로서 부여

① 제1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5, 6, 7세에 시작하여 6년 정도 시행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1수준의 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으로 누구나 수행 가능

② 제2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1, 12세에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 또는 14, 15세에서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2, 3수준의 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일정한 직무훈련과 실습과정이 요구됨. 또한 훈련실습기간은 정규훈련을 보완하거나 정규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음

③ 제3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2,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5수준의 교육과정(기술전문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료로 초급대학 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아님.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과정이 요구되며,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고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

④ 제4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6, 7수준의 교육과정(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이 요구됨.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

○ 직업별 직무능력의 적용 수준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군인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1 전문가 : 제4직능 수준 필요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제3직능 수준 필요

3 사무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4 서비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5 판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9 단순노무 종사자 : 제1직능 수준 필요
A 군인 :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다. 분류원칙

(1)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수적우위 원칙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평가하여 관련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

예1) 경제학자로서 대학교수인 경우
→ 대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주업무인 경우 대학교수로 분류
예2) 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면서 의과대학에 일주일에 한번 강의를 나가는 경우
→ 의사로 분류
예3) 경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워드, 서류정리 등을 하는 경우
→ 회계사무원으로 분류
예4) 의류를 소매하면서 대금계산을 겸하는 경우
→ 의류소매 판매원으로 분류
예5) 분식점을 경영하며 조리를 직접하는 경우
→ 조리사로 분류

○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

예1) 분식점에서 조리와 배달을 같이 하는 경우
→ 조리사는 제2직능 수준, 배달은 제1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높은 직능 수준인 조리사로 분류

예2) 대중가요가수가 대중업소에서 노래하는 경우
→ 대중가요가수는 제4직능, 대중업소 가수는 제3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대중가요가수로 분류

제외) 피자가게에서 배달을 승용차로 하는 경우
→ 배달이 업무이며 승용차는 이를 위한 수단이므로 운전원의 직능이 높다하더라도 배달원으로 분류

○ 생산업무 우선 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

예1)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
→ 제빵원으로 분류
예2) 채소를 재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농업숙련 종사자로 분류
예3) 음식을 조리하여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조리사로 분류

(2)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 취업시간이 많은 직업

○ 위의 경우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입이 많은 직업

○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분명치 못할 경우에는 조사시 최근의 직업

예) 회사원이 퇴근 후 번역일을 하는 경우
→ 회사근무 시간이 번역시간 보다 많은 경우 사업체에서 하는 일을 파악하여 해당되는 곳에 분류
→ 회사근무 시간이 번역시간보다 적은 경우 번역가로 분류
→ 회사근무 시간과 번역시간이 같은 경우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분류

라. 특정직종의 분류요령

(1) 관리, 행정 및 입법적 기능 수행업무 종사자

관리, 행정 및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분류 '0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에 분류되므로 정책 결정, 법규 등의 입안 업무를 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및 공사기업 감독자와 농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관리자, 자영업주 중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

(2) 품질검사 직종

주된 업무가 제품의 품질기준과 제조 명세사항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면 '2372 :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로 분류, 제품을 기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단순히 시각적 확인검사를 주로 하는 시험 및 검사원은 그 제품의 생산자와 함께 분류

(3) 자영업주 직종

자영업주는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고용상태에 따라 구분된 개념이므로 직업분류에서 자영업주의 직업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하는 일과 유사한가 동일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 가에 따라 그 주된 직무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

(4) 감독 직종

반장 등과 같이 주로 수행된 일의 전문, 기술적인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되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 그러나 주된 업무가 자기 감독 하에 있는 일 또는 근로자의 일상 작업활동을 기획, 조직, 통제, 지시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관리직으로 분류

(5) 지도 직종

계속적인 관찰, 평가 및 지도에 의하여 직무훈련 업무를 주로 하는 지도직 종사자의 직업은 그들이 지도하는 특정직종, 기능 또는 기계조작 종사자로 분류

(6) 연구 및 개발직종

연구 및 개발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1 : 전문가'에서 그 전문분야에 따라 분류. 다만, 연구자가 교육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로 분류

(7) 군인 직종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 : 군인'에 분류. 이것은 수행된 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보다는 자료수집상의 현실성에 따라 규정된 것임. 산업분류상에서 군부대는 '76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에 분류

(8) 기능원과 기계조작원의 직무능력 관계

하나의 제품이 기능원에 의해 제조되는지 또는 대량 생산기법을 유도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제조되는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음. 즉 기능원은 재료, 도구, 수행하는 일의 순서와 특성 및 최종제품의 용도를 알아야 하는 반면 기계조작원은 아주 복잡한 기계 및 장비의 사용방법, 기계에 어떤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

※ 직업분류에서는 기술개발의 차이에 따라 요구되는 이러한 직무능력 형태의 차이를 반영하여 대분류7, 8을 설정하고 '대분류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에는 목수, 기계설치원, 나무조각원과 같은 장인 및 수공 기예성 직업을 분류, '대분류8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는 제품의 가공에 관련된 기계 지향성 직업으로 분류하였음

2. 직업분류 기입방법

구 분	조사 해야 할 사항
관 리 자	이사, 대표이사 및 부서관리자가 3명 이상 있는지 파악해서 ( )안에 기입
전 문 가 준 전 문 가	◆ 전문가 :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 ◆ 준전문가 :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조사 및 연구에 기술적 업무수행 ○ 전문분야 및 직업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의사 및 간호사(일반의사, 치과의사, 안과의사; 일반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등) - 건물건축가, 조경건축가, 도로건설토목기술자, 발전설비기술자, 배전설비기술자 - 영양사(임상~, 급식관리~, 학교급식~, 보건~, 상담~, 식품영양~ 등) - 교수(국문학~, 영문학~, 신학~, 철학~, 경제학~, 법학~, 무역학~ 등) - 판매원(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경매 상담원, 주택 상담원, 전자장비 기술판매원)
사 무 원	○ 업종(종사부문)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입 - 회계사무원, 급여~, 경리~, 구매~, 금융~, 투자~, 중개~, 신용~ 등 - 음식점 대금수납원, 공과금 수납원, 요금 정산원, 계산대 수납원, 환전원 등
서 비 스 종 사 자	○ 업종(종사부문) 및 직업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이용사, 미용사, 피부 미용사, 욕실 종사원, 애완동물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 한국음식 조리사, 횟집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간이 음식점 조리사 - 선박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사무장, 여객열차 승무원
판 매 종 사 자	○ 판매상품 및 도매·소매 구분 - 육류 도매원, 음료~, 곡물~, 과일~, 의복~, 가구~, 전기기기~, 주방용품~ - 슈퍼마켓 판매원, 곡물 소매원, 수산물~, 과실~, 내의~, 가구~, 전기기기~
농 림 어 업 종 사 자	○ 농업 : 재배품목 또는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과재배자, 배~, 고추~, 딸기~, 채소~ - 온실정원사, 과수나무 접목자, 과수 전지자 ○ 축산 : 사육동물 또는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 ○ 임업 :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 ○ 어업 : 양식의 경우 양식 품목, 어부의 경우 내륙, 연안 및 원양 구분
기 능 종 사 자 (광업, 건설, 제조, 정비)	○ 업종(취급품목 등) 및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 - 광업 : 광원, 갱목 설치원, 채석원, 광물 절단원, 점화원, 발파원, 석재 조각원 - 건설 : 대리석 부착원, 마루 설치원, 카펫공, 외벽 미장원, 방음원, 건물 유리원 - 제조 : 금속 주조원, 가스 용접원, 샷시 제작원, 선박 조립원, 공구 제조원 - 수리 : 총포 수리원, 자동차 경정비원, 선박기관 정비원, 시계 수리원, 간판 도장원
기 계 조 작 및 조 립 원	○ 조작기계나 조립기계의 명칭 및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 - 목재선반 조작원, 제분기 조작원, 합성섬유생산기 조작원, 정수장치 조작원 - 영업용택시 운전원, 일반승용~, 구급차~, 시내버스~, 유조차량~ - 광산용기계 조립원, 섬유용기계 조립원, 배전반 조립원, 텔레비전 조립원
단 순 노 무 종 사 자	○ 직업명칭 또는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 - 가정부, 공공건물 청소원, 건물 관리인, 아파트 경비원,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3. 직업분류 기입예시

<예시 1> 연구소에서 연구에 관련된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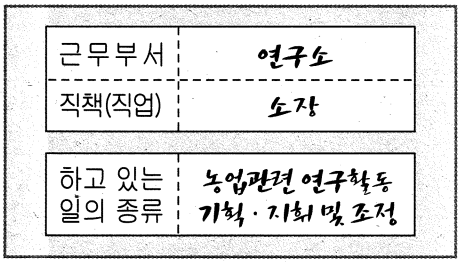

<예시 2>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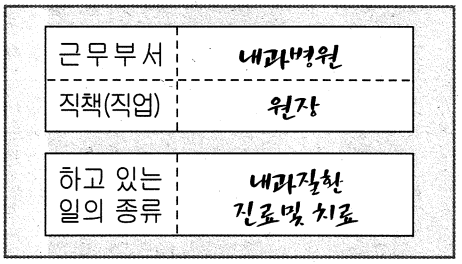

<예시 3> 여행사에서 일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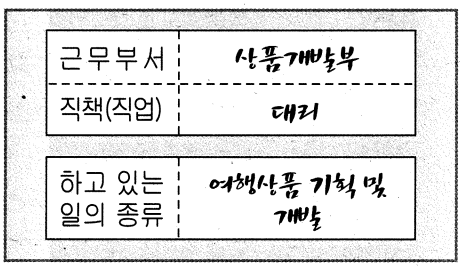

<예시 4> 백화점에서 상품대금을 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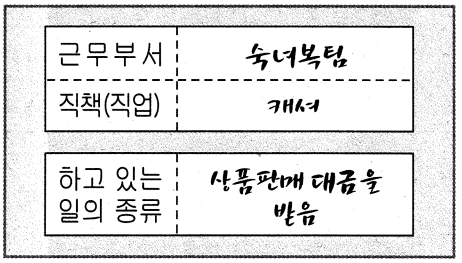

<예시 5>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일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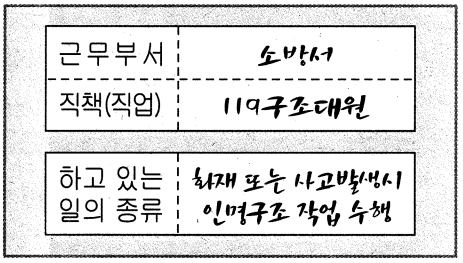

<예시 6> 슈퍼마켓을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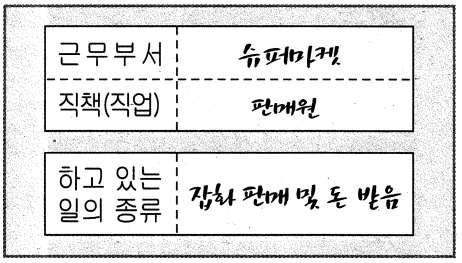

<예시 7> 자기 논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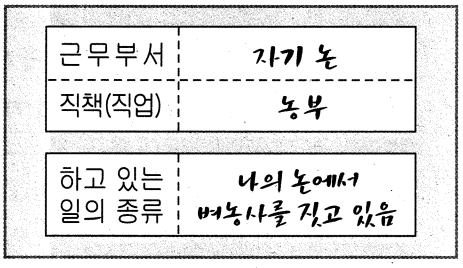

<예시 8> 건축장에서 도배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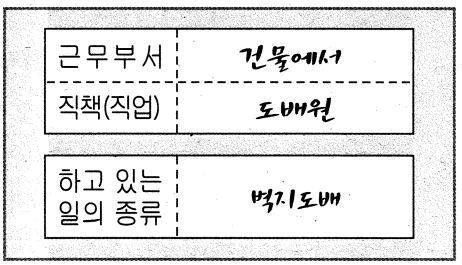

<예시 9> 정유회사에서 유류수송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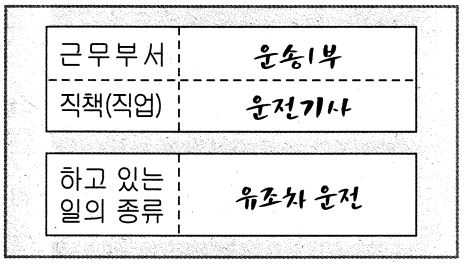

<예시 10> 주유소에서 세차일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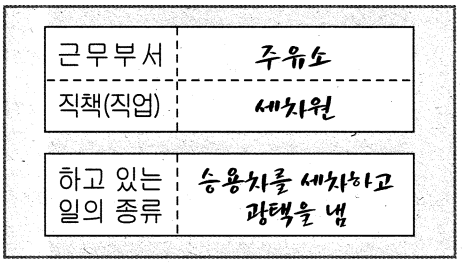

※ 부서 및 직책은 없으나 직업명칭이 있는 경우, 근무 부서란에는 일하는 장소를 기입하고 직책란에는 직업명칭을 기입합니다.

<예시 11> 미용실 미용사의 경우

근무부서	미용실
직책(직업)	미용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머리손질

<예시 12>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근무부서	부동산 사무실
직책(직업)	공인중개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토지 및 주택 매매중개

<예시 13>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는 경우

근무부서	변호사 사무실
직책(직업)	변호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예시 14> 중학교 수학선생인 경우

근무부서	학교
직책(직업)	수학교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학생가르침

<예시 15> 전문화가의 경우

근무부서	화실
직책(직업)	화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그림을 그림

<예시 16> 자장면 조리사의 경우

근무부서	중국집
직책(직업)	음식조리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자장면 만듬

<예시 17> 개인병원 간호사의 경우

근무부서	병원
직책(직업)	간호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환자간호

<예시 18> 일간신문 기자인 경우

근무부서	신문사
직책(직업)	신문기자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신문기사 취재

<예시 19>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근무부서	택시
직책(직업)	택시기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개인택시 운행

<예시 20>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근무부서	세무사 사무실
직책(직업)	세무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회계처리 대행

V-2. 직업분류 항목명칭

분류부호	분 류 명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01~03)〕	
01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
011	의회의원
0110	의회의원
01101	중앙 의회의원
01102	지방 의회의원
012	정부 고위공무원, 의회의원 제외
0121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01210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0122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01220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013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0131	정당 고위임원
01310	정당 고위임원
0132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01320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0133	기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01330	기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021	기업 고위임원
0210	기업 고위임원
02100	기업 고위임원
022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0220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02200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023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0231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10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2	광공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21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22	제조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3	건설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30	건설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4	도소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41	도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42	소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43	자동차 판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영 부서 관리자
02351	숙박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52	음식점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6	운수 및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61	운수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62	창고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63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	사업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1	금융 및 보험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2	부동산 및 임대업 운영 부서 관리자
0237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4	연구개발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5	시장 및 여론조사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6	광고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9	기타 사업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8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81	환경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89	기타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운영부서 관리자
0239	기타 운영부서 관리자
02391	교육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9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9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
02399	그외 기타 운영부서 관리자
024	기타부서 관리자
0241	재무 및 경영부서 관리자
02411	재무부서 관리자
02412	경영부서 관리자
0242	인사 및 노사관계부서 관리자
02420	인사 및 노사관계부서 관리자

분류부호	분 류 명
0243	판매부서 관리자
02430	판매부서 관리자
0244	광고 및 홍보부서 관리자
02440	광고 및 홍보부서 관리자
0245	구매부서 관리자
02450	구매부서 관리자
0246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02460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0247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02470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0249	그외 기타부서 관리자
02490	그외 기타부서 관리자
03	일반관리자
030	일반관리자
0301	농림어업 일반관리자
03010	농림어업 일반관리자
0302	광공업 일반관리자
03021	광업 일반관리자
03022	제조업 일반관리자
030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일반관리자
0303	건설업 일반관리자
03030	건설업 일반관리자
0304	도소매업 일반관리자
03041	도매업 일반관리자
03042	소매업 일반관리자
03043	자동차 판매업 일반관리자
0305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 관리자
03051	숙박업 일반관리자
03052	음식점업 일반관리자
0306	운수 및 통신업 일반 관리자
03061	운수업 일반관리자
03062	창고업 일반관리자
03063	통신업 일반관리자

분류부호	분 류 명
0307	사업서비스업 일반관리자
03071	금융 및 보험업 일반관리자
03072	부동산 및 임대업 일반 관리자
0307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일반관리자
03074	연구개발업 일반관리자
03075	시장 및 여론조사업 일반관리자
03076	광고서비스업 일반관리자
03079	기타 사업서비스업 일반관리자
0308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03081	환경관련 서비스업 일반 관리자
03082	회원단체 일반관리자
03089	기타 위생, 수리 및 개인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0309	기타 일반관리자
03091	정부행정 일반관리자
03092	교육서비스업 일반관리자
0309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일반관리자
0309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03099	그외 기타 일반관리자
	〔1 전 문 가(11~18)〕
11	과학 전문가
111	자연과학 전문가
1111	수학자 및 통계학자
11111	수학자
11112	통계학자
1112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
11121	물리학자
11122	천문학자
1113	기상학자
11130	기상학자
1114	화학자
11140	화학자
1115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
11151	지질학자
11152	지구 물리학자
112	생명과학 전문가

분류부호	분 류 명
1121	생물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211	식물학자
11212	동물학자
11213	세균학자
11214	유전학자
11215	생태학자
11216	환경 과학자
11219	기타 생물학자 및 관련전문가
1122	의학자, 약학자 및 관련전문가
11221	해부학자
11222	생화학자
11223	생리학자
11224	생물리학자
11225	병리학자, 동물병리학자 제외
11226	동물 병리학자
11227	약학자
11229	기타 의학자, 약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23	농경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231	농경학자
11232	원예학자
11233	산림학자
11234	축산학자
11239	기타 농경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3	사회과학 전문가
1131	경제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310	경제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32	사회학자, 정치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321	사회학자
11322	인류학자
11323	지리학자
11324	정치학자
11329	기타 사회학자, 정치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33	철학자, 언어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331	철학자
11332	역사학자
11333	언어학자
11339	기타 철학자, 언어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34	심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
11340	심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

분류부호	분 류 명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
120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2011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1201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2019	기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202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12021	컴퓨터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12022	인터넷 전문가
12029	기타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1203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12031	시스템 프로그래머
12032	응용 프로그래머
1204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12040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1209	기타 컴퓨터관련 전문가
12090	기타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131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1311	건축전문가
13111	건물건축가
13112	조경건축가
13119	기타 건축전문가
1312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13121	도시설계가
13122	교통설계가
13129	기타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1313	토목공학 전문가
13131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13132	도로 및 공항건설 토목기술자
13133	항만건설 토목기술자
13134	철도건설 토목기술자
13135	댐건설 토목기술자
13139	기타 토목기술자
132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전문가
1321	전기공학 전문가
13211	발전설비 전기기술자

분류부호	분 류 명
13212	송·배전설비 전기기술자
13213	전기안전 기술자
13219	기타 전기기술자
1322	전자 및 통신공학 전문가
13221	통신 기술자
13222	반도체 기술자
13223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기술자
13224	전자장비 기술자
13229	기타 전자 및 통신기술자
1323	기계공학 전문가
13231	산업용기계 기술자
13232	모터 및 기관기술자, 선박기관 제외
13233	선박기관 기술자
13234	조선기술자
13235	항공우주 기술자
13236	자동차 기술자
13237	냉·난방기 기술자
13238	사무용기계 기술자
13239	기타 기계기술자
133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1331	화학공학 전문가
13311	석유화학 기술자
13312	음식료품 기술자
13313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13314	농약 및 비료 기술자
13315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자
13316	섬유 기술자
13317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자
13319	기타 화학 기술자
1332	에너지 및 금속공학 전문가
13321	에너지 기술자
13322	금속 기술자
13329	기타 에너지 및 금속 기술자
134	측량 전문가
1340	측량 전문가
13401	지도제작 기술자
13402	토지 측량사
13403	사진 측량 및 분석가
13409	기타 측량 전문가
135	기타 공학 전문가

분류부호	분 류 명
1350	기타 공학 전문가
13501	산업안전 기술자
13502	교통안전 기술자
13503	생산관리 기술자
13504	재료 기술자
13505	적산 기술자
13506	환경 기술자
13509	그외 기타 기술자
14	보건의료 전문가
141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 제외
1411	전문의사
14111	내과 전문의사
14112	외과 전문의사
14113	소아과 전문의사
14114	산부인과 전문의사
14115	정신과 전문의사
14116	안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사
14117	피부비뇨기과 전문의사
14118	방사선 및 마취병리과 전문의사
14119	기타 전문의사
1412	일반의사
14120	일반의사
1413	치과의사
14130	치과의사
1414	한의사
14140	한의사
1415	수의사
14150	수의사
142	약사 및 한약사
1420	약사 및 한약사
14201	약사
14202	한약사
143	간호 및 조산 전문가
1431	간호 전문가
14311	일반 간호사
14312	전문 간호사
14319	기타 간호사

분류부호	분 류 명
1432	조산 전문가
14320	조산사
144	치료 전문가
1440	치료 전문가
14401	물리 치료사
14402	언어 치료사
14403	작업 치료사
14409	기타 치료사
145	영양 전문가
1450	영양 전문가
14501	임상 영양사
14502	급식관리 영양사
14503	보건 및 상담 영양사
14509	기타 영양사
15	**교육 전문가**
151	대학교수
1510	대학교수
15101	인문사회계열 교수
15102	이학계열 교수
15103	공학계열 교수
15104	의약계열 교수
15105	예체능계열 교수
15106	사범계열 교수
15109	기타 대학교수
152	중등학교 교사
1520	중등학교 교사
15201	도덕 및 윤리 교사
15202	국어 교사
15203	수학 교사
15204	사회 교사
15205	과학 교사
15206	예체능 교사
15207	실업 및 전산 교사
15208	외국어 교사
15209	기타 중등학교 교사
153	초등학교 교사
1530	초등학교 교사
15300	초등학교 교사
154	유치원 교사
1540	유치원 교사
15400	유치원 교사
155	특수학교 교사
1550	특수학교 교사
15501	시각장애학교 교사
15502	청각장애학교 교사
15503	지체부자유학교 교사
15504	정신장애학교 교사
15509	기타 특수학교 교사
156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1561	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5611	직업훈련기관 강사
15612	직업관련 연수기관 강사
15619	기타 직업교육 관련 강사
1569	기타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15691	문리학원 강사
15692	어학원 강사
15693	컴퓨터학원 강사
15694	예능학원 강사
157	기타 교육 전문가
1571	교육연구 전문가
15710	교육연구 전문가
1572	장학사 및 관련 전문가
15720	장학사 및 관련 전문가
1579	그외 기타 교육 전문가
15790	그외 기타 교육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61	행정 전문가
1611	정부정책 기획 및 집행 행정 전문가
16110	정부정책 기획 및 집행 행정 전문가
1612	기업경영 행정 전문가
16120	기업경영 행정 전문가
1613	일반행정 전문가
16130	일반행정 전문가

분류부호	분 류 명
162	회계 관련 전문가
1621	회계 전문가
16211	회계사
16212	세무사
16219	기타 회계 전문가
1622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16220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163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1630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16301	노사관계 전문가
16302	직업연구 전문가
16309	기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164	금융·보험 전문가
1641	금융 전문가
16411	증권 전문가
16412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16419	기타 금융 전문가
1642	보험 전문가
16420	보험 전문가
165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1651	사업서비스 전문가
16511	홍보 전문가
16512	조사 분석가
16513	판촉기법 전문가
16514	광고 대리인
16515	경영지도·진단 전문가
16516	경영조사 분석가
16517	관세사
1659	기타 사업서비스 전문가
16590	기타 사업서비스 전문가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171	법률 전문가
1711	검사 및 변호사
17111	검사
17112	변호사
1712	판사
17120	판사
1713	기타 법률 전문가
17131	특허 전문가
17132	법무사
17133	공증인
17139	그외 기타 법률전문가
172	사회서비스 전문가
1721	사회복지 전문가
17210	사회복지 전문가
1729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17290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173	종교 전문가
1731	성직자
17310	성직자
1739	기타 종교 전문가
17390	기타 종교 전문가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전문가
1811	기록 보관원 및 박물관 등 관리인
18111	기록 보관원
18112	박물관 등 관리인
1812	사서
18120	사서
182	작가 및 관련 전문가
1821	작가
18211	소설가
18212	시인
18219	기타 작가
1822	번역가 및 통역가
18221	번역가
18222	통역가
1829	기타 작가관련 전문가
18291	기자
18292	평론가

분류부호	분 류 명
18293	편집자
18294	광고문 작성가
18299	그외 기타 작가 관련 전문가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1831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18311	조각가
18312	화가
18313	상업 미술가
18314	사진작가
18315	만화가
18316	만화영화작가
18319	기타 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1832	디자이너
18321	제품 디자이너
18322	패션 디자이너
18323	인테리어 디자이너
18324	시각 디자이너
18329	기타 디자이너
1833	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
18331	작곡가
18332	관현악단 지휘자
18333	합창단 지휘자
18334	성악가, 대중가요 가수 제외
18335	기악 연주자, 국악 제외
18336	대중가요 가수
18337	국악인
18339	기타 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
1834	무용가 및 관련 전문가
18341	안무가
18342	무용가
18349	기타 무용가 및 관련 전문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1841	연기자 및 감독
18411	영화배우 및 탤런트
18412	연극배우
18413	코미디언 및 개그맨
18414	성우
18415	영화감독
18416	무대감독
1842	프로그램 진행자
18421	아나운서
18422	전문 연예사회자
18423	디스크 자키
18429	기타 프로그램 진행자

[2 기술공 및 준전문가(21~29)]

분류부호	분 류 명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1	자연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10	자연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101	통계 및 수학 준전문가
21102	물리학 기술공
21103	천문학 기술공
21104	기상학 기술공
21105	화학 기술공
21106	지질학 기술공
21109	기타 자연과학 기술공
212	생명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121	생명과학 기술종사자
21211	생물학 기술공
21212	의료과학 기술공
21219	기타 생명과학 기술공
2122	농경 및 임업 기술종사자
21221	농경 및 원예 기술공
21222	임업 기술공
21229	기타 농경 및 임업 기술공
2123	농업 및 영림 자문가
21231	농업 자문가
21232	영림 자문가
213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2130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21300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201	컴퓨터관련 운영원
22010	컴퓨터관련 운영원
2202	컴퓨터 조작원
22020	컴퓨터 조작원

분류부호	분 류 명
2203	산업용 로봇 조종원
22030	산업용 로봇 조종원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31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종사자
2310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종사자
23101	건설토목 기술공
23102	토목견적 기술공
23103	측량 기술공
23109	기타 건축 및 토목공학기술공
232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2321	전기공학 기술종사자
23211	전력 송·배전 기술공
23212	전기안전 기술공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2322	전자 및 통신 기술종사자
23221	통신 기술공
23222	컴퓨터 설계 기술공
23223	전자장비 기술공
23229	기타 전자 및 통신기술공
2323	기계공학 기술종사자
23231	산업용 기계 기술공
23232	모터 및 기관 기술공
23233	조선 기술공
23234	항공우주 기술공
23235	자동차 기술공
23236	냉·난방기 기술공
23237	사무용기계 기술공
23239	기타 기계공학 기술공
233	화학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2331	화학공학 기술종사자
23311	석유화학 기술공
23312	고무 및 플라스틱화학기술공
23313	농약 및 비료 기술공
23314	도료 및 비누제품 기술공
23315	의약품 및 화장품 기술공
23319	기타 화학공학 기술공
2332	에너지 및 금속공학 기술종사자
23321	에너지 기술공
23322	금속제련 기술공
23323	금속주조 기술공
23329	기타 에너지 및 금속공학 기술공
234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 포함
2340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 포함
23401	기계 제도사
23402	전기 및 전자장비 제도사
23403	토목공학 제도사
23404	건축 제도사
23405	지도 제도사
23406	기술 도해사
23409	기타 제도사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2351	광학 및 녹화장비 기술종사자
23511	사진가
23512	사진기자
23513	촬영기사
23514	녹음기사
23519	기타 광학 및 녹화장비기사
2352	방송 및 통신장비 기술종사자
23521	무선통신사
23522	전신장비 기사
23523	방송장비 기사
23524	송신장비 기사
23525	영사기사
23529	기타 방송 및 통신장비 기사
2353	의료장비 기술종사자
23531	임상병리사
23532	방사선사
23539	기타 의료장비 기사
236	선박·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종사자
2361	선박 기관사 및 기술종사자
23611	선박 기관사
23612	선장
23613	항해사
23614	도선사
23619	기타 선박 기술공
2362	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종사자
23621	항공기 조종사
23622	항법사
23623	항공 기관사
23629	기타 항공관련 기술공

분류부호	분 류 명
2363	교통 관제사 및 안전기술종사자
23631	항공교통 관제사
23632	선박교통 관제사
23633	항공교통 안전기술공
237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2371	건물안전 검사 및 화재감식 종사자
23711	건물 검사원
23712	화재예방 및 감식원
23719	기타 건물안전 검사 및 화재 감식원
2372	산업안전, 보건 및 품질검사 종사자
2372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원
23722	환경 관리원
23723	품질 검사원
23724	환경영향 평가원
23725	교통영향 평가원
238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380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3801	생산공학 기술공
23802	산업능률 기술공
23803	재료 기술공
23809	그외 기타 공학관련 기술공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241	의료진료 준전문가
2410	의료진료 준전문가
24101	보건 진료원
24102	간호 조무사
24103	구급요원
24109	기타 의료진료 준전문가
242	의료 기술종사자
2421	치과 기술종사자
24211	치과 위생사
24212	치과 기공사
24219	기타 치과 기술종사자
2422	안경사
24220	안경사
2423	위생사
24230	위생사

분류부호	분 류 명
243	안마사 및 전통의료 치료사
2431	안마사
24310	안마사
2432	전통의료 치료사
24320	전통의료 치료사
25	**교육 준전문가**
251	대학교육 조교 및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2511	대학교육 조교
25110	대학교육 조교
2512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25121	초등학교 보조교사
25122	중등학교 보조교사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
2521	교육기관 교육 준전문가
25211	가정학원 강사
25212	기술학원 강사
25213	사무학원 강사
25219	기타 교육기관 교육 준전문가
2522	교육기관 이외 교육 준전문가
25221	문리 강사
25222	예능 강사
25229	기타 강사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
2530	기타 교육 준전문가
25301	자동차 운전교관
25309	그외 기타 교육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261	금융·보험 준전문가
2611	금융 준전문가
26111	외환중개인
26112	증권중개인
26113	선물거래 중개인
26119	기타 금융 준전문가
2612	보험 준전문가
26121	손해 사정인
26122	보험 대리인

분류부호	분 류 명
26129	기타 보험 준전문가
262	판매 준전문가
2621	부동산 대리인
26211	부동산 중개인
26212	부동산신탁 및 컨설팅원
26219	기타 부동산 대리인
2622	여행상품 개발 및 상담 종사자
26220	여행상품 개발 및 상담 종사자
2623	기술 및 상업판매 종사자
26231	산업용 기계장비 기술판매원
26232	전자장비 기술판매원
26233	의료장비 및 용품 기술판매원
26234	농업용 기계장비 기술판매원
26235	상업판매원
26239	기타 기술판매원
2624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 종사자
26240	자동차 및 관련제품 기술판매원
2625	구매대리인
26251	도·소매업 구매대리인
26252	농산물 구매대리인
26259	기타 구매대리인
2626	감정 및 경매 종사자
26261	보석 감정사
26262	미술품 감정사
26263	부동산 감정사
26264	음식료품 감정사
26265	경매사
26269	기타 감정사
263	상품중개 및 사업서비스대리 종사자
2631	상품중개 종사자
26311	상품중개인
26312	머천다이저
26313	물류관리사
2632	통관대리 종사자
26320	통관대리인
2633	직업상담 종사자
26330	직업상담원
2634	개인 및 사업서비스 대리종사자
26341	경기 프로모터
26342	연예인 매니저
26343	이벤트 대리인
26344	광고 판매인
26349	기타 개인 및 사업서비스 대리인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271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2711	사회복지 준전문가
27111	아동·부녀자복지 상담원
27112	생활지도원
27113	보육사
2719	기타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27190	기타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272	종교 준전문가
2720	종교 준전문가
27200	종교 준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81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2811	음악 및 무용관련 준전문가
28111	대중업소 악사
28112	대중업소 가수
28113	대중업소 무용수
28119	기타 음악 및 무용관련 준전문가
2812	미술관련 준전문가
28120	미술관련 준전문가
2813	연예관련 준전문가
28131	대중업소 연예 사회자
28139	기타 연예관련 준전문가
282	운동, 경기 및 체력관련 준전문가
2821	운동, 경기관련 준전문가
28211	직업운동선수
28212	직업경주선수
28213	바둑기사
28214	경기 감독 및 코치
28215	경기 심판

분류부호	분 류 명
28219	기타 운동, 경기관련 준전문가
2822	체력훈련가
28220	체력훈련가
283	기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831	마술, 곡예 및 관련 준전문가
28310	마술, 곡예 및 관련 준전문가
2832	동물조련사
28320	동물조련사
29	**기타 준전문가**
291	관리 준전문가
291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29111	관리비서
29112	속기사
29119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2919	기타 관리 준전문가
29191	정부 관리 준전문가
29199	그외 기타관리 준전문가
292	법률, 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2921	법률 준전문가
29211	특허사무 준전문가
29212	집달관
29213	법무 준전문가
29219	기타 법률 준전문가
2922	의료사무 준전문가
29221	의무기록사
29229	기타 의료사무 준전문가
2929	기타 법률, 의료 및 관련사업 준전문가
29291	감사 준전문가
29299	그외 기타 법률, 의료 및 관련사업 준전문가
293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2931	세관 공무원
29310	세관 공무원
2932	조세 공무원
29320	조세 공무원
2933	사회보장 공무원
29330	사회보장 공무원
2934	허가 공무원
29340	허가 공무원
2935	병무 공무원
29350	병무 공무원
2939	기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29390	기타 관세, 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31~32)〕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311	일반사무 종사자
3110	총무 및 인사사무 종사자
31101	총무 사무원
31102	인사노무 사무원
312	기획 및 홍보사무 종사자
3121	기획사무 종사자
31210	기획 사무원
3122	홍보사무 종사자
31220	홍보 사무원
313	정부행정 사무 종사자
3130	정부행정 사무 종사자
31300	정부행정 사무원
314	판매 관련사무 종사자
3141	판매사무 종사자
31411	국내판매 사무원
31412	해외판매 사무원
3149	기타 판매 관련사무 종사자
31491	분양 및 임대 사무원
31499	그외 기타 판매관련 사무원
315	계수사무 종사자
3151	회계사무 종사자
31510	회계사무원

분류부호	분 류 명
3152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
31521	금융사무원
31522	보험사무원
3153	통계 사무 종사자
31531	통계자료집계 사무원
31532	통계조사 사무원
31539	기타 통계사무원
316	자재,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 종사자
3161	자재사무 종사자
31611	자재관리 사무원
31612	검수 사무원
31619	기타 자재 사무원
3162	생산사무 종사자
31621	자재수급 사무원
31622	생산계획 사무원
31629	기타 생산 사무원
3163	운송사무 종사자
31631	항공운송 사무원
31632	철도운송 사무원
31633	도로운송 사무원
31634	수상운송 사무원
31639	기타 운송 사무원
317	사무 지원 종사자
3171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31713	사무용 기기 조작원
3172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	비서
31730	비서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종사자
3181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종사자
31810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원
3182	우편관련 사무 종사자
31821	우편물 분류 사무원
31829	기타 우편관련 사무원
3183	심사, 교정 및 관련 사무 종사자
31830	심사, 교정 및 관련 사무원
3184	대서사무 종사자
31840	대서사무원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321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사무 종사자
3211	대금수납 및 매표 사무 종사자
32111	대금수납 사무원
32112	매표사무원, 여행용 표 제외
32119	기타 대금수납 및 매표 사무원
3212	금전출납 사무 종사자
32121	은행출납 사무원
32122	외환취급 사무원
32123	우체국출납 사무원
32129	기타 금전출납 사무원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
32130	수금 및 관련 사무원
3214	복권판매 및 마권발매 종사자
32140	복권판매 및 마권발매자
322	안내 및 접수 사무 종사자
3221	안내 사무 종사자
32211	시설안내 사무원
32212	방송안내 사무원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32221	전화교환원
32222	전화번호 안내원
3223	여행관련 사무 종사자
32231	여행표 발행 사무원
32232	여행 사무원
32239	기타 여행관련 사무원
3224	접수 사무 종사자
32241	호텔 접수원
32242	병원 접수원
32243	음식점 접수원

분류부호	분 류 명
32249	기타 접수 사무원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3230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32301	고객상담 사무원
32309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41~44)〕
41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4111	보육 종사자
41111	가정 보육사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보조 보육사
4112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41121	간병인
41122	산후 조리 종사원
41123	치료사 보조원
41129	기타 시설 개인보호 종사원
4113	가정 개인간호 종사자
41130	가정 개인간호 종사원
4119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
41191	약사 보조원
41192	수의사 보조원
41199	그외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원
412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4121	이용사
41210	이용사
4122	미용 관련 종사자
41221	미용사
41222	피부관리사
41223	욕실종사원
41224	애완동물 미용사 및 동물관리자
4129	기타 미용관련 종사자
41291	화장 및 분장사
41292	코디네이터
41299	그외 기타 미용관련 종사원

분류부호	분 류 명
413	시중서비스 종사자
4130	시중서비스 종사자
41301	말벗 및 개인 시중원
41302	숙박시설 시중원
41309	기타 시중원
414	장의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4140	장의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41401	장의사
41409	기타 장의 및 관련 서비스 종사원
415	오락 및 여가서비스 종사자
4151	오락 서비스 종사자
41511	오락장 종사원
41512	클럽 종사원
41519	기타 오락 서비스 종사원
4152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
41521	응원단원
41522	레크레이션 지도자
41529	기타 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원
4153	모니터 서비스 종사자
41530	모니터요원
4154	도박 진행자 및 대금업자
41541	도박 진행자
41542	전당업자 및 대금업자
416	기타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4161	결혼관련 서비스 종사자
41611	결혼상담원
41612	예식 종사원
41619	기타 결혼관련 서비스 종사원
4162	점술가 및 관련 종사자
41621	점술가
41622	점술 관련 종사원
42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421	음식 조리 종사자
4211	주방장
42110	주방장

분류부호	분 류 명
4212	음식점 조리사, 간이 음식점 제외
42121	한식 조리사
42122	양식 조리사
42123	중식 조리사
42124	일식 조리사
42129	기타 음식점 조리사
4213	간이 음식점 조리사
42130	간이 음식점 조리사
4214	음식점 이외 조리사
42141	병원 조리사
42142	선박 조리사
42143	열차식당 조리사
42149	기타 음식점 이외 조리사
4215	차류 조리사
42150	차류 조리사
4219	기타 조리사
42190	기타 조리사
422	음식 서비스 관련 종사자
4221	음식 서비스 종사자
42211	음식업 서비스 종사원
42212	주류 서비스 종사원
42213	음료 서비스 종사원
42219	기타 서비스 종사원
4222	바텐더
42220	바텐더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431	운송수행 종사자
4310	운송수행 종사자
43101	선박 승무원
43102	항공기 승무원
43103	여객열차 승무원
43109	기타 운송수행원
432	여행안내 종사자
4321	국내외 여행안내 종사자
43211	국내여행 안내원
43212	국외여행 안내원
4322	관광통역 안내 종사자
43220	관광통역 안내원
4329	기타 여행안내 종사자
43290	기타 여행안내원
44	**보안 서비스 종사자**
441	경찰 종사자
4410	경찰 종사자
44101	일반경찰관
44102	해양경찰관
442	소방 및 응급구조 종사자
4420	소방 및 응급구조 종사자
44201	소방관
44202	응급구조대
44209	기타 소방업무 종사원
443	교도 및 보도 종사자
4430	교도 및 보도 종사자
44301	교도관
44302	보도관
444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자
4440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자
44401	청원경찰
44402	안전 순찰원
44403	인명 구조원
44404	경호원
44409	그외 기타 보안 서비스 종사원
	〔5 판매 종사자(51~53)〕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511	도매 판매 종사자
5110	도매 판매 종사자
51101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판매원
51102	가정용품 도매판매원
51103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판매원
51109	기타 도매 판매원
512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5120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51201	종합 소매판매원

분류부호	분 류 명
5120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51203	의복, 신발 및 관련 제품 소매판매원
51204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
51205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6	주유원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513	소매 방문판매 및 이동판매 종사자
5131	소매 방문판매 종사자
51310	소매 방문판매원
5132	노점 및 이동판매 종사자
513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52	**통신 판매 종사자**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5210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52100	전화통신 판매원
522	통신서비스 및 통신 재판매 종사자
5221	통신서비스 판매 종사자
52210	통신서비스 판매원
5222	통신 재판매 종사자
52220	통신 재판매원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530	모델 및 홍보 종사자
5301	모델
53010	모델
5302	홍보 종사자
53020	홍보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61~63)〕	
61	**농업 숙련 종사자**
611	전답작물 재배 종사자
6111	곡식작물 재배 종사자
61110	곡식작물 재배자
6112	특용작물 재배 종사자
61120	특용작물 재배자
6113	채소 재배 종사자
61130	채소 재배자
612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6121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열대과일 제외
61211	사과 재배자
61212	배 재배자
61213	복숭아 재배자
61214	포도 재배자
61215	차 재배자
61219	기타 과수작물 재배자
6122	열대과일 재배 종사자
61221	감귤 재배자
61229	기타 열대과일 재배자
613	정원사, 육묘 및 버섯 재배종사자
6131	정원사, 원예 및 육묘 재배종사자
61311	정원사 및 원예사
61312	육묘 재배자
61319	기타 정원사, 원예 및 육묘 재배자
6132	버섯 재배 종사자
61320	버섯 재배자
614	복합 및 시설작물 재배 종사자
6141	복합작물 재배 종사자
61410	복합작물 재배자
6142	시설작물 재배 종사자
61420	시설작물 재배자
615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자
6151	낙농품 생산 종사자
61510	낙농품 생산자
6152	가축 사육 종사자
61521	육우 사육자
61522	돼지 사육자
61529	기타 가축 사육자
6153	가금 사육 종사자
61530	가금 사육자

분류부호	분 류 명
6154	양봉 및 양잠 생산 종사자
61540	양봉가 및 양잠가
6155	복합동물 사육 종사자
61550	복합동물 사육자
6159	기타 동물사육 및 관련종사자
61591	기타 동물 및 조류 사육자
61592	동물수정, 가금 부화 및 감별사
61599	그외 기타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원
616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6160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61600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617	자급농업 종사자
6170	자급농업 종사자
61700	자급농업 종사자
618	수렵업 종사자
6180	수렵 종사자
61800	수렵원
62	임업 숙련 종사자
620	임업 숙련 종사자
6201	조림 및 영림 관련 종사자
62011	조림원
62012	영림원
62013	벌목원
62014	목재 답사자
62019	기타 조림 및 영림 관련종사원
6202	임산물 및 임업 식물 관련종사자
62021	임산물 채취원
62022	임업용 식물 증식원
6203	목탄굽기원 및 관련 종사자
62031	목탄굽기원
62039	기타 목탄굽기원 및 관련종사원
63	어업 숙련 종사자
630	어업 숙련 종사자
6301	수생 동·식물 양식 종사자
63011	물고기 양식원
63012	굴 양식원
63013	해조류 양식원
63019	기타 수생동물 양식원
6302	내륙 및 연안어업 종사자
63021	내수면 어부
63022	연안어부
63023	해녀
63029	기타 내륙 및 연안어업 종사원
6303	원양어업 종사자
63030	원양어업 종사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1~75)〕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711	광원, 발파원,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7111	광원 및 채석 종사자
71111	광원
71112	채석원
71119	기타 광원 및 채석원
7112	점화 및 발파 종사자
71120	점화 및 발파원
7113	석재 절단, 재단 및 조각종사자
71131	석재 선별 및 절단원
71132	석재 설계원
71133	석재 재단 및 완성원
71134	석재 조각원
71139	기타 석재절단, 재단 및 초각원
712	건물 골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21	전통건물 건축 종사자
71210	전통건물 건축원
7122	조적 및 석재 부설 종사자
71221	조적원
71222	석재 부설원
71223	보도블럭 설치원
71224	조립 콘크리트 설치원
71229	기타 조적 및 석재 부설원
7123	콘크리트 타설원, 완성원 및 관련 종사자
71231	거푸집 설치원

분류부호	분 류 명
71232	철근원
71233	시멘트 혼합 및 완성원
71234	테라조원
71239	기타 콘크리트 타설원, 완성원 및 관련 기능원
7124	건축 목공
71240	건축 목공
7125	목공 및 소목공, 건축목공 제외
71251	소목세공
71252	장치물 목공
71253	선박 목공
71254	무대 목공
71259	기타 목공 및 소목공
7129	기타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291	건물 구조물 설치원
71292	건물 보수원
71293	비계 설치원
71294	건물 해체원
71299	그외 기타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원
713	건물 완성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31	마루설치 및 타일부착 종사자
71311	대리석 부착원
71312	타일 부착원
71313	마루 설치원
71314	카펫공
71319	기타 마루설치 및 타일 부착원
7132	미장 종사자
71321	장식 미장원
71322	외벽 미장원
71329	기타 미장원
7133	단열 종사자
71331	건물 단열원
71332	시설장치 단열원
71339	기타 단열원
7134	유리부착 종사자
71341	건물 유리원
71342	판 유리원
71343	장식 유리원
71349	기타 유리원

분류부호	분 류 명
7135	연관 및 배관 종사자
71351	상하수 배관원
71352	가스 배관원
71353	선박 배관원
71354	항공기 배관원
71355	관 부설원
71359	기타 연관 및 배관원
7136	건축 및 관련 전기 종사자
71361	건축물 전기원
71362	건물보수 전기원
71363	네온사인 전기원
71364	무대 전기원
71369	기타 건축 및 관련 전기원
7139	기타 건물 완성 종사자
71390	기타 건물 완성원
714	건물 도장, 청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41	건물 도장 및 관련 종사자
71411	건물 도장원
71412	철구조물 도장원
71413	무대장치 도장원
71419	기타 건물도장 및 관련 기능원
7142	도배 종사자
71420	도배원
7143	건물 청결 종사자
71431	건물외벽 청결원
71432	배관 청결원
71433	수조 청결원
71434	병충해 방역원
71439	기타 건물 청결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21	금속주형, 용접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211	금속주형 및 모형제조 종사자
72111	금속모형 제조원
72112	주형원
72113	금속 주입원
72119	기타 금속 주형 및 모형 제조원
7212	용접 및 화염절단 종사자
72121	가스 용접원

분류부호	분 류 명
72122	전기 용접원
72123	초음파 용접원
72124	화염 절단원
72129	기타 용접 및 화염절단원
7213	구조금속 준비 및 건립 종사자
72131	구조강 가공원
72132	구조강 건립원
72133	선박구조물 건립원
72139	기타 구조금속 준비 및 건립원
7214	삭구원 및 케이블 접속 종사자
72141	건설인양장비 삭구원
72142	선박 삭구원
72143	케이블카 및 스키리프트 삭구원
72144	현수교량 케이블 접속원
72149	기타 삭구원 및 케이블 접속원
7215	수중 기능 종사자
72150	수중 기능원
722	대장원, 공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221	대장원 및 단조관련 종사자
72211	신선원
72212	단조원
72213	금속 성형원
72214	대장원
72219	기타 대장원 및 단조관련 기능원
7222	공구 제조 및 관련 종사자
72221	공구 제조원
72222	게이지 제조원
72223	자물쇠 조립원
72229	기타 공구제조 및 관련 기능원
7223	금속연삭 기능 종사자
72231	절삭공구 갈이원
72232	톱날 연삭원
72233	금속 세척원
72239	기타 금속연삭 기능원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731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7311	자동차 정비 종사자
73111	자동차기관 정비원
73112	자동차 경정비원
73113	이륜자동차 정비원
73114	자전거 정비원
7312	특수차량 정비 종사자
73120	특수차량 정비원
7313	항공기 정비 종사자
73130	항공기 정비원
7314	철도차량 정비 종사자
73141	철도 기관차 정비원
73142	객화차 정비원
7315	전동차량 정비 종사자
73150	전동차량 정비원
7316	선박기관 정비 종사자
73160	선박기관 정비원
732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1	농업, 광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11	농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12	광산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	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종사자
73221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2	섬유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3	금속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4	인쇄기계 설치 및 정비원
73229	기타 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
733	전기, 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31	전기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311	전기발전, 송·배전장치 설치 및 정비원
73312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73313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
73314	기타 전기장치 설치 및 정비원
73315	자동차 전기원
73316	항공기 전기원
73317	선박 전기원
73318	전기기구 설치 및 정비원
73319	기타 전기 설치 및 정비원
7332	전자장비 설치 종사자

분류부호	분 류 명
73321	방송 통신장비 설치원
73322	전자음향장비 설치원, 방송장비 제외
73323	신호장비 설치원
73324	의료장비 설치원
73325	컴퓨터 설치원
73329	기타 전자장비 설치원
7333	전자 정비 및 수리 종사자
73331	전자음향장비 수리원
73332	사무기기 수리원
73333	컴퓨터 수리원
73339	기타 전자정비 및 수리원
7334	전신, 전화 설치 및 수리 종사자
73341	전신, 전화 설치원
73342	전신, 전화 수리원
7335	전기배선, 수리 및 케이블 가설 종사자
73351	송·배전 설비 전기원
73352	지중 전력 설비 전기원
73353	통신케이블 가설원
73354	케이블 접속원
73359	기타 전기배선, 수리 및 케이블 가설원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741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7411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 종사자
74111	시계 제조원
74112	시계 수리원
74113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원
74114	광학기구 제조 및 수리원
74115	카메라 수리원
74116	정형기구 제조 및 수리원
74119	기타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원
7412	악기 제조 및 조율 종사자
74121	현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2	목관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3	금관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4	건반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5	타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6	전통악기 제조 및 수리원
74127	조율사
74129	기타 악기 제조 및 수리원

분류부호	분 류 명
7413	장신구 및 귀금속 종사자
74131	보석 세공원
74132	귀금속 세공원
74133	보석 부착원
74139	기타 장신구 및 귀금속 기능원
742	도공, 유리가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421	연마휠 성형원, 도자원 및 관련 종사자
74211	연마휠 성형원
74212	도자기 주형원
74213	도자기 녹로원
74214	벽돌 및 타일 성형원
74215	유약 처리원
74219	기타 연마휠 성형원, 도자원 및 관련 기능원
7422	유리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4220	유리가공 관련 기능원
7423	유리, 도기 및 관련 장식도장 종사자
74231	유리 장식원
74232	제경원
74233	도기 장식원
74234	간판 도장원
74235	도장원, 건설 도장원 제외
74239	기타 유리, 도기 및 관련장식 도장원
743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7431	목재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74311	목 공예원
74312	등죽 공예원
74313	인장 공예원
74314	종이 공예원
74319	기타 목재 및 관련재료 수공예원
7432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74321	수편물원
74322	한복 제조원
74323	가죽 수공예원
74329	기타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원
7433	기타재료 수공예 종사자
74331	석 공예원
74332	조화 공예원
74333	양초 공예원
74334	자개 세공원

분류부호	분 류 명
74339	그외 기타재료 수공예원
744	인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441	인쇄 조판원 및 관련 종사자
74411	인쇄조판원 및 식각원
74412	사진 식자원
74419	기타 인쇄조판원 및 관련 기능원
7442	제판원 및 관련 종사자
74421	연판 제조원
74422	전기 제판원
74423	인쇄 제판원
74424	사진 제판원
7443	스크린인쇄 및 직물인쇄 종사자
74431	스크린 인쇄원
74432	날염원
74439	기타 직물 인쇄원
7444	사진처리 및 관련 종사자
74440	사진처리원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5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11	도살, 생선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5111	도살원
75112	절육원
75113	염장원
75114	수산물 가공원
75119	기타 도살, 생선가공 관련 기능원
7512	제빵관련 기능 종사자
75121	제빵, 제과원
75122	떡 제조원
75123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원
75129	기타 제빵, 제과원
7513	식품선별 및 저장 기능 종사자
75131	식품 선별원, 과실 제외
75132	과실 선별원
75133	과실 및 채소 염장원
75139	기타 식품선별 및 저장원
7519	기타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190	기타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원

분류부호	분 류 명
752	목재처리, 가구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21	목재처리 기능 종사자
75211	목재 선별원
75219	기타 목재 처리원
7522	가구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221	장롱 제조원
75222	책상 및 탁상 제조원
75223	목재케이스 제조원
75224	목제통 및 상자제조원
75225	목형 제조원
75226	조각무늬 세공원
75227	목제가구칠원
75229	기타 가구제조 및 관련 기능원
7523	목재공작기 조정 종사자
75231	제재기 조정원
75232	목재선반 조정원
75233	목재 성형기 조정원
75234	목각기 조정원
75235	목재평삭기 조정원
75239	기타 목재공작기 조정원
7524	바구니 세공, 솔 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241	바구니 세공원
75242	솔 제조원
75243	목재 장난감 제조원
75244	조물제품 제조원
75245	등가구 제조원
75249	기타 바구니 세공, 솔 제조 및 관련 기능원
753	섬유, 의복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31	섬유 및 직조관련 기능 종사자
75311	섬유 선별원
75312	양모 세척원
75319	기타 섬유 및 직조관련 기능원
7532	의복, 모자 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321	양복 제조원
75322	양장 제조원
75323	모자 및 가발 제조원
75324	셔츠 및 체육복 제조원
75325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원
75329	기타 의복, 모자제조 및 관련 기능원

분류부호	분 류 명
7533	모피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331	모피 선별원
75332	모피옷본 제조원
75333	모피 재단원
75334	모피의복 제조원
75339	기타 모피제조 및 관련 기능원
7534	직물, 가죽관련 옷본 제조 및 재단 종사자
75341	옷본 제조원
75342	모자본 제조원
75343	의복 재단원, 가죽제외
75344	가죽의복 재단원
75349	기타 직물, 가죽관련 옷본제조 및 재단원
7535	재봉관련 기능 종사자
75351	직물 재봉원
75352	가죽 재봉원
75353	모피 재봉원
75354	신발 재봉원
75355	천막 재봉원
75356	인형 제조원
75359	기타 재봉관련 기능원
7536	가구장식물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75361	가구장식물 제조원
75362	차량 시트 제조원
75363	매트리스 제조원
75369	기타 가구장식물 제조 관련 기능원
7537	의복 수선 및 관련 기능종사자
75371	의복 수선원, 모피 및 가죽 제외
75372	모피의복 수선원
75373	가죽의복 수선원
75374	신변잡화 수선원
75375	가구장식물 수선원
75379	기타 의복 수선 및 관련 기능원
754	펠트, 가죽신발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7541	펠트 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75411	펠트, 원피 선별원
75412	펠트 처리원
75419	기타 펠트 가공관련 기능원
7542	가죽신발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75421	제화원
75422	구두 재단원
75423	구두 완성원
75424	구두 수선원
75425	구두 원형 제조원
75426	마구류 제조원
75429	기타 가죽신발 제조관련 기능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1~84)〕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811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1	채광장치 조작 종사자
81111	굴착기 조작원
81112	착암기 조작원
81113	채광기 조작원
81119	기타 채광장치 조작원
8112	광석 및 석재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21	절할기 조작원
81122	파쇄 및 분쇄기 조작원
81123	선광기 조작원
81124	세척기 조작원
81125	재단기 조작원
81126	연마기 조작원
81129	기타 광석 및 석재 가공장치 조작원
8113	유정 천공 및 시추장비 조작 종사자
81131	유정탑 조작원
81132	천공장비 조작원
81133	시추장비 조작원
81139	기타 유정 천공 및 시추장비 조작원
812	금속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21	광석 및 금속 용광로 조작 종사자
81211	금속 용광로 조작원
81212	제강로 조작원
81213	제련로 조작원
81219	기타 광석 및 금속 용광로 조작원
8122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 종사자
81221	금속용해로 조작원
81222	금속가열로 조작원
81223	열간압연기 조작원
81224	냉간압연기 조작원
81229	기타 금속용해 및 압연기 조작원

분류부호	분 류 명
8123	주조기 조작 종사자
81231	연속주조기 조작원
81232	주물주조기 조작원
8124	금속 열처리로 조작 종사자
81241	금속소둔로 조작원
81242	금속표면경화로 조작원
81249	기타 금속 열처리로 조작원
8125	금속인발 및 압출 종사자
81251	금속인발기 조작원
81252	금속압출기 조작원
81253	연선기 조작원
81259	기타 금속인발 및 압출기조작원
813	유리 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31	유리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311	유리용해로 조작원
81312	유리성형기 조작원
81313	유리취주기 조작원
81314	유리인발기 조작원
81315	유리조각 및 식각기 조작원
81319	기타 유리 가공장치 조작원
8132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321	벽돌 및 타일로 조작원
81322	도자기로 조작원
81329	기타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원
8139	기타 유리 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391	점토제품 가공장치 조작원
81392	유리원료 혼합장치 조작원
81393	유리섬유제품 제조기 조작원
81394	유약제조기 조작원
81399	그외 기타 유리 가공장치, 도기로 관련장치 조작원
814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8141	목재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411	제재기 조작원
81412	목재가공기 조작원
81413	목재건조기 조작원
81414	목재처리기 조작원
81415	단판절단기 조작원
81416	합판제조기 조작원
81417	목재칩 제조 및 마쇄기 조작원
81418	재생목재기 조작원
81419	기타 목재가공장치 조작원
8142	펄프제조장치 조작 종사자
81420	펄프제조장치 조작원
8143	종이제조장치 조작 종사자
81431	해리장치 조작원
81432	고해장치 조작원
81433	조성장치 조작원
81434	초지기 조작원
81435	재권치기 조작원
81439	기타 제지 관련장치 조작원
815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51	화학물 분쇄, 마쇄 및 혼합기 조작 종사자
81511	분쇄기 조작원
81512	마쇄기 조작원
81513	혼합기 조작원
81519	기타 화학물 분쇄, 마쇄 및 혼합기 조작원
8152	화학물 가열처리장치 조작 종사자
81521	조제장치 조작원
81522	하소장치 조작원
81523	가공로 조작원, 시멘트 제외
81524	시멘트 가공로 조작원
81529	기타 화학물 가열처리 장치 조작원
8153	화학물 여과 및 분리기 조작 종사자
81531	여과기 조작원
81532	원심분리기 조작원
81533	원유처리장비 조작원
81534	화학물추출기 조작원
81539	기타 화학물 여과 및 분리기 조작원
8154	화학물 증류 및 반응기 조작 종사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81541	화학물 증류기 조작원
81542	화학물 반응기 조작원
81543	증발기 조작원
81549	기타 화학물 증류 및 반응기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8155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 장치 조작

분류부호	분 류 명
	종사자
81551	탈황처리기 조작원
81552	정제기 조작원
81553	증류기 조작원
81554	제어기 조작원
81555	배합기 조작원
81556	파라핀제조기 조작원
81559	기타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장치 조작원
8159	기타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591	화학물 표백기 조작원
81592	코크스제조기 조작원
81593	목탄생산기 조작원
81594	화학섬유생산기 조작원
81595	비료제조기 조작원
81596	고무가공장치 조작원
81597	방사성물질 가공기 조작원
81598	소금제조장치 조작원
81599	그외 기타 화학물가공 장치 조작원
816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61	발전장치 조작 종사자
81611	화력발전장치 운전원
81612	수력발전장치 운전원
81613	원자력발전장치 운전원
81614	발전터빈 조작원
81615	배전반 조작원
81616	급전 사령원
81619	기타 발전장치 조작원
8162	보일러 조작 종사자
81620	보일러 조작원
8163	소각로, 상하수 처리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631	공기압축기 조작원
81632	펌프장 조작원
81633	정수장치 조작원
81634	소각장치 조작원
81635	냉장·냉동장치 조작원
81636	하수처리 장치 조작원
81637	환기장치 조작원
81639	기타 소각로, 상하수 처리 및 관련장치 조작원
81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71	자동조립라인 조작 종사자
81710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8172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720	산업용 로봇 조작원
82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821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11	기계공구 조작 종사자
82111	선반 조작원
82112	평삭기 조작원
82113	밀링기 조작원
82114	드릴링기 및 보링기 조작원
82115	금속연삭 및 광택기 조작원
82116	프레스기 및 전단기 조작원
82117	금속공작기 조작원
82119	기타 기계공구 조작원
8212	판금기 조작 종사자
82121	차량 판금기 조작원
82122	항공기 판금기 조작원
82123	금속가구 판금기 조작원
82124	보일러 판금기 조작원
82129	기타 판금기 조작원
8213	시멘트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131	석재가공기 조작원
82132	인조석제품 가공기 조작원
82133	콘크리트제품 가공기 조작원
82134	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원
82135	석면 시멘트제품 가공기 조작원
82139	기타 시멘트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원
822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1	약제품 및 위생용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11	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82212	화장품 생산기 조작원
82213	세제생산기 조작원
82219	기타 약제품 및 위생용품용 기계 조작원
8222	탄약 및 폭약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21	탄약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222	폭약용 기계 조작원
82223	불꽃 제품용 기계 조작원
82229	기타 탄약 및 폭약용 기계 조작원

분류부호	분 류 명
8223	금속완성, 도금 및 도포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31	금속 세척기 조작원
82232	전기 도금기 조작원
82233	용융 도금기 조작원
82234	금속 분무기 조작원
82235	금속 완성용 기계 조작원
82239	기타 금속완성, 도금 및 도포용 기계 조작원
8224	차량도장기 조작 종사자
82240	차량도장기 조작원
8225	사진처리기 조작 종사자
82251	사진처리기 조작원
82252	필름 생산기 조작원
82253	인화지 생산기 조작원
82259	기타 사진처리기 조작원
8229	기타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91	양초제조기 조작원
82292	리놀륨생산기 조작원
82293	연필제조기 조작원
82294	가스 생산기 조작원
82299	그외 기타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원
8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1	고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11	타이어 경화기 조작원
82312	타이어 성형기 조작원
82313	타이어 재생기 조작원
82314	고무성형기 조작원
82315	고무압출기 조작원
82316	고무캘린더기 조작원
82317	고무합성기 조작원
82319	기타 고무제품용 기계 조작원
8232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21	플라스틱 성형기 조작원
82322	플라스틱 압출기 조작원
82323	플라스틱 적층기 조작원
82324	플라스틱 사출기 조작원
82329	기타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원
824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40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401	목공선반 조작원
82402	목재조각기 조작원
82403	목재완성기 조작원
82409	기타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원
825	인쇄, 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1	인쇄기 조작 종사자
82511	활판 인쇄기 조작원
82512	평판 인쇄기 조작원
82513	윤전 인쇄기 조작원
82514	옵셋 인쇄기 조작원
82519	기타 인쇄기 조작원
8252	제책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20	제책용 기계 조작원
8253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31	종이상자 및 봉투제조기 조작원
82532	판지 라이닝기 조작원
82533	셀로판백 제조기 조작원
82534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기 조작원
82539	기타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
826	섬유, 의복 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61	섬유 가공기계 조작 종사자
82611	섬유혼합기 조작원
82612	소면기 및 랩핑기 조작원
82613	연조기 조작원
82614	조방기 조작원
82615	정방기 조작원
82616	권사기 조작원
82617	연사기 조작원
82619	기타 섬유 가공기계 조작원
8262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 종사자
82621	정경기 조작원
82622	통경기 조작원
82623	직조기 조작원
82624	편직기 조작원
82625	망제조기 조작원
82629	기타 직조, 편직기 조작원
8263	표백, 염색기계 조작 종사자
82631	표백기 조작원
82632	염색기 조작원

분류부호	분 류 명
82639	기타 직물가공 기계 조작원
8264	재봉기계 조작 종사자, 직물 및 가죽
82641	직물제품용 재봉기계 조작원
82642	가죽제품용 재봉기계 조작원
82643	신발재봉기계 조작원
82644	자수재봉기계 조작원
82649	기타 재봉기계 조작원
8265	모피 및 가죽가공기 조작 종사자
82651	원피 제육기 및 제모기 조작원
82652	가죽 무두질기 조작원
82653	가죽 염색기 조작원
82654	모피 완성기 조작원
82659	기타 모피 및 가죽가공기 조작원
8266	세탁 및 관련 기계 조작 종사자
82661	의복세탁기 조작원
82662	드라이크리닝기 조작원
82669	기타 세탁 및 관련 기계 조작원
8267	신발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 종사자
82671	일반 신발생산기 조작원
82672	스포츠 신발생산기 조작원
82673	정형화 생산기 조작원
82679	기타 신발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원
8269	기타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691	모자제조기 조작원
82692	매트리스제조기 조작원
82693	직물재단기 조작원
82694	끈제조기 조작원
82699	그외 기타 섬유,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 조작원
827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71	육류 및 어류 가공기계 조작 종사자
82711	훈제기 조작원
82712	햄, 소시지 제조기 조작원
82713	통조림기 조작원
82714	살균기 조작원
82715	냉동기 조작원
82719	기타 육류 및 어류 가공 기계 조작원
8272	낙농제품 기계 조작 종사자
82721	우유 살균기 조작원
82722	분유 생산기 조작원
82723	연유 생산기 조작원
82724	버터, 치즈 제조기 조작원
82725	아이스크림 제조기 조작원
82729	기타 낙농제품 제조기 조작원
8273	곡식 및 조미료 제분기 조작 종사자
82731	도정기 조작원
82732	제분기 조작원, 조미료 제외
82733	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82739	기타 곡식 및 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8274	곡류제품 제조기 조작 종사자
82741	빵·과자 제조기 조작원
82742	사탕, 껌 제조기 조작원
82743	초콜릿 제조기 조작원
82744	면류 제조기 조작원
82749	기타 곡류제품 제조기 조작원
8275	과실, 채소 및 견과 가공기 조작 종사자
82751	과실 및 채소 통조림기 조작원
82752	과실 및 채소 살균기 조작원
82753	과실 및 채소 냉장기 조작원
82754	과실 및 채소 건조기 조작원
82755	과실 및 채소 주스기 조작원
82759	기타 과실, 채소 가공기 조작원
8276	유지제조 기계 조작 종사자
82761	식용유 착유기 조작원
82762	식용유 정제기 조작원
82763	마가린 제조기 조작원
82769	기타 유지 제조 기계 조작원
8277	설탕제조 기계 조작 종사자
82770	설탕제조 기계 조작원
8279	기타 식품 가공기 조작 종사자
82791	식사용 조제식품 가공기 조작원
82792	강장식품 가공기 조작원
82799	그외 기타 식품 가공기 조작원
828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 기계 조작 종사자
8281	차, 커피 및 코코아 가공기 조작 종사자
82811	커피원두 가공기 조작원

분류부호	분 류 명
82812	차 가공기 조작원
82813	코코아두 가공기 조작원
82819	기타 차, 커피 및 코코아 가공기 조작원
8282	양조, 주조 및 음료제조기 조작 종사자
82821	맥아제조기 조작원
82822	발효장비 조작원
82823	배합장치 조작원
82824	증류장치 조작원
82825	포도주 제조장치 조작원
82826	비알콜성 음료 생산장치 조작원
82829	기타 양조, 주조 및 음료용 기계 조작원
8283	조미식품 생산기 조작 종사자
82831	조미식품 제조장치 조작원
82832	식품첨가물 제조장치 조작원
8284	담배 제조기 조작 종사자
82841	엽연초 배합기 조작원
82842	엽연초 절단기 조작원
82843	엽연초 진공조절기 조작원
82844	엽연초 제경기 조작원
82845	담배생산기 조작원
829	기타 기계 조작 종사자
8291	전기·전자장비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82911	전기장비 제조기계 조작원
82912	전자장비 제조기계 조작원
8299	기타 기계 조작 종사자
82991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
82992	케이블 및 배관 부설기 조작원
82993	도로표시기 조작원
82994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
82995	병 세척기 조작원
82999	그외 기타 기계 조작원
83	**조립 종사자**
831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8311	자동차 조립 종사자
83110	자동차 조립원
8312	항공기 및 선박 조립 종사자
83121	항공기 조립원
83122	선박기관 조립원
8313	기계 및 관련제품 조립 종사자
83131	광산용기계 조립원
83132	농업용기계 조립원
83133	건설용기계 조립원
83134	기계공구 조립원
83139	기타 기계 및 관련제품 조립원
832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8321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가정용 제외
83211	전기장비 조립원
83212	영상, 음향장비 조립원
83213	사무용기기 조립원
83214	전자정밀기구 조립원
83219	기타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원
8322	가정용 전기기구 조립 종사자
83220	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833	금속, 목재 및 기타 제품조립 종사자
8331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 종사자
83311	금속제품 조립원
83312	고무제품 조립원
83313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8332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 종사자
83320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8333	섬유, 가죽 및 관련제품 조립 종사자
83330	섬유, 가죽 및 관련제품 조립원
8339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390	기타제품 조립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1	철도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8411	철도 기관사
84111	열차 기관사
84112	지하철 기관사
84119	기타 철도차량 기관사
8412	화물열차 차장, 신호 및 수송 종사자
84121	화물열차 차장
84122	철도 신호원
84123	철도 수송원

분류부호	분 류 명
84129	기타 화물열차 차장, 신호원 및 수송원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
8421	택시운전 종사자
84210	택시 운전원
8422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 종사자
84221	일반 승용차 운전원
84222	경화물차 운전원
84223	구급차 운전원
84224	우편배달차 운전원
84229	기타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원
8423	버스 및 승합차 운전 종사자
84231	시내버스 운전원
84232	시외버스 운전원
84233	고속버스 운전원
84234	관광버스 운전원
84235	승합차 운전원
84239	기타 버스 운전원
8424	중화물(重貨物) 트럭 및 특수차 운전 종사자
84241	일반 트럭 운전원
84242	유조차량 운전원
84243	트레일러 트럭 운전원
84244	덤프트럭 운전원
84245	레미콘차량 운전원
84246	광산왕복차 운전원
84247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
84249	기타 특수차 운전원
843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 종사자
8431	동력 농림업장치 운전 종사자
84311	농기계 운전원
84312	산림용 기계 및 임업장치 운전원
84319	기타 동력 농림업장치 운전원
8432	흙 운반 및 관련장치 운전 종사자
84321	굴삭기 운전원
84322	불도저 운전원
84323	준설기 운전원
84324	항타기 조작원
84325	도로정지기 운전원
84326	도로포장기 운전원
84327	터널굴착기 운전원
84329	기타 흙 운반 및 관련장치 운전원
8433	크레인, 호이스트 및 관련장치 운전 종사자
84331	브리지 크레인 운전원
84332	타워크레인 운전원
84333	이동크레인 운전원
84334	호이스트 운전원
84335	리프트 조작원
84336	갑문 조작원
84339	기타 크레인, 호이스트 및 관련장치 운전원
8434	적재용 차량 운전 종사자
84340	적재용 차량 운전원
844	선박갑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440	선박갑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4401	갑판장
84402	갑판원
84403	등대지기
84404	바지선 선원
84409	기타 선박갑판 관련 승무원
	〔9 단순 노무 종사자(91~94)〕
9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11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9111	가사 보조 종사자
91111	가사 보조원
91112	가사 쇼핑 대행원
9112	건물 청소 종사자
91121	사무실 청소원
91122	아파트 청소원
91129	기타 건물 청소원
9113	호텔 및 음식업소 청소 종사자
91131	호텔 및 숙박시설 청소원
91132	병원 청소원
91133	음식업소 보조원 및 청소원
91139	기타 호텔 및 음식업소 청소원
9114	차량 및 관련 청소 종사자
91141	세차원

분류부호	분 류 명
91149	기타 차량 및 관련 청소원
9115	세탁 및 다림질 종사자
91150	세탁 및 다림질원
912	건물관리, 경비 및 관련 종사자
9121	건물관리 종사자
91211	빌딩 관리인
91212	공동주택 관리인
91213	교구 관리인
91219	기타 건물 관리인
9122	수위, 경비 및 관련 종사자
91221	수위 및 경비원
91222	물품 보관원
91223	집표원
91224	공원 관리원
91225	주차장 관리원
91229	기타 수위, 경비 및 관련 종사원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
9131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1	우편물 집배원
91312	신문 배달원
91313	물품 배달원
91314	수하물 운반원
91319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9132	계기 검침 종사자
91320	계기 검침원
9133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91330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914	환경미화 및 관련 종사자
9141	쓰레기 수거 종사자
91410	쓰레기 수거원
9142	거리 미화원 및 관련 종사자
91420	거리 미화원 및 관련종사원
915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150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1501	구두 미화원
91502	심부름원
91503	물품 분류원
91509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노무자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20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201	농업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2011	전답작물 관련 단순 노무자
92012	과수작물 관련 단순 노무자
92013	축산 관련 단순 노무자
92019	기타 농업관련 단순 노무자
9202	임업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2020	임업관련 단순 노무자
9203	어업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2030	어업 관련 단순 노무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30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301	단순 조립 노무 종사자
93010	단순 조립원
9302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
93021	포장원
93022	상표 부착원
9309	기타 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3091	제품 운반원
93099	그외 기타 제조 관련 단순 노무자
94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1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11	광업 단순 노무 종사자
94110	광업 단순 노무자
9412	건설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121	교통 정리원
94122	철로 보수원
94123	토공 작업원
94124	건물건설 잡역부
94125	건물건축 운반인부
942	운수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분류부호	분 류 명	분류부호	분 류 명
9421	화물취급 종사자		
94211	부두 하역원		
94212	육상화물 하역원		
94213	선박 하역원, 가스		
94214	화물 운반원		
94219	기타 화물취급원		
9422	교통 지도원		
94220	교통 지도원		
	〔A 군 인〕		
A1	군인		
A11	장교		
A111	영관급 이상		
A1110	영관급 이상		
A112	위관급		
A1120	위관급		
A12	기타 군인		
A120	기타 군인		
A1200	기타 군인		

Ⅵ. 행정구역분류

Ⅵ-1. 시군구부호

Ⅵ-2. 행정구역분류부호

Ⅵ. 행정구역분류

Ⅵ-1. 시군구부호

Ⅵ-2. 행정구역분류부호

1. 서울특별시 89

2. 부산광역시 93

3. 대구광역시 95

4. 인천광역시 97

5. 광주광역시 99

6. 대전광역시 100

7. 울산광역시 101

8. 경 기 도 102

9. 강 원 도 107

10. 충청북도 109

11. 충청남도 111

12. 전라북도 113

13. 전라남도 115

14. 경상북도 118

15. 경상남도 121

16. 제 주 도 124

Ⅵ-1. 시군구부호(5년전 거주지용)

행정구역명	부 호
서울특별시	11
강남구	11 230
강동구	11 250
강북구	11 090
강서구	11 160
관악구	11 210
광진구	11 050
구로구	11 170
금천구	11 180
노원구	11 110
도봉구	11 100
동대문구	11 060
동작구	11 200
마포구	11 140
서대문구	11 130
서초구	11 220
성동구	11 040
성북구	11 080
송파구	11 240
양천구	11 150
영등포구	11 190
용산구	11 030
은평구	11 120
종로구	11 010
중구	11 020
중랑구	11 070
부산광역시	21
강서구	21 090
금정구	21 010
기장군	21 040
남구	21 130
동구	21 140
동래구	21 020
부산진구	21 100
북구	21 150
사상구	21 080
사하구	21 050
서구	21 060
수영구	21 030
연제구	21 070
영도구	21 310
중구	21 110
해운대구	21 120
대구광역시	22
남구	22 040
달서구	22 070
달성군	22 310
동구	22 020
북구	22 050
서구	22 030
수성구	22 060
중구	22 010
인천광역시	23
강화군	23 310
계양구	23 070
남구	23 030
남동구	23 050
동구	23 020
부평구	23 060
서구	23 080
연수구	23 040
옹진군	23 320
중구	23 010
광주광역시	24
광산구	24 050
남구	24 030
동구	24 010
북구	24 040
서구	24 020
대전광역시	25
대덕구	25 050
동구	25 010
서구	25 030
유성구	25 040
중구	25 020
울산광역시	26
남구	26 020
동구	26 030
북구	26 040
울주군	26 310
중구	26 010
경기도	31
가평군	31 370
고양시	31 100
과천시	31 110
광명시	31 060
광주시	31 250
구리시	31 120
군포시	31 160
김포시	31 230
남양주시	31 130
동두천시	31 080
부천시	31 050
성남시	31 020
수원시	31 010
시흥시	31 150
안산시	31 090
안성시	31 220
안양시	31 040
양주시	31 260
양평군	31 380
여주군	31 320
연천군	31 350
오산시	31 140
용인시	31 190
의왕시	31 170
의정부시	31 030
이천시	31 210
파주시	31 200
평택시	31 070
포천시	31 270
하남시	31 180
화성시	31 240
강원도	32
강릉시	32 030
고성군	32 400
동해시	32 040
삼척시	32 070
속초시	32 060
양구군	32 380
양양군	32 410
영월군	32 330
원주시	32 020
인제군	32 390
정선군	32 350
철원군	32 360
춘천시	32 010
태백시	32 050
평창군	32 340
홍천군	32 310
화천군	32 370
횡성군	32 320
충청북도	33
괴산군	33 360
단양군	33 380
보은군	33 320
영동군	33 340
옥천군	33 330
음성군	33 370
제천시	33 030
증평군	33 390
진천군	33 350
청원군	33 310
청주시	33 010
충주시	33 020
충청남도	34
계룡시	34 070
공주시	34 020
금산군	34 310
논산시	34 060
당진군	34 390
보령시	34 030
부여군	34 330
서산시	34 050
서천군	34 340
아산시	34 040
연기군	34 320
예산군	34 370
천안시	34 010
청양군	34 350
태안군	34 380
홍성군	34 360
전라북도	35
고창군	35 370
군산시	35 020
김제시	35 060
남원시	35 050
무주군	35 330
부안군	35 380
순창군	35 360
완주군	35 310
익산시	35 030
임실군	35 350
장수군	35 340
전주시	35 010
정읍시	35 040
진안군	35 320
전라남도	36
강진군	36 390
고흥군	36 350
곡성군	36 320
광양시	36 060
구례군	36 330
나주시	36 040
담양군	36 310
목포시	36 010
무안군	36 420
보성군	36 360
순천시	36 030
신안군	36 480
여수시	36 020
영광군	36 440
영암군	36 410
완도군	36 460
장성군	36 450
장흥군	36 380
진도군	36 470
함평군	36 430
해남군	36 400
화순군	36 370
경상북도	37
경산시	37 100
경주시	37 020
고령군	37 370
구미시	37 050
군위군	37 310
김천시	37 030
문경시	37 090
봉화군	37 410
상주시	37 080
성주군	37 380
안동시	37 040
영덕군	37 350
영양군	37 340
영주시	37 060
영천시	37 070
예천군	37 400
울릉군	37 430
울진군	37 420
의성군	37 320
청도군	37 360
청송군	37 330
칠곡군	37 390
포항시	37 010
경상남도	38
거제시	38 090
거창군	38 390
고성군	38 340
김해시	38 070
남해군	38 350
마산시	38 020
밀양시	38 080
사천시	38 060
산청군	38 370
양산시	38 100
의령군	38 310
진주시	38 030
진해시	38 040
창녕군	38 330
창원시	38 010
통영시	38 050
하동군	38 360
함안군	38 320
함양군	38 380
합천군	38 400
제주도	39
남제주군	39 320
북제주군	39 310
서귀포시	39 020
제주시	39 010

○ 분류부호 구성 체계(5자리) : 대륙분류부호(2자리)+국가분류부호(3자리)

○ 대륙별 분류부호(40⇒아시아, 50⇒아메리카주, 60⇒유럽주, 70⇒오세아니아주, 80⇒아프리카주)

국 가 명	부 호
아 시 아 주	40
중 국	40 001
일 본	40 005
필 리 핀	40 006
인 도 네 시 아	40 007
태 국	40 008
베 트 남	40 009
방 글 라 데 시	40 010
몽 골	40 011
우 즈 베 키 스 탄	40 012
파 키 스 탄	40 014
네 팔	40 021
라 오 스	40 027
말 레 이 시 아	40 032
미 얀 마	40 036
사 우 디 아 라 비 아	40 043
수 단	40 044
시 리 아	40 050
싱 가 포 르	40 051
아 프 가 니 스 탄	40 055
요 르 단	40 063
이 라 크	40 067
이 란	40 068
이 스 라 엘	40 069
인 도	40 072
카 자 흐 스 탄	40 076
캄 보 디 아	40 077
키 르 기 스 스 탄	40 084
타 지 키 스 탄	40 085
터 키	40 086
북 한	40 097
기 타 아 시 아 주	40 098
아 메 리 카 주	50
미 국	50 004
과 테 말 라	50 016
도 미 니 카 공 화 국	50 025
멕 시 코	50 033
베 네 수 엘 라	50 037
볼 리 비 아	50 040
브 라 질	50 042
아 르 헨 티 나	50 053
에 콰 도 르	50 058
칠 레	50 074
캐 나 다	50 078
콜 롬 비 아	50 081
파 라 과 이	50 087
페 루	50 088
기 타 아 메 리 카 주	50 098
유 럽 주	60
러 시 아	60 013
그 리 스	60 017
네 덜 란 드	60 020
노 르 웨 이	60 022
덴 마 크	60 024
독 일	60 026
라 트 비 아	60 029
루 마 니 아	60 030
몰 도 바	60 035
벨 기 에	60 038
벨 로 루 시	60 039
불 가 리 아	60 041
스 웨 덴	60 046
스 위 스	60 047
스 페 인	60 048
슬 로 바 크	60 049
아 르 메 니 아	60 052
아 일 랜 드	60 054
영 국	60 060
오 스 트 리 아	60 062
우 크 라 이 나	60 065
유 고 슬 라 비 아	60 066
이 탈 리 아	60 071
체 코	60 073
크 로 아 티 아	60 083
포 르 투 갈	60 089
폴 란 드	60 090
프 랑 스	60 091
핀 란 드	60 092
헝 가 리	60 093
기 타 유 럽 주	60 098
오 세 아 니 아 주	70
뉴 질 랜 드	70 023
오 스 트 레 일 리 아	70 061
기타 오세아니아주	70 098
아 프 리 카 주	80
가 나	80 015
나 이 지 리 아	80 018
남아프리카공화국	80 019
라 이 베 리 아	80 028
리 비 아	80 031
모 로 코	80 034
스 리 랑 카	80 045
알 제 리	80 056
앙 골 라	80 057
에 티 오 피 아	80 059
우 간 다	80 064
이 집 트	80 070
카 메 룬	80 075
케 냐	80 079
코 트 디 부 아 르	80 080
콩 고	80 082
기타 아프리카주	80 098
기 타 및 미 상	90
기 타	90 098
미 상	90 099

일 러 두 기

1. 행정구역분류부호

○ 2005. 11. 1. 기준으로 작성

2. 행정구역분류체계

○ 총 7자리로 시·도(2자리), 시·군·구(3자리), 읍·면·동(2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3. 2000년 이후의 시군구 변동내용

○ 증평출장소 → 증평군(군 승격 : '03. 8. 30.)

○ 계룡출장소 → 계룡시(시 승격 : '03. 9. 19.)

○ 양주군 → 양주시(시 승격 : '03. 10. 19.)

○ 포천군 → 포천시(시 승격 : '03. 10. 19.)

※ 참고

○ 용인시의 행정구역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분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구역분류부호의 마지막 페이지(p125)에 수록되어 있는 「용인시 행정구역분류(대체용)」을 참고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10월 10일 분구 및 분동 예정)

Ⅵ-2. 행정구역분류부호

※ 시군구 및 읍면동은 행정구역편제와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구로구)

행정구역명	부 호
서울특별시	11
강남구	11 230
개포1동	11 230 68
개포2동	11 230 69
개포3동	11 230 70
개포4동	11 230 71
논현1동	11 230 52
논현2동	11 230 53
대치1동	11 230 60
대치2동	11 230 61
대치3동	11 230 62
대치4동	11 230 63
도곡1동	11 230 66
도곡2동	11 230 67
삼성1동	11 230 58
삼성2동	11 230 59
세곡동	11 230 76
수서동	11 230 75
신사동	11 230 51
압구정1동	11 230 54
압구정2동	11 230 55
역삼1동	11 230 64
역삼2동	11 230 65
일원1동	11 230 73
일원2동	11 230 74
일원본동	11 230 72
청담1동	11 230 56
청담2동	11 230 57
강동구	11 250
강일동	11 250 51
고덕1동	11 250 55
고덕2동	11 250 56
길1동	11 250 68
길2동	11 250 69
둔촌1동	11 250 70
둔촌2동	11 250 71
명일1동	11 250 53
명일2동	11 250 54
상일동	11 250 52
성내1동	11 250 65
성내2동	11 250 66
성내3동	11 250 67
암사1동	11 250 57
암사2동	11 250 58
암사3동	11 250 59
암사4동	11 250 60
천호1동	11 250 61
천호2동	11 250 62
천호3동	11 250 63
천호4동	11 250 64
강북구	11 090
미아1동	11 090 51
미아2동	11 090 52
미아3동	11 090 53
미아4동	11 090 54
미아5동	11 090 55
미아6·7동	11 090 56
미아8동	11 090 58
미아9동	11 090 59
번1동	11 090 60
번2동	11 090 61
번3동	11 090 62
수유1동	11 090 63
수유2동	11 090 64
수유3동	11 090 65
수유4동	11 090 66
수유5동	11 090 67
수유6동	11 090 68
강서구	11 160
가양1동	11 160 64
가양2동	11 160 65
가양3동	11 160 66
공항동	11 160 69
등촌1동	11 160 52
등촌2동	11 160 53
등촌3동	11 160 54
발산1동	11 160 67
발산2동	11 160 68
방화1동	11 160 70
방화2동	11 160 71
방화3동	11 160 72
염창동	11 160 51
화곡1동	11 160 56
화곡2동	11 160 57
화곡3동	11 160 58
화곡4동	11 160 59
화곡5동	11 160 60
화곡6동	11 160 61
화곡7동	11 160 62
화곡8동	11 160 63
화곡본동	11 160 55
관악구	11 210
남현동	11 210 63
봉천1동	11 210 52
봉천2동	11 210 53
봉천3동	11 210 54
봉천4동	11 210 55
봉천5동	11 210 56
봉천6동	11 210 57
봉천7동	11 210 58
봉천8동	11 210 59
봉천9동	11 210 60
봉천10동	11 210 61
봉천11동	11 210 62
봉천본동	11 210 51
신림1동	11 210 65
신림2동	11 210 66
신림3동	11 210 67
신림4동	11 210 68
신림5동	11 210 69
신림6동	11 210 70
신림7동	11 210 71
신림8동	11 210 72
신림9동	11 210 73
신림10동	11 210 74
신림11동	11 210 75
신림12동	11 210 76
신림13동	11 210 77
신림본동	11 210 64
광진구	11 050
광장동	11 050 63
구의1동	11 050 60
구의2동	11 050 61
구의3동	11 050 62
군자동	11 050 54
노유1동	11 050 51
노유2동	11 050 52
능동	11 050 59
자양1동	11 050 64
자양2동	11 050 65
자양3동	11 050 66
중곡1동	11 050 55
중곡2동	11 050 56
중곡3동	11 050 57
중곡4동	11 050 58
화양동	11 050 53
구로구	11 170
가리봉1동	11 170 59
가리봉2동	11 170 60
개봉1동	11 170 63
개봉2동	11 170 64
개봉3동	11 170 65
개봉본동	11 170 66

(서울특별시 구로구~마포구)

행정구역명	부 호
고척1동	11 170 61
고척2동	11 170 62
구로1동	11 170 52
구로2동	11 170 53
구로3동	11 170 54
구로4동	11 170 55
구로5동	11 170 56
구로6동	11 170 57
구로본동	11 170 58
수궁동	11 170 69
신도림동	11 170 51
오류1동	11 170 67
오류2동	11 170 68
금천구	**11 180**
가산동	11 180 51
독산1동	11 180 52
독산2동	11 180 53
독산3동	11 180 54
독산4동	11 180 55
독산본동	11 180 56
시흥1동	11 180 57
시흥2동	11 180 58
시흥3동	11 180 59
시흥4동	11 180 60
시흥5동	11 180 61
시흥본동	11 180 62
노원구	**11 110**
공릉1동	11 110 55
공릉2동	11 110 56
공릉3동	11 110 57
상계1동	11 110 65
상계2동	11 110 66
상계3동	11 110 67
상계4동	11 110 68
상계5동	11 110 69

행정구역명	부 호
상계6동	11 110 70
상계7동	11 110 71
상계8동	11 110 72
상계9동	11 110 73
상계10동	11 110 74
월계1동	11 110 51
월계2동	11 110 52
월계3동	11 110 53
월계4동	11 110 54
중계1동	11 110 61
중계2동	11 110 62
중계3동	11 110 63
중계4동	11 110 64
중계본동	11 110 60
하계1동	11 110 58
하계2동	11 110 59
도봉구	**11 100**
도봉1동	11 100 64
도봉2동	11 100 65
방학1동	11 100 55
방학2동	11 100 56
방학3동	11 100 57
방학4동	11 100 58
쌍문1동	11 100 51
쌍문2동	11 100 52
쌍문3동	11 100 53
쌍문4동	11 100 54
창1동	11 100 59
창2동	11 100 60
창3동	11 100 61
창4동	11 100 62
창5동	11 100 63
동대문구	**11 060**
답십리1동	11 060 60
답십리2동	11 060 61

행정구역명	부 호
답십리3동	11 060 62
답십리4동	11 060 63
답십리5동	11 060 64
신설동	11 060 51
용두1동	11 060 52
용두2동	11 060 53
이문1동	11 060 74
이문2동	11 060 75
이문3동	11 060 76
장안1동	11 060 65
장안2동	11 060 66
장안3동	11 060 67
장안4동	11 060 68
전농1동	11 060 56
전농2동	11 060 57
전농3동	11 060 58
전농4동	11 060 59
제기1동	11 060 54
제기2동	11 060 55
청량리1동	11 060 69
청량리2동	11 060 70
회기동	11 060 71
휘경1동	11 060 72
휘경2동	11 060 73
동작구	**11 200**
노량진1동	11 200 51
노량진2동	11 200 52
대방동	11 200 68
동작동	11 200 62
본동	11 200 58
사당1동	11 200 63
사당2동	11 200 64
사당3동	11 200 65
사당4동	11 200 66
사당5동	11 200 67
상도1동	11 200 53

행정구역명	부 호
상도2동	11 200 54
상도3동	11 200 55
상도4동	11 200 56
상도5동	11 200 57
신대방1동	11 200 69
신대방2동	11 200 70
흑석1동	11 200 59
흑석2동	11 200 60
흑석3동	11 200 61
마포구	**11 140**
공덕1동	11 140 54
공덕2동	11 140 55
노고산동	11 140 62
대흥동	11 140 60
도화1동	11 140 57
도화2동	11 140 58
동교동	11 140 67
망원1동	11 140 69
망원2동	11 140 70
상수동	11 140 65
상암동	11 140 74
서교동	11 140 66
성산1동	11 140 72
성산2동	11 140 73
신공덕동	11 140 56
신수동	11 140 63
아현1동	11 140 51
아현2동	11 140 52
아현3동	11 140 53
연남동	11 140 71
염리동	11 140 61
용강동	11 140 59
창전동	11 140 64
합정동	11 140 68

행정구역명	부 호
서대문구	11 130
남가좌1동	11 130 69
남가좌2동	11 130 70
대신동	11 130 57
북가좌1동	11 130 71
북가좌2동	11 130 72
북아현1동	11 130 54
북아현2동	11 130 55
북아현3동	11 130 56
연희1동	11 130 59
연희2동	11 130 60
연희3동	11 130 61
창천동	11 130 58
천연동	11 130 52
충정로동	11 130 51
홍은1동	11 130 66
홍은2동	11 130 67
홍은3동	11 130 68
홍제1동	11 130 62
홍제2동	11 130 63
홍제3동	11 130 64
홍제4동	11 130 65
서초구	11 220
내곡동	11 220 68
반포1동	11 220 57
반포2동	11 220 58
반포3동	11 220 59
반포4동	11 220 60
반포본동	11 220 56
방배1동	11 220 62
방배2동	11 220 63
방배3동	11 220 64
방배4동	11 220 65
방배본동	11 220 61
서초1동	11 220 51
서초2동	11 220 52
서초3동	11 220 53
서초4동	11 220 54
양재1동	11 220 66
양재2동	11 220 67
잠원동	11 220 55
성동구	11 040
금호1가동	11 040 59
금호2가동	11 040 60
금호3가동	11 040 61
금호4가동	11 040 62
도선동	11 040 53
마장동	11 040 54
사근동	11 040 55
성수1가1동	11 040 65
성수1가2동	11 040 66
성수2가1동	11 040 67
성수2가3동	11 040 68
송정동	11 040 69
옥수1동	11 040 63
옥수2동	11 040 64
왕십리1동	11 040 51
왕십리2동	11 040 52
용답동	11 040 70
응봉동	11 040 58
행당1동	11 040 56
행당2동	11 040 57
성북구	11 080
길음1동	11 080 66
길음2동	11 080 67
길음3동	11 080 68
돈암1동	11 080 58
돈암2동	11 080 59
동선1동	11 080 56
동선2동	11 080 57
동소문동	11 080 53
보문동	11 080 61
삼선1동	11 080 54
삼선2동	11 080 55
상월곡동	11 080 75
석관1동	11 080 79
석관2동	11 080 80
성북1동	11 080 51
성북2동	11 080 52
안암동	11 080 60
월곡1동	11 080 71
월곡2동	11 080 72
월곡3동	11 080 73
월곡4동	11 080 74
장위1동	11 080 76
장위2동	11 080 77
장위3동	11 080 78
정능1동	11 080 62
정능2동	11 080 63
정능3동	11 080 64
정능4동	11 080 65
종암1동	11 080 69
종암2동	11 080 70
송파구	11 240
가락1동	11 240 66
가락2동	11 240 67
가락본동	11 240 65
거여1동	11 240 53
거여2동	11 240 54
마천1동	11 240 55
마천2동	11 240 56
문정1동	11 240 68
문정2동	11 240 69
방이1동	11 240 57
방이2동	11 240 58
삼전동	11 240 64
석촌동	11 240 63
송파1동	11 240 61
송파2동	11 240 62
오금동	11 240 60
오륜동	11 240 59
잠실1동	11 240 72
잠실2동	11 240 73
잠실3동	11 240 74
잠실4동	11 240 75
잠실5동	11 240 76
잠실6동	11 240 77
잠실7동	11 240 78
잠실본동	11 240 71
장지동	11 240 70
풍납1동	11 240 51
풍납2동	11 240 52
양천구	11 150
목1동	11 150 51
목2동	11 150 52
목3동	11 150 53
목4동	11 150 54
목5동	11 150 55
목6동	11 150 56
신월1동	11 150 57
신월2동	11 150 58
신월3동	11 150 59
신월4동	11 150 60
신월5동	11 150 61
신월6동	11 150 62
신월7동	11 150 63
신정1동	11 150 64
신정2동	11 150 65
신정3동	11 150 66
신정4동	11 150 67
신정5동	11 150 68
신정6동	11 150 69
신정7동	11 150 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중랑구)

행정구역명	부 호
영등포구	11 190
당산1동	11 190 55
당산2동	11 190 56
대림1동	11 190 70
대림2동	11 190 71
대림3동	11 190 72
도림1동	11 190 57
도림2동	11 190 58
문래1동	11 190 59
문래2동	11 190 60
신길1동	11 190 63
신길2동	11 190 64
신길3동	11 190 65
신길4동	11 190 66
신길5동	11 190 67
신길6동	11 190 68
신길7동	11 190 69
양평1동	11 190 61
양평2동	11 190 62
여의도동	11 190 54
영등포1동	11 190 51
영등포2동	11 190 52
영등포3동	11 190 53
용산구	11 030
남영동	11 030 53
보광동	11 030 70
서빙고동	11 030 69
용문동	11 030 59
용산2가동	11 030 52
원효로1동	11 030 56
원효로2동	11 030 57
이촌1동	11 030 63
이촌2동	11 030 64
이태원1동	11 030 65
이태원2동	11 030 66
청파1동	11 030 54
청파2동	11 030 55
한강로1동	11 030 60
한강로2동	11 030 61
한강로3동	11 030 62
한남1동	11 030 67
한남2동	11 030 68
효창동	11 030 58
후암동	11 030 51
은평구	11 120
갈현1동	11 120 55
갈현2동	11 120 56
구산동	11 120 57
녹번동	11 120 51
대조동	11 120 58
불광1동	11 120 52
불광2동	11 120 53
불광3동	11 120 54
수색동	11 120 68
신사1동	11 120 65
신사2동	11 120 66
역촌1동	11 120 63
역촌2동	11 120 64
응암1동	11 120 59
응암2동	11 120 60
응암3동	11 120 61
응암4동	11 120 62
증산동	11 120 67
진관내동	11 120 69
진관외동	11 120 70
종로구	11 010
가회동	11 010 60
교남동	11 010 58
명륜3가동	11 010 66
무악동	11 010 57
부암동	11 010 55
사직동	11 010 53
삼청동	11 010 54
숭인1동	11 010 70
숭인2동	11 010 71
이화동	11 010 64
종로1·2·3·4가동	11 010 61
종로5·6가동	11 010 63
창신1동	11 010 67
창신2동	11 010 68
창신3동	11 010 69
청운동	11 010 51
평창동	11 010 56
혜화동	11 010 65
효자동	11 010 52
중구	11 020
광희동	11 020 59
명동	11 020 55
소공동	11 020 52
신당1동	11 020 61
신당2동	11 020 62
신당3동	11 020 63
신당4동	11 020 64
신당5동	11 020 65
신당6동	11 020 66
을지로동	11 020 60
장충동	11 020 58
중림동	11 020 68
필동	11 020 57
황학동	11 020 67
회현동	11 020 54
중랑구	11 070
망우1동	11 070 66
망우2동	11 070 67
망우3동	11 070 68
면목1동	11 070 51
면목2동	11 070 52
면목3동	11 070 53
면목4동	11 070 54
면목5동	11 070 55
면목6동	11 070 56
면목7동	11 070 57
면목8동	11 070 58
묵1동	11 070 64
묵2동	11 070 65
상봉1동	11 070 59
상봉2동	11 070 60
신내1동	11 070 69
신내2동	11 070 70
중화1동	11 070 61
중화2동	11 070 62
중화3동	11 070 63

행정구역명	부 호
부산광역시	21
강서구	21 120
가락동	21 120 55
강동동	21 120 53
녹산동	21 120 56
대저1동	21 120 51
대저2동	21 120 52
명지동	21 120 54
천가동	21 120 57
금정구	21 110
구서1동	21 110 69
구서2동	21 110 70
금사동	21 110 55
금성동	21 110 71
남산동	21 110 68
부곡1동	21 110 57
부곡2동	21 110 58
부곡3동	21 110 59
부곡4동	21 110 60
서1동	21 110 51
서2동	21 110 52
서3동	21 110 53
서4동	21 110 54
선두구동	21 110 64
장전1동	21 110 61
장전2동	21 110 62
장전3동	21 110 63
청룡노포동	21 110 67
기장군	21 310
기장읍	21 310 11
일광면	21 310 31
장안읍	21 310 12
정관면	21 310 32
철마면	21 310 33
남구	21 070
감만1동	21 070 62
감만2동	21 070 63
대연1동	21 070 51
대연2동	21 070 52
대연3동	21 070 53
대연4동	21 070 54
대연5동	21 070 55
대연6동	21 070 56
문현1동	21 070 66
문현2동	21 070 67
문현3동	21 070 68
문현4동	21 070 69
용당동	21 070 61
용호1동	21 070 57
용호2동	21 070 58
용호3동	21 070 59
용호4동	21 070 60
우암1동	21 070 64
우암2동	21 070 65
동구	21 030
범일1동	21 030 65
범일2동	21 030 66
범일4동	21 030 67
범일5동	21 030 68
범일6동	21 030 69
수정1동	21 030 56
수정2동	21 030 57
수정3동	21 030 58
수정4동	21 030 59
수정5동	21 030 60
좌천1동	21 030 61
좌천4동	21 030 64
초량1동	21 030 51
초량2동	21 030 52
초량3동	21 030 53
초량4동	21 030 54
초량6동	21 030 55
동래구	21 060
명륜1동	21 060 53
명륜2동	21 060 54
명장1동	21 060 63
명장2동	21 060 64
복산동	21 060 52
사직1동	21 060 58
사직2동	21 060 59
사직3동	21 060 60
수민동	21 060 51
안락1동	21 060 61
안락2동	21 060 62
온천1동	21 060 55
온천2동	21 060 56
온천3동	21 060 57
부산진구	21 050
가야1동	21 050 71
가야2동	21 050 72
가야3동	21 050 73
개금1동	21 050 74
개금2동	21 050 75
개금3동	21 050 76
당감1동	21 050 67
당감2동	21 050 68
당감3동	21 050 69
당감4동	21 050 70
범전동	21 050 53
범천1동	21 050 77
범천2동	21 050 78
범천4동	21 050 79
부암1동	21 050 64
부암3동	21 050 66
부전1동	21 050 51
부전2동	21 050 52
양정1동	21 050 56
양정2동	21 050 57
연지동	21 050 54
전포1동	21 050 60
전포2동	21 050 61
전포3동	21 050 62
초읍동	21 050 55
북구	21 080
구포1동	21 080 51
구포2동	21 080 52
구포3동	21 080 53
금곡동	21 080 54
덕천1동	21 080 56
덕천2동	21 080 57
덕천3동	21 080 58
만덕1동	21 080 59
만덕2동	21 080 60
만덕3동	21 080 61
화명1동	21 080 55
화명2동	21 080 62
화명3동	21 080 63
사상구	21 150
감전1동	21 150 58
감전2동	21 150 59
괘법동	21 150 57
덕포1동	21 150 55
덕포2동	21 150 56
모라1동	21 150 52
모라2동	21 150 53
모라3동	21 150 54
삼락동	21 150 51
엄궁동	21 150 64
주례1동	21 150 60
주례2동	21 150 61
주례3동	21 150 62

(부산광역시 사상구~해운대구)

행정구역명	부 호
학장동	21 150 63
사하구	21 100
감천1동	21 100 65
감천2동	21 100 66
괴정1동	21 100 51
괴정2동	21 100 52
괴정3동	21 100 53
괴정4동	21 100 54
구평동	21 100 64
다대1동	21 100 62
다대2동	21 100 63
당리동	21 100 55
신평1동	21 100 58
신평2동	21 100 59
장림1동	21 100 60
장림2동	21 100 61
하단1동	21 100 56
하단2동	21 100 57
서구	21 020
남부민1동	21 020 65
남부민2동	21 020 66
남부민3동	21 020 67
동대신1동	21 020 51
동대신2동	21 020 52
동대신3동	21 020 53
부민동	21 020 59
서대신1동	21 020 54
서대신2동	21 020 55
서대신3동	21 020 56
서대신4동	21 020 57
아미동	21 020 61
암남동	21 020 68
초장동	21 020 63
충무동	21 020 64

행정구역명	부 호
수영구	21 140
남천1동	21 140 51
남천2동	21 140 52
광안1동	21 140 56
광안2동	21 140 57
광안3동	21 140 58
광안4동	21 140 59
망미1동	21 140 54
망미2동	21 140 55
민락동	21 140 60
수영동	21 140 53
연제구	21 130
거제1동	21 130 51
거제2동	21 130 52
거제3동	21 130 53
거제4동	21 130 54
연산1동	21 130 55
연산2동	21 130 56
연산3동	21 130 57
연산4동	21 130 58
연산5동	21 130 59
연산6동	21 130 60
연산7동	21 130 61
연산8동	21 130 62
연산9동	21 130 63
영도구	21 040
남항동	21 040 53
동삼1동	21 040 65
동삼2동	21 040 66
동삼3동	21 040 67
봉래1동	21 040 59
봉래3동	21 040 61
봉래4동	21 040 62
신선1동	21 040 56
신선2동	21 040 57

행정구역명	부 호
신선3동	21 040 58
영선1동	21 040 54
영선2동	21 040 55
청학1동	21 040 63
청학2동	21 040 64
중구	21 010
광복동	21 010 57
남포동	21 010 58
대청동	21 010 53
동광동	21 010 52
보수동	21 010 54
부평동	21 010 56
영주1동	21 010 59
영주2동	21 010 60
중앙동	21 010 51
해운대구	21 090
반송1동	21 090 61
반송2동	21 090 62
반송3동	21 090 63
반여1동	21 090 70
반여2동	21 090 58
반여3동	21 090 59
반여4동	21 090 71
송정동	21 090 56
우1동	21 090 51
우2동	21 090 52
재송1동	21 090 64
재송2동	21 090 65
좌제1동	21 090 66
좌제2동	21 090 67
좌제3동	21 090 68
좌제4동	21 090 69
중1동	21 090 53
중2동	21 090 54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대구광역시	22
남구	22 040
대명1동	22 040 56
대명2동	22 040 57
대명3동	22 040 58
대명4동	22 040 59
대명5동	22 040 60
대명6동	22 040 61
대명9동	22 040 64
대명10동	22 040 65
대명11동	22 040 66
봉덕1동	22 040 53
봉덕2동	22 040 54
봉덕3동	22 040 55
이천동	22 040 51
달서구	22 070
감삼동	22 070 57
도원동	22 070 68
두류1동	22 070 53
두류2동	22 070 54
두류3동	22 070 55
본동	22 070 71
본리동	22 070 56
상인1동	22 070 65
상인2동	22 070 66
상인3동	22 070 67
성당1동	22 070 51
성당2동	22 070 52
송현1동	22 070 69
송현2동	22 070 70
신당동	22 070 61
용산1동	22 070 72
용산2동	22 070 73
월성1동	22 070 62
월성2동	22 070 63
이곡1동	22 070 60
이곡2동	22 070 74
장기동	22 070 59
죽전동	22 070 58
진천동	22 070 64
달성군	22 310
가창면	22 310 31
구지면	22 310 36
논공읍	22 310 12
다사읍	22 310 13
옥포면	22 310 33
유가면	22 310 35
하빈면	22 310 32
현풍면	22 310 34
화원읍	22 310 11
동구	22 020
공산동	22 020 71
도평동	22 020 62
동촌동	22 020 66
방촌동	22 020 68
불로봉무동	22 020 63
신암1동	22 020 51
신암2동	22 020 52
신암3동	22 020 53
신암4동	22 020 54
신암5동	22 020 55
신천1·2동	22 020 56
신천3동	22 020 58
신천4동	22 020 59
안심1동	22 020 73
안심2동	22 020 74
안심3·4동	22 020 75
지저동	22 020 65
해안동	22 020 69
효목1동	22 020 60
효목2동	22 020 61
북구	22 050
검단동	22 050 70
고성동	22 050 51
관문동	22 050 75
관음동	22 050 77
구암동	22 050 79
노원1·2동	22 050 58
노원3동	22 050 59
대현1동	22 050 67
대현2동	22 050 68
동천동	22 050 80
무태조야동	22 050 71
복현1동	22 050 65
복현2동	22 050 66
산격1동	22 050 61
산격2동	22 050 62
산격3동	22 050 63
산격4동	22 050 64
읍내동	22 050 76
칠성동	22 050 52
침산1동	22 050 55
침산2동	22 050 56
침산3동	22 050 57
태전1동	22 050 78
태전2동	22 050 74
서구	22 030
내당1동	22 030 51
내당2·3동	22 030 52
내당4동	22 030 53
비산1동	22 030 54
비산2·3동	22 030 55
비산4동	22 030 56
비산5동	22 030 57
비산6동	22 030 58
비산7동	22 030 59
상중이동	22 030 66
원대동	22 030 68
평리1동	22 030 60
평리2동	22 030 61
평리3동	22 030 62
평리4동	22 030 63
평리5동	22 030 64
평리6동	22 030 65
수성구	22 060
고산1동	22 060 71
고산2동	22 060 72
고산3동	22 060 73
두산동	22 060 66
만촌1동	22 060 55
만촌2동	22 060 56
만촌3동	22 060 57
범물1동	22 060 69
범물2동	22 060 70
범어1동	22 060 51
범어2동	22 060 52
범어3동	22 060 53
범어4동	22 060 54
상동	22 060 64
수성1가동	22 060 58
수성2·3가동	22 060 59
수성4가동	22 060 60
중동	22 060 63
지산1동	22 060 67
지산2동	22 060 68
파동	22 060 65
황금1동	22 060 61
황금2동	22 060 62
중구	22 010
남산1동	22 010 64
남산2동	22 010 65
남산3동	22 010 66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남산4동	22 010 67						
대봉1동	22 010 68						
대봉2동	22 010 69						
대신동	22 010 62						
동인1·2·4가동	22 010 51						
동인3가동	22 010 52						
삼덕동	22 010 54						
성내1동	22 010 56						
성내2동	22 010 59						
성내3동	22 010 61						

행정구역명	부 호
인천광역시	23
강화군	23 310
강화읍	23 310 11
교동면	23 310 40
길상면	23 310 33
내가면	23 310 36
불은면	23 310 32
삼산면	23 310 41
서도면	23 310 42
선원면	23 310 31
송해면	23 310 39
양도면	23 310 35
양사면	23 310 38
하점면	23 310 37
화도면	23 310 34
계양구	23 070
계산1동	23 070 53
계산2동	23 070 54
계산3동	23 070 55
계산4동	23 070 62
계양1동	23 070 60
계양2동	23 070 61
작전1동	23 070 56
작전2동	23 070 57
작전서운동	23 070 58
효성1동	23 070 51
효성2동	23 070 52
남구	23 030
관교동	23 030 73
도화1동	23 030 62
도화2동	23 030 63
도화3동	23 030 64
문학동	23 030 74
숭의1동	23 030 51
숭의2동	23 030 52
숭의3동	23 030 53
숭의4동	23 030 54
용현1동	23 030 55
용현2동	23 030 56
용현3동	23 030 57
용현4동	23 030 58
용현5동	23 030 59
주안1동	23 030 65
주안2동	23 030 66
주안3동	23 030 67
주안4동	23 030 68
주안5동	23 030 69
주안6동	23 030 70
주안7동	23 030 71
주안8동	23 030 72
학익1동	23 030 60
학익2동	23 030 61
남동구	23 050
간석1동	23 050 55
간석2동	23 050 56
간석3동	23 050 57
간석4동	23 050 58
구월1동	23 050 51
구월2동	23 050 52
구월3동	23 050 53
구월4동	23 050 54
남촌도림동	23 050 67
논현고잔동	23 050 69
만수1동	23 050 59
만수2동	23 050 60
만수3동	23 050 61
만수4동	23 050 62
만수5동	23 050 63
만수6동	23 050 64
장수서창동	23 050 65
동구	23 020
금창동	23 020 64
만석동	23 020 51
송림1동	23 020 58
송림2동	23 020 59
송림3·5동	23 020 60
송림4동	23 020 61
송림6동	23 020 63
송현1·2동	23 020 55
송현3동	23 020 57
화수1화평동	23 020 52
화수2동	23 020 53
부평구	23 060
갈산1동	23 060 63
갈산2동	23 060 64
부개1동	23 060 66
부개2동	23 060 67
부개3동	23 060 68
부평1동	23 060 51
부평2동	23 060 52
부평3동	23 060 53
부평4동	23 060 54
부평5동	23 060 55
부평6동	23 060 56
산곡1동	23 060 57
산곡2동	23 060 58
산곡3동	23 060 59
산곡4동	23 060 60
삼산동	23 060 65
십정1동	23 060 70
십정2동	23 060 71
일신동	23 060 69
청천1동	23 060 61
청천2동	23 060 62
서구	23 080
가정1동	23 080 54
가정2동	23 080 55
가정3동	23 080 56
가좌1동	23 080 62
가좌2동	23 080 63
가좌3동	23 080 64
가좌4동	23 080 65
검단1동	23 080 68
검단2동	23 080 69
검단3동	23 080 70
검암경서동	23 080 51
석남1동	23 080 58
석남2동	23 080 59
석남3동	23 080 60
신현원창동	23 080 57
연희동	23 080 53
연수구	23 040
동춘1동	23 040 57
동춘2동	23 040 58
동춘3동	23 040 59
선학동	23 040 52
연수1동	23 040 53
연수2동	23 040 54
연수3동	23 040 55
옥련1동	23 040 51
옥련2동	23 040 60
청학동	23 040 56
옹진군	23 320
대청면	23 320 34
덕적면	23 320 35
백령면	23 320 33
북도면	23 320 31
연평면	23 320 32
영흥면	23 320 37
자월면	23 320 3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중구	23 010						
도원동	23 010 56						
동인천동	23 010 58						
북성동	23 010 60						
송월동	23 010 61						
신포동	23 010 53						
신흥동	23 010 54						
연안동	23 010 52						
영종동	23 010 62						
용유동	23 010 63						
율목동	23 010 57						

행정구역명	부 호
광주광역시	24
광산구	24 050
도산동	24 050 54
동곡동	24 050 65
본량동	24 050 68
비아동	24 050 61
삼도동	24 050 67
송정1동	24 050 51
송정2동	24 050 52
신가동	24 050 62
신흥동	24 050 55
어룡동	24 050 56
우산동	24 050 58
운남동	24 050 71
월곡1동	24 050 59
월곡2동	24 050 60
임곡동	24 050 64
첨단1동	24 050 69
첨단2동	24 050 70
평동	24 050 66
하남동	24 050 63
남구	24 030
대촌동	24 030 70
방림1동	24 030 52
방림2동	24 030 53
백운1동	24 030 62
백운2동	24 030 63
봉선1동	24 030 68
봉선2동	24 030 69
사직동	24 030 54
송암동	24 030 67
양림동	24 030 51
월산4동	24 030 60
월산5동	24 030 61
월산동	24 030 57
주월1동	24 030 64
주월2동	24 030 65
효덕동	24 030 66
동구	24 010
계림1동	24 010 56
계림2동	24 010 58
동명동	24 010 54
산수1동	24 010 59
산수2동	24 010 61
서남동	24 010 64
지산1동	24 010 62
지산2동	24 010 63
지원1동	24 010 72
지원2동	24 010 73
충장동	24 010 51
학동	24 010 68
학운동	24 010 71
북구	24 040
건국동	24 040 77
동림동	24 040 61
두암1동	24 040 67
두암2동	24 040 68
두암3동	24 040 69
매곡동	24 040 71
문화동	24 040 64
문흥1동	24 040 65
문흥2동	24 040 66
삼각동	24 040 70
석곡동	24 040 74
신안동	24 040 56
오치1동	24 040 72
오치2동	24 040 73
용봉동	24 040 57
우산동	24 040 62
운암1동	24 040 58
운암2동	24 040 59
운암3동	24 040 60
일곡동	24 040 78
임동	24 040 55
중앙동	24 040 54
중흥1동	24 040 51
중흥2동	24 040 52
중흥3동	24 040 53
풍향동	24 040 63
서구	24 020
양동	24 020 51
광천동	24 020 56
금호1동	24 020 68
금호2동	24 020 69
농성1동	24 020 54
농성2동	24 020 55
상무1동	24 020 58
상무2동	24 020 59
서창동	24 020 64
양3동	24 020 53
유덕동	24 020 57
치평동	24 020 66
풍암동	24 020 67
화정1동	24 020 60
화정2동	24 020 61
화정3동	24 020 62
화정4동	24 020 63

행정구역명	부 호

(대전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 호
대전광역시	25
대덕구	25 050
대화동	25 050 52
덕암동	25 050 60
목상동	25 050 61
법1동	25 050 56
법2동	25 050 57
비래동	25 050 54
석봉동	25 050 59
송촌동	25 050 62
신탄진동	25 050 58
오정동	25 050 51
중리동	25 050 55
회덕동	25 050 53
동구	25 010
가양1동	25 010 63
가양2동	25 010 64
대동	25 010 59
대신동	25 010 58
대청동	25 010 73
산내동	25 010 75
삼성1동	25 010 69
삼성2동	25 010 70
성남1동	25 010 66
성남2동	25 010 67
소제동	25 010 62
신흥동	25 010 54
용운동	25 010 57
용전동	25 010 65
인동	25 010 52
자양동	25 010 60
중앙동	25 010 51
판암1동	25 010 55
판암2동	25 010 56
홍도동	25 010 68
효동	25 010 53

행정구역명	부 호
서구	25 030
가수원동	25 030 70
가장동	25 030 62
갈마1동	25 030 64
갈마2동	25 030 65
관저1동	25 030 72
관저2동	25 030 73
괴정동	25 030 61
기성동	25 030 71
내동	25 030 63
도마1동	25 030 52
도마2동	25 030 53
둔산1동	25 030 59
둔산2동	25 030 60
만년동	25 030 69
변동	25 030 55
복수동	25 030 51
삼천동	25 030 58
용문동	25 030 56
월평1동	25 030 66
월평2동	25 030 67
월평3동	25 030 68
정림동	25 030 54
탄방동	25 030 57
유성구	25 040
구즉동	25 040 58
노은동	25 040 59
신성동	25 040 55
온천1동	25 040 53
온천2동	25 040 54
전민동	25 040 57
진잠동	25 040 51
중구	25 020
대사동	25 020 58
대흥동	25 020 55

행정구역명	부 호
목동	25 020 53
문창동	25 020 56
문화1동	25 020 67
문화2동	25 020 68
부사동	25 020 59
산성동	25 020 69
석교동	25 020 57
오류동	25 020 62
용두동	25 020 60
유천1동	25 020 65
유천2동	25 020 66
은행선화동	25 020 51
중촌동	25 020 54
태평1동	25 020 63
태평2동	25 020 64

행정구역명	부 호

(울산광역시 전체)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울산광역시	26	울주군	26 310				
남구	26 020	두동면	26 310 36				
달동	26 020 56	두서면	26 310 37				
무거1동	26 020 58	범서읍	26 310 14				
무거2동	26 020 59	삼남면	26 310 39				
삼산동	26 020 57	삼동면	26 310 40				
선암동	26 020 64	상북면	26 310 38				
신정1동	26 020 51	서생면	26 310 31				
신정2동	26 020 52	언양읍	26 310 12				
신정3동	26 020 53	온산읍	26 310 11				
신정4동	26 020 54	온양읍	26 310 13				
신정5동	26 020 55	웅촌면	26 310 34				
야음1·장생포동	26 020 61	청량면	26 310 33				
야음2동	26 020 62	중구	26 010				
야음3동	26 020 63	다운동	26 010 61				
옥동	26 020 60	반구1동	26 010 52				
동구	26 030	반구2동	26 010 53				
방어동	26 030 51	병영1동	26 010 62				
남목1동	26 030 58	병영2동	26 010 63				
남목2동	26 030 59	복산1동	26 010 54				
남목3동	26 030 60	복산2동	26 010 55				
대송동	26 030 54	북정동	26 010 56				
일산동	26 030 52	성남동	26 010 58				
전하1동	26 030 55	약사동	26 010 64				
전하2동	26 030 56	옥교동	26 010 57				
전하3동	26 030 57	우정동	26 010 59				
화정동	26 030 53	태화동	26 010 60				
북구	26 040	학성동	26 010 51				
강동동	26 040 54						
농소1동	26 040 51						
농소2동	26 040 52						
농소3동	26 040 53						
송정동	26 040 57						
양정동	26 040 58						
염포동	26 040 59						
효문동	26 040 56						

(경기도 가평군~동두천시)

행정구역명	부 호
경기도	31
가평군	31 370
가평읍	31 370 11
북면	31 370 35
상면	31 370 33
설악면	31 370 31
청평면	31 370 32
하면	31 370 34
고양시	31 100
덕양구	31 101
고양동	31 101 59
관산동	31 101 60
능곡동	31 101 61
대덕동	31 101 68
성사1동	31 101 54
성사2동	31 101 55
신도동	31 101 57
원신동	31 101 52
주교동	31 101 51
창릉동	31 101 58
행신1동	31 101 65
행신2동	31 101 66
행신3동	31 101 69
행주동	31 101 64
화전동	31 101 67
화정1동	31 101 62
화정2동	31 101 63
효자동	31 101 56
흥도동	31 101 53
일산동구	31 103
고봉동	31 103 60
마두1동	31 103 56
마두2동	31 103 57
백석동	31 103 55
식사동	31 103 51
장항1동	31 103 58
장항2동	31 103 59
정발산동	31 103 53
중산동	31 103 52
풍산동	31 103 54
일산서구	31 104
대화동	31 104 57
송산동	31 104 59
송포동	31 104 58
일산1동	31 104 51
일산2동	31 104 52
일산3동	31 104 53
주엽1동	31 104 55
주엽2동	31 104 56
탄현동	31 104 54
과천시	31 110
갈현동	31 110 52
과천동	31 110 55
문원동	31 110 56
별양동	31 110 53
부림동	31 110 54
중앙동	31 110 51
광명시	31 060
광명1동	31 060 51
광명2동	31 060 52
광명3동	31 060 53
광명4동	31 060 54
광명5동	31 060 55
광명6동	31 060 56
광명7동	31 060 57
소하1동	31 060 66
소하2동	31 060 67
철산1동	31 060 58
철산2동	31 060 59
철산3동	31 060 60
철산4동	31 060 61
하안1동	31 060 62
하안2동	31 060 63
하안3동	31 060 64
하안4동	31 060 65
학온동	31 060 68
광주시	31 250
경안동	31 250 51
광남동	31 250 53
남종면	31 250 36
도척면	31 250 34
송정동	31 250 52
실촌읍	31 250 13
오포읍	31 250 11
중부면	31 250 37
초월읍	31 250 12
퇴촌면	31 250 35
구리시	31 120
갈매동	31 120 51
교문1동	31 120 54
교문2동	31 120 55
동구동	31 120 52
수택1동	31 120 56
수택2동	31 120 57
수택3동	31 120 58
인창동	31 120 53
군포시	31 160
광정동	31 160 61
군포1동	31 160 51
군포2동	31 160 52
궁내동	31 160 60
금정동	31 160 56
대야동	31 160 62
산본1동	31 160 54
산본2동	31 160 55
수리동	31 160 59
오금동	31 160 58
재궁동	31 160 57
김포시	31 230
고촌면	31 230 31
김포1동	31 230 51
김포2동	31 230 52
대곶면	31 230 34
사우동	31 230 53
양촌면	31 230 32
월곶면	31 230 35
통진읍	31 230 11
풍무동	31 230 54
하성면	31 230 36
남양주시	31 130
금곡동	31 130 53
도농동	31 130 56
별내면	31 130 31
수동면	31 130 34
양정동	31 130 54
오남읍	31 130 15
와부읍	31 130 11
조안면	31 130 35
지금동	31 130 55
진건읍	31 130 14
진접읍	31 130 12
퇴계원면	31 130 32
평내동	31 130 52
호평동	31 130 51
화도읍	31 130 13
동두천시	31 080
보산동	31 080 55

행정구역명	부 호
불현동	31 080 56
상패동	31 080 60
생연1동	31 080 51
생연2동	31 080 52
소요동	31 080 58
중앙동	31 080 53
부천시	31 050
소사구	31 052
괴안동	31 052 57
범박동	31 052 56
소사본1동	31 052 53
소사본2동	31 052 54
소사본3동	31 052 55
송내1동	31 052 59
송내2동	31 052 60
심곡본1동	31 052 51
심곡본동	31 052 52
역곡3동	31 052 58
오정구	31 053
고강1동	31 053 55
고강본동	31 053 54
성곡동	31 053 51
신흥동	31 053 57
오정동	31 053 56
원종1동	31 053 52
원종2동	31 053 53
원미구	31 051
도당동	31 051 60
상1동	31 051 68
상2동	31 051 69
상3동	31 051 70
상동	31 051 67
소사동	31 051 56
심곡1동	31 051 51
심곡2동	31 051 52
심곡3동	31 051 53
약대동	31 051 61
역곡1동	31 051 57
역곡2동	31 051 58
원미1동	31 051 54
원미2동	31 051 55
중1동	31 051 63
중2동	31 051 64
중3동	31 051 65
중4동	31 051 66
중동	31 051 62
춘의동	31 051 59
성남시	31 020
분당구	31 023
구미동	31 023 67
금곡1동	31 023 69
금곡2동	31 023 70
분당동	31 023 51
서현1동	31 023 58
서현2동	31 023 59
수내1동	31 023 53
수내2동	31 023 54
수내3동	31 023 52
야탑1동	31 023 62
야탑2동	31 023 64
야탑3동	31 023 63
운중동	31 023 68
이매1동	31 023 60
이매2동	31 023 61
정자1동	31 023 57
정자2동	31 023 55
정자3동	31 023 56
판교동	31 023 65
수정구	31 021
고등동	31 021 65
단대동	31 021 60
복정동	31 021 63
산성동	31 021 61
수진1동	31 021 58
수진2동	31 021 59
시흥동	31 021 66
신촌동	31 021 64
신흥1동	31 021 51
신흥2동	31 021 52
신흥3동	31 021 53
양지동	31 021 62
태평1동	31 021 54
태평2동	31 021 55
태평3동	31 021 56
태평4동	31 021 57
중원구	31 022
금광1동	31 022 53
금광2동	31 022 54
상대원1동	31 022 57
상대원2동	31 022 58
상대원3동	31 022 59
성남동	31 022 51
은행1동	31 022 55
은행2동	31 022 56
중동	31 022 52
하대원동	31 022 60
수원시	31 010
권선구	31 012
곡선동	31 012 61
구운동	31 012 57
권선1동	31 012 60
권선2동	31 012 64
금호동	31 012 63
서둔동	31 012 56
세류1동	31 012 52
세류2동	31 012 53
세류3동	31 012 54
입북동	31 012 62
평동	31 012 55
영통구	31 014
매탄1동	31 014 51
매탄2동	31 014 52
매탄3동	31 014 53
매탄4동	31 014 54
영통1동	31 014 57
영통2동	31 014 58
원천동	31 014 55
이의동	31 014 56
태장동	31 014 59
장안구	31 011
송죽동	31 011 59
연무동	31 011 61
영화동	31 011 58
율천동	31 011 55
정자1동	31 011 56
정자2동	31 011 57
정자3동	31 011 62
조원1동	31 011 60
조원2동	31 011 63
파장동	31 011 54
팔달구	31 013
고등동	31 013 69
남향동	31 013 52
매교동	31 013 67
매산동	31 013 68
신안동	31 013 66
우만1동	31 013 54
우만2동	31 013 55

행정구역명	부 호
인계동	31 013 56
지동	31 013 53
팔달동	31 013 51
화서1동	31 013 70
화서2동	31 013 71
시흥시	**31 150**
과림동	31 150 59
군자동	31 150 57
대야동	31 150 51
매화동	31 150 55
목감동	31 150 56
신천동	31 150 52
신현동	31 150 53
연성동	31 150 60
은행동	31 150 54
정왕1동	31 150 65
정왕2동	31 150 61
정왕3동	31 150 62
정왕4동	31 150 63
정왕본동	31 150 64
안산시	**31 090**
단원구	31 092
고잔1동	31 092 60
고잔2동	31 092 61
대부동	31 092 72
선부1동	31 092 68
선부2동	31 092 69
선부3동	31 092 70
와동	31 092 59
원곡1동	31 092 64
원곡2동	31 092 65
원곡본동	31 092 63
초지동	31 092 66
호수동	31 092 73
상록구	31 091
반월동	31 091 71
본오1동	31 091 54
본오2동	31 091 55
본오3동	31 091 56
부곡동	31 091 57
사1동	31 091 52
사2동	31 091 53
성포동	31 091 62
안산동	31 091 73
월피동	31 091 58
이동	31 091 74
일동	31 091 51
안성시	**31 220**
고삼면	31 220 42
공도읍	31 220 11
금광면	31 220 32
대덕면	31 220 35
미양면	31 220 34
보개면	31 220 31
삼죽면	31 220 41
서운면	31 220 33
안성1동	31 220 51
안성2동	31 220 52
안성3동	31 220 53
양성면	31 220 36
원곡면	31 220 38
일죽면	31 220 39
죽산면	31 220 40
안양시	**31 040**
동안구	31 042
갈산동	31 042 67
관양1동	31 042 56
관양2동	31 042 57
귀인동	31 042 61
달안동	31 042 55
범계동	31 042 65
부림동	31 042 58
부흥동	31 042 54
비산1동	31 042 51
비산2동	31 042 52
비산3동	31 042 53
신촌동	31 042 66
평안동	31 042 60
평촌동	31 042 59
호계1동	31 042 62
호계2동	31 042 63
호계3동	31 042 64
만안구	31 041
박달1동	31 041 63
박달2동	31 041 64
석수1동	31 041 60
석수2동	31 041 61
석수3동	31 041 62
안양1동	31 041 51
안양2동	31 041 52
안양3동	31 041 53
안양4동	31 041 54
안양5동	31 041 55
안양6동	31 041 56
안양7동	31 041 57
안양8동	31 041 58
안양9동	31 041 59
양주시	**31 260**
광적면	31 260 33
남면	31 260 32
백석읍	31 260 11
양주1동	31 260 51
양주2동	31 260 52
은현면	31 260 31
장흥면	31 260 34
회천1동	31 260 53
회천2동	31 260 54
회천3동	31 260 55
회천4동	31 260 56
양평군	**31 380**
강상면	31 380 31
강하면	31 380 32
개군면	31 380 41
단월면	31 380 36
서종면	31 380 35
양동면	31 380 38
양서면	31 380 33
양평읍	31 380 11
옥천면	31 380 34
용문면	31 380 40
지제면	31 380 39
청운면	31 380 37
여주군	**31 320**
가남면	31 320 32
강천면	31 320 39
금사면	31 320 35
능서면	31 320 33
대신면	31 320 37
북내면	31 320 38
산북면	31 320 36
여주읍	31 320 11
점동면	31 320 31
흥천면	31 320 34
연천군	**31 350**
군남면	31 350 31
미산면	31 350 34
백학면	31 350 33
신서면	31 350 36

행정구역명	부 호
연천읍	31 350 11
왕징면	31 350 35
장남면	31 350 38
전곡읍	31 350 12
중면	31 350 37
청산면	31 350 32
오산시	**31 140**
남촌동	31 140 53
대원동	31 140 52
세마동	31 140 55
신장동	31 140 54
중앙동	31 140 51
초평동	31 140 56
용인시	**31 190**
기흥구	31 192
구갈동	31 192 52
구성동	31 192 56
기흥동	31 192 54
마북동	31 192 57
보정동	31 192 59
상갈동	31 192 53
서농동	31 192 55
신갈동	31 192 51
어정동	31 192 58
수지구	31 193
동천동	31 193 56
상현1동	31 193 57
상현2동	31 193 58
성복동	31 193 59
신봉동	31 193 53
죽전1동	31 193 54
죽전2동	31 193 55
풍덕천1동	31 193 51
풍덕천2동	31 193 52

행정구역명	부 호
처인구	31 191
남사면	31 191 32
동부동	31 191 54
모현면	31 191 31
백암면	31 191 35
양지면	31 191 36
역삼동	31 191 52
원삼면	31 191 34
유림동	31 191 53
이동면	31 191 33
중앙동	31 191 51
포곡읍	31 191 11
의왕시	**31 170**
고천동	31 170 51
내손1동	31 170 54
내손2동	31 170 55
부곡동	31 170 52
오전동	31 170 53
청계동	31 170 56
의정부시	**31 030**
가능1동	31 030 61
가능2동	31 030 62
가능3동	31 030 63
녹양동	31 030 64
송산1동	31 030 59
송산2동	31 030 66
신곡1동	31 030 57
신곡2동	31 030 58
의정부1동	31 030 51
의정부2동	31 030 52
의정부3동	31 030 53
자금동	31 030 60
장암동	31 030 56
호원1동	31 030 55
호원2동	31 030 65

행정구역명	부 호
이천시	**31 210**
관고동	31 210 53
대월면	31 210 35
마장면	31 210 34
모가면	31 210 36
백사면	31 210 32
부발읍	31 210 12
설성면	31 210 37
신둔면	31 210 31
율면	31 210 38
장호원읍	31 210 11
중리동	31 210 52
증포동	31 210 54
창전동	31 210 51
호법면	31 210 33
파주시	**31 200**
광탄면	31 200 35
교하읍	31 200 14
군내면	31 200 38
금촌1동	31 200 51
금촌2동	31 200 52
문산읍	31 200 11
법원읍	31 200 13
월롱면	31 200 31
적성면	31 200 37
조리읍	31 200 15
탄현면	31 200 32
파주읍	31 200 12
파평면	31 200 36
평택시	**31 070**
고덕면	31 070 33
비전1동	31 070 62
비전2동	31 070 63
서정동	31 070 52

행정구역명	부 호
서탄면	31 070 32
세교동	31 070 64
송북동	31 070 56
송탄동	31 070 53
신장1동	31 070 57
신장2동	31 070 58
신평동	31 070 59
안중읍	31 070 12
오성면	31 070 34
원평동	31 070 60
중앙동	31 070 51
지산동	31 070 55
진위면	31 070 31
청북면	31 070 35
통복동	31 070 61
팽성읍	31 070 11
포승면	31 070 36
현덕면	31 070 37
포천시	**31 270**
가산면	31 270 33
관인면	31 270 40
군내면	31 270 31
내촌면	31 270 32
선단동	31 270 52
소흘읍	31 270 11
신북면	31 270 34
영북면	31 270 39
영중면	31 270 36
이동면	31 270 38
일동면	31 270 37
창수면	31 270 35
포천동	31 270 51
화현면	31 270 41
하남시	**31 180**
감북동	31 180 58

(경기도 하남시~화성시)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덕풍1동	31 180 54						
덕풍2동	31 180 55						
덕풍3동	31 180 56						
신장1동	31 180 52						
신장2동	31 180 53						
천현동	31 180 51						
초이동	31 180 60						
춘궁동	31 180 59						
풍산동	31 180 57						
화성시	31 240						
남양동	31 240 51						
동탄면	31 240 44						
마도면	31 240 35						
매송면	31 240 31						
봉담읍	31 240 12						
비봉면	31 240 33						
서신면	31 240 37						
송산면	31 240 36						
양감면	31 240 42						
우정읍	31 240 13						
장안면	31 240 39						
정남면	31 240 43						
태안읍	31 240 11						
팔탄면	31 240 38						
향남면	31 240 41						

행정구역명	부 호
강원도	32
강릉시	32 030
강남동	32 030 62
강동면	32 030 34
경포동	32 030 67
교1동	32 030 55
교2동	32 030 56
구정면	32 030 33
내곡동	32 030 61
사천면	32 030 36
성덕동	32 030 65
성산면	32 030 31
송정동	32 030 60
연곡면	32 030 37
옥계면	32 030 35
옥천동	32 030 54
왕산면	32 030 32
주문진읍	32 030 11
중앙동	32 030 52
초당동	32 030 59
포남1동	32 030 57
포남2동	32 030 58
홍제동	32 030 51
고성군	32 400
간성읍	32 400 11
거진읍	32 400 12
죽왕면	32 400 32
토성면	32 400 33
현내면	32 400 31
동해시	32 040
동호동	32 040 55
망상동	32 040 63
묵호동	32 040 59
발한동	32 040 57
부곡동	32 040 54
북삼동	32 040 53
북평동	32 040 60
삼화동	32 040 65
송정동	32 040 52
천곡동	32 040 51
삼척시	32 070
가곡면	32 070 35
교동	32 070 53
근덕면	32 070 31
남양동	32 070 51
노곡면	32 070 33
도계읍	32 070 11
미로면	32 070 34
성내동	32 070 52
신기면	32 070 36
원덕읍	32 070 12
정라동	32 070 54
하장면	32 070 32
속초시	32 060
교동	32 060 56
금호동	32 060 54
노학동	32 060 57
대포동	32 060 60
동명동	32 060 52
영랑동	32 060 51
조양동	32 060 58
청호동	32 060 59
양구군	32 380
남면	32 380 31
동면	32 380 32
방산면	32 380 33
양구읍	32 380 11
해안면	32 380 34
양양군	32 410
강현면	32 410 35
서면	32 410 31
손양면	32 410 32
양양읍	32 410 11
현남면	32 410 34
현북면	32 410 33
영월군	32 330
남면	32 330 34
북면	32 330 33
상동읍	32 330 12
서면	32 330 35
수주면	32 330 37
영월읍	32 330 11
주천면	32 330 36
중동면	32 330 31
하동면	32 330 32
원주시	32 020
개운동	32 020 53
귀래면	32 020 35
단계동	32 020 60
단구동	32 020 56
명륜1동	32 020 54
명륜2동	32 020 55
무실동	32 020 67
문막읍	32 020 11
반곡관설동	32 020 68
봉산동	32 020 64
부론면	32 020 34
소초면	32 020 31
신림면	32 020 38
우산동	32 020 61
원인동	32 020 52
일산동	32 020 57
중앙동	32 020 51
지정면	32 020 33
태장1동	32 020 62
태장2동	32 020 63
판부면	32 020 37
학성동	32 020 58
행구동	32 020 66
호저면	32 020 32
흥업면	32 020 36
인제군	32 390
기린면	32 390 33
남면	32 390 31
북면	32 390 32
상남면	32 390 35
서화면	32 390 34
인제읍	32 390 11
정선군	32 350
고한읍	32 350 12
남면	32 350 32
동면	32 350 31
북면	32 350 33
북평면	32 350 34
사북읍	32 350 13
신동읍	32 350 14
임계면	32 350 35
정선읍	32 350 11
철원군	32 360
갈말읍	32 360 13
근남면	32 360 32
근북면	32 360 33
김화읍	32 360 12
동송읍	32 360 14
서면	32 360 31
철원읍	32 360 11

(강원도 춘천시~횡성군)

행정구역명	부 호
춘천시	32 010
강남동	32 010 68
교동	32 010 52
근화동	32 010 57
남면	32 010 35
남산면	32 010 36
동내면	32 010 34
동면	32 010 31
동산면	32 010 32
북산면	32 010 39
사북면	32 010 38
서면	32 010 37
석사동	32 010 66
소양동	32 010 58
신동면	32 010 33
신북읍	32 010 11
신사우동	32 010 71
약사명동	32 010 54
조운동	32 010 53
퇴계동	32 010 67
효자1동	32 010 63
효자2동	32 010 64
효자3동	32 010 65
후평1동	32 010 60
후평2동	32 010 61
후평3동	32 010 62
태백시	32 050
구문소동	32 050 55
문곡소도동	32 050 62
삼수동	32 050 53
상장동	32 050 54
장성동	32 050 56
철암동	32 050 58
황연동	32 050 52
황지동	32 050 51

행정구역명	부 호
평창군	32 340
대화면	32 340 33
도암면	32 340 37
미탄면	32 340 31
방림면	32 340 32
봉평면	32 340 34
용평면	32 340 35
진부면	32 340 36
평창읍	32 340 11
홍천군	32 310
남면	32 310 36
내면	32 310 39
내촌면	32 310 33
동면	32 310 35
두촌면	32 310 32
북방면	32 310 38
서면	32 310 37
서석면	32 310 34
홍천읍	32 310 11
화촌면	32 310 31
화천군	32 370
간동면	32 370 31
사내면	32 370 34
상서면	32 370 33
하남면	32 370 32
화천읍	32 370 11
횡성군	32 320
갑천면	32 320 34
강림면	32 320 38
공근면	32 320 36
둔내면	32 320 33
서원면	32 320 37
안흥면	32 320 32

행정구역명	부 호
우천면	32 320 31
청일면	32 320 35
횡성읍	32 320 11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충청북도	33
괴산군	33 360
감물면	33 360 31
괴산읍	33 360 11
문광면	33 360 35
불정면	33 360 40
사리면	33 360 38
소수면	33 360 39
연풍면	33 360 33
장연면	33 360 32
청안면	33 360 37
청천면	33 360 36
칠성면	33 360 34
단양군	33 380
가곡면	33 380 33
단성면	33 380 31
단양읍	33 380 11
대강면	33 380 32
매포읍	33 380 12
어상천면	33 380 35
영춘면	33 380 34
적성면	33 380 36
보은군	33 320
내북면	33 320 39
내속리면	33 320 31
마로면	33 320 33
보은읍	33 320 11
산외면	33 320 40
삼승면	33 320 35
수한면	33 320 36
외속리면	33 320 32
탄부면	33 320 34
회남면	33 320 37
회북면	33 320 38

행정구역명	부 호
영동군	33 340
매곡면	33 340 34
상촌면	33 340 35
심천면	33 340 40
양강면	33 340 36
양산면	33 340 39
영동읍	33 340 11
용산면	33 340 31
용화면	33 340 37
추풍령면	33 340 33
학산면	33 340 38
황간면	33 340 32
옥천군	33 330
군북면	33 330 38
군서면	33 330 37
동이면	33 330 31
안남면	33 330 32
안내면	33 330 33
옥천읍	33 330 11
이원면	33 330 36
청산면	33 330 35
청성면	33 330 34
음성군	33 370
감곡면	33 370 37
금왕읍	33 370 12
대소면	33 370 34
맹동면	33 370 33
삼성면	33 370 35
생극면	33 370 36
소이면	33 370 31
원남면	33 370 32
음성읍	33 370 11
제천시	33 030
고암모산동	33 030 63

행정구역명	부 호
교동	33 030 51
금성면	33 030 31
남천동현동	33 030 65
덕산면	33 030 34
백운면	33 030 36
봉양읍	33 030 11
서부영천동	33 030 66
송학면	33 030 37
수산면	33 030 33
신백두학동	33 030 67
용두동	33 030 56
중앙의림명동	33 030 64
청전동	33 030 59
청풍면	33 030 32
한수면	33 030 35
화산동	33 030 60
증평군	33 390
도안면	33 390 31
증평읍	33 390 14
진천군	33 350
광혜원면	33 350 36
덕산면	33 350 31
문백면	33 350 33
백곡면	33 350 34
이월면	33 350 35
진천읍	33 350 11
초평면	33 350 32
청원군	33 310
가덕면	33 310 33
강내면	33 310 39
강외면	33 310 40
남이면	33 310 35
남일면	33 310 34
낭성면	33 310 31

행정구역명	부 호
내수읍	33 310 11
문의면	33 310 36
미원면	33 310 32
부용면	33 310 38
북이면	33 310 43
오창면	33 310 42
옥산면	33 310 41
현도면	33 310 37
청주시	33 010
상당구	33 011
금천동	33 011 64
내덕1동	33 011 59
내덕2동	33 011 60
성안동	33 011 52
영운동	33 011 63
오근장동	33 011 67
용담명암산성동	33 011 65
용암1동	33 011 66
용암2동	33 011 68
우암동	33 011 58
율량사천동	33 011 61
중앙동	33 011 51
탑대성동	33 011 62
흥덕구	33 012
가경동	33 012 62
강서1동	33 012 65
강서2동	33 012 66
모충동	33 012 54
복대1동	33 012 60
복대2동	33 012 61
봉명1동	33 012 63
봉명2송정동	33 012 64
사직1동	33 012 51
사직2동	33 012 52
사창동	33 012 53

(충청북도 흥덕구~충주시)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산미분장동	33 012 56						
성화개신죽림동	33 012 59						
수곡1동	33 012 57						
수곡2동	33 012 58						
운천신봉동	33 012 55						
충주시	33 020						
가금면	33 020 37						
교현안림동	33 020 53						
교현2동	33 020 54						
금가면	33 020 38						
노은면	33 020 35						
달천동	33 020 60						
동량면	33 020 39						
목행동	33 020 64						
문화동	33 020 57						
봉방동	33 020 61						
산척면	33 020 40						
살미면	33 020 31						
성내충인동	33 020 51						
소태면	33 020 42						
수안보면	33 020 32						
신니면	33 020 34						
앙성면	33 020 36						
엄정면	33 020 41						
연수동	33 020 63						
용산동	33 020 55						
이류면	33 020 33						
주덕읍	33 020 11						
지현동	33 020 56						
칠금동	33 020 62						
호암동	33 020 58						

행정구역명	부 호
충청남도	34
계룡시	34 070
금암동	34 070 51
남선면	34 070 32
두마면	34 070 31
공주시	34 020
계룡면	34 020 33
금학동	34 020 55
반포면	34 020 34
사곡면	34 020 39
산성동	34 020 53
신관동	34 020 57
신풍면	34 020 40
옥룡동	34 020 56
우성면	34 020 38
웅진동	34 020 54
유구읍	34 020 11
의당면	34 020 36
이인면	34 020 31
장기면	34 020 35
정안면	34 020 37
중학동	34 020 51
탄천면	34 020 32
금산군	34 310
군북면	34 310 34
금산읍	34 310 11
금성면	34 310 31
남이면	34 310 36
남일면	34 310 35
복수면	34 310 38
부리면	34 310 33
제원면	34 310 32
진산면	34 310 37
추부면	34 310 39

행정구역명	부 호
논산시	34 060
가야곡면	34 060 39
강경읍	34 060 11
광석면	34 060 32
노성면	34 060 33
벌곡면	34 060 37
부적면	34 060 35
부창동	34 060 52
상월면	34 060 34
성동면	34 060 31
양촌면	34 060 38
연무읍	34 060 12
연산면	34 060 36
은진면	34 060 40
채운면	34 060 41
취암동	34 060 51
당진군	34 390
당진읍	34 390 11
합덕읍	34 390 12
고대면	34 390 31
석문면	34 390 32
대호지면	34 390 33
정미면	34 390 34
면천면	34 390 35
순성면	34 390 36
우강면	34 390 37
신평면	34 390 38
송악면	34 390 39
송산면	34 390 40
보령시	34 030
남포면	34 030 37
대천1동	34 030 51
대천2동	34 030 52
대천3동	34 030 53
대천4동	34 030 54

행정구역명	부 호
대천5동	34 030 56
미산면	34 030 39
성주면	34 030 40
오천면	34 030 33
웅천읍	34 030 11
주교면	34 030 32
주산면	34 030 38
주포면	34 030 31
천북면	34 030 34
청라면	34 030 36
청소면	34 030 35
부여군	34 330
구룡면	34 330 35
규암면	34 330 31
남면	34 330 38
내산면	34 330 34
부여읍	34 330 11
석성면	34 330 44
세도면	34 330 43
양화면	34 330 40
옥산면	34 330 37
외산면	34 330 33
은산면	34 330 32
임천면	34 330 41
장암면	34 330 42
초촌면	34 330 45
충화면	34 330 39
홍산면	34 330 36
서산시	34 050
고북면	34 050 39
대산읍	34 050 11
동문동	34 050 52
부석면	34 050 32
부춘동	34 050 51
석남동	34 050 55

행정구역명	부 호
성연면	34 050 35
수석동	34 050 54
운산면	34 050 37
음암면	34 050 36
인지면	34 050 31
지곡면	34 050 34
팔봉면	34 050 33
해미면	34 050 38
활성동	34 050 53
서천군	34 340
기산면	34 340 33
마산면	34 340 35
마서면	34 340 31
문산면	34 340 37
비인면	34 340 40
서면	34 340 41
서천읍	34 340 12
시초면	34 340 36
장항읍	34 340 11
종천면	34 340 39
판교면	34 340 38
한산면	34 340 34
화양면	34 340 32
아산시	34 040
도고면	34 040 39
둔포면	34 040 35
배방면	34 040 32
선장면	34 040 38
송악면	34 040 31
신창면	34 040 40
염치읍	34 040 11
영인면	34 040 36
온양1동	34 040 51
온양2동	34 040 52
온양3동	34 040 53

(충청남도 아산시~홍성군)

행정구역명	부 호
온양4동	34 040 54
온양5동	34 040 55
온양6동	34 040 56
음봉면	34 040 34
인주면	34 040 37
탕정면	34 040 33
연기군	34 320
금남면	34 320 34
남면	34 320 33
동면	34 320 31
서면	34 320 32
소정면	34 320 37
전동면	34 320 36
전의면	34 320 35
조치원읍	34 320 11
예산군	34 370
고덕면	34 370 38
광시면	34 370 33
대술면	34 370 31
대흥면	34 370 34
덕산면	34 370 36
봉산면	34 370 37
삽교읍	34 370 12
신암면	34 370 39
신양면	34 370 32
예산읍	34 370 11
오가면	34 370 40
응봉면	34 370 35
천안시	34 010
광덕면	34 010 34
동면	34 010 40
목천읍	34 010 14
문성동	34 010 52
병천면	34 010 39
봉명동	34 010 58
부성동	34 010 64
북면	34 010 36
성거읍	34 010 12
성남면	34 010 37
성정1동	34 010 56
성정2동	34 010 57
성환읍	34 010 11
수신면	34 010 38
신안동	34 010 63
신용동	34 010 61
쌍용1동	34 010 59
쌍용2동	34 010 60
쌍용3동	34 010 65
원성1동	34 010 54
원성2동	34 010 55
입장면	34 010 32
중앙동	34 010 51
직산읍	34 010 13
청룡동	34 010 62
풍세면	34 010 33
청양군	34 350
남양면	34 350 37
대치면	34 350 32
목면	34 350 34
비봉면	34 350 39
운곡면	34 350 31
장평면	34 350 36
정산면	34 350 33
청남면	34 350 35
청양읍	34 350 11
화성면	34 350 38
태안군	34 380
고남면	34 380 31
근흥면	34 380 33
남면	34 380 32
소원면	34 380 34
안면읍	34 380 12
원북면	34 380 35
이원면	34 380 36
태안읍	34 380 11
홍성군	34 360
갈산면	34 360 38
결성면	34 360 36
광천읍	34 360 12
구항면	34 360 39
금마면	34 360 32
서부면	34 360 37
은하면	34 360 35
장곡면	34 360 34
홍동면	34 360 33
홍북면	34 360 31
홍성읍	34 360 11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전라북도	35
고창군	35 370
고수면	35 370 31
고창읍	35 370 11
공음면	35 370 34
대산면	35 370 38
무장면	35 370 33
부안면	35 370 43
상하면	35 370 35
성내면	35 370 41
성송면	35 370 37
신림면	35 370 42
심원면	35 370 39
아산면	35 370 32
해리면	35 370 36
흥덕면	35 370 40
군산시	35 020
개정동	35 020 68
개정면	35 020 36
경암동	35 020 66
구암동	35 020 67
나운1동	35 020 70
나운2동	35 020 71
나운3동	35 020 74
나포면	35 020 38
대야면	35 020 35
미성동	35 020 73
삼학동	35 020 56
서수면	35 020 34
선양동	35 020 57
성산면	35 020 37
소룡동	35 020 72
수송동	35 020 69
신풍동	35 020 55
오룡동	35 020 54
옥구읍	35 020 11
옥도면	35 020 39
옥산면	35 020 31
옥서면	35 020 40
월명동	35 020 53
임피면	35 020 33
조촌동	35 020 65
중미동	35 020 61
중앙동	35 020 60
해신동	35 020 51
회현면	35 020 32
흥남동	35 020 64
김제시	35 060
검산동	35 060 54
공덕면	35 060 36
광활면	35 060 44
교동월촌동	35 060 57
금구면	35 060 40
금산면	35 060 43
만경읍	35 060 11
백구면	35 060 34
백산면	35 060 32
봉남면	35 060 41
부량면	35 060 35
성덕면	35 060 38
신풍동	35 060 52
요촌동	35 060 51
용지면	35 060 33
죽산면	35 060 31
진봉면	35 060 39
청하면	35 060 37
황산면	35 060 42
남원시	35 050
금동	35 050 55
금지면	35 050 35
노암동	35 050 54
대강면	35 050 36
대산면	35 050 37
덕과면	35 050 39
도통동	35 050 59
동충동	35 050 51
보절면	35 050 40
사매면	35 050 38
산내면	35 050 45
산동면	35 050 41
송동면	35 050 33
수지면	35 050 32
아영면	35 050 44
왕정동	35 050 56
운봉읍	35 050 11
이백면	35 050 42
인월면	35 050 43
주생면	35 050 34
주천면	35 050 31
죽항동	35 050 52
향교동	35 050 57
무주군	35 330
무주읍	35 330 11
무풍면	35 330 31
부남면	35 330 35
설천면	35 330 32
안성면	35 330 34
적상면	35 330 33
부안군	35 380
계화면	35 380 34
동진면	35 380 32
백산면	35 380 38
변산면	35 380 36
보안면	35 380 35
부안읍	35 380 11
상서면	35 380 39
위도면	35 380 42
주산면	35 380 31
줄포면	35 380 41
진서면	35 380 37
하서면	35 380 40
행안면	35 380 33
순창군	35 360
구림면	35 360 40
금과면	35 360 36
동계면	35 360 32
복흥면	35 360 38
순창읍	35 360 11
쌍치면	35 360 39
유등면	35 360 34
인계면	35 360 31
적성면	35 360 33
팔덕면	35 360 37
풍산면	35 360 35
완주군	35 310
경천면	35 310 41
고산면	35 310 36
구이면	35 310 35
동상면	35 310 40
봉동읍	35 310 12
비봉면	35 310 37
삼례읍	35 310 11
상관면	35 310 32
소양면	35 310 34
용진면	35 310 31
운주면	35 310 38
이서면	35 310 33
화산면	35 310 39
익산시	35 030
금마면	35 030 40

(전라북도 익산시~진안군)

행정구역명	부 호
남중동	35 030 59
낭산면	35 030 37
동산동	35 030 57
마동	35 030 58
망성면	35 030 38
모현동	35 030 61
삼기면	35 030 43
삼성동	35 030 70
성당면	35 030 35
송학동	35 030 62
신동	35 030 65
어양동	35 030 72
여산면	35 030 39
영등1동	35 030 66
영등2동	35 030 71
오산면	35 030 31
왕궁면	35 030 41
용동면	35 030 44
용안면	35 030 36
웅포면	35 030 34
인화동	35 030 55
중앙동	35 030 51
춘포면	35 030 42
팔봉동	35 030 69
평화동	35 030 53
함라면	35 030 33
함열읍	35 030 11
황등면	35 030 32
임실군	**35 350**
강진면	35 350 39
관촌면	35 350 38
덕치면	35 350 40
삼계면	35 350 37
성수면	35 350 34
신덕면	35 350 36
신평면	35 350 33
오수면	35 350 35
운암면	35 350 32
임실읍	35 350 11
지사면	35 350 41
청웅면	35 350 31
장수군	**35 340**
계남면	35 340 35
계북면	35 340 36
번암면	35 340 32
산서면	35 340 31
장계면	35 340 33
장수읍	35 340 11
천천면	35 340 34
전주시	**35 010**
덕진구	**35 012**
금암1동	35 012 58
금암2동	35 012 59
덕진동	35 012 57
동산동	35 012 68
송천1동	35 012 65
송천2동	35 012 66
우아1동	35 012 61
우아2동	35 012 62
인후1동	35 012 54
인후2동	35 012 55
인후3동	35 012 56
조촌동	35 012 67
진북동	35 012 69
팔복동	35 012 60
호성동	35 012 63
완산구	**35 011**
노송동	35 011 76
동서학동	35 011 60
삼천1동	35 011 67
삼천2동	35 011 68
삼천3동	35 011 69
서서학동	35 011 61
서신동	35 011 66
완산동	35 011 77
중앙동	35 011 74
중화산1동	35 011 62
중화산2동	35 011 63
평화1동	35 011 64
평화2동	35 011 65
풍남동	35 011 75
효자1동	35 011 70
효자2동	35 011 71
효자3동	35 011 72
효자4동	35 011 73
정읍시	**35 040**
감곡면	35 040 40
고부면	35 040 34
내장상동	35 040 53
농소동	35 040 58
덕천면	35 040 36
북면	35 040 31
산내면	35 040 43
산외면	35 040 44
상교동	35 040 59
소성면	35 040 33
수성동	35 040 51
시기3동	35 040 56
시기동	35 040 54
신태인읍	35 040 11
연지동	35 040 57
영원면	35 040 35
옹동면	35 040 41
이평면	35 040 37
입암면	35 040 32
장명동	35 040 52
정우면	35 040 38
칠보면	35 040 42
태인면	35 040 39
진안군	**35 320**
동향면	35 320 33
마령면	35 320 37
백운면	35 320 35
부귀면	35 320 38
상전면	35 320 34
성수면	35 320 36
안천면	35 320 32
용담면	35 320 31
정천면	35 320 39
주천면	35 320 40
진안읍	35 320 11

행정구역명	부 호
전라남도	36
강진군	36 390
강진읍	36 390 11
군동면	36 390 31
대구면	36 390 33
도암면	36 390 35
마량면	36 390 34
병영면	36 390 39
성전면	36 390 37
신전면	36 390 36
옴천면	36 390 40
작천면	36 390 38
칠량면	36 390 32
고흥군	36 350
고흥읍	36 350 11
과역면	36 350 40
금산면	36 350 33
남양면	36 350 41
대서면	36 350 43
도덕면	36 350 32
도양읍	36 350 12
도화면	36 350 34
동강면	36 350 42
동일면	36 350 37
두원면	36 350 44
봉래면	36 350 36
영남면	36 350 39
점암면	36 350 38
포두면	36 350 35
풍양면	36 350 31
곡성군	36 320
겸면	36 320 39
고달면	36 320 36
곡성읍	36 320 11
목사동면	36 320 34
삼기면	36 320 32
석곡면	36 320 33
오곡면	36 320 31
오산면	36 320 40
옥과면	36 320 37
입면	36 320 38
죽곡면	36 320 35
광양시	36 060
골약동	36 060 51
광양읍	36 060 11
광영동	36 060 54
금호동	36 060 56
다압면	36 060 36
봉강면	36 060 31
옥곡면	36 060 33
옥룡면	36 060 32
중마동	36 060 53
진상면	36 060 34
진월면	36 060 35
태인동	36 060 55
구례군	36 330
간전면	36 330 32
광의면	36 330 35
구례읍	36 330 11
마산면	36 330 34
문척면	36 330 31
산동면	36 330 37
용방면	36 330 36
토지면	36 330 33
나주시	36 040
공산면	36 040 34
금남동	36 040 54
금천면	36 040 39
남평읍	36 040 11
노안면	36 040 38
다도면	36 040 41
다시면	36 040 36
동강면	36 040 35
문평면	36 040 37
반남면	36 040 33
봉황면	36 040 42
산포면	36 040 40
성북동	36 040 55
세지면	36 040 31
송월동	36 040 51
영강동	36 040 52
영산동	36 040 58
왕곡면	36 040 32
이창동	36 040 60
담양군	36 310
고서면	36 310 32
금성면	36 310 37
남면	36 310 33
담양읍	36 310 11
대덕면	36 310 35
대전면	36 310 41
무정면	36 310 36
봉산면	36 310 31
수북면	36 310 40
용면	36 310 38
월산면	36 310 39
창평면	36 310 34
목포시	36 010
남양동	36 010 59
대성동	36 010 58
동명동	36 010 62
만호동	36 010 64
무안동	36 010 61
부흥동	36 010 76
북교동	36 010 60
북항동	36 010 68
산정1동	36 010 53
산정2동	36 010 54
산정3동	36 010 55
삼학동	36 010 63
삼향동	36 010 74
상동	36 010 71
신흥동	36 010 73
연산동	36 010 56
옥암동	36 010 75
용당1동	36 010 51
용당2동	36 010 52
용해동	36 010 69
원산동	36 010 57
유달동	36 010 65
이로동	36 010 70
죽교동	36 010 67
충무동	36 010 66
하당동	36 010 72
무안군	36 420
망운면	36 420 35
몽탄면	36 420 32
무안읍	36 420 11
삼향면	36 420 31
운남면	36 420 37
일로읍	36 420 12
청계면	36 420 33
해제면	36 420 36
현경면	36 420 34
보성군	36 360
겸백면	36 360 33
노동면	36 360 31
득량면	36 360 38
문덕면	36 360 36

(전라남도 보성군~진도군)

행정구역명	부 호
미력면	36 360 32
벌교읍	36 360 12
보성읍	36 360 11
복내면	36 360 35
웅치면	36 360 40
율어면	36 360 34
조성면	36 360 37
회천면	36 360 39
순천시	**36 030**
낙안면	36 030 34
남제동	36 030 59
덕연동	36 030 57
도사동	36 030 63
매곡동	36 030 54
별량면	36 030 35
삼산동	36 030 55
상사면	36 030 36
서면	36 030 38
송광면	36 030 32
승주읍	36 030 11
왕조1동	36 030 66
왕조2동	36 030 67
외서면	36 030 33
월등면	36 030 40
장천동	36 030 61
저전동	36 030 60
조곡동	36 030 56
주암면	36 030 31
중앙동	36 030 62
풍덕동	36 030 58
해룡면	36 030 37
향동	36 030 51
황전면	36 030 39
신안군	**36 480**
도초면	36 480 35
비금면	36 480 34
신의면	36 480 38
안좌면	36 480 40
암태면	36 480 42
압해면	36 480 43
임자면	36 480 32
자은면	36 480 33
장산면	36 480 39
증도면	36 480 31
지도읍	36 480 11
팔금면	36 480 41
하의면	36 480 37
흑산면	36 480 36
여수시	**36 020**
광림동	36 020 55
국동	36 020 58
남면	36 020 34
대교동	36 020 57
돌산읍	36 020 11
동문동	36 020 51
둔덕동	36 020 63
만덕동	36 020 64
묘도동	36 020 70
문수동	36 020 61
미평동	36 020 62
삼산면	36 020 36
삼일동	36 020 69
서강동	36 020 56
소라면	36 020 31
시전동	36 020 66
쌍봉동	36 020 65
여서동	36 020 60
여천동	36 020 67
월호동	36 020 59
율촌면	36 020 32
주삼동	36 020 68
중앙동	36 020 53
충무동	36 020 54
한려동	36 020 52
화양면	36 020 33
화정면	36 020 35
영광군	**36 440**
군남면	36 440 35
군서면	36 440 34
낙월면	36 440 38
대마면	36 440 31
묘량면	36 440 32
백수읍	36 440 12
법성면	36 440 37
불갑면	36 440 33
염산면	36 440 36
영광읍	36 440 11
홍농읍	36 440 13
영암군	**36 410**
군서면	36 410 36
금정면	36 410 32
덕진면	36 410 31
도포면	36 410 35
미암면	36 410 39
삼호읍	36 410 12
서호면	36 410 37
시종면	36 410 34
신북면	36 410 33
영암읍	36 410 11
학산면	36 410 38
완도군	**36 460**
고금면	36 460 33
군외면	36 460 31
금당면	36 460 37
금일읍	36 460 12
노화읍	36 460 13
보길면	36 460 38
생일면	36 460 39
소안면	36 460 36
신지면	36 460 32
약산면	36 460 34
완도읍	36 460 11
청산면	36 460 35
장성군	**36 450**
남면	36 450 32
동화면	36 450 33
북이면	36 450 39
북일면	36 450 38
북하면	36 450 40
삼계면	36 450 35
삼서면	36 450 34
서삼면	36 450 37
장성읍	36 450 11
진원면	36 450 31
황룡면	36 450 36
장흥군	**36 380**
관산읍	36 380 12
대덕읍	36 380 13
부산면	36 380 36
안양면	36 380 32
용산면	36 380 31
유치면	36 380 35
장동면	36 380 33
장평면	36 380 34
장흥읍	36 380 11
회진면	36 380 37
진도군	**36 470**
고군면	36 470 32
군내면	36 470 31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의신면	36 470 33	도암면	36 370 37				
임회면	36 470 34	동면	36 370 42				
조도면	36 470 36	동복면	36 370 40				
지산면	36 470 35	북면	36 370 39				
진도읍	36 470 11	이서면	36 370 38				
함평군	36 430	이양면	36 370 34				
나산면	36 430 36	청풍면	36 370 33				
대동면	36 430 35	춘양면	36 370 32				
손불면	36 430 31	한천면	36 370 31				
신광면	36 430 32	화순읍	36 370 11				
엄다면	36 430 34						
월야면	36 430 38						
학교면	36 430 33						
함평읍	36 430 11						
해보면	36 430 37						
해남군	36 400						
계곡면	36 400 38						
마산면	36 400 39						
문내면	36 400 42						
북일면	36 400 36						
북평면	36 400 35						
산이면	36 400 41						
삼산면	36 400 31						
송지면	36 400 34						
옥천면	36 400 37						
해남읍	36 400 11						
현산면	36 400 33						
화산면	36 400 32						
화원면	36 400 43						
황산면	36 400 40						
화순군	36 370						
남면	36 370 41						
능주면	36 370 35						
도곡면	36 370 36						

(경상북도 경산시~상주시)

행정구역명	부 호
경상북도	37
경산시	37 100
남부동	37 100 54
남산면	37 100 34
남천면	37 100 36
동부동	37 100 52
북부동	37 100 55
서부1동	37 100 53
서부2동	37 100 57
압량면	37 100 35
와촌면	37 100 31
용성면	37 100 33
자인면	37 100 32
중방동	37 100 56
중앙동	37 100 51
진량읍	37 100 12
하양읍	37 100 11
경주시	37 020
감포읍	37 020 11
강동면	37 020 37
건천읍	37 020 13
내남면	37 020 33
동천동	37 020 64
보덕동	37 020 67
불국동	37 020 66
산내면	37 020 34
서면	37 020 35
선도동	37 020 59
성건동	37 020 55
성동동	37 020 52
안강읍	37 020 12
양남면	37 020 32
양북면	37 020 31
외동읍	37 020 14
용강동	37 020 62
월성동	37 020 58
중부동	37 020 51
천북면	37 020 38
탑정동	37 020 56
현곡면	37 020 36
황남동	37 020 57
황성동	37 020 63
황오동	37 020 53
고령군	37 370
개진면	37 370 35
고령읍	37 370 11
다산면	37 370 34
덕곡면	37 370 31
성산면	37 370 33
쌍림면	37 370 37
우곡면	37 370 36
운수면	37 370 32
구미시	37 050
고아읍	37 050 12
공단1동	37 050 64
공단2동	37 050 65
광평동	37 050 66
도개면	37 050 33
도량동	37 050 55
무을면	37 050 31
비산동	37 050 63
산동면	37 050 35
상모사곡동	37 050 67
선산읍	37 050 11
선주원남동	37 050 57
송정동	37 050 51
신평1동	37 050 61
신평2동	37 050 62
양포동	37 050 72
옥성면	37 050 32
원평1동	37 050 52
원평2동	37 050 53
인동동	37 050 70
임오동	37 050 69
장천면	37 050 36
지산동	37 050 56
진미동	37 050 71
해평면	37 050 34
형곡1동	37 050 59
형곡2동	37 050 60
군위군	37 310
고로면	37 310 37
군위읍	37 310 11
부계면	37 310 33
산성면	37 310 36
소보면	37 310 31
우보면	37 310 34
의흥면	37 310 35
효령면	37 310 32
김천시	37 030
감문면	37 030 34
감천면	37 030 38
개령면	37 030 33
구성면	37 030 40
남면	37 030 32
농소면	37 030 31
대곡동	37 030 58
대덕면	37 030 43
대신동	37 030 56
대항면	37 030 37
봉산면	37 030 36
부항면	37 030 42
성남동	37 030 52
아포읍	37 030 11
양금동	37 030 55
어모면	37 030 35
용암동	37 030 51
조마면	37 030 39
증산면	37 030 44
지례면	37 030 41
지좌동	37 030 59
평화동	37 030 53
문경시	37 090
가은읍	37 090 12
농암면	37 090 37
동로면	37 090 35
마성면	37 090 36
문경읍	37 090 11
산북면	37 090 34
산양면	37 090 32
영순면	37 090 31
점촌1동	37 090 57
점촌2동	37 090 58
점촌3동	37 090 59
점촌4동	37 090 60
점촌5동	37 090 61
호계면	37 090 33
봉화군	37 410
명호면	37 410 38
물야면	37 410 31
법전면	37 410 33
봉성면	37 410 32
봉화읍	37 410 11
상운면	37 410 39
석포면	37 410 36
소천면	37 410 35
재산면	37 410 37
춘양면	37 410 34
상주시	37 080
계림동	37 080 54

행정구역명	부 호
공검면	37 080 45
공성면	37 080 35
낙동면	37 080 33
남원동	37 080 52
내서면	37 080 37
동문동	37 080 55
동성동	37 080 56
모동면	37 080 38
모서면	37 080 39
북문동	37 080 53
사벌면	37 080 31
신흥동	37 080 57
외남면	37 080 36
외서면	37 080 43
은척면	37 080 44
이안면	37 080 46
중동면	37 080 32
청리면	37 080 34
함창읍	37 080 11
화남면	37 080 47
화동면	37 080 40
화북면	37 080 42
화서면	37 080 41
성주군	**37 380**
가천면	37 380 34
금수면	37 380 35
대가면	37 380 36
벽진면	37 380 37
선남면	37 380 31
성주읍	37 380 11
수륜면	37 380 33
용암면	37 380 32
월항면	37 380 39
초전면	37 380 38
안동시	**37 040**
강남동	37 040 63
길안면	37 040 39
남선면	37 040 37
남후면	37 040 36
녹전면	37 040 43
도산면	37 040 42
명륜동	37 040 52
북후면	37 040 32
서구동	37 040 62
서후면	37 040 33
송하동	37 040 61
안기동	37 040 59
예안면	37 040 41
옥동	37 040 60
와룡면	37 040 31
용상동	37 040 54
일직면	37 040 35
임동면	37 040 40
임하면	37 040 38
중구동	37 040 51
태화동	37 040 56
평화동	37 040 58
풍산읍	37 040 11
풍천면	37 040 34
영덕군	**37 350**
강구면	37 350 31
남정면	37 350 32
달산면	37 350 33
병곡면	37 350 37
영덕읍	37 350 11
영해면	37 350 36
지품면	37 350 34
창수면	37 350 38
축산면	37 350 35
영양군	**37 340**
석보면	37 340 35
수비면	37 340 34
영양읍	37 340 11
일월면	37 340 33
입암면	37 340 31
청기면	37 340 32
영주시	**37 060**
가흥1동	37 060 62
가흥2동	37 060 63
단산면	37 060 38
문수면	37 060 33
봉현면	37 060 36
부석면	37 060 39
상망동	37 060 51
순흥면	37 060 37
안정면	37 060 35
영주1동	37 060 55
영주2동	37 060 58
이산면	37 060 31
장수면	37 060 34
평은면	37 060 32
풍기읍	37 060 11
하망동	37 060 53
휴천1동	37 060 59
휴천2동	37 060 60
휴천3동	37 060 61
영천시	**37 070**
고경면	37 070 38
금호읍	37 070 11
남부동	37 070 55
대창면	37 070 40
동부동	37 070 51
북안면	37 070 39
서부동	37 070 53
신녕면	37 070 32
완산동	37 070 54
임고면	37 070 37
자양면	37 070 36
중앙동	37 070 52
청통면	37 070 31
화남면	37 070 35
화북면	37 070 34
화산면	37 070 33
예천군	**37 400**
감천면	37 400 34
개포면	37 400 39
보문면	37 400 35
상리면	37 400 32
예천읍	37 400 11
용궁면	37 400 38
용문면	37 400 31
유천면	37 400 37
지보면	37 400 40
풍양면	37 400 41
하리면	37 400 33
호명면	37 400 36
울릉군	**37 430**
북면	37 430 32
서면	37 430 31
울릉읍	37 430 11
울진군	**37 420**
근남면	37 420 33
기성면	37 420 35
북면	37 420 31
서면	37 420 32
온정면	37 420 36
울진읍	37 420 11
원남면	37 420 34

(경상북도 울진군~북구)

행정구역명	부 호
죽변면	37 420 37
평해읍	37 420 12
후포면	37 420 38
의성군	37 320
가음면	37 320 36
구천면	37 320 40
금성면	37 320 37
다인면	37 320 44
단밀면	37 320 41
단북면	37 320 42
단촌면	37 320 31
봉양면	37 320 38
비안면	37 320 39
사곡면	37 320 34
신평면	37 320 45
안계면	37 320 43
안사면	37 320 47
안평면	37 320 46
옥산면	37 320 33
의성읍	37 320 11
점곡면	37 320 32
춘산면	37 320 35
청도군	37 360
각남면	37 360 31
각북면	37 360 33
금천면	37 360 36
매전면	37 360 37
운문면	37 360 35
이서면	37 360 34
청도읍	37 360 12
풍각면	37 360 32
화양읍	37 360 11
청송군	37 330
부남면	37 330 32
부동면	37 330 31
안덕면	37 330 35
진보면	37 330 37
청송읍	37 330 11
파천면	37 330 36
현동면	37 330 33
현서면	37 330 34
칠곡군	37 390
가산면	37 390 33
기산면	37 390 37
동명면	37 390 32
북삼읍	37 390 12
석적면	37 390 34
약목면	37 390 36
왜관읍	37 390 11
지천면	37 390 31
포항시	37 010
남구	37 011
구룡포읍	37 011 11
대보면	37 011 34
대송면	37 011 31
대이동	37 011 59
동해면	37 011 32
상대1동	37 011 51
상대2동	37 011 52
송도동	37 011 55
연일읍	37 011 12
오천읍	37 011 13
장기면	37 011 33
제철동	37 011 57
청림동	37 011 56
해도1동	37 011 53
해도2동	37 011 54
효곡동	37 011 58
북구	37 012
기계면	37 012 34
기북면	37 012 36
두호동	37 012 64
송라면	37 012 33
신광면	37 012 31
양학동	37 012 58
용흥동	37 012 61
우창동	37 012 63
장량동	37 012 65
죽도1동	37 012 59
죽도2동	37 012 60
죽장면	37 012 35
중앙동	37 012 52
청하면	37 012 32
학산동	37 012 56
환여동	37 012 66
흥해읍	37 012 11

행정구역명	부 호
경상남도	38
거제시	38 090
거제면	38 090 34
남부면	38 090 33
능포동	38 090 53
동부면	38 090 32
둔덕면	38 090 35
마전동	38 090 52
사등면	38 090 36
신현읍	38 090 11
아주동	38 090 54
연초면	38 090 37
옥포1동	38 090 55
옥포2동	38 090 56
일운면	38 090 31
장목면	38 090 39
장승포동	38 090 51
하청면	38 090 38
거창군	38 390
가북면	38 390 41
가조면	38 390 40
거창읍	38 390 11
고제면	38 390 33
남상면	38 390 37
남하면	38 390 38
마리면	38 390 36
북상면	38 390 34
신원면	38 390 39
웅양면	38 390 32
위천면	38 390 35
주상면	38 390 31
고성군	38 340
개천면	38 340 38
거류면	38 340 43
고성읍	38 340 11
구만면	38 340 39
대가면	38 340 35
동해면	38 340 42
마암면	38 340 41
삼산면	38 340 31
상리면	38 340 34
영오면	38 340 37
영현면	38 340 36
하이면	38 340 33
하일면	38 340 32
회화면	38 340 40
김해시	38 070
내외동	38 070 54
대동면	38 070 37
동상동	38 070 51
부원동	38 070 53
북부동	38 070 55
불암동	38 070 60
삼안동	38 070 59
상동면	38 070 36
생림면	38 070 35
장유면	38 070 31
주촌면	38 070 32
진례면	38 070 33
진영읍	38 070 11
칠산서부동	38 070 56
한림면	38 070 34
활천동	38 070 58
회현동	38 070 52
남해군	38 350
고현면	38 350 37
남면	38 350 35
남해읍	38 350 11
미조면	38 350 34
삼동면	38 350 33
상주면	38 350 32
서면	38 350 36
설천면	38 350 38
이동면	38 350 31
창선면	38 350 39
마산시	38 020
가포동	38 020 52
교방동	38 020 61
구산면	38 020 31
구암1동	38 020 75
구암2동	38 020 76
내서읍	38 020 11
노산동	38 020 62
동서동	38 020 59
문화동	38 020 54
반월동	38 020 55
봉암동	38 020 77
산호동	38 020 65
석전1동	38 020 68
석전2동	38 020 69
성호동	38 020 60
양덕1동	38 020 71
양덕2동	38 020 72
오동동	38 020 63
완월동	38 020 57
월영동	38 020 53
자산동	38 020 58
중앙동	38 020 56
진동면	38 020 32
진북면	38 020 33
진전면	38 020 34
합성1동	38 020 73
합성2동	38 020 74
합포동	38 020 64
현동	38 020 51
회성동	38 020 70
회원1동	38 020 66
회원2동	38 020 67
밀양시	38 080
가곡동	38 080 55
교동	38 080 53
내이동	38 080 52
내일동	38 080 51
단장면	38 080 35
무안면	38 080 38
부북면	38 080 31
산내면	38 080 34
산외면	38 080 33
삼랑진읍	38 080 11
삼문동	38 080 54
상남면	38 080 36
상동면	38 080 32
청도면	38 080 39
초동면	38 080 37
하남읍	38 080 12
사천시	38 060
곤명면	38 060 36
곤양면	38 060 35
남양동	38 060 59
동서금동	38 060 53
동서동	38 060 51
벌룡동	38 060 55
사남면	38 060 32
사천읍	38 060 11
서포면	38 060 37
선구동	38 060 52
용현면	38 060 33
정동면	38 060 31
축동면	38 060 34
향촌동	38 060 57

(경상남도 산청군~통영시)

행정구역명	부 호
산청군	38 370
금서면	38 370 34
단성면	38 370 37
산청읍	38 370 11
삼장면	38 370 35
생비량면	38 370 39
생초면	38 370 33
시천면	38 370 36
신등면	38 370 40
신안면	38 370 38
오부면	38 370 32
차황면	38 370 31
양산시	38 100
강서동	38 100 53
동면	38 100 31
물금읍	38 100 12
삼성동	38 100 52
상북면	38 100 33
웅상읍	38 100 11
원동면	38 100 32
중앙동	38 100 51
하북면	38 100 34
의령군	38 310
가례면	38 310 31
궁류면	38 310 41
낙서면	38 310 38
대의면	38 310 33
봉수면	38 310 40
부림면	38 310 39
용덕면	38 310 35
유곡면	38 310 42
의령읍	38 310 11
정곡면	38 310 36
지정면	38 310 37
칠곡면	38 310 32

행정구역명	부 호
화정면	38 310 34
진주시	38 030
가호동	38 030 71
강남동	38 030 52
금곡면	38 030 33
금산면	38 030 40
내동면	38 030 31
대곡면	38 030 39
대평면	38 030 44
망경동	38 030 51
명석면	38 030 43
문산읍	38 030 11
미천면	38 030 42
봉수동	38 030 59
봉안동	38 030 56
사봉면	38 030 37
상대1동	38 030 61
상대2동	38 030 62
상봉동동	38 030 57
상봉서동	38 030 58
상평동	38 030 65
성지동	38 030 54
수곡면	38 030 45
신안동	38 030 68
옥봉동	38 030 60
이반성면	38 030 36
이현동	38 030 69
일반성면	38 030 35
정촌면	38 030 32
중앙동	38 030 55
지수면	38 030 38
진성면	38 030 34
집현면	38 030 41
초장동	38 030 66
칠암동	38 030 53
판문동	38 030 70

행정구역명	부 호
평거동	38 030 67
하대1동	38 030 63
하대2동	38 030 64
진해시	38 040
경화동	38 040 56
덕산동	38 040 61
병암동	38 040 57
석동	38 040 58
여좌동	38 040 54
웅동1동	38 040 65
웅동2동	38 040 66
웅천동	38 040 64
이동	38 040 59
자은동	38 040 60
중앙동	38 040 51
충무동	38 040 53
태백동	38 040 55
태평동	38 040 52
풍호동	38 040 62
창녕군	38 330
계성면	38 330 37
고암면	38 330 31
길곡면	38 330 41
남지읍	38 330 12
대지면	38 330 36
대합면	38 330 33
도천면	38 330 40
부곡면	38 330 42
성산면	38 330 32
영산면	38 330 38
유어면	38 330 35
이방면	38 330 34
장마면	38 330 39
창녕읍	38 330 11

행정구역명	부 호
창원시	38 010
가음정동	38 010 60
대산면	38 010 32
동읍	38 010 11
명곡동	38 010 53
반송동	38 010 55
봉림동	38 010 54
북면	38 010 31
사파동	38 010 59
상남동	38 010 58
성주동	38 010 61
용지동	38 010 57
웅남동	38 010 62
의창동	38 010 51
중앙동	38 010 56
팔룡동	38 010 52
통영시	38 050
광도면	38 050 33
도남동	38 050 61
도산면	38 050 32
도천동	38 050 51
명정동	38 050 52
무전동	38 050 56
미수1동	38 050 58
미수2동	38 050 59
봉평동	38 050 60
북신동	38 050 55
사량면	38 050 36
산양읍	38 050 11
욕지면	38 050 34
용남면	38 050 31
인평동	38 050 57
정량동	38 050 54
중앙동	38 050 53
한산면	38 050 35

행정구역명	부 호
하동군	38 360
고전면	38 360 35
금남면	38 360 36
금성면	38 360 37
북천면	38 360 40
악양면	38 360 32
양보면	38 360 39
옥종면	38 360 42
적량면	38 360 33
진교면	38 360 38
청암면	38 360 41
하동읍	38 360 11
화개면	38 360 31
횡천면	38 360 34
함안군	38 320
가야읍	38 320 11
군북면	38 320 32
대산면	38 320 34
법수면	38 320 33
산인면	38 320 38
여항면	38 320 39
칠북면	38 320 36
칠서면	38 320 35
칠원면	38 320 37
함안면	38 320 31
함양군	38 380
마천면	38 380 31
백전면	38 380 39
병곡면	38 380 40
서상면	38 380 38
서하면	38 380 37
수동면	38 380 34
안의면	38 380 36
유림면	38 380 33
지곡면	38 380 35
휴천면	38 380 32
함양읍	38 380 11
합천군	38 400
가야면	38 400 33
가회면	38 400 44
대병면	38 400 45
대양면	38 400 41
덕곡면	38 400 38
묘산면	38 400 32
봉산면	38 400 31
삼가면	38 400 43
쌍백면	38 400 42
쌍책면	38 400 37
야로면	38 400 34
용주면	38 400 46
율곡면	38 400 35
적중면	38 400 40
청덕면	38 400 39
초계면	38 400 36
합천읍	38 400 11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제주도 전체)

행정구역명	부 호
제주도	39
남제주군	39 320
남원읍	39 320 12
대정읍	39 320 11
성산읍	39 320 13
안덕면	39 320 31
표선면	39 320 32
북제주군	39 310
구좌읍	39 310 13
애월읍	39 310 12
우도면	39 310 33
조천읍	39 310 14
추자면	39 310 32
한경면	39 310 31
한림읍	39 310 11
서귀포시	39 020
대륜동	39 020 59
대천동	39 020 60
동홍동	39 020 57
서홍동	39 020 58
송산동	39 020 51
영천동	39 020 56
예래동	39 020 62
정방동	39 020 52
중문동	39 020 61
중앙동	39 020 53
천지동	39 020 54
효돈동	39 020 55
제주시	39 010
건입동	39 010 59
노형동	39 010 66
도두동	39 010 69
봉개동	39 010 62
삼도1동	39 010 55
삼도2동	39 010 56
삼양동	39 010 61
아라동	39 010 63
오라동	39 010 64
연동	39 010 65
외도동	39 010 67
용담1동	39 010 57
용담2동	39 010 58
이도1동	39 010 53
이도2동	39 010 54
이호동	39 010 68
일도1동	39 010 51
일도2동	39 010 52
화북동	39 010 60

행정구역명	부 호	행정구역명	부 호

- 용인시 행정구역분류(대체용) -

행정구역명	부 호
용인시	31 190
구성읍	31 190 13
기흥읍	31 190 11
남사면	31 190 34
동부동	31 190 54
동천동	31 190 59
모현면	31 190 32
백암면	31 190 37
상현동	31 190 60
성복동	31 190 61
양지면	31 190 38
역삼동	31 190 52
원삼면	31 190 36
유림동	31 190 53
이동면	31 190 35
죽전1동	31 190 57
죽전2동	31 190 58
중앙동	31 190 51
포곡면	31 190 31
풍덕천1동	31 190 55
풍덕천2동	31 190 56

2005 Census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사·례·집

080 콜센터 상담원용

통계청

교재의 사용에 앞서....

본 교재에 수록된 사례들은 과거 인구주택총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조사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본 교재를 참고하시되 **인구조사과 직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수록된 사례의 수정이 이루어 지거나, 새로운 사례와 그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메모란을 이용하여 추가수록해 주시고, 신속히 전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목차

Ⅰ. 조사대상 | 05

가구수 _ 06
가구원 _ 10
거처 _ 15

Ⅱ. 가구명부 | 25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거처번호 가구번호) _ 26
가구명부 작성 / 수정 _ 38

Ⅲ. 준비조사 | 57

조사구요도 _ 58
가구스티커 _ 61

Ⅳ. 조사표 작성 | 69

조사표 표지 _ 70
가구원에 관한 사항 _ 75
가구에 관한 사항 _ 97
주택에 관한 사항 _ 115
난외 사항 _ 140
일반적 작성 방법 _ 141

Ⅴ. 빈집조사 | 149

가구명부 _ 150
빈집조사 대상 _ 151
빈집조사표 _ 155

Ⅵ. 외국인조사 | 161

외국인조사 대상 _ 162
외국인조사표 _ 164
조사방법 _ 165
시설 내 외국인 _ 166
한국인과 동거 _ 167

Ⅶ. 인터넷조사 | 173

가구명부 _ 174

Ⅷ.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181

조사표 검토 _ 182
조사표 수정 _ 183
조사표류 제출 _ 183

Ⅸ. 기타행정사항 | 189

조사원 사항 _ 190

Ⅹ. 부록 – 유형별 조사방법(절차) | 197

기숙시설 / 특수사회시설 _ 198
하숙생 _ 199
자취생 _ 200
여관 및 호텔(숙박시설) _ 200
공익근무요원 _ 203
외국인 조사 _ 203
원룸 _ 204
고시원 _ 204
오피스텔 _ 205
주상복합건물 _ 206

I 조사대상

- 가구수
- 가구원
- 거 처

I 조사대상

가구수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가구번호부여	기숙사에 70명이 있는데 4명씩 한 방을 사용할 경우, 가구번호는 방마다 부여하나?	기숙사 전체에 1개의 가구번호 부여 (70명 전체가 1가구)	기숙사는 집단가구로 1거처, 1가구로 작성
2	300인 이상	특수사회시설인 정신병원의 환자수가 300명 넘을 경우 거처번호 1개를 추가로 부여하는가?	특수사회시설은 인원과 관계없이 1개 거처번호를 부여함	특수사회시설은 1거처, 1가구임
3	모자원	개별적으로 취사시설,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 방 등 1가구가 독립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자원의 경우, 하나의 집단가구로 조사 하는지, 각각 개별가구로 조사해야 하는지?	하나의 시설에 거처번호 1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각각의 가구별로 가구번호 부여 (일반가구)	모자원은 특수사회시설이지만 각각 일반가구로 파악
4	양로원	양로원의 경우, 거주하는 노인분들에 대해 각각의 가구로 조사해야 하는지?	한 거처에 한 가구로 조사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은 모두 가구원으로 봄)	특수사회시설은 1거처, 1가구임
		체크! 가구주는 대표자를 1명 선정하여 조사하고 나머지는 기타동거인으로 조사		
5	요양원	요양원에도 거처번호를 붙여야 되는가? (3개월이상 장기 요양자있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요양원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1개의 거처에 1개의 집단가구임
		체크! 가구명부 1줄에 기재(거처번호1, 가구번호1)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6	6인이상 가족	한 가족이 7명인 경우, 가구수는?	1 가구	혈연으로 되어있으면 가족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임.
7	가족 및 비혈연	가족 6명에 비혈연 1명이 같이 사는 경우, 가구수는?	숙식을 함께 하는 경우, 1가구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2가구로 조사	숙식 함께 하면 한 가구
		체크! 가구구분은 ②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사는 가구에 해당		
8	공동취사	4층건물에서 층별로 잠은 따로 자고 밥은 1층에 다 모여 먹을 경우 가구수는?	일반주택일 경우 한 가구로 봄 (거처번호 1개, 가구번호 1개)	
9	기숙시설 관리인	기숙사 관리인이 한 건물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 가구수는?	가구번호 1개 부여하며, 기숙생들과 함께 한 가구로 조사함	함께 숙식하는 관리인은 기숙시설에 포함하여 조사
10	기혼자녀	결혼한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한 가구로 보는가?	1 가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한 가구임
11	다가구 주택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한가족이 1,2층을 같이 사용하고, 3층은 비어있을 경우, 가구수는?	1 가구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3층은 주택에 관한 사항에 총방수에만 포함하여 조사
		체크! 빈집처리는 하지 않음		
12	생계를 같이함	한 집에 2사람이 각방을 사용하는데, 한 사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1가구로 해야하나?	1 가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한 가구임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3	수녀원	수녀원에 수녀님들과 사택 관리인이 거주하는 경우 가구수?	□취사를 함께 하는 경우 – 1가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 수녀님들 1가구, 관리인 1가구 총 2가구	숙식 함께 하면 한 가구
14	종업원 기숙	호텔에 장기 투숙객은 없고, 종업원들이 거주하면서 한 곳에서 밥을 먹는 경우, 가구수는?	호텔 종업원들에게 가구번호 1개 부여하여 한 가구로조사함	함께 숙식하는 것으로 보아, 한 가구로 조사
15	개별취사 고시원	명칭은 고시원인데, 내부는 각각 별도의 취사와 취침을 하는 경우 거처 및 가구번호는?	○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가구 조사 (거처번호 1개부여. 각 방별로 가구번호부여)	명칭과 관계없이, 숙식을 별도로 하면 개별 가구로 간주
16	동일번지의 두 주택	두 개의 건물이 번지가 같은 경우, 거처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는가? (건물은 개별적으로 매매됨)	번지와 관계없이,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각각 부여하여 조사함. (거처 2개, 가구 2개)	
17	두 호를 터서 세준 경우	계단식 아파트에서 마주보고 있는 102호, 103호를 터서 한 호는 세를 주었을 경우, 거처번호 어떻게 부여하는가? (현관문은 하나로 만들어 사용)	102,103호에 거처번호 1개 부여, 각각에 가구번호 1개씩 부여 (1거처, 1가구)	
18	두집이상 사용	한 가족이 아파트 두 호를 사용할때, 가구수는? (부모 한집, 결혼후 출가한자녀 한집)	각각 거처번호부여하고 별도의 가구로 조사 (거처번호 2개, 가구번호 2개)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9	두집이상 사용	연립주택의 101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주, 102호에서는 아이들이 잠만 자고, 식사는 101호에서 같이 하는 경우, 어떻게 조사하는가?	호별로 각각 거처번호를 부여하고,조사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101호에서 부부와 아이들 모두 조사하며, 102호는 빈집으로 처리	숙식을 함께하는 한 가구가 두 집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한 곳에서만 조사함
20	두집이상 사용	아파트 2호를 터서 한 주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자녀들이 공부만 하고 다른 곳에서 취침하는경우, 거처번호는?	거처번호 1개 부여하여 조사	두 집을 터서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집이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거처로 간주
21	보육원 사택	원장님이 보육원과 조금 떨어진 사택에 사는데 가구 및 거처번호는?	보육원과 별도로 거처번호1개, 가구번호 1개 부여	보육원에서 숙식하지 않으므로, 별도 거처와 가구로 구분
		체크! 원장가구는 일반가구에 해당		
22	사원 아파트	회사에서 아파트를 임대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경우, 5명씩 6집에 숙식하고 있을 경우, 호별로 1가구로 보는가, 6집 전체를 1가구로 보는가?	각 호별로 1 가구이며, 이 경우, 각각 6개의 일반가구가 됨	
23	세든 가구	단독주택에 세 가구가 세들어 사는데 거처번호를 3개 주어야 하는지, 가구번호를 3개 주어야 하는지?	거처번호 1개, 가구번호 3개	한 거처에 세 가구임
24	지방에서 장사	2층 단독주택에 1층은 주인가구 거주, 2층은 세든사람이 지방에서 장사하는 이유로 1년에 서너번만 와서 일주일 정도 거주하는 경우, 거처수와 가구수?	거처번호는 건물 전체에 1개 부여, 가구번호는 1층에만 부여하고 2층은 빈방으로 보아, 주인가구의 총방수에만 포함시킴 (거처 1개, 가구 1개)	2층에 장사하는 사람은 주로 상주하는 다른 지방에서 조사되어야 하므로, 이 댁에서는 가구수에 포함하지 않음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5	직원기숙 아파트	아파트 한 호를 얻어서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몇가구인가?	1가구	함께 숙식하므로 1가구
		체크! 일반가구에 해당		
26	친척 동거	한 집에서 친척이 함께 사는 경우	○ 숙식을 모두 함께 하는 경우 – 1가구 ○ 개별적으로 취사하는 경우 – 2가구로 나누어서 조사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한 가구로 간주

가구원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두 곳에서 생활	한 사람이 "본래의 자기집"과 "상가 내의 거처", 두 곳에서 모두 숙식하며 생활하는 경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조사해야 하는가?	주로 생활하는 한 곳에서만 조사	한 거처에서만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체크! 이때 나머지 한 곳이 주택요건을 만족할 경우 빈집 조사해야 함		
2	두 곳에서 생활	비닐하우스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는사람이, 본래의 집을 따로 두고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만 비닐하우스에서 숙식하는 경우, 어디서 조사하는가?	본래의 자기집에서 조사함	작물재배를 위해 일정기간만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므로, 주 생활거주지는 자기집임
		체크! 두 장소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 누락되거나 중복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 할		
3	부재가구	준비조사 때는 계셨는데 본조사에 와보니, 일본여행 가서 안계신다고 함. 어떻게 처리 하나? (1인가구)	관리자와 확인방문 후, 부재불응 처리	조사표표지에 [부재]라고 적색으로 기입하고, 필수기재사항, 가구원수, 성별,성함, 가구구분, 주택종류를 기입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4	비 상주	집은 얻어 놓고 한달에 한번정도 집에 들어오는데 조사해야 하나?	조사하지 않음 (단,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하여 조사해야 함)	
5	사 망	1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가구원은 조사하나?	조사해야 함	11월 1일,0시 기준으로 생존해 있었으므로 조사대상
6	승무원	항공기 등의 승무원의 경우 조사여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기간 외에, ① 집에서 숙식하며 출퇴근 하는 경우 – 본래의 자기집에서 조사 ②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 해당기숙사에서 조사	승무원으로 탑승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자더라도, 주 생활거주지는 자기집 또는 기숙사로 간주함
7	여관 호텔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투숙객의 경우 조사여부	□ 내국인 ① 출장, 여행을 목적으로 잠시 (3개월미만) 투숙하는 경우 – 본래의 집에서 조사 ② 취업 · 취학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3개월 이상) 투숙하는 경우 – 숙박시설에서 조사 □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는 숙박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숙박시설에서 조사함	투숙객의 경우, 외국인은 모두 조사하고, 한국인의 경우는 사유에 따라 조사함
		체크! 한국인 투숙객의 투숙기간과 목적 확인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8	외국 출타중인 사람	몇 개월간 외국 딸네 집에 다니러 가신 할머니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나? (그 집에는 할머니만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없음)	□3개월이내인 경우, 친지방문으로 보고 이곳에서 조사함. □3개월이상 부재인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빈집으로 처리	
9	외지생활자	자기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집에 오는 경우 여기서 조사하는가?	이 가구에서 조사하지 않음	주 생활거주지인 외지에서 조사
10	일시거주자	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잠시 머무르는 사람인 경우도 시설에서 조사하나?	잠시 있는 경우는 시설에서 조사하지 않음	본래의 자기집에서 조사
11	입원환자 간호자	가구주는 장기간 입원중이고, 배우자는 병원에서 숙식하며 간호하는 경우 조사여부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본래의 자기집에서 조사	입원기간과 관계없이, 주된 거주지는 병원이 아닌 자기집이 됨
		체크! 요양소와 같은 사회시설은 시설에서 조사함		
12	장기입원환자	1인가구인데 장기입원중이다. (의식불명, 가족 부재) 거처번호와 가구번호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나?	○조사관리자가 확인해서 부재불응가구처리함. ▶필수기재사항 기입(가구원수, 성별, 가구구분, 거처종류) 기입 조사표 표지에 적색으로 '부재불응' 표시	
13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여부?	조사해야함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함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4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2년간 장기입원하고 있는 가구원의 조사여부	이 가구에서 조사하지 않고, 병원에서 조사	정신병원 있는 가구원은 특수사회시설과 같이 병원에서 조사
		체크! 정신병원외에 일반병원에 장기입원환자는 이 가구에서 조사		
15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조사방법	▷ 공부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가 가능한 부분(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혼인상태등)을 조사하고 확인 불가능한 사항은 사유를 기재하고 미상으로 처리	
		체크! 이사후에 이사간 곳에서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		
16	조사기간내 출타하는 가구원	지금은 이 가구에 살고 있으나,11월 12일에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는 가구원을 포함해야 하는가?	이 댁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조사해야 함	11월1일 0시 기준에 이 댁에 살고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17	주민등록상 주소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주에 있는경우, 어디서 조사하는가?	실제 거주지인 서울에서 조사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살고 있는 지역(상주지)에서 조사
18	지방의 직장	지방에 있는 직장에 다니며, 며칠씩 지방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이집에서 조사하는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직장이 소재한 그 지방에서 조사 (단, 집에서 거주하는 일수가 더 많다면 자기집에서 조사)	주 생활근거지를 파악하여 그곳에서 조사
19	직업군인	영외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의 조사여부	□혼자 사는 경우-조사하지 않음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이 가구에서 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0	직업군인	영내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의 조사여부	▷ 혼자 군부대 막사에서 생활 – 조사하지 않음(국방부에서 별도 조사) ▷ 군부대 내의 아파트 등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 – 이 가구에서 조사(직업군인과 가족 모두 조사)	독채로 살고있는 군인은 국방부에서 조사하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통계청에서 조사함
		체크! 부부 직업군인인 경우 – 자녀없이 부부만 따로 살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조사		
21	출생	11월 2일에 태어난 아이의 조사여부	조사하지 않음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 제외
22	친지방문	부인이 출산을 위해 1달 전부터 친정집에 가서 생활하는 경우 조사여부	○ 상주지인 본래의 자기집에서 조사함	친정집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23	하숙 자취생	타지에서 하숙, 자취 또는 기숙사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는 경우 조사여부	○ 타지에서 조사	주 생활거주지가 자기집이 아닌 타지임
		체크! 주민등록이 본래의 집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관계없이 타지에서 조사함		
24	해외 파견자 (정부기관)	대사관, 영사관, 군인 등 정부기관 파견자격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의 조사여부	이 가구에서 조사하지 않음	외교관, 대사관 등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외교통상부에서 별도 조사
		체크! 잠시 휴가, 출장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도 조사하지 않음		
25	해외유학생	해외유학생의 경우 조사여부 (어학연수)	□ 3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인 단기 유학생–본래의 자기 집에서 조사 □ 3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인 장기 유학생–조사 하지 않음	3개월 이상의 경우, 한국이 아닌 해당국가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간주
		체크! 체류기간 및 목적 확인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6	성당	성당에 계신 신부님과 수녀님의 경우는, 본가가 따로 있어도 성당에서 숙식하는 경우는 어디서 조사하나?	성당에서 조사함	실제로 숙식하면서 생활하는 곳에서 조사, 본가에서는 제외됨
		체크!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본가에서 조사		
27	외지생활자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에는 한달에 한두번 오는 경우, 여기서 조사하는가?	이 가구에서 조사하지 않음	직장이 있는 곳을 주 생활근거지로 보아, 그곳에서 조사함
28	해외 선교사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조사하나요?	조사하지 않음	
		체크! 조사기간 중에 일시 귀국하는 경우라도 조사에서 제외함		
29	이중국적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조사하는가?	본인이 응답하는 국적으로 조사	

거처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1인 2거처	할머니가 집을 두채 갖고 있는데, 그 중 한 곳에는 가끔 청소만 하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청소만 하러 오시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은 빈집처리	
2	가정집 사무실	일반 가정집(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 (숙식은 안하고 사무실로만 사용)	사무실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면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처리함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주택은 빈집으로 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3	건설현장 숙소	건설회사의 현장 숙소(컨테이너)에 일하는 사람이 출장와서 2,3일씩 거주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경우는 조사하는가?	장기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음	주택이 아닌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곳만 조사
4	교회	교회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사람이 살고 있으면 거처번호와 가구번호 부여함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모두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5	마을회관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조사는?	거처번호 하나 부여하고, 거처의 종류는 ⑩기타번에 표시하고 마을 회관이라고 기입	
6	소방서	소방서 대기소에 교대근무하면서 항상 사람이 있을 경우, 조사 해야 하는가?	조사하지 않음	사람이 상주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이 됨
7	전입가구	11월 1일부터 15일 내에 전입 온 가구는 조사를 해야 하나?	전입하기 전 지역에서 조사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안했을 경우에만 현 지역에서 조사	중복 및 주락조사 가능성 배제
8	주차장	주차장에도 거처번호 부여하나요?	주차장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므로 부여하지 않음	
9	짐만 들어온 집	신규 아파트에 우선 짐만 들어온 경우 빈집으로 처리하는가?	거처번호 1개를 부여하고 빈집처리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
10	철거 건물	철거예정인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다른 곳에 거주할 때, 그 건물의 조사여부?	거처번호 1개를 부여하고 빈집처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1	축사	축사도 조사해야 하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음	주택이 아닌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곳만 조사
12	분양중인 빌라	분양이 되지 않은 4층 빌라인 경우 거처번호를 부여하는가?	입주가능한 빈집은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빈집조사함 (단, 가구번호는 부여하지 않음)	주택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면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조사
		체크! 신축중인 건물은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13	아파트 내 노인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은 거처번호 주는가?	거처번호 부여함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모두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14	철거예정빈집	집이 철거 될 예정으로 집이 비워있다면 거처번호 부여하나?	거처번호 부여하고 빈집처리	
15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거처 번호를 부여하나?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16	학교사택	초등학교 사택에 교장,교감선생님이 거주할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17	회관	회관에 거처번호 부여하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주택이 아닌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거처번호 부여
18	아파트사무실	아파트 한 호실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사무실로만 쓰고 있다. 빈집 처리하나?	거처번호만 하나 부여하여, 빈집처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빈집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9	공해상 선박	공해상에 정박하며 생활하는 선박의 경우	▷ 집단시설로 간주하여, 선박전체에 1개의 거처, 1개의 가구번호 부여하여 근무자 전원을 집단가구로 조사 단, 외국인과 한국인을 별도의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 ▷ 선박 내에 객실이 있어 장기투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각 객실별로 가구번호부여	선박의 경우, 별도의 조사구를 설정하지 않은 관계로 기숙사시설 개념으로 조사
20	독서실	독서실에 숙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독서실에도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조사 해야 하나?	거처번호 1개 부여하고, 숙식하는 사람을 1가구로 조사함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모두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21	마을회관	마을회관에 취사를 할 수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거처번호 부여? (거주하는 사람없음)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용건물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22	막사	건물신축을 위해 옆에 막사를 쳐서 숙식하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 하는가?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모두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23	상가	상가인 경우에도 조사해야 하나?	상가에서 숙식하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함	
24	숙직실	관공서(숙직실)에서 5인이 취침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조사여부?	상주하는 경우에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조사함	사람이 상주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이 됨
		체크! 상주가 아니고, 사람을 달리하여 숙직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음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5	아파트 놀이방	아파트의 한 집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놀이방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조사여부?	빈집으로 조사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주택에는 거처번호만 부여하여 빈집처리
26	여관	여관에 거처번호 부여하나?	주인이 거주하거나, 장기투숙객,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만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조사대상자가 없는 경우, 비거주용 건물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27	영업용건물	가게안에 방이 하나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주택요건 비충족)	조사하지 않음	주택이 아닌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조사함
28	창고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의 거처번호 부여 여부?	창고는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조사하지 않음)	사람이 거주하하거나, 빈 주택인 경우에만 거처번호 부여
29	병원내의 방	병원 안에 별도의 방에서, 가끔 야근할 때 잠만 자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부여하지 않음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30	경로당	경로당에 숙식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처번호 줘야 하나?	숙식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만 거처번호 부여
31	취침만 하는곳	주택의 요건을 갖춘 곳에서 축사때문에 밤에 잠만 자고, 밥은 가족들이 있는 다른곳에서 함께 먹는 경우, 이 곳은 빈집처리 하는가?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조사함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곳만 조사
		체크! 조사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에서 함		

II 가구 명부

-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
  (거처번호, 가구번호)
- 가구명부 작성 / 수정

Ⅱ 가구명부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거처번호, 가구번호)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	관광호텔 조사구	거처번호부여	관광호텔조사구의 경우 거처번호 하나를 부여하나? 조사표 작성은 객실별로 따로 하는가?	시설 조사구의 경우, 거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며, 객실별로 조사표를 배부하여 객실단위별로 조사표가 작성되도록 함	하나의 객실이 1가구이므로, 객실별 조사표 작성
			체크! 호텔전체 1 거처, 투숙객실별로 1가구(조사대상자 투숙객실에 한함)		
2	관광호텔 조사구	객실 투숙객	호텔의 객실투숙자의 경우,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는? (호텔조사구)	· 거처번호 : 숙박시설 전체에 1개부여 · 가구번호 : 장기투숙객 또는 외국인투숙객에 한하여, 각 객실별로 하나씩 부여	객실 투숙객이 외국인인경우 반드시 조사하고, 한국인인 경우 사유에 따라 조사여부 결정 – 3개월이상장기투숙자
			체크! 호텔전체 1거처, 투숙객실별로 1가구(조사대상자 투숙객실에 한함)		
3	관광호텔 조사구	관리인가구	관광호텔조사구에 관리인 가구가 숙식하며 살고 있는 경우	관리인 가구는 별도로 1개의 가구번호 부여, 호텔 투숙객은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각 객실별로 가구번호 부여	
			체크! 단, 호텔투숙객중 조사대상자가없는 경우는 관리인가구를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조사구에서 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4	기숙시설	가구번호부여	기숙사에 70명이 있는데 4명씩 한 방을 사용할 경우, 가구번호는 방마다 부여하나?	기숙사 전체에 1개의 가구번호 부여 (70명 전체가 1가구)	기숙사는 집단가구로 1거처, 1가구로 작성
5	기숙시설	관리인가구	기숙시설이나 특수사회시설에 관리인 가구가 독립적으로 숙식하며 살고 있는 경우	가구번호 2개 부여 ①관리인 가구 : 별도의 일반가구 ②시설에 수용된(기숙하는) 사람 전체 : 하나의 집단가구(총 2가구)	
			체크!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는 기숙생과 함께 한 가구로 조사		
6	기숙시설	여러동	한 조사구에 기숙시설 4동이 있을 경우 기숙사 동별 거처번호를 부여 하나?	① 거처번호는 1개로 부여 ② 단, 현재 4개동이 각각의 기숙시설조사구(1개동 1조사구)로 설정되었다면, 각 동별로 거처번호를 부여	
7	특수사회시설	300인 이상	특수사회시설인 정신병원의 환자수가 300명 넘을 경우 거처번호 1개를 추가로 부여하는가?	특수사회시설은 인원과 관계없이 1개 거처번호를 부여함	특수사회시설은 1거처, 1가구임
8	특수사회시설	모자원	개별적으로 취사시설,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 방 등 1가구가 독립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자원의 경우, 하나의 집단가구로 조사 하는지, 각각 개별가구로 조사해야 하는지?	하나의 시설에 거처번호 1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각각의 가구별로 가구번호 부여 (일반가구)	모자원은 특수사회시설이지만 각각 일반가구로 파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9	특수사회시설	양로원	양로원의 경우, 거주하는 노인분들에 대해 각각의 가구로 조사해야 하는지?	한 거처에 한 가구로 조사하며,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은 모두 가구원으로 봄 (가구명부는 1거처 1가구이기 때문에 1줄만 작성)	특수사회시설은 1거처, 1가구임
			체크! 가구주는 대표자를 1명 선정하여 조사하고 나머지는 기타동거인으로 조사		
10	특수사회시설	요양원	요양원에도 거처번호를 붙여야 되는가? (3개월이상 장기 요양자있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요양원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1개의 거처에 1개의 집단가구임
			체크! 가구명부 1줄에 기재(거처번호1, 가구번호1)		
11	6인이상 가족		한 가족이 7명인 경우, 가구수는?	1 가구	혈연으로 되어있으면 가족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임
12	가족 및 비혈연		가족 6명에 비혈연 1명이 같이 사는 경우, 가구수는?	숙식을 함께 하는 경우, 1가구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2가구로 조사	숙식 함께 하면 한 가구
			체크! 가구구분은 ②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사는 가구에 해당		
13	공동취사		4층건물에서 층별로 잠은 따로 자고 밥은 1층에 다 모여 먹을 경우 가구수는?	일반주택일 경우 한 가구로 봄 (거처번호 1개, 가구번호 1개)	
14	기숙시설 관리인		기숙사 관리인이 한 건물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 가구수는?	가구번호 1개 부여하며, 기숙생들과 함께 한 가구로 조사함	함께 숙식하는 관리인은 기숙시설에 포함하여 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5	기혼자녀	결혼한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한 가구로 보는가?	1 가구	
16	다가구 주택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한가족이 1,2층을 같이 사용하고, 3층은 비어있을 경우, 가구수는?	1 가구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3층은 주택에 관한 사항에 총방수에만 포함하여 조사함
		체크! 빈집처리는 하지 않음		
17	생계를 같이함	한 집에 2사람이 각방을 사용하는데, 한 사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1가구로 해야하나?	1 가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한 가구임
18	수녀원	수녀원에 수녀님들과 사택 관리인이 거주하는 경우 가구수?	□취사를 함께 하는 경우 -1가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수녀님들 1가구, 관리인 1가구 총 2가구	숙식 함께 하면 한 가구
19	종업원 기숙	호텔에 장기 투숙객은 없고, 종업원들이 거주하면서 한 곳에서 밥을 먹는 경우, 가구수는?	호텔 종업원들에게 가구번호 1개 부여하여 한 가구로조사함	함께 숙식하는 것으로 보아, 한 가구로 조사
20	독서실	독서실에 숙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독서실에도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조사 해야 하나?	거처번호 1개 부여하고, 숙식하는 사람을 1가구로 조사함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모두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1	숙직실	관공서(숙직실)에서 5인이 취침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조사여부?	상주하는 경우에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조사함	사람이 상주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이 됨
		체크! 상주가 아니고, 사람을 달리하여 숙직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음		
22	독서실	여관에 거처번호 부여하나?	주인이 거주하거나, 장기투숙객,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만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용건물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23	개별취사 고시원	명칭은 고시원인데, 내부는 각각 별도의 취사와 취침을 하는 경우 거처 및 가구번호는?	○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가구 조사 (거처번호 1개부여. 각 방별로 가구번호부여)	명칭과 관계없이, 숙식을 별도로 하면 개별 가구로 간주
24	거처번호 부여순서	아파트 조사구에 거처번호 부여시 위에서 아래로 줘도 되나?	아래서 위로 부여함	출입구 기준으로, 이동방향으로 부여
25	다가구	조사구요도 상에는 빌라로 표시되어있으나, 실제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는?	확인 후, 다가구요건을 만족하면 거처번호1, 가구마다 가구번호를 부여 (기존 부여된 거처번호는 결번처리)	각 호별로 분리하여 매매가 불가능 하면 다가구주택임
26	다가구 빈집	3층의 다가구주택 2층 가구가 비어있는 경우,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부여하나?	거처번호는 주택전체에 하나 부여하고, 2층 집에는 따로 가구번호 부여하지 않고 빈방으로 봄	다가구의 경우, 전체 거처 1개, 호별로 가구번호 부여
		체크! 빈집조사는 하지 않음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7	다세대 빈집	4층의 다세대주택 1층 가구가 비어있는데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부여하나?	1층가구에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처리 함. (가구번호는 부여하지 않음)	다세대의 경우, 호별로 각각의 개별 거처로 간주
28	다세대 빌라	각각 매매가능한 빌라에 세든집과 빈집이 있는 경우,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 부여는?	세든 집은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하여 조사 비어있는 집은 거처번호만 부여하여 빈집조사	각각 매매 되므로, 세든 집과 빈집은 각각 거처번호 부여
29	동일번지의 두 주택	두 개의 건물이 번지가 같은 경우, 거처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는가? (건물은 개별적으로 매매됨)	번지와 관계없이,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각각 부여하여 조사함 (거처번호 2개 부여)	
30	두 호를 터서 세준 경우	계단식 아파트에서 마주보고 있는 102호,103호를 터서 한 호는 세를 주었을 경우, 거처번호 어떻게 부여하는가? (현관문은 하나로 만들어 사용)	102,103호에 거처번호 1개 부여, 각각에 가구번호 1개씩 부여 (거처 1개, 가구 2개)	
31	두집이상 사용	한 가족이 아파트 두 호를 사용할때, 거처번호는? (부모 한집,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 한집)	각각 거처번호부여하고 별도의 가구로 조사 (거처 2개, 가구 2개)	혈연관계이지만, 다른 집에서 숙식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의 가구임
32	두집이상 사용	연립주택의 101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주, 102호에서는 아이들이 잠만 자고, 식사는 101호에서 같이 하는 경우, 어떻게 조사하는가?	호별로 각각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101호에서 부부와 아이들 모두 조사하며, 102호는 빈집으로 처리	숙식을 함께하는 한 가구가 두 집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한 곳에서만 조사함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33	두집이상 사용	아파트 2호를 터서 한 주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자녀들이 공부만 하고 다른 곳에서 취침하는경우, 거처번호는?	거처번호 1개 부여하여 조사	두 집을 터서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집이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거처로 간주
34	두집이상 사용	공동주택에서 한 가족이 앞집, 윗층, 아래층을 트지 않고 모두 사용하는 경우, 거처번호와 가구번호 부여는?	주된 거주생활 호실을 1거처, 1가구번호를 부여하고, 나머지 호실에는 각각 거처번호만 1개씩 부여하여 빈집으로 처리	한 가구가 여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된,한 거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
35	병원내의 방	병원 안에 별도의 방에서, 가끔 야근할 때 잠만 자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부여하지 않음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36	보육원 사택	원장님이 보육원과 조금 떨어진 사택에 사는데 가구 및 거처번호는?	보육원과 별도로 거처번호1개, 가구번호 1개 부여	보육원에서 숙식하지 않으므로, 별도 거처와 가구로 구분
		체크! 원장가구는 일반가구에 해당		
37	부여방법	거처번호는 한 조사구가 끝날때까지 001부터 계속 연속하여 부여하는가?	001부터 조사구가 끝날때까지 계속 연속부여함	조사구단위로 거처번호 부여
38	부여순서	계단이 2개씩인 복도식 아파트인 경우, 거처번호 부여 순서는?	아래층부터 부여하되, 호수가 빠른순서로, 혹은 이동이 편리한 순서로 부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39	분양중인 빌라	분양이 되지 않은 4층 빌라인 경우 거처번호를 부여하는가?	입주가능한 빈집은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빈집조사함 (단, 가구번호는 부여하지 않음)	주택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면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조사
		체크! 신축중인 건물은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40	사원 아파트	회사에서 아파트를 임대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경우, 5명씩 6집에 숙식하고 있을 경우, 호별로 1가구로 보는가, 6집 전체를 1가구로 보는가?	각 호별로 1 가구이며, 이 경우, 각각 6개의 일반가구가 됨	
41	상가 빈방	상가 2층에 3개 방중, 2개는 세들어 있고 1개는 빈방인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	1거처에, 세든가구 2집에 각각 가구번호 부여하고, 빈방은 가구번호 부여 안함	
		체크! 단, 총방수 셀 때는 빈방도 포함		
42	세든 가구	단독주택에 세 가구가 세들어 사는데 거처번호를 3개 주어야 하는지, 가구번호를 3개 주어야 하는지?	거처번호 1개, 가구번호 3개	한 거처에 세 가구임
43	아파트	아파트 한 단지안에 각각 12가구, 20가구가 있는 아파트가 있을 때, 거처번호는 001로 다시 시작하나?	두 아파트가 한 조사구로 묶여져 있으면 거처번호를 끝번호에 이어서 부여함	
44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거처번호는 001부터 계속 늘어나는데 가구번호는 계속 001인가?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거처번호는 계속 바뀌지만 한가구씩 살고있기 때문에 가구번호는 계속 001임 단, 한 호에 세든 가구가 있다면 두 가구가 되어 001,002의 가구번호가 부여됨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45	아파트	아파트 101동에서 102동으로 넘어가면, 거처번호가 001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동과 관계없이, 조사구가 달라질 경우에만 새로 001부터 시작함	
46	아파트 내 노인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은 거처번호 주는가?	거처번호 부여함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모두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47	아파트 자취생	아파트에 한 가족과, 방 한칸에는 자취생이 있는 경우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는 ?	1거처에 한 가족에 1가구, 자취생 1가구로 각각 가구번호 부여(총2가구)	숙식을 별도로 하는 개별가구임
48	여관 호텔	관리인은 따로 살고 여관에는 투숙객만 있는 경우, 10개의 객실에 사람들이 다 투숙하고 있다면, 각각 호실별로 가구번호 부여하나?	조사대상이 되는 투숙객이 있는 객실에 한하여, 각 호실별로 가구번호 부여하여 조사	객실을 기준으로 1개 가구로 파악함
		체크! 투숙객의 조사대상 여부는 유형별사례 참고. ＊10개 객실에 단기투숙 한국인만 있다면 모두 조사대상 아님		
49	영업겸용 다가구	3층 다가구 단독주택에 1층이 영업장인 경우는 어떻게 조사 하는가? (2,3층은 한 가구가 거주함)	다가구 주택 전체에 거처번호 1개 부여하며, 2,3층에만 각각 가구번호를 부여 (1거처 2가구)	다가구 단독 주택의 경우는 하나의 거처로 보되, 거주부분만 조사하므로 1층은 조사하지 않음
50	영업용건물	상가건물 1,2,3 층에 모두 가구가 살고, 각각 층별로 매매가 가능할 경우, 거처번호는?	분리매매가 가능한 경우, 1,2,3층 각각 거처번호 부여	
51	영업용건물	1층 상가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방과 2,3층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처번호 어떻게 부여하나?	층별로 독립적매매되지 않는 경우, 거처번호 하나 부여하고, 각 층에 가구수 만큼 가구번호 부여하여 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52	영업용건물	사람이 거주하는 상가건물에 주인이 각각 다르고, 매매가 따로 되는 경우에 거처번호는?	각각 거처번호 부여	
53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거처번호 부여방법?	오피스텔은 사람이 사는 경우에 한하여, 호별로 각각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함	오피스텔은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하므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54	원룸	원룸은 거처번호 하나씩 주어야 하나요?	각각 매매가 되는 원룸이면 거처번호를 하나씩 주고, 건물전체로 매매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거처로 보아, 거처번호 1개부여	
55	원룸	원룸 20개가 있는 다가구 주택에, 5개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처번호 가구번호 부여?	1 거처에 5가구 부여하여, 나머지는 빈방으로 봄 (이 경우, 빈집조사 하지는 않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경우에만 빈집조사 함
		체크! 다가구는 호별매매 불가능. 건물전체로 매매되는 경우를 말함		
56	원룸	원룸의 경우, 거처번호와 가구번호 부여방법?	○ 각각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 – 거처번호 1개, 각 방별로 가구번호 부여 ○ 각각 독립적으로 매매되는 경우 – 각 방별로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	
		체크! 매매단위 고려		
57	이발소	이발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거처종류는? (주택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발소 내 거주하는 방에 거처 및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주택이외의 거처' 로 조사함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58	조사구 분리	한 아파트가 두 조사구로 분리된 경우, 거처번호는 연결하여 부여하는가?	조사구가 바뀌면, 거처번호는 001부터 다시 부여함	조사구 단위로 거처번호 부여
59	지방에서 장사	2층 단독주택에 1층은 주인가구 거주, 2층은 세든사람이 지방에서 장사하는 이유로 1년에 서너번만 와서 일주일정도 거주하는 경우, 거처수와 가구수?	거처번호는 건물 전체에 1개 부여, 가구번호는 1층에만 부여하고 2층은 빈방으로 보아, 주인가구의 총 방수에만 포함시킴 (거처 1개, 가구 1개)	2층에 장사하는 사람은 주로 상주하는 다른 지방에서 조사되어야 하므로, 이 댁에서는 가구수에 포함하지 않음
60	직원기숙 아파트	아파트 한 호를 얻어서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몇가구인가?	1가구	함께 숙식하므로 1가구
		체크! 일반가구에 해당		
61	철거예정빈집	집이 철거 될 예정으로 집이 비워있다면 거처번호 부여하나?	거처번호 부여하고 빈집처리	
62	친척 동거	한 집에서 친척이 함께 사는 경우	○ 숙식을 모두 함께 하는 경우 – 1가구 ○ 개별적으로 취사하는 경우 – 2가구로 나누어서 조사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한 가구로 간주
63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거처 번호를 부여하나?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64	피아노 교습소	다세대 건물의 한 호를 피아노 교습소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방시설과 방은 있지만 숙식은 하지 않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거처번호 1개 부여하여, 빈집처리함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빈집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65	학교사택	학교가 5층 건물인데 6층은 교장집이고, 1층 매점에는 작은방이 하나 있어 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는? (학교는 교장 소유)	거처번호 하나에 교장집에 가구 번호 하나, 매점에 거주하는 사람에 가구 번호 하나 부여(총 거처 1, 가구 2)	매점에 있는 방은 별도 매매가 되지 않으므로, 건물전체를 거처 하나로 간주
		체크! 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매점방을 총방수에 포함		
66	학교사택	초등학교 사택에 교장,교감선생님이 거주할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	
67	한울타리 내 두집	한 울타리안에 주인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원룸형식의 다가구 주택(10가구)이 있다. 거처번호와 가구번호 부여는?	· 단독주택 : 1거처 1가구 · 다가구 주택 : 1거처,10개 원룸에 각각 가구번호 부여 즉, 거처번호 총 2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각각 별도의 거처가 됨
68	회관	회관에 거처번호 부여하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주택이 아닌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거처번호 부여
69	경로당	경로당에 숙식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처번호 줘야 하나?	숙식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만 거처번호 부여
70	빈집	빈집의 경우 거처번호를 별도로 분리하여 마지막에 넣어야 하나?	빈집인 경우도 거처순으로 연결하여 부여함 (별도로 분리하지 않음)	
71	아파트 놀이방	아파트 한 호를 놀이방으로만 사용하고 저녁에는 다른 집에서 잠자는 경우, 빈집조사 하는가?	거처번호만 부여하고 빈집 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72	영업용건물	가게안에 방이 하나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주택요건 비충족)	조사하지 않음	주택이 아닌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조사함
73	마을회관	마을회관에 취사를 할 수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거처번호 부여? (거주하는 사람없음)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용건물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가구명부작성 / 수정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가구번호	과다부여	가구수가 감소한 경우, 이미 부여한 가구번호의 처리는?	잘못 부여한 가구번호는 두줄(==) 긋고 가구명부상의 비고란에 결번이라 기입	해당 가구번호만 수정
			체크! 연결하여 부여된 가구번호를 전부 수정할 필요는 없음		
2	가구번호	누락	가구명부 작성시 누락된 가구는 어떻게 하나?	가구명부상의 마지막 가구로 추가하되, 그 가구가 있는 거처번호와 해당거처의 마지막 가구번호를 부여	
3	가구번호	주인가구	주인가구를 가구번호 002에 기입한 경우, 수정 해야 하나?	001로 수정	해당거처에 주인가구는 가구번호 001부여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4	가구번호	과다부여	이미 거처번호 부여했는데. 거처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잘못 부여한 거처번호는 두줄(==) 긋고 가구명부상의 비고란에 결번이라 기입	해당거처번호만 수정
5	거처번호	누락	가구명부 작성시 누락된 거처는 어떻게 하나?	누락된 거처는 가구명부의 마지막에 거처의 끝번호에 이어 거처번호 부여	
6	거처번호	다세대	다세대주택을 한 거처로 부여한 경우, 누락된 거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당 거처번호에 연결하여 거처번호를 새로 부여하며, 기존에 잘못 부여된 가구번호는 결번처리	다세대의 경우, 호별로 각각 거처 1번호, 가구번호 1 부여
7	거처번호 가구번호	다가구	다세대인줄 알고,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 했는데 다가구인 경우, 가구명부 수정방법은?	첫번째 거처번호에 가구번호 002부터 부여하고, 나머지 거처번호는 결번처리	잘못된 거처번호는 결번처리 하므로, 기존의 거처번호를 앞당겨 기입하지 않음
8	가구원 수	외지의 가구원	가족 중 1명이 외지에 나가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만 가구원 수에 기입
9	가구원 수	집단가구	집단가구의 경우, 가구명부의 가구원 수에는 가구주는 포함해서 기입 하는가?	가구원수에 가구주를 포함하여 기입함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 (또는 시설) 전체인원 수
10	가구종류	고시원	고시원(명칭)에 숙식을 달리하는 30명의 학생이 있는 경우, 가구종류?	고시원- 일반가구 (각 방별로 별개의 가구)	숙식을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집단가구로 간주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1	가구종류	기숙사	기숙사는 가구종류의 어디에 속하나?	집단가구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은 1개의 집단가구
12	가구종류	기훈련원	기훈련원에 8명이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가구종류?	기훈련원 - 집단가구(1개의 가구)	숙식을 함께 하는 비혈연 6인이상 ~ 19인미만인 경우 집단가구
13	가구종류	외국인 부인	남편이 한국인, 부인이 외국인으로 일반조사표를 작성한 경우, 가구명부에서 외국인 가구에 해당하나?	일반가구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는 일반가구에 해당
14	가구종류	외국인 사원 아파트	회사에서 아파트를 얻어 숙소로 쓰고 있는데 외국인만 거주할 경우, 가구명부에 가구종류는?	외국인가구	해당가구에 외국인만 거주하는 경우는 외국인가구에 표시
			체크! 내국인이 함께사는 경우는 일반가구로 조사		
15	가구종류	직원임대가구	회사직원 7, 8명이 주야 교대로 일정하지 않게 출입하면서 아파트 한 집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가구종류는?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	숙식을 함께 하는 비혈연 6인이상 ~ 19인미만인 경우 집단가구
16	거처 및 가구번호	'0' 기입여부	거처 및 가구번호 작성 시, '001'과 같이 '0'을 붙여야 하나?	'0'을 붙여서 세자리로 작성	
17	거처번호	2매 사용할 경우 부여방법	한 조사구에 가구수가 많아, 가구명부 2장을 사용할 경우, 다음장의 거처번호 부여는?	앞장의 마지막번호에 연결하여 부여	조사구 단위로 거처번호 부여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8	거처종류	가게 거주	영업용건물에 종업원 등이 숙식하며 생활하는 경우의 거처종류?	□ 주거전용의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경우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부엌, 출입구등을 영업용을 병행 사용하는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체크! 공장에 관리인(또는 근로자)이 숙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19	거처종류	고층 빌라	빌라인데 11층까지 있으면 아파트로 분류해야 하는가?	아파트로 기입	5층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에 해당됨
			체크! 단, 건축물대장 상의 사용요도를 참고로 하여 기입할 것		
20	거처종류	교회사택	목사님이 교회 내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처의 종류는?	□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에 해당 □ 주택의 요건 갖추지 않은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21	거처종류	기숙사	기숙사의 거처의 종류는?	주택이외의 거처	기숙시설은 주택이외의 거처에 해당
22	거처종류	다가구	명부작성 할때 거처종류가 다가구 주택인 경우 어디에 체크하는가?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됨	다가구 단독 주택
23	거처종류	다가구 다세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 호별로 분리매매 가능 – 다세대 주택 · 호별로 분리매매 불가능 – 다가구단독	분리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4	거처종류	다세대 연립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구분기준은?	1. 건물 연면적 기준 200평 이하 – 다세대 주택 200평 초과 – 연립주택 2. 면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무엇으로 허가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	지침서 참고
25	거처종류	사무실겸용	주택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무실과 주거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거처종류?	□오피스텔인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인 경우 – 사무실면적 ≤ 주거면적 – (영업겸용) 단독주택 사무실면적 > 주거면적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거이외의 용도는 영업용으로 간주
26	거처종류	여관	여관의 경우 거처종류? (세들어 거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음)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에 해당 □여관 객실등 주택요건을 못갖춘 경우–주택이외의 거처	
27	거처종류	여관 호텔	여관에 주인가구가 살고 있을때, 거처의 종류?	○ 여관 내 주택요건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여관의 객실에서 생활 – 주택이외 거처	여관의 영업용 객실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28	거처종류	연면적 200평이하	주택이름이 '00연립' '00빌라' 로 되어 있지만, 평수가 연면적이 200평 미만인 경우 다세대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주택정보) 참고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9	거처종류	원룸	원룸의 경우 거처의종류	□호별로 분리해서 분양(매매) 가능한 경우 – 다세대 주택 □호별로 분리해서 분양(매매) 불가능한 경우 –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매매 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체크! 호별 매매 가능여부확인		
30	거처종류	정신병자 수용시설	정신병자 수용시설인 경우에 거처의 종류?	주택이외의 거처에 해당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은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
31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를 개조하여,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아파트인 경우, (1층 상가에 거주하는 사람있음) 거처의 종류는?	2층이상– 아파트 1층 ┌상가내 거주자 :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자 없는 상가 : 조사제외	1층은 비거주용 건물로 간주하여,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32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1층 – 당구장, 2층 – 한의원, 3층에는 다방에 2명의 종업원이 살고, 4층에는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처에 주인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거처종류는? (건물 전체로 매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기입(4층 주인가구만 작성)	영업면적이 주거면적보다 큰 경우,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체크! 거처의 종류는 주인(대표)가구만 기입, 각 층별 분리 매매가능성 여부 확인		
33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 주택인 경우의 거처종류?	○ 주거용(2층) 연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 상가용(1층) 연면적이 큰 경우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연면적을 비교하여 거처의 종류를 결정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34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1층 식당에 1가구가 거주하고, 2층은 여관, 3층에는 주인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거처의 종류? (건물전체로 매매되며, 층별분리 매매 불가능)	○ 건물전체가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조사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택이외의 거처"로 조사	거처의 종류는 주인(대표)가구만 기입
			체크! 1, 2층의 경우는 거처의 종류 기입하지 않음, 층별 분리 매매가능여부 확인		
35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부분의 거처의 종류는?	거처종류는 "아파트"로 기입	상가아파트이므로, 거주부분은 아파트임
			체크! 단, 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주택이외의 거처"		
36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상가아파트(주상복합)의 영업용 부분의 거처의 종류?	○ 사람이 비상주하는 경우 – 조사대상에서 제외 ○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① 주거전용의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경우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②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 사람이 살지 않는 영업부분은 조사에서 제외 ·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의 요건에 따라 거처의 종류 판단
37	거처종류	이발소	이발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거처종류는? (주택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발소 내 거주하는 방에 거처 및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주택이외의 거처'로 조사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38	거처종류	골프장	실외골프장에 강사 2명이 거주하는 경우, 거처의 종류는? (편익시설 없이 방만 5개 있고 식당은 골프장 식당에서 함)	기타(골프장숙소)라고 함	주택의 요건에 벗어남
			체크! 가구명부의 거처종류란에는 "주택이외의 거처"에 해당		
39	거처종류	연립주택	200평미만인데도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거처의 종류는?	연립주택으로 기입	
40	거처종류	단독주택 구분	단독주택에서 대문은 1개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어 현관문이 있으며 방과 화장실, 부엌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일반 단독주택인가, 다가구 단독주택인가?	다가구 단독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의 요건 ·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각 가구들이 화장실, 부엌, 방,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함
41	거처종류	공장건물내 거주	정비공장 2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처종류는 어디에 해당되나? (공장면적>주거면적)	○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해당 ○ 주택의 요건갖추지 않은 경우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 지침서 참고
42	공동주택명칭	기숙사	기숙사는 공동주택명칭을 기입하는가?	기숙사는 기입하지 않음 (공란 처리)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43	기숙시설	작성방법	기숙사의 경우, 가구명부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기숙생360명)	1 가구에 가구원이 360명. 가구명부 한줄에 1개 거처, 1개의 가구번호, 가구주 대표자 1명의 성명 기입 가구종류 집단 가구	기숙사의 360명이 하나의 가구가 됨
			체크! 조사구 요도에는 가구수란에 가구원수(360명)을 기입함		
44	농림어가여부	남의 논에서 일	가구원 중, 남의논 또는 밭에서 일을 하며 생계유지하는 사람이 1명 있는 경우, 농가인가?	농가	* 남의 논이든 자기 논이든 관계없이 농업종사자가 1명 이라도 있으면 '농가' 에 해당
45	농림어가여부	축산	축산은 농림어가구분의 어디에 포함하나?	농가	
46	농림어가여부	주말농장	취미생활로 주말농장 하는 경우도 농가인가?	비농림어가로 봄	
47	농림어가여부	양계장	농림어가 구분에서 양계장은 어디에 포함되나?	농가	
48	농림어가여부	회사원	농가, 어가, 임가가 아니고 일반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경우, 농림어가구분은?	비농림어가	
49	농림어가여부	겸업	농사를 지으면서, 슈퍼를 경영할 경우의 농가여부?	농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에 해당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50	농림어가여부	축사 임대	축사를 직접하지는 않고 임대해주고 세만 받는 경우, 농림어가 구분은?	비농림어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로 봄
51	농림어가여부	농업 및 회사	조사표 농림어가 구분에서 남편은 농사를 짓고 부인은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농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에 해당
52	빈집	기입여부	가구명부 작성시, 빈집도 기입하는가?	거처번호, 주소, 거처종류, 빈집여부 기입	
			체크! 가구번호는 없음		
53	인터넷조사	작성항목	인터넷조사 가구는 가구명부에 어떻게 기입하는가?	시스템에 입력된 가구명부 자료를 기입하고, 비고란에 "인터넷"으로 기입.	
54	인터넷조사	조사표부수	인터넷조사 가구의 조사표가 1부이상인 경우, 가구명부의 조사표 부수를 어떻게 기입하는가?	인터넷 조사가구의 조사표는 1부만 포함됨	인터넷조사 가구는 종이 조사표의 표지만 작성하여 포함
55	인터넷조사	집계표	인터넷조사 가구는 가구명부의 집계표에 포함하는가?	포함하여 기입	
56	작성단위	조사구별 기입	조사구번호가 바뀌면 가구명부도 새로 쓰는가?	조사구별로 가구명부 새로 작성함	가구명부는 조사구 단위로 작성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57	조사구요도 매수	확대도	조사구요도 1장과 확대도 1장을 받았는데, 2매로 보아야 하나, 1매로 보아야 하나?	2매로 기입	
58	조사표부수	기숙시설	기숙시설 조사구의 기숙사에 조사표부수가 외국인 2부, 한국인 4부인 경우 조사표부수는?	총 6부가 됨	기숙시설 조사구의 가구명부는 1장이며(조사구 단위별 작성), 조사구 부수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합계를 기입
59	조사표부수	기입방법	조사표부수 기입시 조사표 장수로 써야 하는지, 가구수로 써야 하는지?	조사표 장수를 기입	
			체크! 한장에 5명씩 작성하므로, 6인가구인 경우 2장이 됨		
60	조사표부수	빈집조사표	빈집조사표는 빈집이 한 집이라도 있으면 1부로 보는가?	빈집이 한집이라도 있으면, 빈집조사표 1부로 하여 조사표 부수 포함함	
			체크! 빈집조사표 1장당 6집 작성가능		
61	조사표부수	빈집조사표	가구명부의 조사표 부수에 빈집조사표도 포함해서 써야 하나?	빈집조사표도 조사표 부수에 포함됨	
62	주소	공동주택명칭	일반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명칭을 안 써도 되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명칭 기입하지 않음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음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63	주소	공동주택명칭	가구명부의 공동주택 명칭에 이름이 없는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쓰는가?	명칭은 적지 않고 동 · 호수만 작성	
64	주소	새주소	가구명부 주소란에 새주소를 쓰는가?	법정동을 기입 (우편물에 사용하는 주소)	
65	주소	주소동일	주택의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주소기입은 어떻게 하는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	지번이 상이한 지역에 대한 실제 확인작업은 전국을 동시에 하여야 하나 예산과 시간적 문제로 불가능
66	주소란	법정동	가구명부상의 주소란에 법정동명을 기입하는가?	▷ 가구명부 및 조사표 표지의 한글주소기입란에는 법정동을 기입	
67	준비조사	부재가구	준비조사시에 가구원을 만나지 못해 가구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가구명부 작성은?	▷일단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하나씩 부여 – 이후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가구번호만 결번처리하여 빈집으로 조사 – 이후에, 2가구이상 사는 경우, 조사구요도에 가구수 수정 하고 추가되는 가구는 뒤에 가구번호를 부여하여 조사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68	집계표	빈집	가구명부 집계표의 가구수란에는 빈집은 포함하는가?	빈집은 가구수 집계에서 제외됨	빈집은 가구번호 부여하지 않음
69	집계표	빈집 인터넷 가구	가구명부 집계표에 빈집과 인터넷 조사가구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거처 총계 – 모두 포함하여 기입 □ 가구수 총계 – 빈집은 가구수에서 제외, 인터넷 조사가구는 가구수에 포함	
70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2층 상가주택에 1층 상가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2층은 거주용인데 이사를 가고 빈집일 경우, 2층은 빈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건물전체로 매매)	1층상가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인(대표)가구로 하여 조사하되, 2층의 빈집은 빈집조사하지 않고, 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빈방으로만 기입함	1층과 2층이 한 거처이므로, 1층 거주자를 조사
71	거처종류	공장건물	공장 건물 위에 지어진 주택 요건을 갖춘 조립식 건물에 살고 있을 때 거처의 종류는?	○「⑤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으로 기입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공장건물의 일부임
			체크! 주택의 요건 갖추지 않은 경우, "기타"		
72	거처종류	목재소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장소에 주택이 없고 목재소 내에 판자로 지은 사무실 겸용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거처의 종류는?	○「⑩ 기타」로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영구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의 요건에 벗어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73	거처종류	반지하	반지하에 부엌, 방 2개,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현관문이 따로 있으며, 1층에는 주인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인 경우 거처종류는?	다가구 단독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의 요건 ·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각 가구들이 화장실, 부엌, 방,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함
74	거처종류	단독주택 구분	2층 단독주택에서, 2층으로는 1층을 통하여 올라가야할 때, 거처종류는?	「① 일반단독주택」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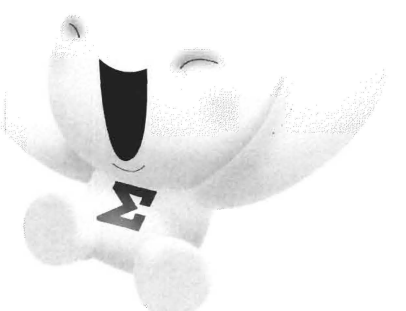

III 준비 조사

- 조사구요도
- 가구스티커

조사구요도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부분확대도	조사구요도에 전체 도면과 부분확대도가 있는 경우, 부분확대도에는 확대된 지역의 가구수만 적는지, 전체 도면의 총 가구수를 적는지?	부분확대된 지역의 가구수만 합하여 기입.	
2	부분확대도	부분확대도가 3장이면,가구수 기입하는 곳에 3장 모두 가구수가 같아야 하는가?	3장 각각 해당 확대지역의 가구수만 기입하므로, 가구수가 동일하지 않음	부분확대된 지역의 가구수만 합하여 기입
3	빈집	조사구요도 위에 가구수 적는 란에 빈집도 포함되는가?	빈집은 포함 안됨	빈집은 거처번호만 부여하고 가구번호는 없음
4	사용필기구	조사구요도 수정할 때나 건물을 하나로 묶어줄 때는 검정색으로 하나?	조사구요도 상에 신축 또는 누락된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하며 묶어 줄 때는 검정색으로 표기	
5	사용필기구	조사구요도에 거처와 가구수, 빈집표시할때 볼펜으로 하나?	가구수만 연필로 하고, 나머지는 흑색볼펜으로 작성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6	사용필기구	조사구요도 작성시에 무슨 색을 사용하는가?	1) 조사구 경계 및 건물등의 수정, 보완은 적색 2) 가구수 및 빈집표시는 연필	지침서 p26~27 참조
7	상가건물	상가건물에 사람이 숙식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처번호 부여하여, 조사구요도에 나타내야 하는가?	영업만 하고 있으면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조사구요도에 상가명칭만 기입	상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조사함
8	소재지	조사구요도 상단에 "소재지"란 곳에 번지수를 다 적어야 하는가?	소재지 통 · 반 · 리 · 부락명 혹은 주소지를 다 적어야 함	
9	수정	조사구요도 수정할 때, 수정액을 써도 되는가?	수정액은 쓰지 않도록 하고, 적색으로 수정	
10	수정	조사구요도에 청색의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가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분홍색으로 수정하여 상가라고 표기하며, 거처번호는 부여하지 않음	청색은 주택, 분홍색은 상가이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가는 조사제외
11	수정	조사구 요도와 실제 주택의 위치 및 수가 불일치 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조사구요도를 수정하여, 추가되는 주택을 표시하고 조사함	
12	신축건물	신축건물에 밑바닥만 시멘트로 해 놓은 상태면 신축중인 건물로 표시하나?	신축중인 건물로 표시 (적색 점선의 사각형)	밑바닥만 해 놓았더라도 짓고 있는 상태이므로 신축중인 건물로 봄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3	신축중단	건물을 짓다가 중단상태인데 언제 다시 지을지 모르는 경우, 요도상에 어떻게 처리하나?	신축중인 건물로 표시 (적색 점선의 사각형)	중단되었더라도, 짓고 있는 상태이므로 신축중인 건물로 봄
14	오피스텔	순수하게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빈집)으로 표시 또는 x자로 표시해야 하는가?	[빈집]이나 [×] 표시를 하지 않고, 건물위치와 명칭만 기입함.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빈 주택만 빈집조사
15	창고 축사	조사구요도상에 농촌의 한울타리안에 있는 창고나 축사등도 같이 묶어주는가?	같이 묶어 주어 출입구 표시 할 것	
16	철거	조사구요도에는 있으나, 철거된 집의 경우 거처번호 부여?	집이 철거되어 없는 경우, ×표시 하여 요도를 수정하고 거처번호는 부여하지 않음	
17	철거	조사할 때 조사요도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건물이 허물어져 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함	
		체크! 단, 폐가 등의 빈집인 경우는 빈집처리		
18	철거 신축	조사구 요도에 표시된 건물이 거의 철거되어 일부건물이 신축된 경우, 예전 건물들과 묶어서 출입구 표시해도 되는가?	신축, 철거, 누락된 건물을 보완하여, 예전건물과 묶어서 출입구 표시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9	철거 신축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경우, 지도상의 표시 여부?	원래 있던 건물은 적색으로 ×표시하며, 신축중인 건물로 표시 (적색 점선의 사각형)	
		체크! 단, 신축 중인 건물의 보양이 겹치는 경우는 ×표 하지 않음		
20	출입구 표시	조사구요도를 작성할 때 아파트 출입구는 어떻게 표시하나?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출입구 표시를 하지만 아파트 지역은 조사구 요도상에 따로 출입구 표시를 하지 않음	아파트는 전개도에 출입구 표시
21	출입구 표시	4층주택에 1층에 들어가는 출입구와 2, 3,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1층에 3가구가 사는 경우, 조사구요도에 출입구 표시는?	1층에 들어가는 문을 주출입구로 하여 지도에 표시	
22	출입구 표시	조사구요도에 출입구를 다 표시해 주어야 하나?	단독주택인 경우 출입구 표시함 공동주택의 경우는 요도상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음	공동주택은 전개도상에 계단식, 복도식 구분과 라인표시만 함

가구스티커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기입방법	빈집	빈집은 스티커에 어떻게 표시하나?	빈집일 경우에는 스티커의 가구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조사여부에 ×표시	빈집은 거처번호만 부여하고 가구번호는 없음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	기재내용	부착	가구스티커를 부착시, 기재하는 내용?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기입	조사여부는 본조사때 조사한 후 기입
3	부착 개수	기숙시설	기숙사의 경우 스티커는 방마다 붙이나?	한 가구에 하나씩이므로 스티커는 하나만 부착	기숙시설 전체가 한 가구임 가구수 만큼 가구스티커 부착
4	부착 개수	세든가구	주인집과 세든집이 있는 경우, 가구스티커 2개 붙이나?	가구스티커 2개 부착	가구수만큼 스티커 부착
5	부착 개수	세든가구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세든 사람이 있는 경우, 가구스티커는 몇 개 부착하나?	세든 가구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2개 부착	가구수만큼 부착 (주인가구, 세든가구 총 2가구)
6	부착 개수	다가구	하나의 단독주택에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가구스티커는 가구수만큼 다 붙여야 하는가?	가구가 많더라도, 가구수만큼 다 붙이도록 함	가구수 만큼 가구스티커 부착
7	부착 위치	세든가구	주인집과 세든집이 서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 어디에 부착하는가?	각각의 출입구에 부착	가구스티커는 가구수만큼 부착하므로, 주인가구와 세든가구는 각각 별도로 부착함
8	부착 위치	주상복합건물	상가건물 3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가구스티커는 어디에 부착하는가?	3층 주택 현관에 부착	거주가구의 출입구에 부착
			체크! 상가출입구에 붙이지 않도록 유의		

Ⅳ 조사표 작성

- 조사표표지
- 가구원에 관한사항
- 가구에 관한사항
- 주택에 관한사항
- 난외사항
- 일반적 작성방법

Ⅳ 조사표 작성

조사표 표지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	가구원 수	6인이상	가구원 수가 10명인데 2부중 1부에만 10명이라고 적으면 되는가?	가구원 수는 2부중 1부에만 전체 가구원 수 10명을 기입	조사표 2부를 사용하며, · 가구당 조사표부수 – 총 2부 중 1부, 총 2부중 2부로 기입 · 조사표 표지의 나머지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되, 가구원수와 농림어가구분은 1부에만 기입
2	가구원 수	외국인 남편	한국인 부인에 외국인 남편인 경우, 외국인 남편을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가?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일반조사표로 함께 작성하되, 뒷면에 국가명 및 분류분호를 기입	한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에 포함시켜 조사함
3	공동주택명	무명 연립	연립인데 이름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명에 무엇을 기입하나?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주소만 쓰고 연립이라고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4	기숙시설	100명이상	기숙사에 100명이 있는 경우, 조사표표지 작성방식?	조사표 20부를 사용하며, · 가구당 조사표부수 – 총 20부중 1부, 총 20부중 2부 … 와 같이 기입 · 표지의 나머지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되, 가구원수와 농림어가구분은 첫번째 조사표(1부)에만 기입	
5	농림어가 구분	두가지직업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직업도 있는 경우, 농림어가 구분은?	농가에 표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농가로 간주
			체크! 단, 취미로 채소등을 기르는 경우는 제외 – 비농림어가		
6	농림어가 구분	겸업	농사를 지으면서, 슈퍼를 경영할 경우의 농가 여부?	농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에 해당
7	농림어가 구분	농업 및 회사	조사표 농림어가 구분에서 남편은 농사를 짓고 부인은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농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에 해당
8	농림어가 구분	양계장	농림어가 구분에서 양계장은 어디에 포함되나?	농가	
9	농림어가 구분	주말농장	취미생활로 주말농장 하는 경우도 농가인가?	비농림어가로 봄	
10	농림어가 구분	축사 임대	축사를 직접하지는 않고 임대해주고 세만 받는 경우, 농림어가 구분은?	비농림어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로 봄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1	농림어가 구분	회사원	농가, 어가, 임가가 아니고 일반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경우, 농림어가구분은?	비농림어가	
12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0" 기입여부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수에 꼭 "0"을 넣어야 하나?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과 출생아 수에는 꼭 "0"을 기입해야 함	
13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가구원수 포함여부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표시한 사람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가?	가구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가구원 수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원만 기입
14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공익근무요원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출퇴근하는 군인은 입대한 가족에 해당되는가?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은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 – 즉, 이 가구에서 조사되어야 함	출퇴근하는 군인은 이댁에서 조사함
			체크! 결혼하여 군인아파트에 사는 군인등도 동일적용		
15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별거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같이 살지는 않는 경우,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기입하는가?	별거인 경우,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포함하지 않음	
16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출가한 자녀	결혼 후 출가해서 나간 자녀의 경우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표시하는 것인가?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음 (총출생아수는 표기)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본래 이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임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7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타지에 나와 있는 경우	학업 때문에 혼자 원룸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은 본가에 있는 경우,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는 어떻게 표시하나?	조사되어서는 안될 사람수는 모두 0,0,0으로 기입	본가 기준이므로, 본가 조사표의 '조사되어서는 안될 사람' 에 이 사람을 기입하는 것임
18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해외유학생	해외에 공부하러 간 아들도 조사하나? (장기 유학생)	조사는 하지 않고,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중 학업 때문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수의 '국외에 1명' 표시하고, 가구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체크! 3개월미만의 단기 유학생의 경우는 조사함		
19	주소	행정구역 부호표기	행정구역부호를 적는데, 부호표에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부호는 동사무소가 있는 동의 코드번호를 쓰고 주소지는 법정동을 기입	
20	주소	행정구역 부호표기	주소란 기입시, 읍면동까지는 부호가 있으나, 읍면 지역의 리 단위는 부호가 없는데 어떻게 기입하는가?	읍면동에 연락하여 해당 조사구가 속한 통리의 부호를 문의하여 기입	조사표 표지의 '통' 이나 '리' 에 대한 부호는 양이 방대하여 "부호집"에 수록하지 않음
21	주소	행정명 법정명	행정명과 법정명이 다른 경우, 조사표표지의 주소 기입란에 어떤 것을 기입하는가?	법정명을 기입하되, 부호는 해당 행정 부호를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2	필기구		조사표 표지의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의 기입은 무슨 색깔로 하나?	수성 싸인펜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할 것 (적색 금지)	
			체크! 적색 필기구 사용금지		
23	주소란	법정동	가구명부상의 주소란에 법정동명을 기입하는가?	▷ 가구명부 및 조사표 표지의 한글주소기입란에는 법정동을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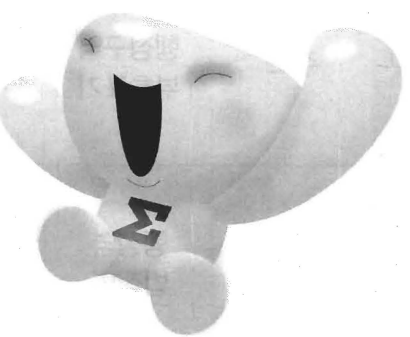

가구원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	5년전 거주지	다른 동	5년전 거주지에서 같은 구의 다른 동인 경우에도 기재해야 하나?	같은 시군구내에서 동까지는 구분안해도 됨	시군구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시군구로 표시
2	5년전 거주지	다른 동	5년전 거주지에서 해운대구 좌1동에서 해운대구 우1동으로 이사왔을 경우 행정구역명을 기입해야 하나?	행정구역명 기입하지 않음	동의 이동은 상관없고, 다른 구인 경우 기입함
3	5년전 거주지	비자치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살다가 2년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로 이사하였을 때의 5년전 거주지는?	○ 5년전 거주지 →「③ 같은 시 · 군 · 구내 다른 집」	경기(도) 수원(시) 내에서의 이동이므로, 같은 시 내의 다른 집임
			체크! 시군구에서 "구"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자치구만 해당되며, 그 이외의 일반시의 비자치구는 해당되지 않음		
4	5년전 거주지	신축	살던 집을 헐고 단독주택 신축해서 사는 경우, 5년전 거주지?	▷ 5년전 시점(2000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중에 다른 곳에 거주 – 실제 거주한 그곳을 기입 공사기간중에 같은 울타리 안에 거주 – '①현재 살고있는 집' 으로 기입	공사를 위하여 다른 곳에 산 경우도 다른 장소에서 살다가 이동한 것으로 간주
			체크! 주택의 지하에서 산 경우 같은 울타리에 거주한 것임		
5	5년전 거주지	예시	홍씨부부는 부산시 중구 광복동에 살다가, 2000년 12월에 광복동 내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다. 홍씨에게 2000년 11월 2일에 태어난 아들이 있을경우, 이들의 5년 전 거주지는 어디인가?	○홍씨부부 → ③ 같은 시 · 군 · 구내 다른 집 아들 → ① 태어나지 않았음	조사기준 시점이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이므로, 5년 전은 2000년 11월 1일 0시임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6	5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표기할때 다른 시군구에 표기했으면 행정구역을 표기해야 하나?(해운대구인데 수영구, 동래구 였던 사람들)	다른 구에서 해운대구로 이사왔을 경우에 행정구역명을 표기	
7	5년전 거주지		현재 1살 아기인데 5년전 거주지 문항에 "태어나지 않았음"에 체크해야 하나?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둠	6세부터 기입하므로 대상이 아님
8	가구원 기입순서	사위와 거주	사위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원 적는 순서는? (딸 내외와 동거)	가구주가 장인일 경우: 가구주(장인), 배우자(장모), 딸, 사위 가구주가 사위일 경우: 가구주(사위) 배우자(딸) 장인 장모	가구주를 중심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작성함
9	가구주	특수사회시설	특수사회시설의 200명을 조사할 때, 조사표마다 대표자(가구주)를 써야하나?	조사표 중 1부에만 기입함	
10	가구주	하숙, 자취생	하숙생이 6인 이상일 경우, 가구주는?	가구주는 6명중 연장자나 다른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잘 아는 사람을 1명 선정함	주인가구와 분리하여 별도의 집단가구로 조사하므로, 가구주 별도로 선정
11	가구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장인어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구주는 누구로 하나? (장인어른은 무직, 사위는 직장인)	사위가 가구주가 됨	경제활동을 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을 가구주호 정함
1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아들 내외, 자녀, 할머니가 사는데 가구주가 누가 되어야 하나? (아들만 직장생활하며 생활비마련)	아들을 가구주에 넣고 부인, 자녀, 할머니 순으로 기입	실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가구주가 되어야 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3	가구주와의 관계	두명의 부인	가구주(남편)가 없이 본처와 둘째 부인이 함께 사는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는?	○ 본처 → 「① 가구주」로 ○ 둘째 부인 → 「⑭ 기타 동거인」으로 기입	본처가 가구주가 되므로 둘째 부인은 혈연관계가 아님
			체크! 남편(가구주)가 있는 경우에는 본처와 둘째부인 모두 '가구주의 배우자' 로 기입		
14	가구주와의 관계	입양자녀	친자녀가 아닌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입양한 자녀, 계부, 계모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로 표시함	
			체크! 단, 총출생아수 항목에서는 친자녀가 아닌 경우, 포함시키지 않음		
15	경제활동 상태	공익근무요원	다른 일 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출퇴근만 하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 경제활동상태는 「③ 없음」으로 기입	공익근무는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16	경제활동 상태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인데 경제활동에 수입있는 일을 한적이 "있음" 해당 되는가?	경제활동 상태는 ①있음	가족의 수입있는 일을 도운 경우도 수입있는 일을 한 것으로 간주
17	경제활동 상태	생활보조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데, 둘다 직업은 따로 없고, 교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경제활동 여부는?	수입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은 "없음" 으로 봄	수입있는 일을 하는 것을 경제활동으로 봄
18	경제활동 상태	스님	스님의 경우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상태는 ①있음	스님, 목사, 전도사 등의 경우 경제활동 하는 것으로 봄
19	경제활동 상태	농작물	시골에서 할머니가 수확한 농작물 전부를 대가 없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 주는 경우, 할머니의 경제활동상태?	「③ 없음(가사, 학업 등)」해당	수입(일의 대가)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이라 볼수 없음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0	경제활동상태	임대업	임대를 주어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 건물을 관리하며 운영 – 경제활동상태 ① 있음 ○ 단지 집에서 세만 놓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 ③없음	건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는 일을 한 것으로 보나, 세만 놓는 경우는 일한 것으로 보지 않음
21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가족의 일을 함께	부인을 경리사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부인에게 급여를 주며,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 – 부부 모두 「① 있음」 ○ 종사상 지위 – 가구주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부인 「① 임금 근로자」	부인에게 별도의 보수를 주기 때문에 부인은 근로자가 됨
			체크! 보수를 지급하는 여부 확인		
22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가족의 일을 함께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교대로 가게를 보고 있을 때,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 부부 모두 「① 있음」 ○ 종사상 지위–가구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부인 「④ 무급가족종사자」	가게를 운영하여 부부가 함께 생계를 꾸려감
			체크! 단, 아르바이트생등의 직원을 둔 경우, 가구주는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가 됨		
23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가족의 일을 함께	휴학한 아들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부모의 가게 일을 도와주는 경우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그외 종업원이 없는 경우)	○부모와 아들 모두 경제활동상태 「① 있음」 ○종사상지위 □보수 지급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가구주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부인과 아들 ④무급가족종사자 □아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주는 경우 가구주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아들 ①임금 근로자	가족이라도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종사상 지위가 달라짐
			체크! 보수지급 여부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4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과외	과외지도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 종사상 지위는 →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과외지도도 수입이 있는 일이므로 일한 것으로 봄
25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노점상	불법 노점상인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혼자서 경영할 경우)	○ 경제활동상태 「① 있음」 ○ 종사상 지위「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수입이 있으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경제활동하는 것으로 봄
			체크! 불법이라도, 노름이나 매춘과는 성격이 다름		
26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농작물	농사 지은 수확물의 일부는 다른가구에 주고, 일부는 시장에 팔 경우는 경제활동상태? (농사를 혼자 짓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① 있음」 ○ 종사상 지위「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7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대표이사	회사의 대표이사로 매달 보수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때의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 「① 있음」 ○ 종사상 지위 「① 임금근로자」	회사로 부터 보수를 받으므로 임금 근로자임
			체크! 회사대표라도 보수를 회사로부터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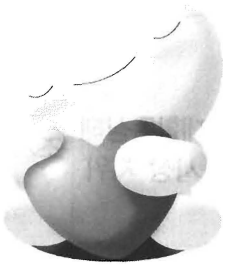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8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사채업	사채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하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 「① 있음」 – 종사상 지위 · 종업원이 없으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 종업원이 있으면 → 고용원을 둔 사업주 ○ 가정주부가 집에서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 경우 – 경제활동상태는 「③없음」으로 기입	사채를 주 업무로 하여 수입 있는 일을 함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매일 이자만 받는 것은 일한 것으로 보지 않음
29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아르바이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밤에 시간당으로 아르바이트 하거나, 또는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 「① 있음」 ○ 종사상 지위 「① 임금근로자」	학생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였음
			체크! 가정주부가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우유, 신문배달)		
30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연금	퇴직후 다른 일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는 「③ 없음 (가사, 학업등)」	수입은 있으나, 일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일한 것으로 보지 않음
31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조사원 교육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준비조사 업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전수조사원) 경제활동상태 「① 있음」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전수조사원 준비조사 기간 10월 29,30,31일 표본조사원 준비조사 기간 10월 30,31일
			체크! 표본조사원의 경우는 경제활동 없음에 해당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32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주식투자	다른 일 없이, 주식투자로 이익금 받은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 경제활동상태 「③ 없음 (가사, 학업 등)」	주식투자에 의한 이익금은 일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일한 것으로 보지 않음
33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통장	통장 또는 이장이 다른 직업 없이 매달 동사무소나 읍 · 면사무소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 ① 있음 ○ 종사상의 지위 ① 임금 근로자	일을 해준 대가로 수당을 받으므로 경제활동으로 봄
			체크! 보수 없이 일한 경우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봉사활동 등)		
34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밤에 레스토랑 또는 식당 등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는 「① 있음」으로, 종사상 지위는 「① 임금 근로자」로 기입	공익근무요원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므로, 그 것을 경제활동으로 봄
35	교육정도	대입합격증 소지자	현재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에 입학합격증을 받은 상태인 경우,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대입 합격증을 받았으나, 현재 입학한 상태가 아니므로, 최종 학력을 기입
36	교육정도	대학교 및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 을 위해 전문대학을 다시 들어가 졸업한 경우의 교육정도는?	○ 교육정도 → ⑥ 대학교 (4년제 이상)/① 졸업	교육정도는 최상의 학력수준 기재
37	교육정도	대학교 및 전문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며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다니고 있을 때의 교육정도는?	○ 교육정도 → ⑥ 대학교 (4년제 이상)/② 재학	교육정도는 최상의 학력수준 기재
38	교육정도	대학교 및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교육정도 → ⑥ 대학교 (4년제 이상)/① 졸업	현재 전문대 재학중이라도, 최상의 학력수준 기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39	교육정도	맹아학교	맹아학교는 정규학교에 포함되는 지 여부?	○ 맹아학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교이므로 정규학교로 조사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교인지를 파악
40	교육정도	방송통신대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교육정도 기입은?	○ (~80년) 입학한 경우 → ⑤대학(4년제 미만) ○ (81년~현재) 입학한 경우 → ⑥ 대학교(4년제 이상)	1981년 2월에 학제개편되어, 그 이후에 입학한 자에 한하여 4년제 이상 대학교로 간주
41	교육정도	외국에서 교육	외국에서만 교육을 받고 한국에 온 경우, 교육정도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외국에서의 교육년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적용	교육제도가 다르므로, 교육년수를 기준으로 함
42	근로장소	출장화가	출 · 퇴근 하지 않고, 요청을 받고 전국을 다니며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 근로장소는?	①사업장	
43	근로장소	출장화가	출 · 퇴근 하지 않고, 요청을 받고 전국을 다니며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 근로장소는?	①사업장	
44	나이	띠	책에는 원숭이가 잔나비로 되어 있는데 원숭이로 써도 상관이 없는가?	원숭이나 잔나비 둘 다 상관없음	
45	산업 직업	개인업체	사업체 명칭이 없는 개인업체인 경우, 사업체명은 어떻게 기입하는가? (컴퓨터 홈페이지 제작)	"컴퓨터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기입하며, 개인이 하는 경우 사업체명이나 하고 있는 일이 동일함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46	산업 직업	건설일용직	건설업하는 일용직의 경우, 그 건설회사에 소속되지 않았을때, 사업체명과 부서및 직책은?	사업체명에 회사명 없으면, 업종명 기입, 부서 및 직책이 없는 경우는 장소기입	
			체크! 여러장소를 옮겨다니는 경우는 가장 많이 가는 장소기입		
47	산업 직업	경비원 / 청소원	아파트 경비(청소)를 하는 경우, 사업체 이름과 주된 사업 내용을 어떻게 쓰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이면 해당 아파트명을 기입, 주된 사업 : 아파트 관리, 용역회사 소속이면 그 용역업체명을 기입, 주된 사업 : 인력공급업	소속에 따라서 사업체명과 주된 사업내용을 기입
48	산업 직업	경비원 / 청소원	아파트 경비(청소)를 하는 경우, 근무부서 직책 및 하고있는 일의 종류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부서 및 직책 :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하고 있는 일의 종류 : 경비업무 (청소)	
49	산업 직업	군인	예비군 중대 중대장을 맡고 있는데 주된 사업 내용은 뭐라고 써야 하나?	사업체 이름 : 예비군 부대 주된 사업내용 : 예비군 훈련	
50	산업 직업	농축산	농업과 축산을 겸하는 경우, 부서 및 직책은 뭐라고 해야하나?	○ 둘 중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기입 ○ 시간이 동일한 경우 → 수입이 많은 부분으로 기입	1) 취업시간 2) 수입 순의 기준으로 주된 산업을 선정함
			체크! 도소매 업체등도 동일하게 적용 (도매, 소매 중 많은 부분으로 기입)		
51	산업 직업	다방	다방에서 배달하는 종업원의 경우 산업직업	○ 산업 → 다방 ○ 직업 → 음식서비스원	다방 배달 종업원이므로 서비스원으로 봄
			체크! 다방(커피숍)에서 차를 만드는 일만 하는 경우의 직업은 '차류조리사'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52	산업 직업	목사	목사인 경우 산업, 직업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직장 · 사업체이름 : 교회이름 주된 사업내용 : 교회운영 부서 및 직책 : 목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목사	
53	산업 직업	복수직업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산업 및 직업	○ 취업시간이 우선하여 정함 → 2개 이상의 경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직업을 기입 ○ 취업시간이 동일한 경우 → 수입이 많은 직업을 기입	1) 취업시간 2) 수입 3) 최근의 직업 순의 기준으로 주된 직업을 선정함
			체크! 산업 · 직업분류 기입요령을 참고하여 분류원칙을 적용		
54	산업 직업	사채업	사채업을 하는 사람의 산업 · 직업은 무엇인가?	– 산업 →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 직업 → 대금업자	
			체크!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55	산업 직업	유흥가	유흥가 또는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경우, 산업직업 항목의 기재는?	○ 산업 → 주점업 ○ 직업 → 음식서비스원	술을 서비스하는 음식서비스원으로 분류
			체크! 유흥업소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경우의 직업은 '음식점업 일반 관리자'		
56	산업 직업	임대업	임대를 주어 월세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자의 산업 · 직업은 ?	– 산업 → 부동산임대업 – 직업 → 건물관리종사자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57	산업 직업	조사원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산업직업 항목의 기재는?	○ 다른 일 없는 조사원인 경우 산업 → 고용된 지방행정 집행기관명 직업 → '통계조사 사무원' ○ 다른 일 있는 조사원인 경우 평상시에 하는 일의 산업직업 기입	평소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조사원은 일시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본래의 직업을 기입함
			체크! 본직업이 있는지 여부		
58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남의 밭을 빌려 혼자 농사 짓는 사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인가? 임금 근로자인가?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임대하여 농사 짓는 경우에도 땅 주인이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땅 소유여부는 관계없음
59	산업 직업	택시운전	택시운전 하는 경우, 직장, 사업체 이름?	택시회사인 경우는 해당 업체명 기입 개인택시인 경우는 "개인택시"로 기입	
60	산업 직업	톨게이트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분의 사업체 이름은 어떻게 기입하는가?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체 이름은 "한국도로공사" 주된사업 내용은 "도로관리 · 공사"	
61	산업 직업	학교급식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경우, 직장(사업체)명은 어디로 기입하나?	학교에 소속된 경우, 학교명을 기입	
			체크! 외부업체에 소속된 경우는 외부업체명과 그 업체에 관한 사항을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62	산업직업	농사	농사짓는 경우, 산업 기입?	"농사"로 기입하고 주된 사업 내용에는 재배하는 농산물을 구체적으로 기입	
63	성명	조사여부	성명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가?	○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심하게 불응할 경우에는 성과 함께 '김ㅇㅇ'로 기입	동일인의 중복, 누락 방지 추후 조사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할 경우 식별자료가 됨
64	성명	호적상 성명	집에서 쓰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이름이 다르다. 어떤걸 써야하나?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음	
65	성별	성전환자	성전환한 사람(트렌스젠더)의 경우	○ 주민등록상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응답하는 성별을 기재	
66	아동보육실태	기입대상	아동보육실태에서 중학생이 포함되나?	중학생이라도 세는 나이로 13세 이하인 경우는 작성함	세는 나이 13세까지만 기입
67	아동보육실태	기입대상	부진아이로 연령은 16세이나 특수학교(초등학생 수준)에 다니는 경우에 아동보육실태를 조사해야 하는가?	조사하지 않음	기입대상 연령이 13세 이상
68	아동보육실태	아이들과 놀때	학교수업을 마치고, 대부분 집에 와 놀이터나 아이들과 어울리며 오후를 보낼 때, 아동보육상태 항목은?	○ 부모가 집에 계시는 경우 →「① 자녀의 부모」 ○ 집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경우 →「⑨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69	아동보육실태	어머니 성명	낮에는 이모가 돌보고 밤에는 엄마가 돌보는 경우, 이모 이름을 써야하나?	어머니 이름을 기입함	보육과 관계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면, 어머니 이름을 기입
70	아동보육실태	어머니 성명	아동보육실태 항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어머니 성명 기입란 옆 □에는 무엇을 쓰는가?	조사표 상에서 어머니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 (조사원이 기입함)	
71	이용교통수단	도보와 지하철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경우 이용교통수단은?	○「⑥ 전철 · 지하철」로 기입함	"걸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통근학 하는 경우만 해당
			체크! "걸어서"는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표시 될수 없음		
72	이용교통수단	두 가지 수단	출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일정하지 않고 1주일간을 기준으로 4~5일은 승용차를 이용하고, 1~2일은 좌석버스를 이용할 경우의 이용교통수단은?	○ 주 교통수단이 승용차이므로 「② 승용차, 소형 승합차」로 기입함	최근 1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을 기입
			체크! cf) 1일 이동 시에,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기입		
73	이용교통수단	두 가지 이용	통근할때, 갈때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올때는 걸어오는 경우에는 어떤것으로 기입하나?	③시내좌석마을버스로 기입	출근과 퇴근시 이용교통수단이 다른경우, 출근 기준으로 기입
74	이용교통수단	섬	섬에 살고 있는 학생이 매일 육지에 있는 학교로 통학할 때 이용교통수단은?	○ 배를 이용하므로 반드시 「⑩ 기타(오토바이, 트럭 등)」에는 기입되어야 함 승용차를 타고 가서 배를 이용하는 경우 두가지 모두 기입	해당 항목이 없으므로 기타에 표시
			체크! 배를 이용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별도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음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75	이용교통수단	좌석버스	서울과 경기도를 운행하는 좌석버스를 이용할 때 이용교통수단은?	○「③ 시내 · 좌석 · 마을 버스」로 기입함	시내, 좌석버스 등록기준
76	이용교통수단	카풀	이용교통수단에서 카풀을 하면 어떻게 기입하나?	②승용차, 소형 승합차	
77	이용교통수단	학교와 학원	학교에는 걸어서 등교하고, 학교수업을 마친 후에는 학원을 시내버스로 다닐 경우의 이용 교통수단은?	○ 등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재함 →「① 걸어서」로 기입	등교 기준
78	이용교통수단	학원과 직장	집에서 학원을 들러서 공부한 후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의 이용 교통수단은?	집~학원/학원~직장까지의 교통수단을 모두 포함하여, 주된 교통수단 기입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수단 2개만 기입 학원을 거쳐 직장까지 가는 이용교통수단을 모두 고려함
			체크! 학원까지 학원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⑩기타' 로 기입		
79	이용교통수단	회사차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승용차로 통근할때 이용교통수단을 무엇으로 기입하는가?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②승용차, 소형승합차' 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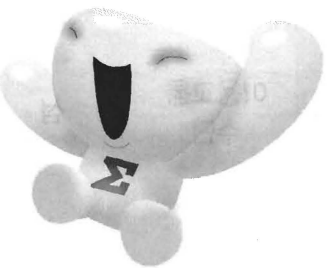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80	종교	감리교	종교항목에서 감리교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②기독교(개신교)	
81	종교	여호와의 증인	종교 부분에 여호와의 증인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②기독교(개신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성공회, 통일교, 영생교, 천부교, 영주교 → 기독교(개신교)에 해당됨
82	종사상 지위	조사관리자	조사관리자의 경우, 산업 직업을 어떻게 써야 하나?	임금근로자에 해당되며, 산업직장사업체 이름 : 동사무소나 군청 등 현재 계신곳 주요 사업내용 : 인구주택조사 부서 및 직책 : 조사관리자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조사원 관리	
83	종사상 지위	농사	시골에서 부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종사상 지위를 어떻게 기입하나?	둘다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공동자영자로 간주
84	종사상 지위	동업자	두명이 공동 출자로 동업하여 오퍼상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상의 지위	○직원 없이 둘이서만 운영하는 경우 두사람 모두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별도의 직원을 둔 경우 두사람 모두 ③고용원을 둔 사업주	동업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
85	종사상 지위	외판원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외판원의 경우, 종사상 지위 (기본급이 있는 경우)	「① 임금 근로자」	회사로 부터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는다면 임금 근로자봄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86	종사상 지위	외판원	기본 수당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외판원의 경우, 종사상 지위	→ 고용원 있으면「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 고용원이 없으면「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기본수당없이 순수하게 실적급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는 자영자(사업자)로 간주
87	종사상 지위	일용직	일거리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①임금 근로자	일당으로 수당을 받으므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것임
			체크! 산업과 직업 항목은 최근의 일을 기준으로 작성		
88	총 출생아수	군입대	군에 입대한 아들의 경우, 조사에서는 제외되는데, 총 출생아수에 포함하여 기입해야 하나?	'낳은 자녀' 에 포함하여 기입하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녀' 에 표기해야 함	총출생아수 부분은 조사대상 가구원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출산, 동거, 비동거, 사망한 자녀 수를 기입
89	총 출생아수	대상	총 출생아수는 부부가 모두 쓰는가?	부인만 기입	여성만 기입하되, 여성이 낳은 자녀수를 기준으로 기입
90	총 출생아수	미혼모	미혼인 사람이 자녀를 낳은 경우, 총출생아수 기입은?	미혼모인 경우는 미혼으로 조사하고, 총출생아수도 기입함	예외적으로 "미혼"이나, 총출생아수도 조사
			체크! 단, 추가계획자녀는 조사하지 않음		
91	총 출생아수	부인 부재가구	부인은 외지에 살고, 이 집에는 남편과 두딸이 살고 있는데, 총출생아수를 기입하나?	총출생아수 항목은, 여성대상 항목이므로 기입하지 않음	기혼여성만 기입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92	총 출생아수	사망자녀	출산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살다가, 사망했을 때 총출생아수는?	○ 낳은 자녀수에 이 아이를 포함시키며, 이 중, 사망한 자녀로 기입	출산할 당시 아이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포함
			체크! 질문 시 응답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할 것		
93	총 출생아수	외지자녀	세 아들 중, 현재 2명은 외지에 나가 있고 다른 1명은 같이 살고 있을 때 총 출생아 수는?	○ "총출생아 수"의 낳은 자녀: 남 3명 함께 살고있는 자녀: 남 1명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자녀: 남 2명	본인이 출산한 자녀 모두 기입하므로 따로 살고 있는 자녀도 포함
			체크! 사산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94	총 출생아수	이산가족	남북분단으로 북에다 아들 2명을 두고, 남한에 사는 경우, 총출생아수는? (다른 자녀는 없음)	○ "낳은 자녀수"는 남 2명 기입 북에 있는 아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자녀'에 기입	본인이 직접 출산한 자녀이므로 모두 포함
95	총 출생아수	이혼	이혼하여 아들은 남편이 키우고 딸은 엄마가 키우는 경우, 총출생아 수에 아들은 어떻게 기입하는가?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있는 자녀로 기입	직접 출산한 자녀이므로, 포함하여 기입함
96	총 출생아수	입양자녀	딸 1명을 입양하여 살고 있을 때, 총출생아수에 포함하는가?	○ 총출생아수에 포함하지 않음	본인이 출산한 자녀가 아니므로 제외함
			체크! 출산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므로 직접 출산한 자녀만 포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97	총 출생아수	자녀 수 합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녀수, 사망한 자녀수의 합이 "부인이 낳은 자녀수"의 합과 같아야 하나?	동일해야 함	
98	총 출생아수	재혼	재혼하여 남편과 부인 각각의 자녀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기입하는가?	부인만 기입하되, 본인이 직접 낳은 자녀수를 기준으로 기입	남편 쪽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이 여성이 재혼 전에 출산한 자녀와 재혼 후에 출산한 자녀를 모두 합하여 기입
			체크! 여성의 출산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		
99	총 출생아수	재혼	재혼하여, 엄마가 데려온 자녀와 재혼 후 새로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 총 출생아 수에는 모두 기입하는가? (성이 틀려도 상관없는가?)	재혼하여 출산한, 성이 다른 자녀도 포함하여, "총 출생아수"에 모두 기입함	총출생아수에는 본인이 직접 출산한 자녀는 모두 포함함.
100	총 출생아수	재혼	재혼을 한 경우,남편 쪽의 아들만 3명 있는 경우, 총출생아수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본인이 직접 출산한 자녀는 없으므로, 모두 "0"으로 기입	재혼한 경우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되, 전 남편과의 출산 자녀수 + 현재 남편과의 자녀수를 기입.
101	통근 · 통학	행정동	통근 · 통학 장소가 개포1동에서 개포3동으로 바뀐 경우에도 다른 동으로 보는가?	행정동 기준이므로 다른 동임	
102	통근 · 통학 소요시간	사장의 운전기사	회사 사장의 개인자가용 운전사일 때 「통근 · 통학 소요시간」은?	본인 집에서 출발하여 회사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기재	조사목적을 고려 : 교통량 및 흐름, 생활권역 연구 등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03	통근 · 통학 소요시간	어선 배	어선을 주로 이용하는 어부의 경우 통근 · 통학 소요시간은?	승선하기 위해 배가 정박한 곳까지 가는 소요시간을 기입	승선하는 곳을 통근지로 간주
			체크! 어업종사자의 경우 주로 해당됨		
104	통근 · 통학 소요시간	학원과 직장	집에서 학원을 들러서 공부한 후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통근 · 통학 소요시간」은?	집에서 출발하여 학원까지 소요시간과 학원에서 직장까지 소요시간을 합하여 기입	통근 통학 시에 거리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
			체크! 학원에서 수업한 시간은 제외할 것		
105	통근 · 통학 여부	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통근통학여부	○ 차고지가 집이면 통근 「③안함」 ○ 차고지가 다른 곳인 경우는 「①통근함」	출근지가 자기집 내인 경우, 통근으로 보지 않음
106	통근 · 통학 여부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는 「통근 · 통학 여부」를 조사하는가?	「① 통근함」으로 조사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로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침
107	통근 · 통학 여부	상점관리	의류점을 운영하는데, 평소에는 다른사람이 운영하며 가끔씩만 가서 관리하는 경우, 통근여부는?	사업장을 두고 관리만 하는 경우는 「③ 안함」으로 조사	교통흐름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체크! 경제활동상태는 "있음"으로 판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08	통근·통학 여부	주 2~3회 통학	1주일에 2~3일 정도 시군구청 또는 노인대학 등에서 PC교육 등을 받는 경우의 통근·통학 여부	○ 일주일에 주로(3일 이상) 교육받는 경우 →「② 통학함」으로 조사 ○ 일주일에 2일 이하 교육받는 경우 →「③ 안함」으로 조사	강의시간과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3일 이상 교육받을 경우 통학하는 것으로 간주
			체크! 평상시 통근, 통학으로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인구 파악하기 위한 항목		
109	통근·통학 여부	주택 내 가게	1층 횟집 경영하며, 2층에 거주하는 경우 통근으로 봐야 하나?	「③ 안함」으로 조사	직장이 자기집 내에 있는 경우, 통근으로 보지 않음
110	통근·통학 여부	차로 이동하며 장사	가게가 따로 없고 차로 이동하면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경우, 통근통학여부?	○ 차고지가 집이면 통근 「③안함」 ○ 차고지가 다른 곳인 경우는 「①통근함」	
111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야간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낮에는 편의점 판매원으로 일 하는 경우, 둘 중어떤 것을 기입해야 하는가?	편의점으로 통근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	낮에 일하는 곳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112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낮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사범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통근·통학여부는 어떻게 작성하나?	통근통학 관련항목은 대학교로 통학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	교통흐름 및 주야간 인구파악을 위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간활동을 기준으로 작성
			체크! 경제활동 관련항목은 저녁에 "사범"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입		
113	통근·통학 여부	학교내 기숙사	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통학하는 것으로 볼수 있나?	「③ 안함」으로 조사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14	통근 · 통학 장소	노점상	여러장을 돌면서 노점상을 할 경우 사업장소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005.11.1 기준으로 최근에 사업한 장소를 기입함	일하는 장소가 매일 바뀌는 경우, 조사기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통근장소 조사
115	통근 · 통학 장소	여러곳으로 출근	특정한 곳에 소속 되지 않은 밤무대 가수나, 여러 곳에서 수업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통근장소?	밤무대 가수는 매일저녁 처음 출연하는 장소, 시간강사는 매일(또는 평균적으로) 처음 출근하는 장소를 기입	처음 일하러 가는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
116	통근 · 통학 장소	여러곳으로 출근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그날그날 일거리를 얻어 일을 다니는 경우, 통근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는가?	최근 1주일간 주로 일하러 다닌 지역 (최근 한 주동안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다닌 곳)을 통근장소로 기재함	조사기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통근장소
			체크! 매번 통근장소가 달라지므로, 최근 1주일을 기준으로 함		
117	통근 · 통학 장소	연예인	배우, 음악가, 연예인 등의 경우 「통근 · 통학 장소」는 어디로 조사하는가?	○ 전속된 경우 → 전속된 직장(프로덕션)의 주소를 기재 ○ 전속이 아닌 경우 → 최근에 가장 많이 출연한 곳을 통근장소로 기재	전속여부에 따라 장소가 달라짐
118	통근 · 통학 장소	출장근무	평소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출장으로 지난 일주일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였을 때, 통근장소는 어디인가?	출장 전의 평상시 근무하고 있던 장소를 통근장소로 기입	
119	통근 · 통학 장소	출장화가	출 · 퇴근 하지 않고, 요청을 받고 전국을 다니며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 통근통학장소는?	가장최근에 가서 그림그린 곳을 기입.	장소가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을 기준으로 작성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20	통근·통학 장소	파견근무	본사, 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원이나 통신원 등으로 일하는 사람의 통근장소는 어디로 조사하는 지?	소속되어 있는 곳 외에, 현재 일하고 있는 특정 장소를 통근 장소를 기입	실질적인 통근 장소가 교통량 흐름에 영향을 미침
121	혼인년월	두명의 부인	한 가구에 부인이 두명인 경우, 혼인년월은 어떻게 기입하는가?	부인은 두 분다 "배우자 있음"으로 표기하되, 남자는 처음 결혼한 날짜, 동거인(부인)은 각각 동거를 시작한 날을 기입함	초혼이 기준이 됨
122	혼인상태	남북이산 가족	남북분단으로 이북에 배우자를 두고 남한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을 때의 혼인상태는?	북에서 살아 계신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③ 사별」로 기입	남북이산이라는 특이한 경우로 사실상의 '사별' 상태로 봄
			체크! 남한에서 재혼하여 배우자가 있을 경우 「②배우자 있음」으로 기입		
122	혼인상태	별거	별거 중에 있는 경우의 혼인상태는?	○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② 배우자 있음」으로 기입 ○ 재결합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 → 「④ 이혼」으로 기입	실제 상태로 판단
123	혼인상태	사별후 이혼	처음에는 사별하고, 다시 재혼했다가 현재 이혼한 경우, 혼인상태는?	「④이혼」으로 기입	현재, 또는 최근상태 기준
124	혼인상태	타지거주	부인이 아이들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 있음"에 표시해야 하나?	배우자는 "있음"에 해당되며, 이 가구에서 조사는 남편만 함	배우자 유무는 이 가구에서의 조사여부와 관계없이, 실재 혼인상태로 기입

가구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	가구구분	1인가구	이 가구에는 남자 혼자 살고 있고, 가족들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인가구"에 해당하는가?	이 가구에는 혼자 거주하므로 1인 가구임	다른 곳에 거주하면 가족이라도 각각의 가구로 간주
2	가구구분	6인이상	6인 가족이라서, 조사표 2부에는 1인만 적으면 되는데 가구에 관한 사항 중에 가구구분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조사표 1부에만 작성하며, ①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표기함	조사표 2부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1부에만 가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2부에는 작성하지 않음
3	가구구분	6인이상 가구	가족이 7명인 경우, 가구구분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혈연관계의 가족은 인원수에 제한없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해당
			체크! 조사표는 2부 작성		
4	가구구분	고시원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가구구분에서 어디에 해당하나?	○ 일반조사구의 경우, 한 방의 인원에 따라 "④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한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한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에 해당 ○ 기숙시설조사구의 경우, ⑥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 가구	설정된 조사구종류에 따라 구분
			체크! 유형별 사례 참고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5	가구구분	매형	가구주가 매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및 가구구분은?	가구주와의 관계 – 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가구구분 –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6	가구구분	사찰	절, 사찰, 기도원 등에 살고 있을 때 가구 구분은?	□ 시설조사구로 설정된 경우, 기타복지시설에 살고있는 집단가구로 조사 □ 일반조사구의 경우, 한 방의 인원에 따라 "④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에 해당	기존에 설정된 조사구특성 고려
			체크! 단, 수행 차 일시적으로 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가구에서 조사해야함		
7	가구구분	아파트 기숙사	아파트 한 동을 학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구구분은? (한 집에 4~5명씩 거주)	○ 아파트조사구인 경우' ④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이하의 가구' 에 해당 ○ 기숙시설조사구인 경우 '⑥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	
8	가구구분	친척동거	조카와 함께 사는 가구의 가구구분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족임
			체크! 단, 친척이지만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생계를 달리하면 별개의 가구로 조사해야 함을 유의		
9	가구구분	하숙, 자취생	주인이 하숙생 3명과 살고 있는 가구의 구분은?	② 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하숙생이 5명이하이면 주인 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가 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0	가구구분	하숙, 자취생	주인이 방 5개인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방 2개는 주인이 쓰고 2개방은 각각 자취생이, 1개방은 2명의 하숙생을 두었을 때 가구 구분은?	○ 주인가구와 하숙생 2명 「②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 자취생은 각각 「③ 1인 가구」 (총 3가구)	2명의 하숙생은 주인가구에 포함시켜 한 가구로 간주 자취생은 생계를 달리하므로 각각의 가구로 봄
11	가구구분	하숙, 자취생	주인이 하숙생 10명을 두고 함께 생활할 때 가구 구분은?	○ 주인 가구: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하숙생 10명: ⑤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하숙생 6인이상 19인이하인 경우에는 주인가구와 별개의 가구
12	가구원 작성순서	자녀가 가구주	미혼인 자녀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원 작성 순서는 어떻게 되나?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 부모, 동생 순으로 작성	가구주, 배우자, 자녀,부모, 형제순으로 작성
13	가구원 작성순서	매형	가구주가 매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및 가구구분은?	가구주와의 관계 – 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가구구분 –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14	거주기간	하숙, 자취생	주인과 6명이상의 하숙생이 살고 있을 때 거주기간은?	○ 주인 가구는 주인이 거주한 기간을 기입 ○ 하숙생 가구는 하숙생 중에 가장 오래 거주한 하숙생의 거주기간을 기입	우선 가구를 구분하고 가구별로 오래 거주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5	거주기간	하숙, 자취생	주인과 6명미만의 하숙생이 살고 있을 때 거주기간은?	한 가구이므로, 주인과 하숙생 중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기입	가구별로 오래 거주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기입
16	거주기간	하숙, 자취생	주인과 자취생 1명 하숙생 3명이 살고 있을 때 거주 기간은?	○ 주인가구에 하숙생 3명을 포함하여 가장 오래 거주한 가구원의 기간을 기입 ○ 자취생은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기입	가구별로 오래 거주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기입
17	거주층	2층부터 거주하는 건물	1층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101호가 되는 경우, 2층에 사는 사람의 거주층은 몇층으로 하는가?	2층으로 기입	호수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층이 2층임
18	거주층	여러층 이용	1층과 2층을 동시에 다 사용하는 경우, "거주층"은 어느 층을 쓰는가? (1층의 사용하는 방이 더 많음)	주 거주층인, 1층으로 기입	주로 생활하는 층으로 기입
			체크! 단, 거주비율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층으로 조사		
19	거주층	복층구조	외관상 3층 건물인데 내부에는 실내계단으로 해서 4층이다. 3층을 높게 지어서 실내 계단으로 통해 올라가게 되어있으며, 주인가구가 살고 있는경우 거주층은 4층으로 보아야 하는가?	외관은 3층이나 실질적인 층 4층으로 기입	
			체크! 주택에 관한사항 건물층수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0	거주층	옥탑방	옥탑방에 살고있는 경우, 거주층 기입은?	③옥상(옥탑)	
			체크! 전체 건물층수에는 포함안됨		
21	기숙시설	기입여부	고시원에서 30명의 학생이 숙식하며 생활하는 경우, 가구 및 주택에 관한사항 조사여부는?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각각 첫번째 항목만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기숙시설에 해당하므로, 다른 항목에 기입 대상이 되지 않음
22	기입여부	6인이상	가구원이 6명인 경우, 조사표가 2부인데 2부중 2부에 가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하나?	작성하지 않음	조사표 2부 이상 작성 시,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2부중 1부에만 기입
23	난방시설	나무사용	기름보일러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게 나무인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⑩기타에 표시하되, ( )안에 나무라고 기입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입
24	난방시설	두가지 형태	연탄과 기름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보일러일 때 난방 시설은?	○ 두가지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기입	
25	난방시설	두가지 형태	주인 집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자취생 가구는 연탄아궁이를 사용하고 있을 때 난방시설은?	○ 주인 가구는 「⑥ 전기보일러」로 기입 ○ 자취생 가구는 「⑧ 연탄아궁이」로 기입	주인가구와 자취생가구는 별개의 가구이므로, 가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입
26	난방시설	전기판넬	난방시설에서 전기보일러가 아니고 전기판넬인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가?	"⑩기타"에 표시하시고 ( )안에 전기판넬이라고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7	사용방 수	기숙시설	기숙시설에서 "사용방수"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기숙시설은 사용방수 조사하지 않음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각각 첫번째 항목만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28	사용방수	거실	2, 3층을 같이 사용하는 주인가구인데 2층에 거실 있고, 3층에 부엌 겸 거실이 있다. 사용방수에서 거실 개수는?	거실 2개	
29	사용방수	거실	아파트와 같이 거실과 부엌의 구분이 없는경우, 사용방수에서 무엇에 해당하는가?	거실에 해당	
30	사용방수	거실	거실에 식당이 있는데 문이 없는 경우 거실에 해당하나, 식당에 해당하나?	거실에 해당	문이 없는 경우는 거실에 해당하며, 식당은 없는 것으로 봄
			체크! 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편익시설에서만 부엌에 해당		
31	사용방수	거실	방2개에 부엌이 있는데,거실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은 곳에 싱크대만 있는 경우, 거실로 보아야 하나?	거실에 해당되지 않음	1평 미만인 경우는 방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됨
			체크! 방의 요건을 반족하는지 여부		
32	사용방수	다락	다락도 사용방수에 포함되는가?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사용방수"에 포함	"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만 포함함
33	사용방수	다용도 방	방이 3칸인데 침실로 사용하는 것이 2개이고 나머지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기입하나?	침실 2개, 침실이외의 방에 1개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34	사용방수	문 제거한 방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방의 문을 떼고, 거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방으로 보아야 하는가, 거실로 보는가?	거실로 간주함	문을 이용하지 않고, 거실로 사용하므로 거실로 봄
			체크! 떼어낸 문을 사용하는 여부를 확인		
35	사용방수	방종류	방하나에 취사도구를 놓고 사용하며 취침도 하는 경우 사용방수 기입은 어떻게 하는가?	침실에 '1개' 로 표시함	잠을 자며, 여러 용도로 쓰이는 방은 침실로 간주
36	사용방수	복층	오피스텔인데 집안에 들어가면 복층으로 되어 있어,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이들 놀이터처럼 꾸며 놓았다. 방의 개념으로 볼수 있는가?	방으로 볼 수 없음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 되어 있어야 함
			체크! 방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37	사용방수	서재	서재로 쓰는 방은, 사용방수의 어디에 기입하나?	서재(침실이외의 방) 1개 기입	
38	사용방수	세든 가구	방 3개, 부엌, 화장실, 거실이 있는 아파트의 주인과 방 1개에 세들어 사는 사람의 사용방수는?	○ 주인 가구는 방수 2개, 거실수 1개, 식당수 0개로 기입 ○ 세든 사람은 방수 1개로 기입하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함	세든 사람은 주인가구와 별도의 1가구이며, 1개의 방만 사용함
39	사용방수	식당	시골에 재래식 부엌은 식당에 포함하는가?	재래식 부엌은 식당에 포함하지 않음	
			체크! 편익시설수의 부엌에만 포함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40	사용방수	식당수	같은 아파트 내에서, 어느집은 개조하여 부엌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차단된 식당이 있다고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	처음에 틔어 있었지만 별도로 문을 만들어 식당, 부엌이 거실과 차단되었을 경우, 거실 1개, 별도로 차단된 식당 1개로 간주함	
			체크! 단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		
41	사용방수	애기방	사용방 수에서 애기방인데, 엄마랑 잘때도 있는데 침실에 해당하는가?	유아가 대부분 침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침실에 포함됨	
42	사용방수	여관	여관의 영업용방(객실)은사용방수에 포함되는가?	여관의 영업용 방은 사용방수에 포함되지 않음	거주용 부분만 포함
43	사용방수	옷방	옷이나 박스같은 걸 넣어두는 방의 경우, 사용방수 기입은?	옷을 갈아입는 등 항상 사용하면 "침실이외의 방"에 기입하고, 단순히 창고형으로사용하면 사용방수에서 제외하고 총방수에만 포함함	
44	사용방수	침실	방이 3개인데 1개는 부모님이, 2개는 각각 자녀가 쓰는 경우, 그 자녀의 방을 침실로 보나, 침실이외의 방으로 보나? (각 방에서 침실겸 서재겸 생활)	잠도 자고 주로 생활하는 곳은 침실이므로 침실 3개로 봄	잠을 자며, 여러 용도로 쓰이는 방은 침실로 간주
45	사용방수	컨테이너	원룸형식의 컨테이너의 경우, 사용방수는?	원룸형식으므로, 침실 1개로 간주함	
			체크! 거처종류는 "기타"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46	사용방수	하숙, 자취생	주인과 하숙생 6명이 살고 있을 때 사용방수는?	○ 주인 가구는 주인이 사는 부분만 기입(방,거실,식당수) ○ 하숙생 6명은 하숙생들만 사용하는 방수만 기입	6인이하의 하숙생은 주인 가구와 별도의 가구이므로 각각 작성
47	사용방수	하숙, 자취생	주인과 하숙생 4명이 살고 있을 때 사용방수는?	주인 가구가, 하숙생이 사용하는 곳을 포함하여 '사용방수', '거실수', '식당수'를 기입	5인이하의 하숙생은 주인 가구에 포함되므로, 주인가구만 작성
48	사용방수	하숙, 자취생	주인과 자취생 1명, 하숙생 3명이 살고 있을 때 사용방수는?	○ 하숙생이 사용하는 부분을 주인 가구에 포함시켜 '방수', '거실수', '식당수'를 기입 ○ 자취생은 본인이 사용하는 '방수' 만을 기입	가구에 관한 사항은 가구별로 작성하므로, 하숙생 및 주인가구가 사용하는 방과 자취생이 사용하는 방을 따로 기입함
49	사용방수	식당	식당을 경영 하면서 부부가 거주 하고 있는데 사용방수, 식당, 거실 수 기입은 어떻게 하나? (문달린 작은방 하나, 식당 홀,가게의 부엌으로 구성)	방(침실)은 "1", 거실 "0", 식당 "0"으로 표시	영업겸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됨
			체크! 편익시설수에 부엌수는 하나		
50	사용방수	식당	식당 입구에 문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실제 물리적인 문은 없고, 아치형으로 된 문의 형태만 있다거나 커텐만 내려져 있을 때 식당수에 포함되는가?	식당수에 포함되지 않음	실제로 문으로 막혀있는 경우만 식당수에 포함됨
51	사용방수	식당수 부엌수	거실과 부엌이 틔어져 있는 경우 식당과 부엌수는?	"사용방수"에서는 거실수 1개, 식당수 0개, "편익시설수"에서는 부엌 1개로 기입	별도로 차단되지 않았으므로, 식당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부엌에는 포함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52	사용방수 총방수	거실수	한옥의 경우 마루에 문을 달았을 경우는 거실수에 포함되는가?	거실(대청마루)에 포함됨	대청마루는 문등으로 차단 된 경우에만 거실수에 포함
			체크! 한옥에서 마루에 문이 없을때는 총방수(사용방수)에 포함되지 않음		
53	사용방수 총방수	미사용방	안채와 바깥채가 있는데 바깥채가 현재 비어있는 경우, 사용방수와 총방수는? (안채 방3개 모두 사용, 바깥채 방2개)	사용방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채의 방 3개만 쓰며, 비어 있는 바깥채의 방 2개는 총방수에만 포함하여 기입함	
54	사용방수 총방수	방수	사용방수 및 총방수의 "방수"란에 거실 및 식당수를 포함해서 기입하나?	"방수" 란에는 거실수나 식당수를 포함해서 기입하지 말고 순수한 방(침실, 서재 등) 수만 기입하며, 거실은 "거실수"에, 식당은 "식당수"란에 각각 별도로 기입	"방수"는 총계의 개념이 아님
			체크! 총방수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 거실, 식당 등도 해당하는 곳에 각각 포함시킴		
55	사용방수 편익시설수	식당수 부엌수	방 하나를 개량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식당1개, 부엌1개로 볼수 있는가? (기존에 사용하던 문이 있음)	사용방 수(총방수) - 식당1개, 편익시설수 - 부엌 1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조사
56	임차료	월세	월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의 기입요령은?	○ 월세금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1만원으로 기입	
			체크! 금액이 월세인지, 전기 및 상수도, 관리비인지 재확인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57	임차료 주인가구	다른사람 명의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 점유형태 및 주인가구는?	자기집에 해당하며, 주인가구로 기입	법률적인 아닌 실질적인 소유를 기준으로 함
58	자동차 보유대수	개인택시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가구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택시 1대이외의 차량은 없는 경우)	○ 승용차 1대로 기입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한정
59	자동차 보유대수	영업용 차	자동차 보유대수에서 영업용 자동차는 포함되는가?	포함함	목적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 보유 대수에 포함하여 기입
60	자동차 보유대수	자동차대상	건설용 중장비, 경운기 등이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포함하지 않음	건설용 중장비, 농업기계,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61	자동차 보유대수	학원차량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12인승봉고 1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때, 자동차 보유대수는?	○ ②승합차(11인승 이상) 1대로 기입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한정
62	자동차 보유대수	회사차량	회사용 자동차를 매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할 때 자동차 보유대수는?	○ 해당 차종에 1대로 기입 (자동차 보유대수에 포함)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 경우 포함
63	작성여부	세든가구	2층은 주인집이고 1층에는 세든 사람들이 식당 영업을 하며, 숙식하고 있는 경우,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작성 여부는?	세든가구는 별도의 가구이므로 가구에 관한 사항은 작성하고, 주택에 관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음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인(대표) 가구만 작성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64	작성여부	특수사회시설	특수사회시설인 경우, 가구에 관한사항작성은 ?	가구에 관한 사항의 첫번째 항목만 작성	
65	점유형태	교회사택	교회가 있고 좀 떨어져 그 옆에 사택이 있는 경우, 점유 형태는?	주거전용이고 교회가 목사님 명의면 "자기집 / 주인가구"이고 재단명의로 되어 있으면 "무상 / 대표가구"임	교회건물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임
66	점유형태	보건소 관사	한 울타리 안에 보건소 건물 옆에 보건소관사가 따로 있다. 관사의 점유형태는?	주거전용이고 무상(관사)임	보건소건물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임
67	점유형태	사원 아파트	사원아파트의 경우 점유형태는?	사원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면 ①주거전용, ⑥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에 해당	
68	점유형태	사찰	사찰의 경우, 스님이 무상으로 생활할 때, 점유형태는?	②영업겸용, ⑥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에 표시	
69	점유형태	오피스텔	1~4층까지는 상가이고 5~12층까지는 사무실 및 주택인 오피스텔인 경우, 점유형태는?	상가와 사무실전용으로 사용되는 곳은 제외하며, 오피스텔 중 사무실과 주거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영업겸용, 주거로만 쓰이는 곳은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호실별로 거처 및 가구가 구분되기 때문에 각 호실별로 점유형태 판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70	점유형태	임대아파트	보증금 2,500만원에 월임대료 50,000원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조사표의 점유형태 및 임차료?	"③보증금 있는 월세"이며 보증금란과 월세란을 모두 기입함	
			체크! 임대아파트이므로, "대표가구"가 됨		
71	점유형태	타인땅의 자기집	집은 자기집인데,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는 점유형태는?	자기집으로 기입	주택을 기준으로 한 소유여부
72	점유형태 주인가구	마을회관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점유형태 및 주인가구 기입은?	점유형태는 영업겸용이고 대표가구(무상)임	
73	점유형태	아파트 놀이방	아파트에 놀이방을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운영하고 있을 때 점유형태?	② 영업겸용	
			체크! 놀이방으로 사용되는 방은 사용방수에서 제외하고, 총방수에는 포함. 연건평은 모두 포함		
74	점유형태	주상복합 건물	단독주택에서 주인가구와 동거가구(세든 가구)가 살고 있는데, 세든 가구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을 때 점유형태는?	○ 주인가구는 「① 주거전용」 ○ 세든 가구는 「② 영업겸용」	
75	주거시설 형태	두가지 형태 화장실	화장실이 수세식과 재래식 둘 다 있는 경우, 주거시설형태와 편익시설수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주거시설 형태에서는, 둘 중 가구에서 주된 사용 화장실을 기입하고, 편익시설수에는 화장실 2개로 기입	
76	주거시설 형태	목욕시설	목욕시설에서 아궁이에서 뜨거운물을 끓여서 쓰면 온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쓰는 뜨거운 물은 온수시설이 아님	수도에서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올때 온수시설에 해당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77	주거시설 형태	목욕시설	작은 공간에 샤워기가 하나 있고 그 곳에서 빨래를 하기도 하는 경우, 목욕시설이 있다고 봐야 하는가?	샤워기가 있으므로 목욕시설로 봄	
78	주거시설 형태	미차단 부엌	거실과 부엌에 별도로 차단된 벽이 없으면 거실 하나로 보는데, 이 경우 주거시설형태에서는 부엌이 있다고 해야되나?	주거시설형태에서는 부엌은 있다고 해야함	방의 개념과 별도로, 취사시설을 갖추면 부엌은 있는 것으로 봄
79	주거시설 형태	세든 가구	세든가구가 주인과 부엌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부엌을 각각 1개씩 조사 하는지?	두 가구 모두 "②공동사용"에 표시	
80	주거시설 형태	수도	주거시설 형태에서 지하수는 수도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④없음" 에 해당	
81	주거시설 형태	수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을 단위로 쓰는 경우 수도는?	"②마을상수도(간이수도)"에 해당	간이수도는 일정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82	주거시설 형태	우물물	우물물을 수도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집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수도시설은 "④없음"에 해당	
83	주거시설 형태	하숙, 자취생	단독주택의 1층 – 주인가구 : 화장실(샤워시설있음), 부엌, 거실, 방 2층 – 하숙생 6인 : 방,옥외화장실 이때, 주거시설형태는? (단독/공동사용)	○ 주인 가구의 기입은 · 부엌 →「① 단독사용」 · 화장실→「① 단독사용」 · 목욕시설→「①단독사용」 ○ 하숙생 6명 가구의 기입은 · 부엌 →「③ 없음」 · 화장실→「① 단독사용」 · 목욕시설 →「③ 없음」	하숙생 5인 이상이므로 별도의 가구로 분리하며, 옥외의 화장실은 하숙생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단독사용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84	주거시설 형태	화장실	한 가족이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단독사용이라고 하는가?	한 가족이 같이 사용하면 단독사용	두 가구이상 사용할 경우 공동사용으로 함
85	주거시설 형태	주상복합 건물	상가의 방에서 숙식하는 사람이 부엌과 화장실을 가게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주거시설형태에는 포함되는가?	주거시설형태에서 부엌과 화장실은 "③없음"으로 표시함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86	주인가구	건물소유주	그린벨트 지역으로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 자기 집인 경우, 주인가구 여부는?	"주인가구"에 해당	땅주인과 관계없이, 주택의 소유를 가리킴
87	주인가구	관사	점유형태에서 무상(관사)으로 살고 있는 집은 대표가구인가, 주인가구인가?	대표가구로 표시	
88	주인가구	교원아파트 사택	교원아파트 사택인 경우, 거주 가구중에서 대표가구를 임의로 정해야 하는가?	교원아파트인 경우, 거처를 각 호별로 부여하며, 각 거처마다 해당 가구가 대표가구가 됨	
89	주인가구	교회사택 관사	건물이 교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주인(대표)가구 기입은? (교회사택, 관사 등)	"대표가구"에 해당됨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가구로 함
90	주인가구	기숙시설	기숙사에서는 대표가구를 정하지 않는가?	정하지 않음	"⑥기숙사에 살고있는 집단가구"로, 가구에 관한 사항의 첫째 항목만 기입하므로, 주인가구 항목은 작성하지 않음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91	주인가구	마을회관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점유형태 및 주인가구 기입은?	점유형태는 영업겸용이고 대표가구(무상)임	
92	주인가구	무상관사	점유형태가 무상관사인 경우 "주인가구"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대표가구"에 해당됨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가구로 함
93	주인가구	사찰	절에서 스님이 법당에 기거하는 경우, 주인(대표)가구 여부는?	대표가구	
94	주인가구	세든 가구	한 거처에 세든 가구만 살고 있고, 주인은 다른 곳에 거주할 때 주인(대표)가구 기입은?	○ 주인가구가 없으므로, 세 들어 살고 있는 5가구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 온 가구나 그 주택에 대해 잘 아는 가구를 「② 대표가구」로 선정 ○ 나머지 가구 → 「③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동거가구」로 조사	주택에 관한 사항은 "대표가구"만 작성하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함
95	주인가구	세든 가구	아파트에 독채로 전세 들어 살고 있는 가구일 때 주인, 주인가구 기입은?	○ 「② 대표 가구」로 기입	독채로 살고 있어도 세든 가구이므로, 대표가구가 됨
96	주인가구	시소속의 집	시소속으로 되어 있는 난민촌이 있는데, "주인가구"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대표가구"에 해당됨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가구로 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97	주인가구	여관	여관 등 숙박업소 투숙객의 주인(대표)가구 기입은 어떻게 하는가?	○ 관리인 가구가 건물 내에 숙식하는 경우 → 관리인 가구가 "주인가구", 객실 투숙객은 기타 세들어 살고 있는 동거 가구"로 조사 ○ 관리인 가구 숙식하지 않는 경우 → 객실투숙객 중 "대표가구"를 선정하고, 나머지 가구를 "기타 세들어 살고있는 동거가구"로 조사	관리인가구를 우선 "주인가구"로, 없을 경우에는 "대표가구" 선정 객실투숙객은 조사대상자 인지를 우선 확인
98	주인가구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의 '주인가구' 기입은?	"대표가구"로 기입	주인가구가 없이, 아파트를 임대한 가구만 거주하므로, 대표가구가 됨
99	주인가구	회사사택	아파트 한 호가 회사 사택인데, 남자 3명이 살고 있다. "주인가구"란에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대표가구"에 해당됨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가구로 함
100	주차시설	구분기준	주차시설 항목란에서 ③노상주차장과 ④도로변, 골목길의 구분기준은?	③노상주차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에서 일정지역에 주차선 표시 된 곳을 의미하고 ④도로변, 골목길은 주차선 표시가 되지 않은 곳에 임의 주차하는 것을 말함	주차선 유무
			체크! 주택가의 도로변이라도 백색의 주차표시가 있는 곳은 노상주차장에 해당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01	주택소유여부	기입여부	가구에 관한 사항에서 주택소유여부는 주인가구, 대표가구, 세든가구가 모두 기입하나?	모두 기입함	
102	주택에 관한 사항	총방수와 사용방수	총방수와 사용방수의 합계는 같아야 하나?	같거나 총방수의 합계가 더 많음	총방수는 여러가구가 있는 주택인 경우, 각 가구의 방을 모두 합한 수임 (사용하지 않는 방도 포함)
103	총방수	여관	여관의 경우, 총방수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주인이 사용하는 방은 1개이고 나머지는 여관 객실일 때)	주인이 사용하는 방만 1개 기입 나머지 객실은 포함하지 않음	영업용을 제외하고, 주거에 사용하는 방만 기입
104	혼인 년월	사실혼	결혼식을 하지않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사실혼), "혼인년월"에 어떻게 기입하나?	동거하기 시작한 날을 기입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혼인"한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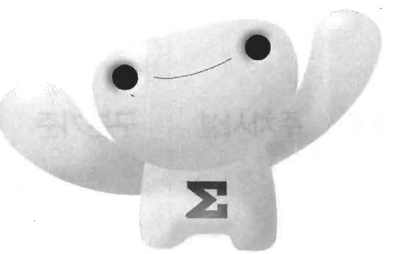

주택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거처종류	가게 거주	영업용건물에 종업원 등이 숙식하며 생활하는 경우의 거처종류?	· 주거전용의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경우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부엌, 출입구등을 영업용을 병행 사용하는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는 일반가구에 해당
			체크! 공장에 관리인(또는 근로자)이 숙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2	거처종류	고층 빌라	빌라인데 11층까지 있으면 아파트로 분류해야 하는가?	아파트로 기입	5층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에 해당됨
			체크! 단, 건축물대장 상의 사용요도를 참고로 하여 기입할 것		
3	거처종류	교회사택	목사님이 교회 내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처의 종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에 해당 □주택의 요건 갖추지 않은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5층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에 해당됨
4	거처종류	기숙사	기숙사의 거처의 종류는?	주택이외의 거처	기숙시설은 주택이외의 거처에 해당
5	거처종류	다가구	한 건물에 주인이 한 명있고 ,가구마다 세를 주었다면 다가구인가? (건물 전체단위로 매매)	한 건물이 전체 하나로 매매되면 다가구주택임	
			체크! 건물의 형태 확인(거주용주택, 면적 및 층수 등)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6	거처종류	다가구	명부작성 할때 거처종류가 다가구 주택는 어디에 체크하는가?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됨	다가구 단독 주택
7	거처종류	다가구 다세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호별로 분리매매 가능 – 다세대 주택 호별로 분리매매 불가능 – 다가구단독	분리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8	거처종류	다세대 연립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구분기준은?		1. 건물 연면적 기준 200평 이하– 다세대 주택 200평 초과– 연립주택 2. 면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무엇으로 허가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	지침서 참고
9	거처종류	사무실겸용	주택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무실과 주거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거처종류?		□ 오피스텔인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 주택인 경우 – 사무실면적 ≤ 주거면적 – (영업겸용) 단독주택 사무실면적 > 주거면적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거이외의 용도는 영업용으로 간주
10	거처종류	여관	여관의 경우 거처종류? (세들어 거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음)		□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에 해당 □ 여관 객실등 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1	거처종류	여관 호텔	여관에 주인가구가 살고 있을때, 거처의 종류?	○ 여관 내 주택요건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여관의 객실에서 생활 – 주택이외 거처	여관의 영업용 객실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12	거처종류	연면적 200평이하	주택이름이 '00연립' '00빌라' 로 되어 있지만, 평수가 연면적이 200평 미만인 경우 다세대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주택정보) 참고
13	거처종류	원룸	원룸의 경우 거처의종류	□ 호별로 분리해서 분양(매매) 가능한 경우 – 다세대 주택 □ 호별로 분리해서 분양(매매) 불가능한 경우 –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매매 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체크! 호별 매매 가능여부확인		
14	거처종류	정신병자 수용시설	정신병자 수용시설인 경우에 거처의 종류?	주택이외의 거처에 해당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은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
15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1층– 당구장, 2층– 한의원, 3층에는 다방에 2명의 종업원이 살고, 4층에는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처에 주인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거처종류는? (건물 전체로 매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기입 (4층 주인가구만 작성)	영업면적이 주거면적보다 큰 경우,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체크! 거처의 종류는 주인(대표)가구만 기입, 각 층별 분리 매매가능성 여부 확인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6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 주택인 경우의 거처종류?	· 주거용(2층) 연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 단독주택(영업겸용 단독주택) · 상가용(1층) 연면적이 큰 경우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연면적을 비교하여 거처의 종류를 결정
17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1층 식당에 1가구가 거주하고, 2층은 여관, 3층에는 주인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거처의 종류? (건물전체로 매매되며, 층별분리 매매 불가능)	○건물전체가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조사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택이외의 거처"로 조사	거처의 종류는 주인(대표)가구만 기입
			체크! * 1,2층의 경우는 거처의 종류 기입하지 않음 * 층별 분리 매매가능여부 확인		
18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상가아파트(주상복합)의 주거용 부분의 거처의 종류는?	거처종류는 "아파트"로 기입	상가아파트이므로, 거주부분은 아파트임
			체크! 단, 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주택이외의 거처"		
19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상가아파트(주상복합)의 영업용 부분의 거처의 종류?	· 사람이 비상주하는 경우 – 조사대상에서 제외 ·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① 주거전용의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경우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② 방, 화장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	· 사람이 살지 않는 영업부분은 조사에서 제외 ·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의 요건에 따라 거처의 종류 판단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0	거처종류	공장건물내 거주	정비공장 2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처종류는 어디에 해당되나? (공장면적>주거면적)	○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해당 ○ 주택의 요건갖추지 않은 경우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 지침서 참고
21	거처종류	객실	여관 객실의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 거처종류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에 표시하고 작성을 마침	
22	거처종류	골프장	실외골프장에 강사 2명이 거주하는 경우, 거처의 종류는? (편익시설 없이 방만 5개 있고 식당은 골프장 식당에서 함)	기타(골프장숙소)라고 함	주택의 요건에 벗어남
			체크! 가구명부의 거처종류란에는 "주택이외의 거처"에 해당		
23	거처종류	공장건물	공장 건물 위에 지어진 주택 요건을 갖춘 조립식 건물에 살고 있을 때 거처의 종류는?	「⑤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으로 기입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공장건물의 일부임
			체크! 주택의 요건 갖추지 않은 경우, "기타"		
24	거처종류	교회	연립주택 지하의 교회 안에 사람이 사는 경우, 거처 종류는? (주택요건 갖춘 부분에 생활하며, 주거부분이 교회면적보다 작다)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5	거처종류	교회사택	1층은 교회 강당이고 2층은 사무실과 주거공간이 있다. 이 경우, 거처의 종류는?	□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영업장안에 속해 있으며,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26	거처종류	교회사택	교회의 사택에 목사부부가 살고 있는 경우, 거처종류? (교회 건물의 일부로 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 거주면적 더 작음)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교회건물의 일부로, 교회면적보다 거주 면적이 작음
27	거처종류	단독 다가구 구분	일반단독주택과 다가구 단독주택의 구분요령은?	○ 다가구 단독주택의 요건 ·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각 가구들이 화장실, 부엌, 방,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함	
28	거처종류	단독주택 구분	한 집에 2가구가 살 경우, 방은 각각 쓰는데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중 어느곳에 표기하나?	일반단독주택	화장실등이 별도로 사용가능하여, 독립적으로 생활 할수 있는 경우에 다가구주택임
29	거처종류	목재소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장소에 주택이 없고 목재소 내에 판자로 지은 사무실 겸용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거처의 종류는?	「⑩ 기타」로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영구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의 요건에 벗어남
30	거처종류	반지하	반지하에 부엌, 방 2개,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현관문이 따로 있으며, 1층에는 주인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인 경우 거처종류는?	다가구 단독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의 요건 ·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각 가구들이 화장실, 부엌, 방,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함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31	거처종류	사찰	사람이 거주하는 사찰은 거처의 종류를 무엇으로 하는가?	○ 대사찰 → 「⑧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암자 등 작은 절 →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⑩ 기타」	대사찰은 대규모인원(20인이상)이 모여 사는 곳
32	거처종류	연립주택	200평미만인데도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거처의 종류는?	연립주택으로 기입	
33	거처종류	영업용건물	3층 영업용 건물에 1층 다방과, 2층 목욕탕, 3층 여관이고 각각 방하나, 부엌 한칸씩 이 있어,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처종류는?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영업용면적 > 거주용면적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34	거처종류	영업용건물	3층 상가건물에서 3층만 주택인 경우, 거처의 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나?	1층, 2층이 상가이면 "비거주용건물내 주택"에 해당	주거면적 < 영업면적 이면 영업겸용 단독주택
35	거처종류	일반단독 다가구 구분	단독주택에서 대문은 1개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어 현관문이 있으며 방과 화장실, 부엌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일반 단독주택인가, 다가구 단독주택인가?	다가구 단독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의 요건 ·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각 가구들이 화장실, 부엌, 방,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함
36	거처종류	일반단독 다가구 구분	2층 단독주택에서, 2층으로는 1층을 통하여 올라가야할 때, 거처종류는?	「① 일반단독주택」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단독주택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37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2층건물인데 1층은 상가 겸 주택, 2층은 주거전용 주택이면 거처의 종류는 무엇인가?	영업겸용 단독주택	주거면적≥영업면적 이면 영업겸용 단독주택
38	거처종류	주상복합건물	2층건물인데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겸 주거이면 거처의 종류는 무엇인가?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거면적<영업면적 이면 영업겸용 단독주택
39	거처종류	창고	기존 집을 헐고 신축하여 완공되었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고 바로 옆의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거처의 종류는?	「⑩ 기타」로 기입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음
			체크! 신축된 집은 아직 입주하지 않았음으로, "빈집" 처리		
40	거처종류	공장건물내 거주	정비공장 3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처종류는 어디에 해당되나? (공장면적>주거면적)	○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해당 ○ 주택의 요건갖추지 않은 경우, "기타"	주택의 요건 지침서 참고
41	거처종류 연건평	주상복합건물	2층 상가건물에, 1층은 상가(3개), 2층의 반은 주인 거주, 반은 사무실임. 각 상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거처의 종류와 연건평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고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만 연건평으로 기입	거주면적보다 영업면적(상가와 사무실)이 더 큼
42	건물층수	2층부터 거주하는 건물	1층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101호가 되는 경우, 건물 층수는 1층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기입하는가?	1층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기입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43	건물층수	복층구조	외관상 3층 건물인데 내부에는 실내 계단으로 해서 4층이다. 3층을 높게 지어서 실내 계단으로 통해 올라가게 되어있으며, 주인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건물층수는 4층으로 보아야 하는가?	외관은 3층이나 실질적인 층 4층으로 기입	
44	건물층수	개념	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건물층수는, 건물전체의 층수인지, 살고 있는 층수인지?	건물의 전체 층수를 기입	
			체크! 가구에 관한 사항에서는 살고 있는 층수		
45	건물층수	반지하층	다세대 주택인데, 반지하로 된 층이 있는 경우, 건물층수는?	반지하로 된 층은 건물 층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방에서 봤을 때, 한면이 지하에 속하면 층수에 포함하지 않음
46	건물층수	조립식 층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살림집이고 3층은 조립식으로 올린 건물에서 건물층수는? (조립식으로 지은곳은 아이들이 살고 있음)	건물층수는 3층으로 기입	
47	건물층수	주상복합	1층 영업이고 2,3층이 주거용일 경우 건물층수는? (건물전체로 매매됨)	3층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처이므로, 건물의 총 층수인 "3층"으로 기입	주택에 관한사항은 거처단위로 작성
48	건물층수	층수가 다른 경우	건물층수가 라인별로 다른 경우, 무엇을 기입하는가?	가장 높은 층으로 기입	
49	건물층수	옥탑방	거처종류 및 건물층수에서 옥탑방은 층수에서 제외되는가?	옥탑방은 층수에서는 제외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50	건물층수 거처종류	혼합 건물	7층 건물인데 2층까지는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고, 3층부터는 아파트인 경우 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오피스텔의 층수를 2층으로 쓰는가? 거처의 종류는?	1, 2층 거주자 : -「⑥ 오피스텔」, 7층 3층이상 거주자 : -「② 아파트」, 7층 으로 각각 기입함	거처의 종류는 해당 거처를 기입하고, 건물층수는 건물의 전체층수을 기입
51	건축년도	개념	건축년도는 이사온 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가, 처음 지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하는가?	건물이 처음 지어진 시기를 기입	
52	기숙시설	기입여부	고시원에서 30명의 학생이 숙식하며 생활하는 경우, 가구 및 주택에 관한사항 조사여부는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각각 첫번째 항목만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기숙시설에 해당하므로, 다른 항목에 기입 대상이 되지 않음
53	기입방법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에 5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고, 주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주택에 관한 사항 기입은?	○ 5가구중, 대표가구 1가구를 정하여 주택사항을 기입 ○ 총 방수 및 편익시설 수 – 5가구 전체에 대한 수를 합하여 기입 · 독립된 출입구 수 – 각 가구가 옥외에 직접 접해있는 출입구 수를 기입	주택에 관한 사항은 거처단위로 작성하므로, 다가구 주택 전체에 대한 사항을 기입
54	기입여부	세든가구	세들어 사는 가구도 주택에 관한 사항은 작성 해야 하나?	○ 주인가구가 있는 경우, 작성 않함 ○ 주인가구 없이 세든 가구만 있는 경우는 [대표가구]이므로, 작성함.	주인가구 및 대표가구만 주택에 관한 사항 작성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55	기입여부	지하실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사람이 살도록 개조한 경우 주택에 관한 사항 조사여부는?	지하실을 관리하는 주인 가구에 포함하여 주택사항을 조사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인(대표) 가구만 작성
56	대지면적	건물주위 땅면적	땅이 넓어서 건물 주위에 공간이 더 있는 경우,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은 건물과 담장안의 모든 땅 평수를 적는것이므로 다 포함해서 적음.	
			체크! 단, 축사, 텃밭등의 영업용부분은 제외		
57	대지면적	건물주인	건물만 본인소유이고,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 대지면적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	대지면적은 주인과 상관없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기입	
58	대지면적	공장건물	울타리 안에 공장건물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대지면적은?	울타리 안에 총대지면적 중에서 공장건물 부지 대지 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을 기입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부만 기입 , 영업용 제외
59	대지면적	기타	장사를 하면서 뒤쪽에 조그맣게 방하나 있는 경우는 대지면적을 어떻게 기입하나?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인 경우, 대지면적은 기입하지 않음	대지면적은 단독주택만 해당이 됨
60	대지면적	세든 가구	단독주택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가구도 대지면적을 기입하나?	대지면적 기입하지 않음	세들어 살고 있는 가구는 가구에 관한 사항에서 작성을 마침
61	대지면적	세든 가구	한 울타리 안에 세든가구와 주인가구가 같이 살 경우에 세든가구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적나요?	세든가구는 주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인(대표) 가구만 작성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62	대지면적	여관	여관에서 대지 면적을 조사하는가?	대지면적은 조사하지 않음	대지면적은 단독주택만 조사
63	대지면적	주상복합 건물	2층집 단독주택으로 1층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할 때 대지면적은?	○ 슈퍼마켓의 면적 > 2층 주거부분면적 대지면적 기입하지 않음 ○슈퍼마켓의 면적≤ 2층 주거부분면적 담장 안의 바닥면적을 기입	대지면적은 단독주택만 기입하므로, 영업용 면적이 더 큰 경우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되어 기입대상이 아님
			체크! 단독주택이라도 거처종류 반드시 확인 하여, 대지면적 기입		
64	대지면적	주상복합 건물	3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부분과 거주부분이 있고 건물주가 1명인 경우 대지면적은? (2, 3층은 거주자 없는상가)	이 경우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해당되어 대지면적은 기입하지 않음	영업면적 > 거주면적인 경우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대지면적은 단독주택만 기입
65	대지면적	주상복합 건물	1층은 상가이고 2층, 3층, 4층은 주거부분인 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은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을 기입	
			체크! 단층일 경우는 주거부분에서 영업부분을 제외한 면적기입		
66	대지면적	차고	대지면적 기입시, 상가주택의 차고는 포함하나?	차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제외하고 아니면 포함	주거용부분만 포함하며, 영업용은 제외
67	대지면적	축사용건물	농촌집의 울타리 안에 소 등 가축용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축사용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면적은?	울타리 안에 축사용 건물의 대지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을 기입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부만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68	대지면적	텃밭	담장 안에 있는 텃밭도 대지면적에 포함시키는가?	텃밭의 면적은 제외함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부만 기입
69	빈방포함여부		주택에 관한 사항을 기입할 때, 빈방에 관한 사항도 적는가?	주택에 관한 사항은 빈방도 포함함	주택 전체에 관한 사항이므로, 영업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
70	연건평	계단포함여부	3층 주택인데 연건평에 계단 포함하는가?	계단이나 지하층, 주차장과 같은 부분은 모두 제외함	연건평은 주거하는 전용부분만 기입
71	연건평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연건평은 주인집과 세든집을 합하여 기입해야 하는가?	다가구의 연건평은 다 합해야 함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부만 기입
72	연건평	다세대 연립	연건평 적을때, 다세대나 연립인 경우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호별로 거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당 가구의 면적만 기입	거처별로 주택에 관한 사항 작성
			체크! 다가구인 경우는 가구마다 면적을 모두 더하여 기입		
73	연건평	세든 가구	단독주택에서 3개 방 중, 주인이 방2개 쓰고 방1개는 세 준 경우, 세입자는 연건평을 어떻게 기입하나?	세입자는 주택에 관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음(연건평 기입안함)	주인가구만 주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함
74	연건평	세든 가구	1층 세든가구, 2층 주인집인 경우 1,2층 다 적어야 하나? (1,2층 각각 20평인 단독주택)	40평으로 기입함	연건평은 주택에서 주거에 이용되는 면적을 모두 합하여 기입
75	연건평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연건평은?	평형 기준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기입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부만 기입
			체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25.7평 → 26평)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76	연건평	여관	여관의 경우, 연건평은?	객실의 경우는 기입하지 않음 객실이 아닌 주택요건을 갖춘 장소에 주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되, 거주하는 면적만 연건평으로 기입	주거용 면적만 기입 영업용 객실부분은 제외
77	연건평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연건평 작성하는가?	작성함	주택만 작성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작성함
78	연건평	옥탑방	연건평에서는 옥탑방이 포함되는가?	옥탑방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건평에 포함시킴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은 모두 포함
79	연건평	주상복합 건물	1층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2층건물의 연건평은?	연건평은 1층 상점을 제외한 2층 연건평만을 기입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부부만 기입
80	연건평	지하실	공동주택의 지하실을 사람이 살도록 개조하여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연건평은?	연건평에 포함시켜 조사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연건평에 포함
81	연건평	베란다 포함여부	빌라에서 연건평은 베란다면적을 포함하는가?	베란다 면적을 포함하여 기입	주거용 면적은 모두 포함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82	연건평 대지면적	3층건물	3층건물에서 한 층이 20평이면 연면적은 모두 더해서 60평이 되나? 이때, 대지면적은?	○ 층별 각각 매매 되는 경우 연건평은 각층의 평수만 해당 대지면적 기입안함 ○ 층별 분리매매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인 경우 ┌ 연건평은 각 층면적을 전부 더하여 기입(단, 영업면적 제외) └ 대지면적은 건물이 있는 담장내의 면적 기입	
			체크! 대지면적은 단독주택만 기입		
83	연건평 대지면적	주상복합건물	영업겸용 단독주택의 연건평과 대지면적 기입여부? (주거면적≥영업면적)	연건평은 영업부분을 제외한 거주부분의 면적을 합하여 기입 대지면적은 바닥면적이므로, 1층 면적기입	영업겸용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기입
			체크! 단,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할 것		
84	연건평 총방수	옥탑방	3층이 옥탑인데 옛날에는 아들이 썼었는데 지금은 비어있는 경우, 연건평과 총방수에 포함되나?	연건평 및 총방수에서 제외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므로, 제외함
85	연건평 편익시설수	영업용건물	5층 상가건물의 10여개의 가게중에 한곳만 사람이 거주함. 방,부엌, 화장실을 갖춘경우, 편익시설 수와 연건평기입방법은?	독립된 출입구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건평은 주거부분의 면적만 기입하며, 편익시설 수도 주거전용으로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함	이 가구를 대표가구로 하여 주택사항을 작성하며, 거주부분을 기준으로 함
			체크! 상가에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 상가와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독립된 출입구로 볼 수없음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86	연건평	빈집	1층은 사람이 살고 2층(20평)은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 연건평은 1층과 2층을 다 합쳐서 40평을 적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층 평수(20평)만 적는 것인지?	· 2층이 주거용 빈집이면 1, 2층 모두 합한 40평 : 2층이 상가 또는 영업용인 경우 2층을 제외한 20평만을 기입	연건평은 실제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면적을 기입
87	연건평 대지면적	본건물과 아래채	시골에 본건물이 있고, 아래채(방과 창고)가 같이 있는 경우, 연건평과 대지면적은?	· 연건평 : 아래채의 방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포함(창고:주거 이외의 용도일때만 제외) · 대지면적 : 담장내의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 제외	연건평 및 대지면적은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을 파악하는 항목으로서, 주거에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을 조사
88	연건평 대지면적	컨테이너	1층과 2층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상가이고, 3층 옥상에 컨테이너 집을 만들어 1가구가 생활할 경우 연건평과 대지면적은 ?	이 경우는 주택이외의 거처이므로 연건평, 대지 면적등 주택사항을 조사하지 않음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에 한하여 작성
89	작성여부	세든가구	2층은 주인집이고 1층에는 세든 사람들이 식당 영업을 하며, 숙식하고 있는 경우,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작성 여부는?	세든가구는 별도의 가구이므로 가구에 관한 사항은 작성하고, 주택에 관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음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인(대표) 가구만 작성
90	작성여부	주상복합건물	1층에는 건물주인이 영업만 하고 2,3층은 세든 가구가 생활하는 경우, 주택사항작성여부?	2, 3층에 세든가구 중 한가구를 "대표가구"로 하여 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	주인가구는 거주하지 않고 영업만 하므로 조사하지 않음
			체크! 이때, 연건평은 2층과 3층면적만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91	총방수	다락	다락도 사용방수에 포함되는가?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사용방수"에 포함	"방"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만 포함함.
92	총방수	문 제거한 방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방의 문을 떼고, 거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방으로 보아야 하는가, 거실로 보는가?	거실로 간주함	문을 이용하지 않고, 거실로 사용하므로 거실로 봄
			체크! 떼어낸 문을 사용하는 여부를 확인		
93	총방수	방종류	방하나에 취사도구를 놓고 사용하며 취침도 하는 경우 사용방수 기입은 어떻게 하는가?	침실에 '1개'로 표시함	잠을 자며, 여러 용도로 쓰이는 방은 침실로 간주
94	총방수	복층	오피스텔인데 집안에 들어가면 복층으로 되어 있어,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이들 놀이터처럼 꾸며놓았다. 방의 개념으로 볼수 있는가?	방으로 볼 수 없음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함
			체크! 방의 요건을 반족하는지 여부		
95	총방수	침실	방이 3개인데 1개는 부모님이, 2개는 각각 자녀가 쓰는 경우, 그 자녀의 방을 침실로 보나, 침실이외의 방으로 보나? (각 방에서 침실겸 서재겸 생활)	잠도 자고 주로 생활하는 곳은 침실이므로 침실 3개로 봄	잠을 자며, 여러 용도로 쓰이는 방은 침실로 간주
96	총방수	식당		식당을 경영 하면서 부부가 거주 하고 있는데 사용방수, 식당, 거실 수 기입은 어떻게 하나? (문달린 작은방 하나, 식당 홀, 가게의 부엌으로 구성)	방(침실)은 "1", 거실 "0", 식당 "0"으로 표시
			체크! 영업겸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97	총방수	식당수		식당 입구에 문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실제 물리적인 문은 없고, 아치형으로 된 문의 형태만 있다거나 커텐만 내려져 있을 때 식당수에 포함되는가?	식당수에 포함되지 않음
			체크! 실제로 문으로 막혀있는 경우만 식당수에 포함됨		
98	총방수	거실수		한옥의 경우 마루에 문을 달았을 경우는 거실수에 포함되는가?	거실(대청마루)에 포함됨
			체크! 대청마루는 문등으로 차단 된 경우에만 거실수에 포함		
99	총방수	미사용방		안채와 바깥채가 있는데 바깥채가 현재 비어있는 경우, 사용방수와 총방수는? (안채 방3개 모두 사용, 바깥채 방2개)	사용방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채의 방 3개만 쓰며, 비어있는 바깥채의 방 2개는 총방수에만 포함하여 기입함
100	총방수	방수		사용방수 및 총방수의 "방수"란에 거실 및 식당수를 포함해서 기입하나?	"방수" 란에는 거실수나 식당수를 포함해서 기입하지 말고 순수한 방(침실, 서재 등) 수만 기입하며, 거실은 "거실수"에, 식당은 "식당수"란에 각각 별도로 기입
			체크! "방수"는 총계의 개념이 아님		
101	총방수	2층집	1층에 침실1개, 침실이 아닌 방 1개, 거실겸 식당이 있으며, 2층도 같은 구조이다. 이 경우, 총방수 기입은? (2층 단독주택이며, 식당은 차단되지 않음)	1층과 2층을 모두 합하여, 방 4개, 거실 2개, 식당 0개	식당은 차단되지 않고 거실과 이어져 있으므로 없다고 간주함 · 1, 2층을 합하여 작성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02	총방수	개념	총방수는 주택전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도 포함되나?	사용하지 않는 방도 모두 포함하며, 세든가구의 방도 포함하여 기입	해당 거처의 모든 방을 조사
103	총방수	거실	15평 일반주택에 현관문을 열면 1평 남짓한 거실이 부엌과 바로 연결되어있는 경우, 거실로 보는가?	거실 1개로 봄	넓이가 1평이상인 경우 방으로 간주함
			체크! 편익시설수에 부엌 1개		
104	총방수	복층	오피스텔(복층)일 경우, 총방수에 포함하는가? (다락의 경우와 비슷, 문은 없음)	총방수에 포함하지 않음	방은 문이나 벽등으로 4면이 막혀 있어야 함
105	총방수	상가주택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인 경우, 상가에 방이 하나씩 있어 그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총방수에 전부 포함이 되나?	상가에 있는 방도 총방수에 포함	거주부분은 모두 포함함
106	총방수	상가주택	상가주택에 가게 내의 홀이 있는 경우, 이것은 주택에 관한 사항에포함하여 기입하는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기입하지 않아야 됨	주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곳은 포함하지 않음
107	총방수	여관객실	여관객실의 경우, 총방수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주택에 관한 사항 첫문항에서 「⑦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에 해당되어 작성을 마침 (총방수 기입안함)	주택이외의 거처가 되므로, 주택에 관한 사항 작성안함
			체크! 주인이 객실방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임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08	총방수	영업용건물	1, 2층 식당이고 3층에 거주하는 경우, 총방수에서는 식당에 있는 방수도 전부 포함을 하는가?	식당에 있는 영업용방은 총방수에서 제외함 단,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방은 포함	거주용 부분만 조사함
109	총방수	옥탑방	총방수에 옥탑방도 포함되나?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방수에 포함됨	건물층수에 포함안됨
			체크! 건물층수에 포함안됨		
110	총방수	원룸	원룸형태인데 계단이 있어서 다락처럼 조그만 방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이 잠잘 수 있는 경우, 총방수는?	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방 2개로 봄	방은 문이나 벽등으로 4면이 막혀 있어야 하고, 1평이상 이어야 함
111	총방수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여럿에 각각 사람이 살고 출입은 상가를 통해서만 하며, 2층의 주택요건을 갖춘 집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1층 상가의 방들을 총방수에 포함시키는가?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인(대표) 가구에서만 작성하며, 1층상가의 거주부분만 포함하여 작성 (총방수에 방들을 포함)	· 1층 상가거주자 – 기타 세들어 살고있는 동거가구 · 2층 가구 – 주인 또는 대표가구
112	총방수 편익시설수	단독주택	1층에는 방 3개, 부엌(거실과 차단하는 미닫이문이 있음), 화장실, 거실이 있고, 2층에는 거실과 방 2개, 화장실이 있을 때 총 방수, 편익시설 수는?	○ 총 방수의 기입 · 방 수 → 5개 · 거실 수 → 2개 · 식당 수 → 1개 ○ 편익 시설 수 기입 · 부엌 수 → 1개 · 화장실 수 → 2개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거실과 차단된 부엌이 있으므로, 총방수에서는 식당으로 간주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13	총방수 편익시설수	부엌	아파트에서 총방수에서 식당(부엌겸 식당)은 '0'으로 되어있는데, 편익시설수에서 부엌수가 1개로 되어 있어도 맞는 것인가?	총방수에서는 미차단 부엌을 거실로만 포함시킨 것이고, 편익시설에서는 미차단 되어 있어도 부엌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임	· 총방수 – 부엌의 차단 유무에 따라 거실이나 식당으로 구분 · 편익시설수 – 차단 유무와 상관없이 취사가능한 시설은 부엌수에 포함
114	총방수 편익시설수	아파트	아파트에 방 3개, 화장실, 부엌, 거실이 있을 때 총방수, 편익시설 수는? (부엌과 거실은 차단 안됨)	○ 총 방수의 기입 · 방 수 : 3개 · 거실 수 : 1개 · 식당 수 : 0개 ○ 편익 시설 수 기입 · 부엌 수 : 1개 · 화장실 수 : 1개, · 독립된 출입구 수 : 1개	부엌이 거실과 차단되지 않은 경우, 총방수에서는 식당에 해당되지 않음
115	총방수 편익시설수	아파트	주로 아파트에서 거실과 부엌이 연결되어있을 경우에 부엌의 수와 거실의 수는?	총방수의 거실수 1개, 편익시설 수는 부엌수 1개로 기입	부엌의 경우, 별도차단되지 않아도 1개로 조사되어야 함
116	총방수 편익시설수	화장실수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해당되는 상가건물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 수도 포함하여 기입하는가?	영업부분은 제외하고 주거부분만 기입	주거용만 기입
117	총방수 편익시설수	식당수 부엌수		거실과 부엌이 틔어져 있는 경우 식당과 부엌수는?	· "사용방수"에서는 거실수 1개, 식당수 0개, · "편익시설수"에서는 부엌 1개로 기입
			체크! 별도로 차단되지 않았으므로, 식당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부엌에는 포함함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18	편익시설수	식당수 부엌수		방 하나를 개량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식당1개, 부엌1개로 볼수 있는가? (기존에 사용하던 문이 있음)	사용방 수(총방수) – 식당1개, 편익시설수 – 부엌 1개
			체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조사		
119	편익시설수	다가구원룸	다가구 원룸에서 편익시설수의 화장실수, 부엌수, 출입구수를 어떻게 기입하는가?	다가구원룸이면 각 방의 시설수를 모두 더한 수를 기입함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인(대표)가구만 작성하되, 주택 전체에 관한 사항을 기입
120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상가주택의 경우, 출입구수에 상가에 있는 출입문도 포함이 되나?	상가 출입문은 해당 안되고 주택부분 출입구만 해당됨	
121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대문 하나에 6가구가 각각 따로 살고 있으며, 각 가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고 그안에 방 하나씩 있는 경우, 독립된 출입구수는 몇 개로 보아야 하나?	독립된 출입구수는 각 가구마다 따로 보아 6개임	
122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단독주택인 경우는 큰대문이 있고 1층 주인집은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2층도 옥외 계단식 출입구가 있는데 이때 독립됩 출입구수는	큰 대문은 포함하지 않고, 주인집 출입구 1개, 계단(2층) 출입구 1개. 총 2개	독립된 출입구는 다른 집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집접 접해 있는 문
123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2층은 주택, 1층은 변호사 사무실인데 1층 출입구는 포함되지 않나? (2층은 외부계단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출입가능)	변호사 사무실이 영업용으로만 쓰이면 포함하지 않음	거주용 부분만 포함하므로, 2층 출입구만을 독립된 출입구로 봄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24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영업용 단독주택에 1층 주거용에 출입구 하나, 2층 피아노 학원에 따로 출입구가 있는 경우, 출입구수?	2층은 영업용이므로, 1층 출입구만 고려하여 1개임	주거용만 해당됨
125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한옥집에서 안방에서도 마당으로 나올수 있는 문이 있는경우, 독립된 출입구로 보아야 하는가?	방에서 마당으로 나오는 문은 독립된 출입구에 해당 되지 않음 (대문만 독립된 출입구가 됨)	마당이 아닌 울타리 외부와 직접 접해 있는 출입구만을 '독립된 출입구' 로 간주
126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양옥집에 현관문외에 부엌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독립된 출입구 수는?	현관문만 독립된 출입구로 보아, 출입구 수는 1개임	
127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독립된 출입구란, 모든 문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현관문만 해당되는 것인지?	모든 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1)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관문 2)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외부에 접한 대문 – 2층 단독주택에서, 2층으로 별도로 올라가는 계단에 의한 2층 현관문도 독립된 출입구로 봄(단, 쪽문은 제외)	독립된 출입구란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출입구만을 의미함 (방문, 다용도실 문 등은 해당 되지 않고 외부에 접한 현관문을 의미함)
			체크! 이외 영업용 건물에서는 각 층의 현관문도 독립된 출입구에 해당. 주택의 종류에 따라 파악하되, 외견상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출입구(대문, 현관문 등)로 봄		
128	편익시설수	독립된 출입구	주택의 출구가 계단식으로 되어 현관문이 있는 경우, 독립된 출입구수는? 대문까지 함께 적어서 3개인가, 아니면 2개인가?	대문이 있고 1,2층에 다른가구가 있는데 계단으로 돼 있다면 대문은 제외하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문 수로 2개를 적음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29	편익시설수	부엌	방하나에 싱크대만 있는 경우 , 편익시설수의 부엌에 해당하는가?	부엌에 해당됨	취사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편익시설수에서 부엌에 해당
130	편익시설수	부엌	사용방수나 총방수에서 부엌과 거실에 분리된 문이 없을 경우 거실에 포함하는데, 그럼 편익시설수에서 부엌은?	편익시설에서는 취사가능하고,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엌으로 봄	방수개념과 달리, 부엌은 차단 유무와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구분함
131	편익시설수	부엌	자취방인데 방하나에 버너 놓고 사용하는 경우, 편익시설수의 부엌으로 볼수 있는가	부엌으로 보지 않음 "0"으로 기입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엌으로 볼 수 없음
132	편익시설수	부엌	암자의 시설중에 동거인들이 사용하는 주방과 다녀가는 사람들을 위한 주방이 있다면 편익 시설중 부엌의 수는 2개인가?	암자가 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편익시설수를 조사하며, 이때 부엌수는 2개로 조사	편익시설 수는 주택의 경우에만 작성
			체크! 우선 암자가 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인지, 주택이외의 거처인지 여부를 파악		
133	편익시설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부엌도 편익시설수에 포함하나?	모두 포함하여 기입	주택 내의 영업용을 제외하고 모두 기입
134	편익시설수	화장실	양옥으로 지은 집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마당에도 하나 있는데 편익시설 수에서 화장실은 몇 개로 기입하나?	화장실은 2개로 기입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35	편익시설수	화장실	여관의 경우, 객실의 화장실 수를 모두 더하여 기입하나?	객실의 화장실 수는 제외함. (여관의 경우는, 주인이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만 기입함)	주거에 사용되는 부분만 해당됨
136	편익시설수 총방수	부엌	아파트에서 총방수에서 식당(부엌겸 식당)은 '0' 으로 되어있는데, 편익시설수에서 부엌수가 1개로 되어 있어도 맞는 것인가?	총방수에서는 미차단 부엌을 거실로만 포함시킨 것이고, 편익시설에서는 미차단 되어 있어도 부엌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임	· 총방수 – 부엌의 차단 유무에 따라 거실이나 식당으로 구분 · 편익시설수 – 차단 유무와 상관없이 취사가능한 시설은 부엌수에 포함
137	편익시설수	두가지 형태 화장실	화장실이 수세식과 재래식 둘 다 있는 경우, 주거시설형태와 편익시설수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주거시설 형태에서는, 둘 중 가구에서 주된 사용 화장실을 기입하고, 편익시설수에는 화장실 2개로 기입	



난외사항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	기숙시설	전화번호 주소	기숙사 학생인 경우,전화번호 란에는 집 전화번호를 적는지, 기숙사 전화번호를 적는지?	전화번호는 기숙시설의 전화번호와 관리인 이름을 기재 주소는 기숙사가 소재한 주소 기입	
2	외국인 국적표시	귀화한 외국인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의 경우, 일반조사표에 국가명을 표기를 해야 하는가?	외국인이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으로 간주하여 국적표시를 따로 하지 않음	취득국적에 따라 기입
3	외국인 국적표시	혼인한 경우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 국가명과 분류부호를 기입하는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현재 본인의 국적을 표시함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는 기입 하지 않음)	취득국적에 따라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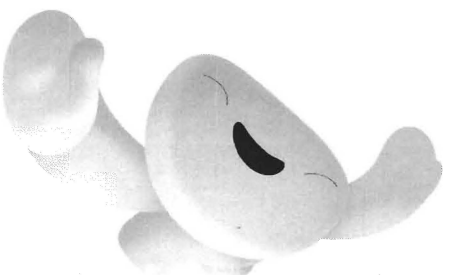

일반적 작성방법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	기숙시설	각방기준 작성	기숙사시설에, 각 호실마다 4명씩 약 100개 정도의 방이 있을 경우, 조사표를 각 방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지?	1개의 조사표에 5명씩 조사, 이후 조사표마다 5명씩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각 방별로 4명씩 작성해도 무방함	
2	조사표	6인이상 가족	가구원이 6명인데 조사표에는 5명까지만 쓰게 되어 있는데 6번째는 어디에다 쓰나?	조사표를 한 부 더 받아서 6번째 가구원을 기재하고 조사표 앞에 2부중 1부, 2부로 표시함	
3	"0" 표시여부		사용방수나 연건평, 대지면적 이런곳에 칸수를 맞추어 앞에 "0"을 써야하는가?	"0" 기입하지 않음	"0"을 꼭 써야하는 부분은 [총출생아수,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이며, 이외에는 쓰지 않아도 무방함
4	기입하지 않는 곳		조사표 중, 기입하지 않는 곳은 사선을 그어야 하는지?	공백으로 처리	
5	필기구		조사표 작성시 수정할때 빨간색으로 해야하나요?	검정색 볼펜으로 수정함	
6	필기구		필기구를 싸인펜, 수성볼펜등 여러 가지로 조사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수성 싸인펜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할 것 (적색 금지)	
			체크! 가능하면 볼펜을 사용		

V 빈집 조사

- 가구명부
- 빈집조사 대상
- 빈집조사표

V 빈집조사

가구명부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조사표부수	빈집조사표는 빈집이 한 집이라도 있으면 1부로 보는가?	빈집이 한집이라도 있으면, 빈집 조사표 1부로 하여 조사표 부수 포함함	
		체크! 빈집조사표 1장당 6집 작성가능		
2	조사표부수	가구명부의 조사표 부수에 빈집조사표도 포함해서 써야 하나?	빈집조사표도 조사표 부수에 포함됨	
3	집계표	가구명부 집계표에 빈집과 인터넷 조사가구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처 총계- 모두 포함하여 기입 □가구수 총계- 빈집은 가구수에서 제외, 인터넷 조사가구는 가구수에 포함	
4	거처번호	빈집의 경우 거처번호를 별도로 분리하여 마지막에 넣어야 하나?	빈집인 경우도 거처순으로 연결하여 부여함 (별도로 분리하지 않음)	
5	거처번호	빈집에도 거처번호를 주어야 하나?	거처번호 부여함	
		체크! 가구번호는 부여하지 않음		

빈집조사대상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6	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의 빈집은 거처번호를 부여하는가?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빈집조사	
7	가정집 사무실	일반 가정집(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 (숙식은 안하고 사무실로만 사용)	사무실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면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처리함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주택은 빈집으로 조사
8	짐만 들어온 집	신규 아파트에 우선 짐만 들어온 경우 빈집으로 처리하는가?	거처번호 1개를 부여하고 빈집 처리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
9	상가	상가인 경우에도 조사해야 하나?	상가에서 숙식하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함	
10	아파트 놀이방	아파트의 한 집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놀이방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조사여부?	빈집으로 조사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주택에는 거처번호만 부여하여 빈집처리
11	창고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의 거처번호 부여 여부?	창고는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조사하지 않음)	사람이 거주하하거나, 빈 주택인 경우에만 거처번호 부여
12	다가구 빈집	3층의 다가구주택 2층 가구가 비어있는 경우,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부여하나?	거처번호는 주택전체에 하나 부여하고, 2층 집에는 따로 가구번호 부여하지 않고 빈방으로 봄	다가구의 경우, 전체 거처 1개, 호별로 가구번호 부여
		체크! 빈집조사는 하지 않음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3	다세대 빈집	4층의 다세대주택 1층 가구가 비어있는데 거처번호, 가구번호를 부여하나?	1층가구에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처리 함(가구번호는 부여하지 않음)	다세대의 경우, 호별로 각각의 개별 거처로 간주
14	다세대 빌라	각각 매매가능한 빌라에 세든집과 빈집이 있는 경우,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 부여는?	세든 집 –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하여 조사 비어있는 집 – 거처번호만 부여하여 빈집조사	각각 매매 되므로, 세든 집과 빈집은 각각 거처번호 부여
15	상가 빈방	상가 2층에 3개 방중, 2개는 세들어 있고 1개는 빈방인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	1거처에, 세든가구 2집에 각각 가구번호 부여하고, 빈방은 가구번호 부여 안함	
		체크! 단, 총방수 셀 때는 빈방도 포함.		
16	피아노 교습소	다세대 건물의 한 호를 피아노 교습소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방시설과 방은 있지만 숙식은 하지 않는 경우 거처번호 부여하는가?	거처번호 1개 부여하여, 빈집처리 함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빈집조사 대상이 됨
17	오피스텔			
18	별장	별장인데 일년에 1~2회 정도 다녀가는 곳은 빈집으로 해야 하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별장도 주택으로 조사하고 빈집으로 처리	별장도 주택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19	주상복합	1층, 2층은 상가이고(비거주) 3층은 가정집인데, 이사가서 빈집일 경우, 빈집으로 조사해야 하나?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으로 조사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해당되므로 빈집조사 대상이 됨
		체크! 주택의종류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으로 함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0	거주용주택	2층 거주용주택에, 1층은 가게 사용하고, 2층은 창고용으로 사용하며 사람은 거주하지 않을 경우, 빈집 조사하나?	거처번호만 하나 부여하여, 빈집 처리	본래는 거주용 주택이므로, 빈집 조사대상이 됨
21	거처번호부여	빈집인 경우에는 거처번호를 나중에 따로 부여하는가?	빈집이라도 순서대로 거처번호 부여함	
22	미승인 건물	신축 빌라인데 다 지어진 상태이나, 준공허가가 안나서 비어 있는 건물인 경우, 빈집처리 하나?	사람이 당장 입주할 수 있으면 빈집처리하고 각각 매매가 되면 각각 호수를 빈집처리함	사용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한 형태인 경우 빈집조사 대상이됨
23	복지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경로당, 제실등, 방과 부엌이 있어서 생활이 가능한데, 숙식을 안하는 경우 빈집으로 해야 하는가?	빈집조사하지 않음	주거용도의 건물이 아니므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
24	신축	일반주택 건축 중인데 입주는 하지 않고 거의 다 지은 상태인데 빈집인가?	신축중인 건물로 판단하여 거처번호 부여하지 않음	완공되어 바로 입주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만 빈집처리함
25	아파트 놀이방	아파트 한 호를 놀이방으로만 사용하고 저녁에는 다른 집에서 잠자는 경우, 빈집조사 하는가?	거처번호만 부여하고 빈집 조사	
26	아파트사무실	아파트 한 호실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사무실로만 쓰고 있다. 빈집 처리하나?	거처번호만 하나 부여하여, 빈집 처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빈집조사 대상이 됨
27	장기부재	한 달에 한 번씩만 오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경우, 빈집으로 하나?	빈집으로 조사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28	장기부재가구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3개월~ 6개월 정도 아들집에 계시는 경우, 빈집조사하나?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조사함 빈집사유에 "④일시적(가끔)이용"이라고 표기	
29	장기입원환자	혼자사는 사람이 장기간 입원중인 경우, 빈집으로 해야 하는가?	조사 끝나는 시점까지, 방문해 보고 관리자와 상의 하여 결정할 것	
		체크! 성급하게 빈집으로 미리 처리 하면 안됨		
30	주상복합건물	2층 상가주택에 1층 상가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2층은 거주용인데 이사를 가고 빈집일 경우, 2층은 빈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건물전체로 매매)	1층상가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인(대표)가구로 하여 조사하되, 2층의 빈집은 빈집조사 하지 않고, 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빈방으로만 기입함	1층과 2층이 한 거처이므로, 1층 거주자를 조사
31	취침만 하는곳	주택의 요건을 갖춘 곳에서 축사때문에 밤에 잠만 자고, 밥은 가족들이 있는 다른곳에서 함께 먹는 경우, 이곳은 빈집처리 하는가?	거처번호 부여하여 빈집조사함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곳만 조사
		체크! 조사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에서 함		
32	파손된 주택	빈집인데 지붕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서질것 같고 내부엔 쓰레기가 가득한 경우, 조사하는가?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빈집처리 하고, 빈집조사표 파손여부 기입란에 상태를 기입	
33	파손된 주택	사람이 살수 없는 정도로 훼손된 빈집의 경우도 거처번호 부여하나?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빈집처리 하고, 빈집조사표 파손여부 기입란에 상태를 기입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34	다량의 빈집	60세대 아파트에서 50여가구가 모두가 빈집인 경우, 빈집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빈집이 다량 발생될 경우 "1번거처-50번거처"등으로 한 조사표에 조사할 수 있음	단, 미입주 아파트 등과 같이, 빈집조사표 작성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방법임
35	빈집사유	교통사고가 나서 1년간 빈집으로 비어있는데 빈집사유에 뭐라고 적나?	기타에 1년이라는 기준으로 교통사고라고 기입	
36	빈집사유	다세대에서 1층과 2층 한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주된 층외에 다른층은 빈집조사 하게 되는데, 이때 빈집사유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④일시적(가끔)이용	
37	일련번호 거처번호	빈집조사표에서 일련번호 및 거처번호는 어떻게 쓰는가?	한 조사구 내에서 순서대로 빈집 일련번호 쓰며, 거처번호는 가구명부상에 표시된 빈집의 거처번호를 기입	
38	조사표당 빈집수	빈집 조사표에서 조사표당 빈집수란 무엇인가?	빈집 조사표 한 장에 작성된 빈집의 수를 말함	한 장의 빈집조사표에 12개의 빈집 작성이 가능, 조사구별로 빈집조사표 작성
39	조사표매수	빈집조사표는 1장에 12가구 쓸수 있는데 6가구이면 6장인가요, 1장인가요?	1장임	조사표 장수를 기입

VI 외국인 조사

- 외국인조사 대상
- 외국인 조사표
- 조사방법
- 시설 내 외국인
- 한국인과 동거

Ⅵ 외국인조사

외국인조사대상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외국인 남편	한국인 부인에 외국인 남편인 경우, 외국인 남편을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가?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일반조사표로 함께 작성하되, 뒷면에 국가명 및 분류분호를 기입	한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에 포함시켜 조사함
2	귀화한 외국인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의 경우, 일반조사표에 국가명을 표기를 해야 하는가?	외국인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으로 간주하여 국적표시를 따로 하지 않음	취득국적에 따라 기입
3	혼인한 경우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 국가명과 분류부호를 기입하는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현재 본인의 국적을 표시함 (한국국적 취득한 경우는 기입 하지 않음)	취득국적에 따라 기입
4	영외거주 외국군인	외국 군인들이 함께 독채를 얻어 생활하는 경우 조사 여부?	○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빈집으로 조사 → 거처번호 부여, 빈집조사표 작성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5	한국국적의 외국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외국인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일반조사표로 조사하며, 외국인 국가명 표시도 기재 하지 않음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가진경우, 한국인으로 간주함.
		체크! 반면,우리말을 하는 한민족이라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졌으면 외국인조사 해야함.		
6	단기체류 외국인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가 가끔씩 한국에 오는 경우, 상주지가 일본인데 외국인조사대상인지?	한국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조사는 되어야 함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이 됨.
7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자녀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 사이에 난 자녀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	○ 일반조사표를 작성하며, 자녀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분류 표시함	국적에따라 조사
8	조사표	한국에 시집와서 영주권을 얻었으나 이혼한 경우, 외국인 조사표 쓰는가?	국적이 한국이면 일반조사표로 조사함	국적에따라 조사
9	표본조사 지역의 외국인	표본조사지역에 외국인이 살 경우 어떤 조사표를 사용하나?	□한 가구에 한국인과 같이 사는 경우 :일반가구로 표본조사표 작성 □ 외국인끼리 사는 경우 :외국인 가구로 외국인 조사표 작성	

외국인조사표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국적	외국인 조사표에 국적표시는 어떻게 하나?	해당국적에 표시하되, 해당하는 곳이 없을때에는 기타표시하고 국가명과 국가분류분호 기입	
2	조사표기입 방법	거처번호가 다른 외국인인 경우, 다른 조사표에 각각 기입해야 되는지, 한 조사표에 전부 기입해도 되는지?	거처번호가 다르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조사표는 각각 작성	거처 및 가구별로 조사표 작성
3	직업	외국인 조사표에 직업이 학원강사인 경우 어떻게 기입하나?	학원강사는 "전문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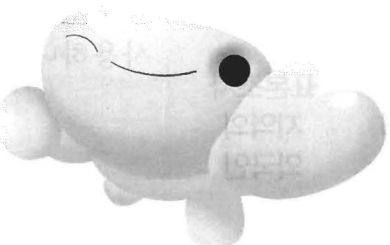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거처번호 부여	외국인가구에 거처번호 부여할 때, 한국인가구와 연결해서 부여하는가, 별도로 나중에 부여하는가?	별도 구별없이 거처번호는 연결해서 부여	
		체크! 한 거처 내에서 가구번호는 한국인 가구를 먼저 부여 할 것		
2	국적다른 가구원	국적이 다른 외국인끼리 한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사하나?	1거처에 가구번호 1개 부여하여, 외국인 조사표에 함께 작성하며, 조사표에 국가명과 국가부호를 기입	
		체크! 대표자 한명을 선정하여, 가구주로 작성		
3	국적다른 가구원	한 가구에 아빠하고 자녀는 대만국적이고, 엄마는 한국국적인 경우 조사표에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	엄마(한국인)를 가구주로 하여, 모두 일반조사표로 같이 조사함. 단, 아빠와 자녀는 조사표 뒷장에 외국인 국가명과 분류부호를기재할 것	한 가구에 한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는 일반조사표 작성
		체크! 가구주는 한국인중에서 선정		
4	이중국적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조사하는가?	본인이 응답하는 국적으로 조사	

시설 내 외국인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기숙사	기숙사에 생활하는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을때, 별도의 가구로 보는가?	○ 동일 거처에, 외국인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하여 외국인 조사표로 조사함 * 가구명부상 외국인가구에 ○표시 (1개 거처에 총 2개의 가구)	외국인은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
		체크! 기숙시설 조사구이지만, 외국인이 있으므로 1거처에 2가구가 됨		
2	보육원	보육원의 원생중 3명이 외국인일 때, 가구번호 부여 및 조사표 작성은?	거처번호 하나에 한국인가구와 별도로, 외국인 3명은 외국인가구로 조사 (총 1 거처, 2 가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는 표본조사 지역 외국인은 표본, 전수 지역관계없이 외국인 조사표 사용
		체크! 이때 한국인 가구번호를 먼저 부여함. 한국인 원생들은 일반(표본)조사표, 외국인 3명은 외국인 조사표 작성		



한국인과 동거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외국인 조사구내 한국인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에 외국인과 동거하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조사는?	○ 외국인과 한국인이 생계를 함께하는 한 가구인 경우-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일반가구로 조사(일반조사표로 조사) ○ 별도 취사하는 경우-한국인을 주인가구, 외국인을 동거가구로 조사(2가구)	
		체크! 한국인과 외국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		
2	혼인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여 함께 사는 경우의 조사는?	○ 둘 중 1명이라도, 국적이 한국인 경우 →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일반조사표로 조사 ○ 두명 모두 국적이 외국인 경우 → 외국인 조사표로 조사	국적에따라 조사
		체크! 각각의 취득 국적확인		
3	혼인	외국 군인이 한국여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경우 조사여부는?	○ 한국 여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면 →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빈집 조사 ○ 한국 여자가 한국 국적으로 되어있으면 → 한국인 가구로 하여 한국여자만 조사	국적에따라 조사하며, 외국군인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4	화교	중국인(화교)인데,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이고 부모님과 아들은 중국인인 경우, 일반조사표에 쓰고 국적만 표시하나?	국적이 한국인이면 일반조사표로 쓰고, 부모님과 아들은 조사표 뒷면에 국가명과 분류부호를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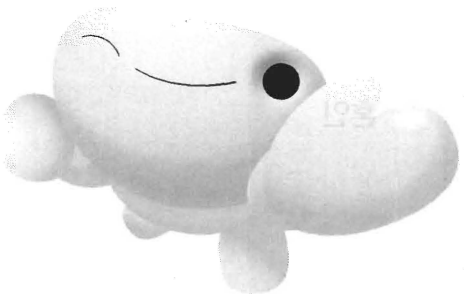

VII 인터넷 조사

– 가구명부

Ⅶ 인터넷조사

가구명부

일련번호	구분		사례	응답내용	응답기준
1	가구명부작성	조사표부수	인터넷조사 가구의 조사표가 1부이상인 경우, 가구명부의 조사표 부수를 어떻게 기입하는가?	1부만 포함함	인터넷조사가구는 조사표 표지만 작성
2	가구명부작성	집계표	가구명부 집계표에 빈집과 인터넷 조사가구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처 총계- 모두 포함하여 기입 □가구수 총계- 빈집은 가구수에서 제외, 인터넷 조사가구는 가구수에 포함	인터넷조사가구는 조사표 표지만 작성
3	가구명부작성	작성항목	인터넷조사 가구는 가구명부에 어떻게 기입하는가?	e-센서스 시스템에 입력된 가구명부 자료를 기입하고, 비고란에 "인터넷"으로 기입	
4	가구명부작성	집계표	인터넷조사 가구는 가구명부의 집계표에 포함하는가?	포함하여 기입	

VIII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조사표 검토 및 수정 / 조사표류 제출

Ⅷ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조사표 검토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검토사항	제출전 검토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항목별로 작성대상 기준에 맞게 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예) 세는 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 ○ 주인, 대표가구만 주택사항이 조사되었는지 확인	지침서 참조
2	필기구	조사표에 연필로 기재한 것을 그대로 두면 안되는지?	가능한 볼펜으로 수정기입할 것. 단, 이미 연필로 작성된 기재 내용이 선명하여 지워지거나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그대로 둠	조사표류 작성은 기본적으로 볼펜을 사용할 것. 내용검토나 입력시 등에 별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조사표 수정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필기구	조사표 및 가구명부 수정시, 색으로 수정하는지 아니면 청색 또는 흑색볼펜으로 하는지?	수정 시에 색깔은 무관하나, 수성펜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수성펜 사용 금지
2	필기구	조사표 기입시, 잘못된 경우는 빨간색으로 수정하는지, 검정색으로 하는지?	검정색으로 두줄(==) 긋고 수정	

조사표류 제출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제출방법	가구명부와 조사구요도 작성 후 제출방법?	요도 작성이 끝난 조사구는 나머지 1부에 옮긴 후, 요도의 오른쪽위의 조사원 성명 기입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조사표 제출시에 지도원에게 제출	지침서 참조
2	제출조사표 종류	조사 완료후 제출해야할 조사표류는 무엇인가?	조사표, 가구명부 2매, 조사구요도 2매, 조사요원증	

Ⅸ 기타 행정사항

- 조사원 사항

Ⅸ 기타행정사항

조사원사항

일련번호	구 분		사 례	응 답 내 용	응 답 기 준
1	수당	중도포기자	조사원중에 교육을 받고 준비조사 하루 하고 그만두었을때 수당은 지급되는가?	교육만 이수하고 준비조사 기간 중 중도포기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준비기간 중(교육이수 직후 포함) 보기한 경우는 수당 미지급
2	수당	중도포기자	조사원중에 교육을 받고 준비조사까지 완료하고 그만두었을때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준비조사 완료후 중도포기한 자는 교육 및 준비조사기간의 70%만 인정하여 지급. 4일×36,750원×0.7 =102,900원	교육 및 준비조사기간= 4일 조사원 1일 수당=36,7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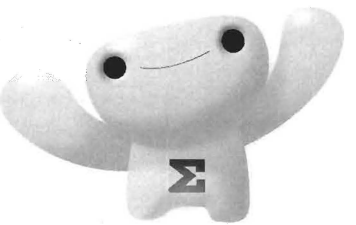

X 부 록 - 유형별 조사방법(절차)

- 기숙시설 / 특수사회시설
- 하숙생
- 자취생
- 숙박시설(호텔, 여관)
- 공익근무요원
- 외국인조사
- 원룸
- 고시원
- 오피스텔
- 주상복합건물

X 부 록

기숙시설 / 특수사회시설

■ **가구명부** 하나의 기숙시설을 가구명부 한줄에 작성

■ **조사표**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 : 각각 첫번째 항목만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구 분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종류	가구종류(가구명부)	비고란	가구주	가구원수	조사표 표지	난외사항
시설 내 관리인이 있는 경우 (출 · 퇴근 하는 경우는 제외)	독립적으로 취사	시설전체 1개(1 거처)	관리인 가구 1 가구 (총 2가구)	일반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기숙사 명칭	다른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작성			
			기숙생 전체 1 가구 (총 2가구)	집단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기숙사 명칭	기숙생 중 대표자 1명 선정하여 성명기입	가구주를 포함하여 기숙사 전체의 남,여 인원수 기입	전체 기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당 5명씩 작성하되, 가구원수는 첫째장에만 기입	**응답자** – 관리인 성명 **전화번호** – 기숙시설의 전화번호 기입
	기숙생과 함께 숙식	시설전체 1개(1 거처)	관리인 포함한 기숙생 전체 1 가구(총 1가구)	집단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기숙사 명칭				
시설 내 외국인		시설전체 1개(1 거처)	외국인 기숙생 1 가구(총 2가구)	외국인 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기숙사 명칭				
			내국인 기숙생 전체 1 가구 (총 2가구) --- 내국인 가구 번호를 먼저 부여	집단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기숙사 명칭				

하숙생(주인집에서 숙식 모두 제공)

하숙인원	거처 가구수	가구종류	가구구분	거주기간	사용방수
5인 이하	주인가구에 포함 (총 1거처 1가구)	일반가구	②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또는, ④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족(주인가구가 1인가구인 경우)	주인가구의 거주기간	주인가구와 하숙생이 사용하는 방/거실/식당 수를 합하여 기입
6인 이상~19인 이하	주인가구 1가구	일반가구	①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주인가구의 거주기간	주인가구만 사용하는 방과 거실 및 식당기입
	하숙생끼리 1가구 (총 1거처 2가구)	집단가구	⑤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사는 6인 이상의 가구	하숙생 중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의 거주기간	하숙생들만 사용하는 방을 기입

하숙인원	거처 가구수	주거시설형태	난방시설	주인가구 및 주택소유여부	주택에 관한 사항
5인 이하	주인가구에 포함	주인가구의 주거시설과 형태 기입[단독사용]	주인가구의 난방시설 기입	주인가구	하숙생이 사용하는 부분포함하여, 주택전체 사항 기입
6인 이상~19인 이하	주인가구 1가구	주인가구의 주거시설과 형태 기입하되, [공동사용]으로 표기	주인가구의 난방시설 기입	주인가구	하숙생이 사용하는 부분포함하여, 주택전체 사항 기입
	하숙생가구	주인가구의 주거시설과 형태 기입하되, [공동사용]으로 표기	주인가구와 같은 경우 동일하게 기입하고 다른경우는 각각 해당 시설 기입(별도가구)	기타 세 들어사는 동거가구/가구주(하숙생 중 대표자)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 기재	작성하지 않음

자취생(주인집에서 취침만 하고, 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

거처 및 가구수	인원수에 관계없이 주인과 각각 별개의 가구로 봄	하나의 거처번호에, 자취단위별로 가구번호 부여 (총 1거처, 가구수 : 주인가구 + 자취가구 수)

가구종류	거주기간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난방시설	주인가구 및 주택소유여부	주택에 관한 사항
일반가구	해당가구 (자취단위별) 거주기간	방 1개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 공동 사용으로 기입	주인가구와 같은 경우 동일 하게 기입하고 다른경우는 각각 해당 시설 기입(별도가구)	기타 세 들어사는 동거가구/ 가구주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 기입	작성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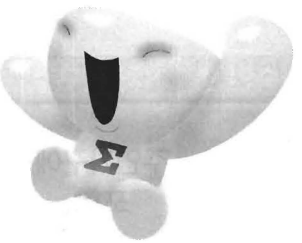

여관 및 호텔(숙박시설)

투숙객 조사 여부	[조사대상이 되는 투숙객] ① 내국인 : 취업 · 취학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3개월 이상) 투숙하는 경우 ② 외국인 투숙객(체류기간 관계없이 모두 조사)	[조사제외 투숙객] ① 출장, 여행을 목적으로 잠시 (3개월 미만) 투숙하는 내국인의 경우 – 본가에서 조사

■ 거처 및 가구번호

관리인(주인) 거주 여부	조사대상이 되는 투숙객유무	거 처	가 구
숙박시설 내 거주	**있다** (총 1거처, 가구수 : 관리인가구 + 대상객실 수)	1 거처	관리인 1가구 대상 투숙객이 있는 객실마다 각각 가구번호 부여
	없다 (총 1거처 1가구)	1 거처	관리인 1가구
시설 내에 거주하지 않음 (출 · 퇴근)	**있다** (총 1거처, 가구수 : 대상객실 수)	1 거처	대상 투숙객실마다 각각 가구번호 부여
	없다	거처번호 부여 ×	조사 제외

■ 가구명부 작성

관리인(주인) 거주 여부	조사대상이 되는 투숙객유무		공동주택	가구주성명	거처종류	
					주택의 요건 만족	주택의 요건 불만족(객실내 거주)
숙박시설 내 거주	있다	관리인	기입 ×	관리인 성명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투숙객	기입 ×	대표자 성명	_	기입 ×
	없다	관리인	기입 ×	관리인 성명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시설 내에 거주하지 않음 (출 · 퇴근)	있다	투숙객	1 거처	투숙객실 중 하나를 대표가구로 선정하여, 그 객실의 대표자 성명 기입	_	주택이외의 거처

■ 조사표 작성

※ 주택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첫번째 항목만 작성하고 마침

관리인 거주 여부	조사대상이 되는 투숙객유무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		
					주택의 요건 만족		
			사용방수	주인가구	총방수	연건평	편익시설수
숙박시설 내 거주	있다	관리인	관리인가구만 사용하는 방/거실/식당 수 기입	주인가구	관리인가구만 사용하는 방/거실/식당 수 기입	관리인가구가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만 기입(영업면적제외)	관리인가구가 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영업용제외)
		투숙객	각각 투숙하는 객실의 방/거실/식당 수 기입	기타 세들어 사는 동거가구	기입 ×	기입 ×	기입 ×
	없다	관리인	관리인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입	주인가구	관리인가구만 사용하는 방/거실/식당 수 기입	관리인가구가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만 기입(영업면적제외)	관리인가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영업용제외)
시설 내에 거주하지않음 (출 · 퇴근)	있다	투숙객	각각 투숙하는 객실의 방/거실/식당 수 기입	투숙객중 객실하나를 대표가구로 선정, 나머지 객실은 기타 세들어 사는 동거가구	대표가구 : 첫번째 항목만 작성하고 마침	기입 ×	기입 ×



공익근무요원

조사 여부	이 가구에서 조사
조사표 표지	***주의***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군입대한 가족에 해당되지 않음**
경제활동상태	다른 직업이 없는 공익근무요원인 경우는 경제활동 "없음"
통근여부	집에서 출퇴근 하므로 "통근함"에 해당

외국인 조사

기숙시설 / 특수사회 시설 내의 외국인	1거처 2가구 내국인과 별도의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 (내국인에 대하여 가구번호를 먼저 부여하여 주인가구로 조사할 것)
유의사항	외모가 외국인이더라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일반조사표로 조사하며, 외국인 국적 표시도 하지 않음 (한국인으로 간주)
단기체류 외국인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인 조사표로 조사할 것
한국인과 동거하는 외국인	일반조사표로 조사하되,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작성
외국군인	조사제외 ※ 단, 해당주택은 빈집으로 조사

원 룸

매매여부	거처번호 가구번호	원룸이 비어 있을 경우, 빈집처리 방법	거처종류	주택에 관한 사항	
				편익시설 수	총방수
호별 각각 매매 가능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어있는 호에 대하여, 거처번호만 부여하여 빈집조사표 작	다세대주택	각 원룸이 개별 거처이므로, 하나의 원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입	
건물 전체로 매매	건물전체 거처번호 1개 부여 각각 호별로 가구번호 부여	건물전체에 거처번호 하나 부여, 빈 원룸은 빈방으로 간주하며, 총방수에 포함하여 기입 (즉, 하나의 원룸이 비어있을 경우는 빈집처리 하지 않고, 건물전체가 비어있는 경우에만 빈집처리)	다가구 단독주택	건물 내의 원룸전체에 대한 부엌, 화장실,독립된 출입구수를 합하여 기입	건물 내의 원룸전체에 대한 방, 거실, 식당 수를 합하여 기입

고시원

조사구 구분	거처 및 가구번호	가구종류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		
					관리인 있음	관리인 없음
일반조사구	거처 1개, 각 방별로 가구번호 부여(총 1 거처, 가구 수: 거주하는 방 수)	일반가구	각 방단위별 작성	고시원 전체에 관한 사항을 기입	거주하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가구를 주인가구로 하여, 주인가구만 작성	거주하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가구가 작성
기숙시설 조사구	거처 1개, 가구번호 1개 부여 (총 1 거처, 1가구)	집단가구	첫번째 항목만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첫번째 항목만 기입하고 작성을 마침 ⑥기숙사에 살고있는 집단가구	기숙시설 조사 참고	

오피스텔

※ 전체적인 조사방법은 아파트 조사와 동일하나, 주택이 아닌 "주택이외의 거처"로 간주하는 차이점이 있음

1. 거처번호 가구번호 부여방법	
거처번호 가구번호	각 호실별로 거처번호 1개, 가구번호 1개 부여 (아파트와 동일한 방법)

2. 빈 오피스텔의 경우 조사방법	
준비조사 – 조사구 안내에 빈집표시 여부	본조사 – 빈집조사 여부
빈집표시(×표) 하지 않음	주택이 아니므로, 빈집조사 하지 않음

3. 복층구조 오피스텔
복층으로 되어있는 곳이 방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방수나 총방수에 포함하여 기입

가구명부 작성	공동주택란(명칭, 동호수)	거처종류
	작성하지 않음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에 관한 사항	사용방수 / 주거시설 형태 등의 작성	사용방수 / 주거시설 형태 등의 작성		주인가구
		사무실 겸용	주거로만 사용	
	각 호실단위로 작성	영업겸용	주거전용	주인 또는 대표가구

주택에 관한 사항	작성 여부	거처종류 및 건물층수	사용방수 / 주거시설 형태 등의 작성		대지면적
			사무실 겸용	주거로만 사용	
	각 호실단위로 작성	⑥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전체 층수 기입	사무실 면적을 제외한 거주면적만 기입	작성(전용면적)	기입 × (공란처리)

주상복합건물

※ 거처 및 가구수 파악 / 거처종류 판단 할 때의 고려사항

1. 매매여부　　2.영업 / 거주 면적비교　　3. 주택의 요건 충족여부

주택요건을 갖춘 건물이란?	① 영구, 준영구 건물　② 부엌과 방, 독립된 출입구 보유　③ 독립적 매매가능 **가게의 부엌, 출입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없는 것으로 봄**

[예시]

4층 주거
3층 주거
2층 상가
1층 상가

각 층별로 한 가구 거주

매매	거처번호	가구번호	거처 종류		
			주택요건	면적 영업≤주거	영업>주거
건물전체 매매	거처번호 1개 부여	각 층별 거주 가구에 각각 가구번호 부여	만족	영업겸용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불만족	가구명부 – 주택이외의 거처 조사표 – 기타	

주인 / 대표가구만 작성할 것!

매매			거처번호	가구번호	거처 종류		
					주택요건	면적 영업≤주거	영업>주거
층별 매매	1,2층 상가에 거주하는 사람 유무	있다	거처번호 1개 부여	1,2층 상가에 거주하는 사람 유무	만족	영업겸용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3,4층 각각 가구번호 하나씩 부여	불만족	가구명부 – 주택이외의 거처 조사표 – 기타	
					만족	주거전용이므로 일반 단독주택	
					불만족	가구명부 – 주택이외의 거처 조사표 – 기타	
		없다	1,2층은 조사제외 3층과 4층은 층별로 각각 거처번호 1개씩 부여 (총 2거처,2가구)	3, 4층 층별로 각각 가구번호 1개씩 부여	만족	주거전용이므로 일반 단독주택	
					불만족	가구명부 – 주택이외의 거처 조사표 – 기타	

거처의 종류를 판단할 때에는, 건물이 지어진 용도가 영업용인지 거주용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위의 일반적인 사례 외에 여러가지 예외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